

2001년 봄호

# 언론중재



## 특집 I

언론중재위원회 20년, 좌표와 전망

-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 언론에 비친 언론중재제도 20년
- 중재신청사건으로 본 언론중재 20년
- 창립 20주년 기념 좌담 :  
21세기 언론중재제도 운용과 전망

## 특집 II

반론보도청구사건 판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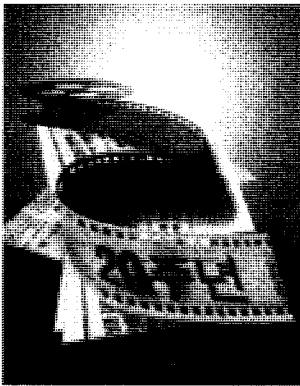
- 반론보도청구 주요 판결
- 반론보도청구의 예외 사유에  
관한 고찰
- 판결에 나타난 반론문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

2001. 봄



계간/2001년 봄호 • 제21권 • 제1호/통권78호  
 인쇄/2001년 3월 25일 • 발행/2001년 3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이 병 훈  
 인쇄인/김 행 술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 ~ 5, 732-6011 ~ 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식자, 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정화인쇄주식회사

## 차 례

**기념사** 4 • 위원회 창립 20주년 리셉션

**특집 I** 언론중재위원회 20년, 좌표와 전망  
 6 •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 양경승  
 17 • 언론에 비친 언론중재제도 20년 • 김창룡  
 29 • 중재신청사건으로 본 언론중재 20년 • 한동원  
 39 • 창립 20주년 기념 좌담 :  
 21세기 언론중재제도 운용과 전망

**특집 II** 반론보도청구사건 판결분석  
 54 • 반론보도청구 주요 판결 • 박형상  
 65 •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 성낙인  
 79 • 판결에 나타난 반론문에 관한 연구 • 조준원

**언론중재위에 바란다** 100

**판결동향** 110 •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 김재형

**2000년도 통계보고서** 125 • 2000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보도와 인격권** 152 • 공기(公器)와 흥기(凶器) • 최정환

**위원칼럼** 158 • 1년간의 즐거운 외도 • 이진성

**해외동향** 160

**자 료** 166 • 언론중재신청사례  
 176 •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판결  
 192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204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과 법** 208 • 언론소송과 판결

**위원회소식** 212

**언론법제관련동향** 214

**지상중재** 216 • On-Line 중재상담실

**색 인** 219 • <언론중재> 학술논문 및 자료 주제별 색인

- \* 본지는 삼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사회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보다 폭넓고 신속한 언론평해구제기관이 되도록 힘쓸 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한동 국무총리님,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님, 정재현 대한변호사협회장님, 각계 기관장님, 법조계·언론계·학계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전·현직 중재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년의 나이에 이른 저희 위원회가 지난 20년간 지내온 시간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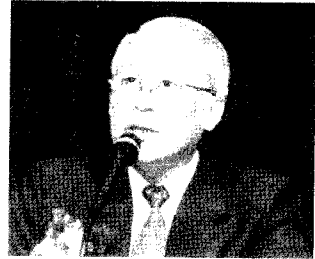
저희 위원회는 지난 1981년 3월 31일 창립한 이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언론사의 가운데에 서서 분쟁을 공평하게 중재하여 소송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덜고 신속히 피해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 위원회에 신청된 중재건수는 총 5,698건이며, 신청된 사건 중 평균 57% 정도가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되는 등 질과 양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저희 위원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성장된 국민들의 권리의식과, 이에 부응하여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언론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질서의 재편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이나 이익집단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견해를 달리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표출되고 있고,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언론이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이며, 급속히 진행되는



변화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실의 한쪽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나머지 균형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익집단간에 대립이 심화되는 사회환경 외에, 언론환경 자체의 변화도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시청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된 보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빈 여러분!

저희 위원회는 이 같은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폭넓고 신속한 언론피해구제기관이 되도록 거듭 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견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도 변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구현하고자 하는 언론중재의 기본정신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함을 잃지 않는 기본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내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은 저희 위원회를 아껴주시는 마음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부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3. 30.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 영 식

# 특 집 I

언론중재위원회 20년,  
좌표와 전망

##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양 경 승  
변 호 사

- 성균관대 법대 졸업
- 제29회 행정고등고시,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광주고법(제주부), 제주지법 판사
-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 쟁점", "언론피해구제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 방향과 전망"외 다수
- 현 변호사

### I. 한국 언론책임법의 역사

####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19세기 근대 시민혁명을 통하여 확인, 선언된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아 직업적 언론이 권력의 제4부로 등장하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하나의 거역할 수 없는 큰 물결이었다.

언론의 자유가 불과 1세기만에 인류 공동의 기초적 선으로서 국가 사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정착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보통교육제도의 정착과 교통·통신 및 정보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성숙되면서 그 반대편에서는 언론활동에 의해서 초래되는 반가치적·부정적 과급효과가 차츰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언론의 자유 못지 않게 언론의 책임 역시 강조되게 되었는데, 이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언론의 자유법과 함께 언론의 책임법을 아울러 가지게 되었고, 언론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언론자유 탄압의 질곡을 거친 우리 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 2. 제5공화국 이전의 언론책임법

제5공화국 이전의 우리 나라 언론책임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옳다고 하겠다. 아직까지 언론의 자유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언론은 여전히 국민의 부조(扶助)를 받아야 할 약자의 지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성숙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 일반은 물론 언론학자나 법학자들의 관심도 거의 없었던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논할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 제5공화국 이전에는  
언론의 책임을 규율한 법은 없어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으로 언론의 자유영역을 규정하고 있었고, 사인간의 일반적인 피해구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민법은 특별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았다. 다만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거나 정정보도 또는 사죄광고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실제의 분쟁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위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 등은 본질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데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위와 같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 그 보도의 위법성을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입증하여야만 하였다.

그렇지만 언론보도는 대개의 경우 언론기관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한다는 의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시간적 제약성 때문에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나 관련자의 반론 주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어서 언론사나 보도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또한, 형법 제310조와 판례(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에 의해 인정되어온 바와 같이 “보도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현실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실체법과 소송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는 주장과 입증을 통한 소송수행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은 제약이 가해진다.

한편 위 민법상의 구제수단은 모두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위법한 표현물의 제작, 반포, 방송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전금지능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가처분제도에 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규정이 매우 간단하고 언론분쟁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관계로 이는 오로지 법원의 판례에 맡겨져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제5공화국 이전에 있어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청구는 거의 없었으며, 언론은 국민 일반에 대하여 늘 강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 II. 언론중재제도의 도입과 정착

### 1. 언론기본법과 중재제도

#### 1) 반론권제도의 도입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1980년 12월에 제정된 언론기본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 언론의 책

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제20조 제2항)을 받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제3조 제1항),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의 침해 금지(제3조 제3항) 등의 기본원칙을 선언한 위에 공표 전에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언론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였다(제9조).

그러나 위의 여러 규정이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함에 반해 현실적으로 언론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반론보도청구권이다. 즉 위 법은,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발행인이나 편집인, 방송국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49조 제1항),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되(제49조 제4항), 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제49조 제5항)고 규정하였다.

위 법분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초기에 법률가들과 언론학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공표된 보도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그와 대립되는 자신의 반

론적인 의견을 보도하여 줄 것을 구하는 권리, 즉 응답권으로 보고 그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반론내용의 진실성(반대로 공표된 보도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그 법적 성격을 명백히 하였으며, 이후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론이 제기되지 않게 되었다.

언론기본법이 도입한 반론권제도는 언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통적으로 허용되어 온 손해배상제도와 정정보도제도에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이기는 하나, 그 과급효과는 단순히 새로운 구제수단 하나가 생겨났다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소 고식적인 종래의 구제수단과는 다르게,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당해 보도내용과의 개별적 관련성 즉, 객관적으로 보아 그 같은 보도로 인하여 그 내용의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관련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인격적으로나 재산적으로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만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신속하고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언론 책임법의 역사에 있어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언론기본법이 도입한 위 반론권제도는 그 표현과 입법형식이 매우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그런 이유로 이 제도는 판례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그(Baden Burtemberg) 주 언론법상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일찍부터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

반론권 제도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 그 행사가 신속하고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언론책임법 역사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일

들은 이 같은 언론피해 구제수단을 입법으로써 도입하고 있었는데, 이에 반하여 시민법 전통이 강한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손해배상제도 외에는 이 같은 구제수단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진실의 왜곡, 편향, 과장 등으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보도내용을 바로 잡는 정정이나 반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완전한 피해 회복을 꾀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이 반론권제도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한 데에다 사전 홍보나 교육의 기회가 없이 일순간에 도입되고 언론기본법에 일부 독소조항이 편입된 탓으로 그 도입 초기에 있어서 많은 의혹과 오해, 불신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직접 당사자인 언론계의 반발은 매우 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인가 여부를 둘러싸고 이론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어수단으로서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며,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에 합치된다고 선언함으로써(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 위헌시비는 일 단락되었다.

그리하여 이 반론권제도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① 언론의 자유 역시 많은 자유와 권리 중의 하나로서 이와 대립되는 다른 자유

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② 언론의 자유의 또 다른 한 내용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언론과 정보에 대한 언론수익자의 접근권(이론마 액세스권)에 기하여 피해자는 자기에 관한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으로 의논이 모아지고 있으며, 실정법상으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그 같은 침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제21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 반론권제도를 종래의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에 대비하면, 첫째, 가해자인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라는 불법행위적 구성요소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수한 책임수단적 성격을 가지며, 둘째, 원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와 달리 그 허위성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 2) 언론중재제도의 도입

언론기본법은 위와 같이 반론권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반론권 행사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함께 마련하였다. 즉, 반론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제50조 제1항),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제51조 제1항), 반론보도청구의 소에 관한 법원의 소송절차는 일반의 본안소송절차가 아닌 신속하고 입증부담이 가벼운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였던 것이다(제51조 제3항). 한편, 위 법에는 언급이 없었

으나 법원은 그 당사자 능력도 폭넓게 인정하여 사단이 아닌 단체 등에 대해서도 그 권리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분쟁해결 기구로서 도입되어 그 활동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전통의 대한상사중재원을 비롯하여 노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많은 기관이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같은 제도가 매우 생소하였던 데에다 그것도 민감하기 그지없는 언론의 영역에 사법부 아닌 제3의 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그 제도 도입 초기 언론계 내외로부터 많은 반발과 불신이 쏟아지게 되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는데, 제3공화국 정부하의 언론윤리위원회법 소정의 언론윤리위원회와 동일시하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이 위와 같은 제약을 안고서도 이 같은 중간자 역할의 기관을 설치한 것은, ① 시간적·경제적·법 기술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법원에 앞서 그 이용이 편리한 분쟁해결 기구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를 높이고, ② 언론에 관한 분쟁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화해와 절충의 장을 마련하여 반론권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언론의 과도한 반발이나 불신을 완화하며, ③ 이 제도의 홍보와 교육, 연구 등을 통한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꾀하려는 복합적인 입법취지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언론기본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해결 기능으로서 중재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이는 중재가 아닌 분쟁

당사자 쌍방의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정임이 명백하였으며,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론이 없었다.

그리하여 1981. 3. 31.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하였는데, 언론의 양적 성장과 팽창에 따른 분쟁의 증가와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및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반론권제도에 대한 연구와 교육·홍보가 성공적으로 확대되면서 중재신청과 법원에의 소 제기가 대폭 늘어나는 등 반론권제도는 튼튼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 2. 정간물법 등의 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정착

1987년 이른바 6월 시민혁명으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고 뒤이어 제6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사회 각계로부터 5공화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987. 11. 28. 악법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그에 대체하여 언론매체별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과 방송법이 제정되었고, 뒤이어 1991. 12. 31.에는 종합유선방송법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을 대체한 위 법률들은 반론권제도와 언론중재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존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 연속하여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구하는 바대로 정정보도 즉, 반론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그 제도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들 제도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는 8년간에 걸친 이 제도의 시행성과가 국민 일반은 물론 나름대로 언론계 내부에서

## 언론중재제도는 그 시행성과를 인정받아 언론기본법 폐지 이후에도 정간물법 등에 유지

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으며, 법원의 반론보도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간접강제의 방식으로 금전벌을 가함으로써 그 무렵에는 이미 이 제도에 대한 저항적인 태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 3. 언론중재제도의 변천과 정착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 의하여 강화된 반론권제도와 언론중재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중재신청 건수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원에 제기되는 반론보도청구 소송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반론권제도와 언론중재제도의 발전은 국민의 권리의식을 고양시켜 기존의 언론피해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 역시 증가하는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그만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 같은 변화는 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각종 세미나, 지방 발표회, 광고 등과 법원 판례의 보도 등 홍보에 촉발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여 피해 구제수단의 하나로서 인정되어 왔던 사죄광고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면서(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 구제수단은 바야흐로 손해배상과 반론보도청구로 모아졌다.

그리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면서 법원이 명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는데, 세칭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불리는 이종기 변호사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이 종전과는 판이하게 변화한 것이 역설

적으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이로써 원래 언론의 부오류성이나 시간적 제약에 따른 언론보도의 오류에 대한 사회의 관용적 태도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몇 개의 언론사는 회사 내에 옴부즈맨이나 변호사를 영입하여 자체적으로 기사의 사전검열을 실시하게 되었고, 보도 전에 대립되는 당사자의 반대 의견이나 반론을 최대한 반영하거나 당사자의 초상, 성명, 목소리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스스로 취하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언론에서 이전엔 전혀 볼 수 없는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할 만하였다.

이 같은 언론 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반론권제도와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위상 및 기능 강화의 요청이 대대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요청에 따라 1995. 12. 30. 정간물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변화로는 첫째, 기존에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본래의 정정보도청구와 혼동을 초래했던 것을 시정하여 그 권리의 본질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분명히 하였고, 둘째로는 본래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에 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만 과도기적 현상을 고려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소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 두었다. 사실상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그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상의 요건은 다르나 그 본질이나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자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였는데, 그 같은 요청을 일부나마 만

영한 것이다.

셋째는, 종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으나 양쪽 분쟁 당사자가 끝내 화해를 이루지 못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재위원회로서는 조정불성립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피해자는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야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지장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또 피신청인인 언론사의 2회 불출석에 따른 합의 간주가 되지도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의 주장대로 당해 언론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피해가 있고, 그리하여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제도가 개선되면서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적극화되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의 1차적 해결기구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언론사의 참여와 대응이 눈에 띄게 적극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그 동안 제도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권위 또는 체면을 의식해서 언론중재제도를 외면하던 국가기관이나 청와대 비서실장, 검사 등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심지어는 언론사까지 중재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반론권제도와 언론중재제도가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착근하였다는 것을 웅변해주는 현상이 아닐 수 없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그리고 국민 누구

나가 간편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곁에 다가간 노력의 결과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반론권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신뢰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1997년 11월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선거보도에 대한 신속한 반론 보도청구제도가 도입되었다(동법 제8조의 2 내지 8조의 4). 이로써 반론권제도와 언론중재제도는 이제 움적일 수 없는 우리 나라 언론 책임법의 중추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고 하겠다.

### Ⅲ. 언론중재제도의 전망과 발전방향

#### 1. 언론중재제도의 전망

이제 성년이 된 우리의 언론중재제도는 앞으로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우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경제활동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언론기관 내지는 언론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래의 정기간행물이나 방송과 같은 전형적 언론매체 외에 위성방송, 인터넷 신문·통신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그 수용자를 급격하게 증가시키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언론의 양적 성장이 급격해짐에 따라 당연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더욱 빈발하고 그 파급효과 또한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따라서 언론분쟁에

반론권 제도와 언론중재제도는  
이제 우리 나라 언론책임법의  
중추적 지위를 부여받아

대한 국민들 내지 언론 수요자들의 반론 제기나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기대와 요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그 같은 요구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한편 근래 이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각국에서는 종래와 같이 법원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소송 형태의 분쟁해결 수단으로써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해결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기류에 따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조정, 중재, 이행권고, 집단소송제도 등의 도입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언론분쟁 분야에 있어서도 이 같은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며,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같은 변화의 중심에 서서 그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 2.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론권제도 및 그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언론중재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훌륭하게 정착되어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으나, 그간 언론 내외의 환경변화와 장래 예상되는 변화에 비추어 보건대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언론보도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게 되었고, 언론보도 역시 상품인 이상 하자가 없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

로 인식되게 된 것이 단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반론권제도와 언론중재제도로 대변되는 우리의 언론 책임법은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음을 숨길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또 다시 사회 각계에서 언론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노기 찬 목소리와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구호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언론인이 작금의 언론에 대하여 쏟아내는 다음과 같은 외침은 우리 언론의 현주소라 할 만하다.

편파 보도·불공정 보도 정도로는 거기다 말을 걸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사건·사실의 유기적 관계 또는 형평성 따위를 따지는 것은 기사의 취사 선택과 관계된 편집권. 더 거창하게는 언론의 자유에 '감히, 기여오르는 죄에 해당하여 언론 집단의 공분을 사기에 알맞다. 왜곡이라니? 왜곡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깨어 맞추고 배분하느냐는 오로지 언론의 천부권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런 권리에는 하늘만이 도전할 수 있다. 완전한 오보, 더러는 소설적 상상력으로 덧칠까지 된 기사는 없나? 그래도 굳센 것이 언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너무나도 명백해서, 바로잡지 않고는 죽을 것만 같은 오보일지라도 그 싸움의 첫발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맥빠진 기관에다 들여놓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란, 평소에는 딴 일 보던 '각계의 권위자'들이 이따금 모여서 뉘고 그름은 뉘두고 되도록 평화롭게 해결책을 모색하느라고 흔히 억울한 쪽에마저 어정쩡한 타협을 권하기 십상인 답답한 재판장이라고 들었다. ... 그리고 니면 갈 데라고는 재판소밖에 없다. 지루한 민사소송에 몸을 맡기고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 그런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재판소라고 언론을 두려워하지 않나? 그러므로 나는, 집단이라면 또 모를까, 개인이 언론과 송사를 일으키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일의 내용이 무엇이거나 무조건 존경심부터 숭구친다. 그런 한편으로 이 풍진 세상에 순진한 사람도 다 있다 싶다. 언론 개혁이 유

행어가 되어 다시 떠돌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진정코 언론하고 해볼 생각이라면 그 때위 유행어 퍼뜨려 언론으로 하여금 자위적 긴장감으로 무장할 틈을 주지 말고 조용히 신속히 법대로 하면 그만이다. 법대로 해볼 일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니 하는 말이다. 정부조차 언론에게 법대로 못한 시정이 있다면, 언론 개혁은 무슨 언론 개혁. 우리처럼 주는데로 받아먹고 그냥 옆드려 있지.

(『시사저널』 2001년 2월 8일자 설호정의 “언론 개혁은 무슨 언론 개혁?”)

위 글에서 호된 비판을 받은 것과 같이 일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가리켜 물이라고 한다. 속 시원하게 한꺼번에 문제 해결을 못해주는 데 대한 원망의 소리일 게다. 위와 같은 비판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이 반론권제도와 언론중재제도를 비롯한 언론 책임법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1) 관련 법령의 분산과 통일성 결여

구제수단별로 근거 법령이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별로 다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법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사진금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도 언론피해 구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 사항을 개별 법원의 관례에 의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절차의 확실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고, 선거 관련 보도의 구제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은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구제를 기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도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간단하고, 아예 중요한 규정이 빠져 있는 등의 결함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관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나누어진 법률을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 사전금지청구권 등 제반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흡수하여 통일적·종합적으로 규율하면 여러 가지 피해구제 수단에 대한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등 절차를 간명하고 통일성 있게 규율할 수 있고, 유사한 구제수단 상호간의 유기적 연결과 상호 변환을 통해 분쟁의 해결가능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 2) 자유로운 언론활동의 위축 우려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언론의 양적 성장으로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폭발적 증가와 배상액의 무제한적인 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언론사고는 피해규모가 크고 때로는 예상할 수 없을 만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에 못 이겨 언론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遇)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통상의 언론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충족시키면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그 존립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①언론사 내에 자율적 사전규제 및 감시기관으로 움부즈맨 설치를 의무화하고, ②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면제하는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를 손해배상의 민사적 영역에까지 확장하여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외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물에 비유되는 언론중재위의 현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

언론활동으로 인하여 언론사나 언론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며, ③소멸시효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④그 손해배상액도 당해 언론보도의 목적과 경위, 언론사와 언론인이 기울인 주의의 정도 및 그 자력, 피해자의 신분 및 그 재산정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위원회와 법원이 손해액을 상당한 범위 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언론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이원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모두 원래의 보도내용을 부정하고 그와 배치, 반대되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 보도내용을 수정, 원상회복을 꾀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보다는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래와 달리 정정보도를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반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정정보도는 원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피해자가 증명한 때에 언론사의 진술로써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로써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 4) 언론중재절차의 기능 미흡

그 동안의 운용 결과 소송 외 분쟁해결 장치 및 전심절차로서 중재절차의 유용성이 증명되었지만, 전심절차의 한계상 모든 분쟁을 중재절차 내에서 종국적·일회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은 부득이하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한다면 여러 가지로 기능을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하나의 절차 내에서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청구는 물론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재절차의 전심적 기능 강화를 위해 이 역시 모두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재절차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고 전치절차로서의 심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증거조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당사자간에 분쟁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권위와 증거조사 기능을 가진 중재위원회의 판정에는 복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 5) 중재절차와 소송절차의 연계성 결여

중재절차는 궁극적으로 소송의 전심절차 기능을 가지므로 소송절차와 유기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직권중재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기만 하면 직권중재결정은 효력을 잃고 피해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므로 절차의 번잡과 채소기간의 도과로 피해구제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재절차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함이 있다. 또한, 중재절차에서 분쟁의 심리,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심 소송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곧바로 제2심 소송절차로 이행케 하여 중재절차의 내실과 소송절차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며 법원의 소송절차도 지나치게 경직적이다.

따라서, 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별도의 소 제기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건을 법원의 소송절차로 이행케 하되, 소송구조상 행정소송 형식을 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원고, 언론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에서 각하된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무조건 직권중재결정의 효력을 상실케 함은 낭비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원래의 직권중재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하여 현저히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등 제반 사정을 비교衡量하여 당해 표현물의 제작, 반포, 판매, 방송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그 처분의 방법으로는 표현물의 봉인이나 집행관에게의 점유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의 신속을 위하여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야간과 일요일 등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송절차를 개선하여, 중재위원회의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진 직권중재결정, 기일 속행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중재결정에 대하여는 곧바로 제2심인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도록 하여 심급을 완화하고, 현행 법으로는 반론보도청구소송은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한꺼번에

제소하거나 심리할 수 없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도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들 모든 절차를 본안소송절차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병합하여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도 이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 6) 선거 관련 보도의 시정청구제도 미흡

선거에 임하여서는 후보자나 정강, 정책 등에 대한 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당해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시간이 촉박하고, 그 파급효과를 신속히 차단할 기회를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는 특성상 통상의 구제절차와 다른 예외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상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청구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통상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권에 한하여 특칙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 특칙으로서는, 중재신청 기간을 보다 단기간으로 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며, 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언론사로 하여금 곧 반론보도를 하게 하되, 그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과 견해를 동시에 표명할 수 있게 하고, 직권중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과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또한 현행 법률상으로는 방송에 대한 시정청구는 방송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어 구제절차의 통일성과 중재절차의 효용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 역시 중재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

# 특 집 I

언론중재위원회 20년,  
좌표와 전망

## 언론에 비친 언론중재제도 20년

### I. 글머리에 : 언론중재제도의 탄생에서 2001년 현재까지

#### 1. 언론중재제도와 언론

언론중재제도가 탄생한 지 올해로 20세 성년의 나이를 맞이 하지만 언론사와 보도피해당사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언론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요구하며 동시에 신속하게 언론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 탄생한 언론중재제도는 제도적 의의와는 별개로 서로의 상반된 입장 때문에 대체로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언론사들은 그동안 별로 감시와 견제를 받는 곳이 없어 안주해오다 1981년 중재제도의 출현은 큰 부담이 됐다. 이 제도는 언론자유에 대한 독소조항 때문에 훗날 폐기된 언론기본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는 듯하다. 모범은 악법으로 낙인찍혀 6공화국 출범이후 사라졌으나 그 법에 의해 신설된 언론중재제도는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1981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언론중재제도를 운영할 언론중재위원회가 탄생되고 시정권고안들이 속속 만들어질 때 언론사들은 일순 불안감에 떨었다. 초기 조심스럽지만 기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안'에 대해 기준이 애매하다며 언론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뒤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런 시각은 한 두 언론사가 아니라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중재제도의 도입초기 언론사들의 이런 불안감은 곧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우선 중재위원회가 법정기구이기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언론사가 합의를 거부했을 경우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5공화국 전체기간을 통해 언론중재제도는 존재했지만 언론피해자들의 인권을 초기 제도도입의 이상처럼 제대로 지켜냈다고 보기는 무리다. 또한

#### 김 창 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 런던시티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 영국 카디프 대학교 언론대학원 박사
- AP통신사 서울특파원, 국민일보 기자
-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 인제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실행위원
- 현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언론중재제도 자체가 언론피해자가 신청을 해야 중재에 나선다는 점에서 소극적 수단에 불과했다.

1988년 5월 16일 군사정권과 결탁한 언론의 힘은 부서부적했다.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언론사들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었다. 이런 언론집단을 상대로 웬만한 언론피해자나 단체는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할 엄두를 못냈다. 이 시기에 중재건수를 봐도 미미했다는 점이 바로 이런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당시 군사정권하에서는 인권을 요구하고 언론의 성의 있고 진실된 보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도 없었고 언론사도 성의 있게 들어줄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언론중재제도 자체가 무기력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들은 초기 언론중재제도가 부서운 '시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부정적 기사로 반대했지만 언론중재제도는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언론도 더 이상 언론중재제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언론은 중재제도를 철저히 무시했고 또한 무관심했다. 중재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 어떤 형태의 변화를 보이더라도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88년 언론사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언론카르텔이 붕괴되자 본격적인 언론개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와 함께 봉어디건 민주화 바람은 개개인의 인권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언론사에 대해 항의 한번 변변하게 못하던 풍토에서 이제는 내 권리를 찾자는 움직임이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중재신청건수가 파격적으로 늘어났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두렵

다기 보다는 귀찮아진 것이다. 여전히 언론사의 성의 없는 자세는 언론피해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피해자들은 중재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는 1996년 7월 1일 직권중재결정제도란 것을 도입했다.

직권중재결정은 분쟁 당사자(언론사와 언론피해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언론피해당사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인정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직권으로 중재안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재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나 언론사나 신청인이 물론 거부할 수도 있다. 이는 과거 보다 한발 앞선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의지로 볼 수 있다. 이 직권중재결정권 도입시에도 언론사들은 일제히 반대했다. 언론에 대해 억압적 요소가 있으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마침내 직권중재결정권을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출범 16년째가 되던 해다.

언론중재제도의 이런 진전과 변화 속에서도 언론피해자들은 상당수 언론피해수단의 적절성과 신속성, 적합성에서 불만이였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시민대표는 없고 언론계 출신과 학계출신들로 이루어진 구성원들에 대한 불만과 함께 구속력 없는 중재제도가 별 효용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언론중재제도는 정정보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론보도의 게재여부를 중재하는 곳이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고 싶은데 반해 언론중재제도하에서는 반론권의 보장이 목적이었던

언론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중재제도가  
별 위협이 되지 않자 무관심으로 일관

셈이다. 따라서 언론중재제도의 한계점은 명백했다. 이런 내용을 꿰뚫는 돈 있거나 힘있는 언론피해자들은 언론중재제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형사소송을 통해 그 불만을 표출하고 정정을 요구했다. 중재제도를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왔으나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2000년 11월 25일, 중앙일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구제법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 핵심내용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라는 것이다. 2001년 공청회를 거쳐 언론피해구제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법원의 전속 관할로 돼 있는 언론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가 1차 관할권을 가져 배상책임 여부, 배상액 등에 대해 조정 또는 중재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 반론보도청구는 물론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조정전치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을 언론사건에 한해 단축,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또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0년을 맞으며 시대적 요구와 언론의 책임론에 입각하여 현재 이런 새로운 안을 현실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벌써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미 언론중재위원회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마다 보여온 부정적 대응의 반복인 셈이다.

## II.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시기별 언론보도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의상 언론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언론중재제도의 초기 도입기와 정착기, 변화기를 나누어서 언론의 보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알아본다.

### 1. 도입기 (1981년 11, 12월)

언론기본법에 의거하여 언론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주고자 만들어진 언론중재제도는 초기 도입과정에서 언론사들로부터 큰 반발을 가져왔다. 1981년 12월 2일자 한국일보, 서울신문(현재 대한매일), 중앙일보 등은 '언론침해 시정권 5개항 의결'이란 제목 하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5개항의 기준을 적시하며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의결된 5개항은 ·법률에 의해 공표가 금지된 사항을 공표했을 때, ·헌법이 규정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명백하고 현저하게 침해했을 때, ·언론기본법3조가 정한 인간의 존

엄 및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하고 현저하게 경시했을 때, ·폭력행위 등 공공질서를 문란케하는 위법행위를 고무찬양한 것이 명백하고 현저할 경우 등이다.

이 내용에 대해 동아일보 1981년 12월 3일자 사설은 '언론중재위의 역할'이라는 제목하에 소제목으로 '독자적인 시정권고는 중재영역을 넘는 것'으로 규정했다. 좀 더 구체적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언론기관과 언론피해자간의 분쟁중재를 목적으로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자의 중재신청이 없는데도 언론기관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보도나 논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인가. 중재위의 권고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위험은 없을까. 중재위원회가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독자적으로 언론침해사항의 시정을 권고할 5개 기준을 결정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중재위의 독자적인 시정권고는 분명히 분쟁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중재의 영역을 벗어나는 월권행위이며 사후검열의 성격을 띤 것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검열은 헌법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정치 않는다...중재위원회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언론침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한국일보는 1981년 12월 5일자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중재위의 심의기능 줄여 해석해야'라는 소제목하에서 주요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언론중재위의 심의기준을 보고 당혹감을 느낀다. 언론중재위의 심의기능을 형식적으로 또는 확대해석하는 것이 언론자유에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걱정된다..."

중앙일보 역시 1981년 12월 7일자 사설에서 언론사들의 불편한 심기를 전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언론중재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부분하다...언론중재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5개항의 기준이 논란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중재신청이 있다면 모르되 중재위가 독자적으로 보도나 논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 권고의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언론의 책임을 강조한 나머지 언론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이다...백보를 양보해서 중재위 당국의 말대로 강제성을 띠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권고라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그것이 권고로 끝날지 일말의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1981년 12월 5일자 '기자의 눈' 코너에 지면을 대폭 할애하여 '위압감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처 '더러 있을 듯'이라는 소제목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동시에 편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신문의 내용의 일부를 직접 옮기면 다음과 같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창립 초기,  
중재위 역할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높아

“...법정기관인 언론중재위의 권고가 빈번해지면 그것은 바로 언론에 대한 당국의 감독내지 감시의 시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서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1981년 12월 2일자 박스기사에서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중재넘어 감독적 기능 우려’라는 제목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재위가 마련한 5개항의 포괄적 기준이 애매해서 어떻게 구체적 사례를 구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사들의 초기 이런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은 별 문제없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 정착기 : 5공화국 (1981년-1987년)

도입 초기의 우려와 반대속에 그 업무를 시작한 언론중재제도는 의외로 순조로운 정착기를 거쳤다. 중재제도를 일단 현실로 받아들인 언론사들도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았다. 이는 이 제도가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언론자유를 위협하지도 않았고 또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사를 ‘뒤통’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중재제도는 국민들로부터 너무 멀리 있었고 언론사들과는 너무 가까웠다. 물론 초기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중재제도를 운영하는 중재위원회에 가해자격인 언론인 출신들은 있었지만 시민의 대표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반론권 보장

정도로는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도 원인이 됐다. 이러한 주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현황의 통계수치로도 뒷받침된다.

〈표 1〉 연도별 중재신청 현황

연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신청건수	44	50	71	54	59	49	47	55	121	159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신청건수	220	381	423	541	528	556	490	602	641	607

〈표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중재제도가 도입된 첫 해에는 피해신청건수가 44건에 불과했으며 그 이후로도 큰 변화 없이 중재제도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초기 ‘소프트 랜딩’을 위해 전략적 접근에서 나온 것인지 구조적, 생태적 결함 때문에 예상된 결과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결과는 일년 내내 50~70여건 신청을 논의, 중재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당시의 언론상황에서는 어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정통성 없는 권력은 항상 언론의 협조와 여론조작이 필요했고 이윤을 추구하는 언론사들은 권력의 각종 특혜를 받으며 권력집단으로 변모했다. 법정기구 성격이긴 하지만 언론중재제도는 이런 언론사들에게 어떤 견제나 감시수단이 될 수 없었다. 적어도 전두환 군사정권이 지속되는 한은 그랬다. 〈표 1〉은 전두환 군사정권이후 중재신청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보면 당시의 억압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제도 정착기에서 언론사들이 보여준 보도태도는 적대적에서 중립적, 객관적으로 바뀌었다. 중재신청건수가 몇건인지 중재신청을 위한 방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까지 하고 있을 정도다. 경남신문 81년 9월 30일자 '중재위 발족 6개월의 운영실적'이란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9월 30일로 발족 6개월을 맞는다. 언론기본법에 의해 지난 3월31일 발족한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동안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할 세부규정과 절차 등을 정한 언론중재규칙 등 제반규칙을 마련, 지난 8월1일 제주지역중재부의 현판식을 끝으로 각 지역별 중재부를 모두 개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9월말 현재 15건의 중재신청을 접수, 처리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사건 8건, 저작권과 학술관계사건 4건, 재산피해사건 3건 등이며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사건이 전체의 53.3%로 가장 많다...”

제도 도입 2년 뒤 언론중재위원회 총회에서 안우만 당시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위원장에 재선됐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제도 도입 2주년 특집을 다룬 언론사들의 보도내용도 특별한 우려나 반대 없이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1983년 4월 7일자 박스기사에서 재선된 안우만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이 기사는 “2년간 백5건 중재접수, ‘비판기능의 약화’ 아니다”라는 제목을 크게 뽑았다.

당시 서울신문은 ‘두 돌 맞은 언론중재위’

라는 제목하에서 자세한 중재위 활동을 소개하며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관련기사가 68%로 가장 많다는 분석기사를 실었다. 어디에도 언론사 초기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제도 도입 4년 뒤에도 이런 양상은 바뀌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85년 4월 6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7일은 29회 신문의 날이다...언론중재위원회가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언론으로부터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과 언론과의 분쟁을 중재한 건수는 중재위가 발족된 이래 지난 4년간 모두 2백32건...이처럼 중재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종전처럼 법원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침해권리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중재위의 중재는 이른바 피해자의 반론권을 제기하는 것인데 외국의 경우 스웨덴 신문평의회, 서독 신문평의회, 덴마크 신문정정심사회, 일본 신문협회가 이와 비슷한 성격의 기능을 맡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그들은 모두 자율기구이며 우리는 법에서 정한 기구이다. 국민과 가까워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타율적인 중재이전에 오보는 솔직히 정정해주는 자세와 신중한 보도자세가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도입초기와는 다른 언론사들의 이런 바뀐 태도속에서 언론중재제도는 조용하게 도입기를 마쳤다. 1988년 언론카르텔의 붕괴속에 언론사들의 창, 복간현상은 언론중재제도에 일대 변화가 몰아쳤다. 언론피해자들의 욕구를 보다 빠르게 충족시키기 위한 변화의

제6공화국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간헐적인 비판이 있었으나 중재위원회 자체에 대해  
더이상 문제삼는 기사는 없어

소용돌이 속으로 언론중재제도는 들어가게 된다.

3. 변화기 : 6공화국 이후 (1988년- 현재)

1988년 언론악법으로 소문난 언론기본법은 폐지되고 이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로 대체됐다. 언론기본법에 근거한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모범이 사라지는 비운속에서도 굳건히 버텼다. 새로운 신문과 방송의 출범으로 6공화국에서는 더 많은 언론분쟁이 발생했고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중재신청건수도 두 자리 수치에서 이제 세 자리 수치로 많아졌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가 갖는 반론보도의 한계점과 언론사에 유리한 인적구성이라는 비판은 여전했다. 언론사들도 더 이상 중재위원회 그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는 않았다. 변화는 중재위원회에서 나왔다.

1) 반론권 개념 정립과 정정보도청구권  
신청 포함

언론이 개인이나 단체에 끼칠 수 있는 피해의 형태는 대략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신용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등이다. 형법 307조, 제308조, 민법 제751조, 제764조 등에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이런 보도에 대해 그 보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론보도청구권이다. 반론보도가 정정보도와 다른 점은 기사내용의 진실과 거짓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단 상

대방측(피해자측)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해명내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 반론보도권 도입의 취지다. 물론 사실적 내용에 근거한 반박권으로 한정했다. 이는 독일 등에서 법제화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반론보도청구권은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처음에는 중재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정보도청구권으로 불렀다. 명백한 용어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을 혼동시키는 처사였다. 이 부분에 대해 언론사의 문제 지적은 없었다. 각 언론사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 언론사들은 문제제기도 없었고 비판도 하지 않았다. 이 잘못된 용어사용은 1996년 정간물법 개정전까지 무려 15년간 지속됐다. 용어사용에 가장 정확도를 기해야 할 언론도 언론중재위원회도 결과적으로 용어혼란에 앞장 선 꼴이 됐다.

1995년 말 개정 정간물법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권까지 중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정기간행물법상 언론중재의 대상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가운데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에 의한 비금전적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에 한정되고(제18조 제1항, 제20조 제3항), 금전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중재는 할 수 없다. 또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사제재 중지나 방송금지를 구하는 등의 사전적 분쟁 역시 중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용어의 변화와 중재대상의 확대속에 언론이 보여준 보도행태는 무관심과 수동적 입장이었다. 언론은 더 이상 중재제도에 대해 우려도 경계도 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

처럼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업무수행에 별 지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언론사들은 언론피해자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내용은 1996년 언론중재위원회가 1993~1995년 3년간 중재신청인,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언론중재위원회 1996)'의 결과를 보면 분명히 나타난다.

〈표 2〉 신청인들이 중재처리과정에서 언론사에게 받은 인상

	(%)		
	언론사측의 중재에 임하는 태도	중재제도에 대한 입장	언론사측이 중재과정에서 보인 태도
매우 소극적/부정적/독단적	42.7	30.6	50.0
대체로 소극적/부정적/독단적	21.0	20.2	16.1
보 통	19.4	24.2	12.1
대체로 적극적/긍정적/협조적	4.8	8.9	4.8
매우 적극적/긍정적/협조적	4.8	7.3	9.1
부 응 답	7.3	8.9	7.3
계	100	100	100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언론사측은 중재에 임하는 태도에서 응답자들 63.7%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혹은 독단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정과 반론보도에 인식한 한국언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언론사의 중재제도 자체

에 대한 입장에서도 응답자 50.8%가 부정적/독단적이었다고 대답했다. 언론사들은 중재과정에서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고 매우 소극적/독단적/부정적이었다가 대부분(66.1%)이었다. 언론사측이 중재에 긍정적이고 협조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자는 불과 9.6%에 불과했다.

중재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언론사들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수치상 50.8%가 부정적/소극적이라고 대답했다. 긍정적 협조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6.2%에 불과했다. 이 이상 언론사들의 중재제도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주는 조사가 있을까.

언론사들이 중재제도에 대해 얼마나 비협조적이며 비자발적이었는지 이런 수치로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보도 역시 인식했다. 중재제도의 변화와 중재대상의 확대 등 새로운 뉴스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보도해서 언론수용자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객관적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기 세미나를 열고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언론은 무성의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직권중재결정권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무관심과 무성의는 반발과 우려로 다시 바뀌었다.

## 2) 직권중재결정권제도

직권중재결정권이란 언론피해를 두고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언론중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언론사측이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언론사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은  
중재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반발과 우려로 변화

잘못이 명백한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중재결정권을 도입한 이유는 바로 그동안 언론사들이 보여온 부성의, 무관심한 태도때문이며 또한 중재제도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동안 언론중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언론사의 출석을 저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의 부성의로 중재합의율이 저조했고 중재신청의 취하가 빈발했다. 중재위원회 발족이후 1997년 7월 31일까지 중재 취하율이 거의 반에 가까운 45%에 육박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시정권이라는 두 기능이 강제적 구속력이 없는 사후적 피해구제수단에다가 언론사들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그 한계를 종종 드러냈다.

이런 이유로 1995년 12월 30일 개정 정기간행물법은 직권중재결정제도를 도입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직권중재결정권 도입에 대해 언론은 또 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언론사들이 중재에 어떻게 임했으며 어떤 식으로 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반성의 소리는 없이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1996년 7월 3일자 논설에서 공종원 논설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새 언론중재의 위험성'이라는 제목하에 직권중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직권중재결정권)이 세인

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언론계조차 자신과 관련된 법인데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지도 못한 사이에 어름어름 시행되기에 이르러 있는 현실은 아무래도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언론계 종사자 대부분조차도 공보처가 발행하는 '국정신문'의 최근 보도를 보고서야 비로소 정간법 시행령이 무엇인가를 알게되었으니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언론 등 우리 사회의 정부 감시기능의 무력증을 반영하는 증거라면 우리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위험신호일 수밖에 없다...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된 정간법 시행령에는 적잖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결정권을 준 점이다...우선 신문들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중재결정이란 미명아래 정정 혹은 반론보도를 하도록 강제된다는 것은 중재라는 본래의 의미를 일탈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언론자유를 해치는 일이다...민주국가의 자유언론이 자율적 결정이나 사법의 명령도 아닌 제3자의 결정에 따라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강제 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우리의 경우는 법원도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위에 군림하여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에 반론권의 미명아래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인사와 예산의 조정을 받는 단체라는 현실에서 보면 정부의 언론정책이 의심스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겨레신문도 1996년 6월 12일자 보도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언론중재위 양날의 칼'이라는 제목하에 손석춘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는 정치권이 악용하여 언론사 보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달 1일부터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학계에서도 대체로 중재위의 중재결정권을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그러나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언론현장과 언론학계 일각에서는 중재위의 직권중재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직권중재를 둘러싼 논란은 중재위의 권한강화라는 일반국민들과 언론사 사이의 갈등에서는 긍정적 의미가 있으나 정치권력과 언론사 사이의 분쟁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겨레 신문도 우려를 표시했지만 조선일보와 뚜렷이 다른 점은 보다 균형있게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예측하며 분석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일보 논설이 오직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하게 언론사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했다면 한겨레 기사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겨레신문은 1996년 6월 7일자 류한호 교수의 ‘더불어 생각하며’라는 코너를 할애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기입장을 옹호했다. 6월 6일자 사설을 통해서도 ‘정간법을 다시 고치라’고 까지 주장했다.

“...새 정간법은 또 언론중재위에 중재결정권을 부여하고 보도대상이 된 단위기관장이나 단체장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재’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 당사자가 중재결정을 송달받은 뒤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과는 달리 여론의 끊임 없는 감시와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업무 조차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청구 및 중재결정의 사태 속에서 사실상 성역화할 위험이 지적되어야 한다...”

직권결정권제도의 도입이 언론에 반발과 우려를 가져왔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은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대신에 반론권 행사가 활발하게 도입됨에 따라 언론계가 비상이 걸리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1996년 6월 14일자 ‘소송암초를 피하라’는 제목하에서 ‘취재원, 이해당사자 반론권 행사 부쩍 늘어 진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송에 걸리지 말라’ 요즘 방송 3사가 6개 탐사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하달된 제작지침이다. 최근 들어 취재원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방송내용을 문제삼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론권 행사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방송 ‘PD수첩’은 이미 전담 변호사를 두어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2텔레비전 ‘추적60분’에서도 변호사 위촉을 서두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외압 시비 끝에 추적 60분의 ‘쌍용 사과상자 의혹’편이 불방된 배경에도 ‘확실한 불증 없이 의혹만 제기했다가 소송 시비에 휘말리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간부들

언론사들이 중재제도에 대해  
막연한 우려를 내세우기 전에 취재보도 행태에 대한  
자기 반성이 전제되어야

의 주장이 일선 제작진에게 상당한 심적 압박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일선 제작진들은 이런 시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촉박한 취재일정, 시청률 부담 등 열악한 제작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내용이 변화, 발전하는 가운데 언론사들의 고민과 우려도 함께 커졌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중재제도가 언론사의 보도에 큰 위협이 되는 정도는 아니고 언론사의 우려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있으며 언론자유를 침해할 정도도 아니라고 본다. 언론사들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 어떤 취재, 보도행태를 해왔으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 어느 정도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왔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Ⅲ. 언론중재제도의 한계와 한국 언론의 법적 환경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언론사측에서는 강화되는 반론권이나 직권중재결정권 등으로 반발하고 우려하지만 언론피해자 입장에서 여전히 불만이 많다. 시민단체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 혹은 언론계 출신 대표는 있지만 언론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대표는 없다는 점에서 신뢰를 보내지 않는 형편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서로의 입장에 따라 불만과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에 관한 한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도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선진언론에서는 ABC제도,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자율적 제도적 장치는 물론이고 연방통계법 같은 법을 통해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매년 통계청에서 언론사의 경영에 관한 세부적 조사를 통해 이를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영세언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해 제작비 지원을 하기도 한다. 탈세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묻는다.

국내 언론사 특히 대형 언론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그동안 묻지 않았다고 표현해도 크게 틀릴 것 같지 않다. 우선 검찰과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면해주거나 웬만해서는 나서지 않았다. 국세청이 당연히 해야 할 세무조사조차 직무유기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있는지조차 일반 독자들은 모를 지경이었다. ‘담배꽂기보다 신문꽂기가 더 힘들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신문사 판매시장에 불공정경쟁이 넘쳐나고 살인극이 벌어져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묵을 지켰다. 검찰 역시 언론사 사주나 언론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극도의 몸조심을 하며 자제하는 관행을 견지해왔다. 바로 이런 결과가 언론사를 특혜집단으로 권력기구화한 것이다. 당연한 법집행이 이처럼 태만한 관계로 자율적 규제라도 견제, 감시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제대로 됐다고는 볼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언론사 특혜에 앞장서왔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계도지라는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해왔다. 감사원 감사결과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도지 예산을 사회복지로 돌리자 해당 언론사들이 반발하며 자치단체장 비판기사로 지면을 도배했다. 영문을 모르는 독자들은 그렇게 알게 모르게 당해왔다. 이런 사항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나서지 못했다. 피해신청이 없으면 언론중재제도는 사안을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법은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국세청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만 언론사에 관한 한 무슨 마술에 걸린 듯 법집행을 유기하거나 태만해왔다. 그래서 당연한 직무수행인 세무조사나 공정거래법 위반조사도 마치 언론탄압이나 언론장악의도로 비치는 것이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와 관련한 법은 존재하지만 이 법은 힘있는 사람이거나 정치인, 가진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일반 기업체나 평범한 시민이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법은

결과적으로 언론사편이다. 막강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소송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법원은 언론사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 물론 한 가지 예외는 있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의 경우 한국 법원은 이례적으로 4억원의 피해보상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한국에서 법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한국언론을 둘러싼 법과 그 집행이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2000년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위가 1차 관할권을 가져 배상책임 여부, 배상액 등에 대해 조정 혹은 중재에 나선다는 안이 나왔다. 또 반론보도는 물론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위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조정전치주의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점점 더 권한과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며 언론피해자의 진정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특 집 I

언론중재위원회 20년,  
과표와 전망

## 중재신청 사건으로 본 언론중재 20년

### I. 통계로 본 언론중재 20년

2001년 3월 31일로 창립 20주년의 성년기에 들어선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년 동안 5,698건의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기각·각하 등으로 처리된 167건을 제외한 5,531건을 중재, 1,680건에 대해 합의(29.5%)를 이끌어냈으며 102건을 중재결정(1.8%)으로 처리했다.

중재결정으로 처리된 102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된 55건(중재결정의 효력 상실)을 제외한 47건의 동의건수를 1,680건의 합의건수와 합치면 중재심리를 통한 피해구제율은 30.4%이다.

그러나 중재불성립된 1,232건 중에서 201건(16.3%), 취하된 2,517건 중에서 1,198건(47.6%)과 102건의 중재결정된 가운데 8건(14.5%)은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 등의 보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은 중재합의 등을 통한 30.4%의 2배에 가까운 56.7%로 집계되고 있다(본고의 통계는 2000년 말을 기준으로 한 것임).

특히 중재결과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중재결정으로 처리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정간물법 제18조7항) 미흡하기는 하지만 중재신청인의 30.4%는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시일 내에 금전적인 부담 없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1. 중재신청 접수·처리 현황

창립 첫해인 1981년부터 1988년까지의 8년간은 연도별로 구분해서 비교, 분석할 만큼 중재신청 면에서나 처리결과 면에서 차별성이 별로 없었고 실적도 미미했다. 1981년부터 88년까지 44~71건 정도로 커다란 기복이 없었으며 8년간의 연간 평균 신청건수는 53.6건이었다.

중재신청은 9년째인 89년 들어 전년도의 2.2배나 되는 121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90년 159건, 91년 220건, 92년 381건, 93년 423건, 94년 541건, 95년 528건, 96년 556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98

- 서울대 법대 조, 일본 동경대 대학원 신문학과 수료
- MBC기자, 서울신문 외신부장
-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중재위원, 한국언론연구원장 역임
- 현 대한언론학회 부회장

년 602건의 중재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음 600건 이상의 신청사건이 접수된 이래 최근 3년간 600건 이상이 꾸준히 신청되었다. 중재신청사건 수는 1997년과 2000년에 약간의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을 뿐 매년 10% 내지 40%대까지의 성장률을 보였다.

80년대 말부터 중재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①정기간행물의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대중매체의 급증과 매체환경의 변화, ②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의 상승, ③87년의 6.29 민주화 선언 이후 고양된 국민들의 권리의식, 법의식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합의율은 1981년부터 1996년까지 16년간, 82년 38.0%, 93년 31.2%를 기록한 두 해를 제외하고는 20%대에 머물렀고, 평균 합의율은 25.7%로 조사됐다. 그러나 97년에 들어 32.9%를 기록한 합의율은 98년 37.5%, 99년 38.1%, 2000년 32.6%로 최근 4년간 연속 30%대의 합의율을 유지했으며, 4년간의 연간 평균 합의율은 35.3%이다.

97년 이후 합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신장한 것은 1996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개정 정간불법에 도입된 중재결정 제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즉 피신청인들이 종전에 합의를 해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립으로 유도했던 신청사안들과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중재결정으로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알아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중재부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고 합의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이 기피

하는 처리유형이다.

중재불성립결정된 사건이 97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보면 97년 이후의 합의율의 급신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하율은 큰 변동 없이 중재불성립이 줄어든 만큼 합의율이 올라간 것이다.

1984년 53.7%까지 기록한 중재불성립된 사건 비율은 85년 47.5%로 다소 떨어졌고 이후 96년도까지 20~30%대를 줄곧 유지했었으나, 합의율이 급상승한 97년부터는 10%대로 하락하여 97년 16.1%, 98년 16.1%, 99년 15.9%, 2000년 10.9%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합의를 해주어야 했던 많은 신청사안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중재신청 된 분쟁사건은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취하, 기각, 각하 중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처리되는데 취하된 사건 비율이 4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996년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취하이유는 '언론사의 사과를 받고' 취하한 경우가 가장 많은 31.6%, '언론사의 정정보도 약속을 받고' 취하했다는 응답이 28.9%로 조사됐다. 이외에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를 해서' 2.6%, '기타' 28.9%, '무응답' 7.9%로 나타났는데 취하한 거의 대부분이 만족스러운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1)</sup>

연도별 취하율을 보면 중재신청이 1년에 50건 내외였던 88년까지 최하 18.5%에서 최고 57.4%를 기록하여 그 기록이 심했으나 중재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한 89년 이후에는 37.0%를

1)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1996, pp.93~94.

1980년대 말부터 대중매체의 급증,  
언론중재위에 대한 인지도 상승,  
국민들의 권리의식 고양 등의 영향으로  
중재신청 급증

기록한 99년과 50%를 약간 상회한 91년과 92년을 제외하고는 40%대를 유지했다.

이와 같이 취하율이 합의나 불성립결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라는 타율적인 방법에 의해 합의되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이 언론사로서는 불명예스럽고, ②문제의 기사를 취재, 보도한 기자들이 회사 내에서의 책임추궁이나 고과반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관련 기자들이 중재신청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신청인을 회유하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재불성립으로 결정된 신청사건 중 실질적으로 중재심리 밖에서 구제되는 비율이 15% 안팎인데 비해 취하된 신청사건에서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44%라는 높은 실질적인 구제율을 보이고 있으나 취하한 신청인들은 만족할 만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다.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재결정 제도에 따라 96년 9건, 97년 15건, 98년 24건, 99년 29건, 2000년 25건 등 5년간 총 102건의 중재결정이 있었으나 피신청인들은 47건(46%)에 대해 동의한 데 반해 55건(54%)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이 되면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의신청이 남발된다면 중재결정제도는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의신청된 55건 중 8건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언론사들이 조치를 취해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이의신청의 남발을 반증하는 것이다.

## 2. 중재신청사건의 각종 유형별 현황

### 1) 침해 유형

중재신청사건에 나타난 언론보도에 의한 권익침해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총 5,698건의 중재신청 사건 가운데 85.6%인 4,875건이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이었으며 신용훼손이 12.9%인 735건, 기타 88건(1.5%)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의 경우 81년부터 96년까지 16년간 중재신청 대비 연평균 85.1%였으나 97년부터 갑자기 95.1%, 95.8%(98년), 95.6%(99년), 95.7%(2000년)로 최근 4년간 연평균 95.6%로 늘어난 것이 주목된다.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날이 갈수록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 2) 신청인 유형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인 유형을 개인, 회사, 일반단체,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재신청은 지난 20년간 개인이 총 신청 5,698건 중 58.6%인 3,337건으로 압도적이며 다음이 회사 961건(16.9%), 일반단체 806건(14.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346건(6.1%), 종교단체 143건(2.5%), 교육기관 105건(1.8%)의 순으로 되어 있다.

신청인 유형에서 특기할 사항은 86년(44.9%), 88년(41.8%), 89년(47.1%)을 제외하고는 81년 첫해부터 개인의 신청률이 50%대 이상을 유지했으며 94년에는 66.9%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달리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일반단체들은 중재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

었는데 이는 언론의 보복기사가 두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80년대에는 변호사들조차도 언론의 보복이 두려워 중재신청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려고 했고 수임했다가도 언론사의 압력으로 도중에 수임을 포기하는 일까지 있었다.

### 3) 매체(피신청인) 유형

매체유형별로 중재피신청률을 살펴보면 일간신문이 총 신청 5,698건의 60.4%인 3,441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방송 932건(14.6%), 주간신문 838건(14.7%), 월간지 238건(4.2%), 시사주간지 133건(2.3%), 통신 80건(1.4%), 월간신문 14건(0.25%), 케이블TV 12건(0.2%), 기타 10건(0.2%)의 순이다.

매체별 중재신청에서는 96년경까지 65%대 이상 75.3%까지 올라갔던 일간신문에 대한 중재신청률이 최근 4년간에는 97년 57.1%, 98년 49.8%, 99년 52.3%, 2000년 54.2%로 떨어져 20년간 연평균 피신청률 60.4%에도 미달했다.

월간지도 98년 3.2%, 99년 2.5%, 2000년 2.6%로 최근 3년간의 중재피신청률이 20년간 평균 피신청률 4.2%에 크게 미달했으며 시사주간지의 경우 91년의 5.0%, 97년의 2.7%를 제외하고는 88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평균 피신청률 2.3%를 넘어선 해가 없었다.

반면 방송의 피신청률은 최근 3년 동안 20년간의 평균 피신청률 16.4%를 크게 상회, 98년 23.6%, 99년 25.9%, 2000년 20.4%를 나타냈으며 주간신문도 80년대의 한자리 숫자에서 90년부터는 두 자리 숫자로 피신청률이 높아졌다.

### 4) 중재부별 중재신청 현황

지난 20년간 중재신청 총 5,698건 중 서울과 지방의 비율은 62.3%(3,548건)대 37.7%(2,150

건)로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총 신청건수에서 일간신문의 비중은 60.4%인데 지방 중재부의 경우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일간신문 수와 중재신청 수가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중재부별 중재신청은 경기중재부가 8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산 5.4%, 광주 5.2%, 대구 3.2%, 경남 3.2%, 전북 3.2%, 대전 3.1%, 충북 3.0%, 강원 1.9%, 제주 0.8%의 순이다.

1999년을 기준으로 지방의 중재부별 일간신문 등록현황과 비교해 보면 일간신문의 수가 적은 부산이 두 번째로 중재신청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간신문의 수가 많은 경기(인천 포함), 광주(전남 포함), 대구(경북 포함), 경남(울산 포함), 전북, 대전(충남 포함), 충북, 부산, 강원, 제주 순으로 중재신청사건 순위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 시정권고 현황과 그 성과

중재기능과 함께 중재위원회의 2개 기능 중의 하나인 시정권고는 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지만 그런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정권고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함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정간물법 제18조 제8항)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시정이 권고된 침해사함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0년 현재 일간지 74종, 주간지 9종, 주간신문 2종, 월간지 7종, 통신 1종 등 93개의 매체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80년대에는 언론이 두려워 변호사들이  
중재신청사건의 수입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어

심의기준은 침해사항으로 ①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② 사회질서 침해, ③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등 3개의 큰 항목에 22개의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시정권고위원회는 심의기준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총 3,625건의 시정권고를 했다. 가장 많은 침해사항으로는 미성년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신원공개가 1,377건(38.0%) 시정권고되었으며 다음이 항정신성 의약품 용량·용법 공개 655건(18.1%), 성폭행 피해자 신원공개 646건(17.8%), 특정강력범죄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 579건(16.0%),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117건(3.2%)의 순이었다.

시정권고 현황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일간신문이 3,483건(96.1%)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통신 104건(2.9%), 주간지 및 주간신문 26건(0.7%), 월간지 12건(0.3%)이었다.

시정권고는 발족 초기 법조문 해석을 둘러싼 이견과 준비 미비로 87년까지는 거의 실행되지 못하다가 8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1년에 200건 내지 300건대를 오르내리다가 97년의 469건을 고비로 98년부터는 현저히 줄어들어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시정권고가 많았던 미성년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는 89년 92건, 90년 169건, 91년 140건, 92년 227건, 93년 228건까지 올라갔으나 94년(132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95년 131건, 96년 122건, 97년 76건, 98년 29건, 99년 20건, 2000년에는 8건에 그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 신원공개에서도 92년의 123건을 고비로 93년 106건, 94년 58건, 95년 29건, 96년 26건, 97년 21건, 98년 16건, 99년 17건으로 크게 줄었는데 2000년에 갑자기 전년대비 3배 이상이나 되는 54건으로 늘어 주목된다.

특정강력범죄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도 97년 182건, 98년 151건, 99년 126건, 2000년 67건으로 감소되었고 항정신성 의약품 용량·용법 공개도 95년 121건, 96년 117건, 97년 109건, 98년에는 137건으로 다시 올라갔으나 99년 66건, 2000년 97건 등으로 완만하게나마 감소추세를 보였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중에는 몇 달 동안 단 1건의 시정권고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부 신문, 특히 신생 신문 중에는 같은 내용의 침해사항을 매월 반복해서 시정권고 받으면서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정권고 된 침해사항 유형에 대한 언론사들의 판별능력이 향상되고 있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준다면 시정권고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Ⅲ. 언론중재위원회 -  
20년간의 변화와 업적

언론중재위원회가 올해 3월말로 맞는 창립 20주년은 성년기를 맞는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연륜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두 번이나 변한 강산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평가될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인식의 변화이다.

발족 초기 팽배했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

가 중재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지배적으로 표출되고 있어 두 번 변한 강산에 못지 않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 구제에서 언론은 20년이 지나는 동안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포기했으며 언론중재제도라는 타율적 해결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타성에 빠져버렸다.

이러한 언론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초기의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제5공화국 초기였던 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헌관을 올렸을 때 언론계를 위시하여 학계, 정계(특히 야당), 심지어 국민들간에도 언론중재제도를 백안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언론을 탄압하고 규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비판이었다. 당시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악법이라는 이유로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러한 언론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언론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비판을 받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설령 언론중재제도가 언론규제 목적으로 의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나 기능면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초기 2~3년간의 중재과정에서 확인되기 시작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초기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던 몇 가지 이유들이다.

① 중재부장이 지방법원의 수석부장 또는 선임부장들로 위촉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재부의 독립성이 사법부의 독립성처럼 유지될 수

있어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없다.

②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중재신청인의 대부분이 일반 소시민들이고 사안 자체가 정치성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권력이 개입하여 언론을 괴롭히거나 규제할 소지가 없다.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치인, 관료, 기타 공인들의 중재신청은 80년대 후반기까지는 거의 없었으며, 있었다 하더라도 부장판사들로 위촉된 중재부장들에게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언론을 규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중재부장에게 정치적 개입이 가능하다면 사법부의 재판에도 정치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니겠는가.

③ 언론사들도 중재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간섭이나 압력, 또는 규제를 받은 사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 중재신청사건을 가지고 해당 언론사가 정치적인 압력이나 부당한 규제를 받았다고 항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한 일도 없었다.

④ 초기의 제도적인 미비, 중재진행상의 미숙, 언론사들의 소극적인 수용자세 등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그나마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는 만나기조차 어려운 언론사 간부들과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통해 피해 회복조치를 받아낼 수 있었고 언론사들도 번거로운 소송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전치제도의 실익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대체적으로 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실증적인 과정을 거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20년이 지난 지금 언론중재제도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여당도, 야당도, 언론도, 그리고 모든 국민들도 같은 인식인 것으로

언론중재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언론계의 부정적인 시각이 전환

판단된다. 중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적인 단일법을 추진 중인 것도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절대다수의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초기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비판하던 일부 학계, 언론계 인사들까지도 그 후 중재위원으로 참여하여 중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재기능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중재신청사건수의 급증과 피해구제율의 상승이다.

발족 20년째가 되는 2000년도의 중재신청은 607건으로 전년도인 1999년도의 641건보다는 34건이 적지만 발족 첫해인 1981년도(4월~12월)의 44건에 비하면 약 14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피해구제율도 2000년도에 63.6%를 기록하여 지난 20년 동안 최고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6년까지 16년간 25.6%이던 평균 합의율이 1997년 이후 2000년까지의 4년간에는 35.3%로 급증한 반면 28.9%이던 중재불성립결정율이 14.8%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는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셋째, 정간물법 제18조 제5항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신설로 87년 이후 피신청인의 출석률을 높여 중재기능을 크게 효율화했다.

그러나 2회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신청인들이 많아 신청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폐단도 있다.

80년대 언론기본법하에서는 피신청인이 불

출석하면 불성립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의 출석률은 70%내외로 저조했으며 서울에서 발간되는 종합일간지의 경우 50.5%의 출석률을 보였다.

넷째, 중재결정 제도의 도입은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97년 이후 최근 4년간의 연평균 중재합의율은 35.3%로 80년대와 90년중반까지의 합의율 25%대를 크게 상회했다.

이렇게 합의율이 급증한 것은 이전에는 마음놓고 합의에 불응, 불성립 시켰던 피신청인들이 이전에는 불성립시킬 수 있었던 신청사건 중에서 자신들의 침해가 뚜렷하여 중재결정의 대상이 될만한 사안에 대해 미리 합의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중재결정이 내려진 중재신청사건은 102건으로 언론의 침해사항이 분명한데도 피신청인이 합의에 불응했기 때문에 중재부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한 사안들이다. 이전 같으면 모두 불성립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102건의 신청사건에 대한 중재결정과 함께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합의에 의해 더 많은 중재신청인들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재결정 제도가 가져다 준 큰 실적으로 평가된다. 중재결정의 필요성은 이미 5주년째인 1986년에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지만<sup>2)</sup>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경과한 1995년이 되어서야 법제화되었다.

다섯째, 80년대 초반까지 전혀 자료화되지 않았던 국내외 언론관계 판례들을 자료로 축적하여 <국내외 언론관계 판례집>1, 2집과 <국내외 언론관계 판례집> 1집~7집까지 펴낸 간행

2) 『언론중재』, 1986년 불호, p. 61.

사업은 학계나 법조계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큰 업적이다.

특히 계간으로 발행되는 <언론중재>는 지난 20년 동안 200건 내외의 국내외 학자, 법조인, 언론인들의 언론법제에 관한 논문과 수백건에 이르는 국내외 판례들을 게재하여 언론법제에 관한 유일한 전문지로 자리잡고 있다. 또 4~5개 외국의 신문평의회 평결들을 수집, 계속 수록하는 한편 해외동향란을 통해 언론윤리, 언론관계 판결 등 언론법제와 관련 있는 500건이 넘는 그때 그때의 최신정보들을 게재하여 국내외 언론법제 연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V.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양과 질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피해 구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도적인 보완도 했고 조사 연구사업도 활발하게 해 왔다.

그러나 중재위원회가 중재에 나서서 만족할 만한 피해회복을 해주었다고 만족해하는 신청인은 거의 없다.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미흡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에 불만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피해회복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중재에 임하는 자세, 중재결정권의 소극적인 행사, 그 밖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신청인의 피해회복을 깔끔하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 본다.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중재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좁혀야만 피해구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 신청인은 언론의 입장을 고려하여 완벽이 아닌 최대한의 회복을 얻어내고, 피신청인은 적당이 아닌 완벽한 회복을 해준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 당사자들의 이러한 자세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층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 같다. 신청인들은 일반적으로 중재위원들이 언론의 눈치를 보거나 편을 드는 편향된 중재를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합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홍보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강화해야 할 과제이다.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도 계속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확실하고 만족스러운 권리회복을 해주는 기관이라는 '이미지' 홍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 때문이라고 답한 신청인이 64.7%, 피신청인이 63.6%였는데 나머지 다른 신청인들은 실질적인 구제가 힘들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sup>3)</sup>

신청인 10명 중 3~4명이 중재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일 수도 있다. 언론보도로 다시 피해를 입을 경우 다시 중재신청을 하겠다고 응답한 신청인이 60.4%였지만 나머지 40%는 중재신청을 해도 만족스러운 피해구제

3)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1996, p.52.

중재과정에서 중재위원들이  
피신청인을 의식하거나 배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도 있다.<sup>4)</sup>

중재제도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체험적 증언으로 파악될 경우 중재위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홍보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도적인 보완, 중재위원들의 노력, 중재에 의한 피해구제율의 제고 등 여러 가지적인 요인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중재결정을 법규정의 허용한도 내에서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재결정제도가 도입된 지난 5년 동안 중재불성립결정된 513건 중 13.6%인 68건이 중재회의 밖에서 언론사에 의해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졌다. 이 68건은 피신청인측이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중재부가 불성립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중재결정을 하여 중재위원회가 피해구제에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신청인들에게 심어주었어야 했다.

중재위원들이 피신청인측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배려한다는 인상을 신청인들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재위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그렇게 비친다면 그렇게 비쳐지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중재결정의 확대와 함께 중재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정간물법은 중재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제18조 제7항)

위 규정에 의하면 중재결정은 이의신청이 남발될 경우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단일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는 규정과 같은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의신청과 동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중재결정의 54%나 되는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시의 신청인의 소 제기 부담도 덜어 줄 수 있게 된다.

넷째, 합의 또는 중재결정된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측이 게재하지 않았을 때의 집행방법이 없어 신청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37.5%만이 합의내용대로 즉시 보도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1.4%나 된다.<sup>5)</sup>

이 조사에서 다수의 신청인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합의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행까지도 책임을 지고 불이행시에는 제재까지 가할 수

4) 앞의 책, pp.95~96.

5)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1996, pp.88~89.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피신청인측의 자율적인 이행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불이행시에는 합의를 성립시킨 중재자로서, 또 중재결정을 한 법집행자로서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

다섯째, 정간물법 제20조 제3항은 “추후보도 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절차는 신청인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법 제20조2항). 위 규정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는 언론보도가 오보였고 이 보도로 추후보도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근거로 신청된 추후보도청구를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정간물법 제20조 제3항)하여 중재회의에서 정정보도(혹은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놓고 중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침부한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중재부의 확인만을 거치도록 하고 중재불성립 등으로 심판청구된 사건에서의 결정과 동일하게 바로 집행력을 갖도록 해야만 확실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여섯째, 정간물법 제18조(중재절차 등) 제5항은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신청인은 첫 번째 불출석에 취하로 간주되는데 반해 언론사에 대해서는 2회의 불출석으로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등한 관계에서 중재회의에 출석해야 하는데 첫 번째 중재회의에 출석한 신청인은 2회의 출석기회를 갖고있는 피신청인이 첫 번째 중재회의에 불출석하게 되면 시간과 경비만을 낭비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헛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한 번의 출석기회를 더 갖고있는 피신청인이 이를 악용하여 첫 번째 중재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약자인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언론중재제도의 입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하겠다.

1999년 7월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이 문제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간물법 제18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헌법위반 여부를 놓고 따질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중재를 진행하는데 있어 지장이 있으므로 개선,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평등관계도 유지하고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양자 모두 1회의 불출석만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 특 집 I

언론중재위원회 20년,  
좌표와 전망

##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좌담

21세기 언론중재제도 운용과 전망

일 자 : 2001년 3월 9일

장 소 : 언론중재위원회 회의실



참 석 자 : 서 정 우 (부위원장,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양 삼 승 (중재위원, 변호사)  
유 재 천 (한림대 부총장, 언론정보학과 교수)  
임 채 균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장, 변호사)  
최 영 훈 (한국기자협회 언론법률특별위원장,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서 정 우 : 다가오는 3월 31일이면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된 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나온 2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진단하고, 새로운 매체환경의 변화 속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좌담에 앞서 먼저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참고로 제시할까 합니다. 1996년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가 언론중재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인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이하 ‘이용만족도 연구’라 한다)” 보고서는 오늘 토론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의 82.5%, 피신청인은 이보다 높은 95.1%가 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제도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도 있는데, 언론중재제도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는 신청인이 45.6%, 이름정도만 들어보았다는 신청인이 42.3%로 아직 언론중재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총 5,698건의 중재신청사건을 접수·처리하였는데, 이 가운데 반론 내지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피해구제된 건수는 3,134건, 56.7%인데 반해 합의율은 29.5%에 불과해 피해구제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건수를 살펴보면 1981년 44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수가 2000년에는 607건으로 무려 14배나 증가하였습니

다. 또한 1983년 3건에 머물던 시정권고 건수도 2000년에는 234건으로 급증하였고, 총 시정권고 건수는 3,625건이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오늘의 논의를 위해 기본적인 통계를 제시해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와 더불어 통계적으로는 살펴 볼 수 없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먼저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유 재 천 :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구제받으 길이 없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함께 인권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중재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초기에 비해 언론중재위원회나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음은 이용만족도 연구 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서 창립초기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악법으로 비판받았던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탓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기구로 오해를 받아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동안 환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러한 오해와 인식이 불식되었다고 봅니다.

양 삼 승 : 민법상 성년의 나이인 20년을 맞게 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제 그 뿌리가 정착되어 홀로서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개화기 이후 우리 나라는 많은 서양문물과 제도를

중재제도를 보완·강화한 정간물법의  
시행은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배가하여 중재제도 정착에 기여



유재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반면 언론중재제도는 여러분도 주지하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유한 제도로서 도입되었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의 운영이 언론중재제도의 발전과정을 모범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바람직한 발전상을 창출했다고 평가합니다.

유재천 : 특히 언론중재제도가 그 뿌리를 내리게 된 주요한 계기는 언론중재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진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의 개정이 아닌가 합니다.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간물법에는 그동안 혼란을 가중시켰던 반론권의 명칭을 징정보도청구권에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로잡고, 중재결정권을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정간물법 시행 전후로 중재처리결과를 비교해보면 정간물법의 개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20%대에 불과하던 합의율이 개정 정간물법 시행 이후 1997년 32.8%, 1998년 37.5%, 1999년 38.1%, 2000년 32.6%로 97년부터 30%대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재제도를 보완·강화한 정간물법의 개정은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배가하여 중재제도의 정착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임채균 :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20년이 지난 오늘, 언론중재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서정우 부위원장께서 언급한 이용만족

도 연구 결과 중 언론중재위원회를 전혀 몰랐다는 신청인과 잘못 알고 있는 신청인이 10%가 넘으며, 이름정도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40% 가량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언론단체에서 언론피해구제와 관련한 상담을 통해 느낀 점은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문제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중재신청절차 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피해를 무슨 기관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언론중재제도의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영훈 :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신문사에 입사한 당시만 해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 언론인에게 귀찮은 기구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언론중재위원회에 당사자로 출석하여 저도 느낀 부분이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위상을 정립하였다고 언론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내부에서는 중재제도의 보완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크다고 알고 있지만 언론사로서는 지금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질 정도입니다.

유재천 :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

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아직 광범위하게 인지되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용만족도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지경로는 TV광고가 가장 주효한 것 같습니다. TV광고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신청인의 절반이 넘는 57.0%에 달하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에 대한 TV광고 등보다 강화된 홍보가 절실합니다.

**사회자 :** 아직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지만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의 정착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언론인들이 이제 상당 부분 중재제도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중재제도의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된 것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설립 초기 언론통제기구로도 바라보았던 언론계가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최영훈 차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영훈 :** 1990년대 말부터 불어닥친 언론사들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언론소송의 증가가 이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자입장에서는 솔직히 언론중재위원회가 귀찮은 존재이지만 법원이라는 좀더 까다로운 존재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 법원소송 전 절차인 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자 :** 얼마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흥미로운 글귀를 접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재제도는 언론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것이지만, 언론인에게는 중재제도의 존재 자체가 ‘사전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취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중재제도를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영훈 :** 기자들에게 언론중재신청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반론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중재제도의 시행으로 반론권 제도가 도입되었고, 중재제도로 인하여 일선 기자들의 반론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도록 강제한다는 의미에서의 ‘사전억제’ 차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 세계적으로 공적 기관이 언론보도의 문제를 간섭하고 규율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유례가 찾아보기 힘든 언론중재제도를 우리 사회에서 수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언론이 다른 국가보다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서 이런 독특한 제도를 운용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아주 독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최영훈 :**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기본법’이라는 대표적인 악법에 의해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당시 언론과 권력은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론과 권력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고자 완충장치가 필요하게

언론중재제도가 지난 20년동안  
유지·발전되어 온 것은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



서 정 우

된 데 그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언론관련 소송이 거의 없었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사례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임채균 :** 다른 나라에 비해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많은 지는 그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없어 가늠하기 힘들다. 언론피해 구제절차의 간편함과 신속한 처리가 우리 사회에서 언론중재제도를 수용하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삼승 :** 저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결정적인 권한이 없었던 데서 언론중재제도의 사회적 수용의 배경을 찾고 싶습니다. 즉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 내지 조정의 역할만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 중간적 입장을 제시하여, 어느 한 당사자도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한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언론사측이 불편하게 여기고 있으나 중재결정이나 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는 언론사에게 있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도 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가 칼자루를 들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절묘하게 중간적 기능을 발휘한데서 사회적 수용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여러 이익집단의 이해 대립이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더 민주화와 선진화되는 길이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며 그 중간적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라 불

때, 이러한 의미에서 중재제도의 긍정적 기능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유재천 :** 일찍이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았던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신문평의회나 옴부즈맨 제도 등 자율기구가 언론피해구제 기능을 담당했고 바람직한 언론문화 형성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고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의식도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인격권에 대한 의식이 싹트면서 중재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사회적 요구의 흐름이 기반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어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사회에서 존속,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저변의 인식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제도는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중재제도가 모법인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정간물법에 존치되어 20년 동안 유지, 발전되어 온 것은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중재제도의 필요성과 사회적 수용의 근거에 대해 논의를 일단락 짓고,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진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중재 처리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합의율과 피해구제율의

신장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가 정기간행물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권고기능을 부여받아 20년 가까이 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총 3,625건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시정권고를 했으나 보도내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답없는 메아리”에 머물고 있는 시정권고 기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최영훈** : 중재과정에서 언론사측의 비협조적인 자세가 합의율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인 언론사측의 대부분은 중재신청 대상이 된 보도와 관련한 문제가 중재과정에서 매듭지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궁극적인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30%대의 합의율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천** :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 합의율이 29.5%인데 반해 취하율은 44.2%로 취하율이 합의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하된 사례 2,517건 가운데 반론 내지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1,198건으로 취하된 사건 중 47.6%는 피해구제되었습니다. 언론중재 신청 사건의 취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타협의 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합의율보다는 실제 피해구제율이 보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정우** : 반론권은 언론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도에 대하여 관련자가 반박문 게재를 요구하는 것이며,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때 ‘대등’이라는 말은 바로 평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대포를 가지고 있다면 수용자는 소총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는 힘들어도 반론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반론권에 대해 이러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때 합의율은 높아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임채균** : 법원에서도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된 비율이 높지 않아 중재결정과 유사한 강제조정제도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재결정제도의 지나친 남용도 문제가 있겠지만 1996년 7월 중재결정제도도 도입된 이래 중재결정을 내린 경우가 매년 10여 건 안팎으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구제율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서 중재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삼승** : 지난 20년 동안의 실제 피해구제율이 평균 56.7%이며 2000년도에는 63.6%를 기록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물론 중재신청 사건 중 적어도 2/3정도는 피해구제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정도의 피해구제율이면 중재제도가 원활히 운용되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문제는

인격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지금, 언론사가 신청인을 회유하거나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최영훈

취하의 형식을 취한 것 가운데 피해 구제되는 사례를 보다 가시화할 방안이 요청된다는 점입니다. 취하율이 높은 이유는 아직도 언론사측의 반론보도에 대한 인식이 머리로는 수용하면서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반론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원인을 지적하자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다소 듣기 거북한 말이겠지만 언론사의 고자세적인 태도가 중재를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측은 나름대로 사실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속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취하되는 사건을 줄이는 현실적인 한 방안으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외에 다른 보도양식, 예를 들면 '알려드립니다', '바로잡습니다' 등 다양한 피해구제 보도양태를 개발하여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유재천 : 양변호사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철회, 취소, 해명, 시정 등 다양한 보도양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형식들이 피신청인에게 수용의 폭을 넓혀 주어 피해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재과정을 통한 언론의 반론 내지 정정보도는 중재절차에 의한 보도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자 : 중재신청 사건 가운데 취하된 경우가 44.2%로 처리결과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는 이유에 대한 이용만족도 연구 결과를 보면 언론사가 사과한 것으로 만족하고 취하했다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측이 보도를 약속하여 취하했다는 비율이 28.6%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측과 사석에서 만나는 것은 신청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재심리도 거치지 않고 취하하게 되면 상당한 허탈함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최영훈 : 취하되는 사건 비율이 너무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소 다릅니다. 중재신청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해당 언론사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중재신청이 되면 언론사 데스크가 바쁜 와중에 출석을 해야하는데,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자에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청인과 개인적으로 만나 중재심리 전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자체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권리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언론사측이 신청인을 회유하거나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가 제기된 보도 대상자들이 취재 당시 반론의 기회를 거부하다가 보도 후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외에 다양한 보

도양태가 개발된다면 언론사측으로서도 그 수용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하며,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언론매체도 개인의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임 채 균** : 언론피해자 입장에서 현 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론보도청구권의 청구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입니다. 현행 정간물법에는 언론사의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구제절차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며, 언론사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청구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둘째, 현행 정간물법 제18조 제5항에 의하면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반면 피신청인의 경우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만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신청인도 2회 불출석했을 때 취하된 것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현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정간물법과 반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 삼 승** : 매체환경의 변화와 함께 중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미디어, 특히 인터넷 신문, 방송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중매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규제논리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있는 줄 압니다만, 이와 관련한 논리의 정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언론중재는 소송 전 단계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운용여하에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매체를 위협하거나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기능을 아주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충분히 이해가 가며, 그릇된 태도라 보기는 힘들겠지만 시정권고기능을 보다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엄격한 요건하에서 동일한 언론사가 동일한 보도내용에 대해 몇 회 이상의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유 재 천** : 반론보도청구 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습디만, 반론보도의 시기가 너무 늦춰지면 반론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기능의 개선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율규제로는 실효성이 없어  
시정권고 기능 강화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임채균

시정권고는 신문윤리위원회 등 자율  
규제기구를 통해서 소정의 목적을 이  
룰 수 있다면 자율규제기구로 넘기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최영훈 : 한국 언론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  
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위원회의 시정권고기능을 강화하는 것 보다  
자율규제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합니다. 시정권고 결과를 공표하여  
언론사 스스로 수용자로부터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으면 합  
니다.

임채균 : 앞서 두 분의 견해와 달리 저는 시  
정권고기능의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  
다고 봅니다. 물론 그 기능의 강화 방안은 신  
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자율규제는 그 구속력  
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어떤 신문  
사가 어떠한 내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원회로부터 이러한 시정권고를 받았다는 사실  
을 알리도록 할 방안은 없는 지 검토했으면  
합니다.

유재천 : 제 견해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자율규제기구가 구속  
력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시정권고  
기능의 활성화 방안으로 법정기구인 언론중재  
위원회가 경제적 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은 언  
론통제의 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위험한 발  
상입니다. 오히려 시민단체가 언론중재위원  
회의 시정권고 결과를 참조하여 적극적인 언론  
매체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 회 자 : 언론중재위원회를 필요로 하지 않  
는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이상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  
다. 시정권고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권  
고 건수가 언론중재위원회 초창기에 비해 급  
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의 수많은 주간지, 지  
역신문의 경우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시정  
권고 대상이 되었던 동일한 보도내용이 반복  
하여 기사화되는 현실은 언론학자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제 논의의 방향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옮겼으면 합  
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지난 20년 동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중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반  
국민들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유재천 :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많은 강좌들  
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도 소극적인 홍보  
전략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각 시민단체의 강  
좌나 강연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언론  
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상세히 알리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 회 자 :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한 과정 속  
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언  
론사가 무관심한 듯 합니다. 언론매체의 발전  
은 언론관련 단체의 발전과 더불어 진행되어

야 바람직한 언론문화 창달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때 언론매체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사를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언론이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기사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가진 듯하여 유감입니다.

**유재천** :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내용의 주요 자료로써 활용하는 설문조사가 5년 전인 1996년에 실시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1996년 개정 정간물법의 시행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처리나 인식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홍보 부채를 지적하고 있지만 홍보전략도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보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언론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일반 국민과 언론인에 대한 심층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최영훈** :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에 대해 40% 정도의 인지도는 대단히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명예훼손소송 추세를 계기로 언론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초 선거기사심 의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 내용 중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조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한 자세를 보더라도 언론 스스로 무관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매체가 언론관련 문제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한 이용만족도 연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는 논외로 하고 국민의 편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요청되고 이는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견해들을 모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200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발표된 가칭 '언론평해구제법(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법, 형법, 정간물법, 방송법, 선거법 등에 분산 규정된 언론평해구제 관련 법률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으로, 과거에 분산된 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찾아보기 힘들었던 문제점이나 관련 내용이 상호 모순되거나 통일성이 없었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반론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도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율이 높아 중재결정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이 대두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소송으로 자동이행하도록 하여 그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양변호사님이 언급하셨던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방안 내용도 담고 있으며, 선거관련 보도의 시정 청구절차를 통일하였습니다. 그 밖에 언론사 내에 옴부즈맨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정보도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언론중재제도와 관련한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 반영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중재대상에 포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의전치주의를 채택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제한 등을 검토해야



양 삼 승

먼저 이 법의 입법취지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조문 내용 가운데 현행 중재제도에 대한 개선과 관련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유 재 천 :** 언론피해구제와 관련한 내용이 정간물법에 규정되고 있는 것은 법 형식상으로도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일법 제정은 국민들의 권리회복에 여러 모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적극 찬성합니다.

**양 삼 승 :** 단일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며, 더 나아가 종래의 전통적인 법률제정 관행을 극복하여 국민들이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밝히는 내용을 담았으면 합니다.

**임 채 균 :** 언론피해구제의 효율화를 위한 한 방안이라 생각하며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언론피해구제법(안)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짧은 중재처리기간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나 배상액 산정 등은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제도가 그 처리결과의 신속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해배상을 처리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양 삼 승 :**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지

나친 권한 강화가 가져올 부작용입니다. 또한 손해배상문제를 다룸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 본래의 기능인 정정·반론보도에 대한 조정 기능이 소홀해 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끔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를 제외한 위자료만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손해배상청구액을 제한하여 일정 정도의 손해배상에 한해서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 재 천 :** 중재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있어 언론중재위원회 기능의 강화가 가져올 역기능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양면 호사 견해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제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자동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소송 이행시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이해와 맞을 때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 채 균 :**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소송으로 자동 이행토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율이 1998년 41.7%, 1999년 62.1%, 2000년 59.5%로 중재결정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재결정의 과감한 활용은 중재

제도의 활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최영훈** : 단순히 보면 흠어진 관련 법률을 한 데 모은 것은 일면 긍정적이나 외국의 이러한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다만, 단일법이 제정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문제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그야말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1999년 명예훼손소송을 주제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세미나에서도 느꼈지만 언론사가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 문제도 처리하게 된다면 언론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 가칭 '언론피해구제(안)'의 단일법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동감하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 TV나 신문 등 기존의 대중매체의 성격과 달리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언론활동에 대해서도 반론보도 등의 청구 대상으로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볼까 합니다.

언론매체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인터넷신문, 방송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어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행법상 이로 인한 피해구제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유재천** : 최근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존 언론사 홈페이지

만을 중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터넷 신문, 방송을 대상으로 그 중재대상을 확대하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법규의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최영훈** : 동아닷컴이라든지 디지털조선 등 중앙일간지 대부분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인쇄매체에 게재되는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여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을 보면 첫 페이지에 기사를 띄워놓고도 "아래 기사는 편집진이 공식기사로 채택하지 않아 명예훼손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기자에게 있다"고 설명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한 기사를 자사 기사와 한 화면에 게재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언론을 언론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지만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기존 언론매체로 인한 피해의 정도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되므로 그 피해구제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재천** :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는 마땅히 언론피해구제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겠지만 순수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이 법의 규율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나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실제로 이를 규율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양 삼 승**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한 모든 인터넷 언론이 ‘언론피해구제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반론보도를 인정한다고 해서 행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체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 방송한다면 예외없이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어 언론피해구제의 길이 열려야 합니다. 단행본을 상대로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겠지만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라면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인터넷 등 그 매체적 특성과 무관하게 반론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임 채 균** :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론피해구제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언론중재제도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야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언론중재>2000년도 겨울호에 소개된 법안을 보면 정보통신매체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의 내용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외의 다른 인터넷 언론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율할 수 있을런지는 의문점입니다.

**사 회 자** : 인터넷 언론의 규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외에 사이버 커뮤니

케이션에 적용되는 이론이나 규제논리는 인쇄매체 등 기존 대중매체의 논리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으로는 이와 관련 전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중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정기간행물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언론피해구제법(안)에는 구제절차의 통일성, 중재절차의 효용 및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시기의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루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현행법은 중재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언론피해구제법(안)에서는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위촉권자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면 합니다.

**유 재 천** : 매체가 다르다고 해서 선거시기 반론보도청구의 창구를 이원화시킨 것은 신청인들을 혼란케 하는 것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한 견해입니다.

한편 문화관광부가 어떠한 기능을 하든 간에 언론매체 주무부서의 장이 중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 위촉권자

를 대통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훈** :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도 중재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경우 언론계의 우려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 또한 분명히 있으므로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서도 언론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임채균** :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에서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중재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다만 언론피해구제법(안)에 대해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정간물법에는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만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언론피해구제법(안)에는 반론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도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에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리구제를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조정전치주의는 현행대로 반론보도청구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법원절차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무료로 해결하는 언론중재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

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에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 또는 그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론이나 정정보도청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보다도 짧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또는 그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기간은 현행법상의 “안 날로부터 1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삼승** : 지난 해 언론중재위원회 세미나에서 비로소 공개된 언론피해구제법(안)에 대해 그 이후에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균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청구기간과 관련한 문제 역시 현행법대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로 수정되었습니다.

**사회자** :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언론피해구제법(안) 역시 언론의 협조 없이는 이 법안이 아무리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도 제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개진된 여러 의견들은 언론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뛰어 넘어 대안으로서 제시된 내용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좌담을 정리하는 총론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재천** :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해 구제사례가 급증했고 일반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에도 이바지했다고 봅니다. 언론사에 반론 보도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할 때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용만족도 연구 결과 중 중재상담 만족도를 보면 상담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0%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재위원을 지냈던 경험이 있어 언론중재위원회 직원들이 성의있는 상담을 해왔음을 잘 알고 있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임채균** : 중재신청사건을 보면 1997년 이후 연간 600건 이상이 접수되었지만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을 감안할 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보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의 기구로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최영훈** : 오늘 좌담 모두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용만족도 연구 중 언론사측인 피신

청인의 95.1%가 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의 체질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폭로·비판 기사 등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반론을 구했는지 확인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데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리구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보다 발전된 중재제도의 운용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양삼승** : 가장 신경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나치게 결정적이고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또 다른 당사자가 언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가 국민이나 언론사로부터 그 신뢰를 잃지 않고 점진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중재를 원만하게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 사회 각층의 동의와 도움을 통해 언론중재제도가 이 자리만큼 발전되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1세기 언론중재제도 운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좌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특 집 Ⅱ

반론보도청구사건  
판결 분석

## 반론보도청구 주요 판결

### I. 서 론

반론권제도가 우리 나라에 도입된 지도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다. 그간 그 찬반론 및 위헌론 시비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일부 개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제는 언론중재위원회제도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독특한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보여진다.

원래 반론보도청구권은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 규정을 모델로 삼아 1980년말 언론기본법 제정(그 당시는 언론기본법 제49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이었다)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언론기본법이 1987. 11. 28. 폐지됨과 더불어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 및 골격이 유지된 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과 '방송법' 및 '1991. 12. 31. 제정 종합유선방송법'에 각 분리 수용되었는 바, '1995. 12. 31. 개정 정간물법'을 통하여 그 권리의 명칭이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올바르게 개칭(헌법재판소 1991. 9. 16. 98헌마 165 참조)되었으며, '2000. 1. 12. 제정 방송법'에 다시금 재수용되었다.

이하 우리 나라의 반론권 제도의 실제법적 근거되는 "정간물법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제16조 ~ 제19조의 2)" 및 "방송법(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91조)" 등의 조문순서 및 그 범문 요건에 맞추어 그 주요 판결을 소개하되, 우리 법원의 일반적 기준을 먼저 제시한 다음 "실무적 관점에서 유념해 둘만한 인용례 및 부정례 사례"를 언급하기로 한다.

### 박 형 상

변 호 사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졸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 한국기자협회 법률 고문
-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선거 보도의 법적·제도적 고찰』 등

### Ⅱ.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

정간물법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제1항 및 방송법 제91조 1항  
"정기간행물(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자연인, 법인은 물론 학교, 병원, 유치원 등도 이를 운영하는 법인과 별도로 반론보도청구 주체로 인정

‘피해자’라고 한다)는 ...”

1. 반론보도 청구권자 - “... 피해를 받은 자” 중 “... 받은 자” 요건

1) 일반적 기준 (주체요건, 개별적 연관성요건과 중복되기도 한다.)

위 ‘피해자’에는 자연인(개인), 법인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 요건에 직접 견연됨이 없이 ‘특수한 소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당사자 능력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학교(서울지법 서부지원 1990. 2. 20. 89카1188), 병원, 유치원 등 영조물도 이를 운영하는 법인과 별도로 하나의 기관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주체로 인정된다.

2) 유념해 둘만한 인용례

· 하나의 단위로 특정할 수 있는 인적 결사로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서울지법 1989. 12. 29. 89카 46152)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서울지법 1992. 11. 26. 92카기649)

3) 유념해 둘만한 부정례 : (단체와 단체의 장되는 개인과의 관계)

“단체의 장인 개인에 관계된 보도의 반론보도청구는 단체명의로 할 수 없다.”, “개인과 단체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단체의 대표자인 개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단체 자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서울민사지법 1984. 11. 30. 84카35089)

4) 사자(死者)의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아직 판례는 없다.

2. “피해를 받은 자” 중 “피해를 받은 ...” 요건 (개별적 연관성 요건)

1) 일반적 기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별적 관련성이 있으면 그 요건이 충족된다.

· “... 그 보도내용에 이름이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 (대법원 1986. 1. 28. 85다1973)

· “...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나,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이다.” (대법원 1996. 12. 23. 95다37278)

· “...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이다." (대법원 2000. 2. 25. 99다 12840)

· "편견 없는 상당수의 독자나 그 기사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보도되거나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때" (서울민사지법 1990. 7. 29. 90카41569)

· "신청인을 알거나 관심 있는 독자라면 보도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때" (서울고법 1987. 3. 18. 88나1096)

## 2) 부정례

· "어떤 기사가 신청외의 회사 및 그 대표이사에 관한 것이고, 신청인인 회사와는 관계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인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반론보도청구는 이유없다" (서울지법 1989. 8. 18. 88 카62228)

· "학교에 관한 보도로 학교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건당시 교장의 직위에 있어야 한다." (서울민사지법 1985. 7. 27. 85카20576)

3) 유념해 둘만한 부정례 - "기고자 스스로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신청인이 쓴 원고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삭제·변경·첨가하여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위 잡지를 통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 주장을 그 자체를 발표한 주체적·능동적 지위에 있는 자로

서 그 공표된 내용 안에서 거론되는 등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민사지법 1983. 8. 26. 83카17754)

## 3. "정기간행물, 방송에 ... 공표된 ..."

### 요건 - 대상, 사실적 주장의 형태요건

#### 1) 일반적 기준

의견표현, 가치 내지 의견진술, 주관적 가치판단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다. 사실적 주장이 담겨있는 한 편집형식이나 공표방법 등 그 보도형태에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된다.

#### 2) 인용례 (판례생략)

통신사 기사를 인용보도하거나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 유발기사가 고소장 또는 진술서의 내용, 경찰수사기록, 공소장, 다른 기관의 공문 등을 그대로 기사화 경우, 외부인사의 청탁에 의한 보도물이나 기고문 및 독자투고의 경우에도 그것들이 '공표된 이상'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문자로서 이루어진 언어적 표현이 아닌 '배경화면'에 등장하거나 '만화'나 '사진'의 경우에도 사실적 주장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한 그 청구대상이 된다. '수기'의 경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 9. 9. 91카 7208)

3) 유념할 만한 인정례 - "이른바 제2의 싸늘이 발언사건"

· "... 우선 이 기사는 K의원의 발언에 대한 전북도민의 반응이라는 사실 관계를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이므로 정간물법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전북도민의 반응에 ... 평가

통신사 기사나 타 언론사 보도, 경찰수사기록, 공소장 등 공문을 인용보도한 경우에도 공표된 이상 반론보도청구 대상

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하여 그 반응을 보도한 위 기사까지도 평가 내지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사안개요 : K의원의 발언을 그 이전의 대통령 선거당시 L장관의 짝꿍이 발언에 이은 제2의 짝꿍이 발언으로 간주하여 L장관의 짝꿍이 발언을 재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한 사건에 있어서 L장관이 반론을 청구한 사건임.)

4) 유념할 만한 부정례 - 광고의 경우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게 판례의 절대적 대세이다 (판례생략). 단, ‘의견광고란의 성명서’에 대하여 반론을 허용해 준 예외적 사례 : 서울민사지법 1983. 11. 25. 83카22003.

4. 3가지 반론보도 거부사유

정간물법 제16조 제3항 및 방송법 제91조 3항의 각 단서요건 - 소극적 요건, 항변요건“...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위 단서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명백히 사실에 반한 경우”,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가리켜 반론보도청구의 3대 소극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바, 소송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언론사 등의 항변사유’로서 언론사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 정당한 이익 요건

① 부정례 -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경우”

· “... 정당한 이익의 존부는 원문보도와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을 비교하여 판단하되, 양자간에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의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목적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86. 12. 23. 86다카818)

·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기사에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 (대법원 1997. 10. 28. 97다28803)

· “법원에서 내려진 민사판결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청구취지의 변경과정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도된 사건의 주요내용이 정확하게 보도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 (서울고법 1986. 7. 14. 85나2457)

· “원문보도에서 신청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정당한 이익이 없다” (서울민사지법 1993. 12. 11. 93카기3786)

· “보도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반론기사를 요구한다든지, 원문 보도를 왜곡해석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익이

없다” (수원지법 1991. 11. 20. 90카18577)

②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 “사건기사의 분량이 전체 기사의 일부분에 불과하나 정정(반론)보도문으로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건기사의 기본 취지에 대한 반론이라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1989. 12. 29. 89카52256)

· “신청인인 학교법인의 학사·징계업무 등이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교장의 전횡에 의해 좌우된다는 내용의 원문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이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내의 각종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된다는 등의 내용의 반론보도청구는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릇된 외관이나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순히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0. 8. 92가합16462)

· “원문보도 후에 당해 매체가 종전의 보도를 수정·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보도한 내용을 특정하여 그 기사가 정확하지 못하였다고 정정하거나 앞서의 보도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잘못된 기사 전부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면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90. 2. 6. 89나30506)

· “원문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전부 정정된 것이 아니고 고침 기사도 그 기사의 크기나 배치 등으로 보아 훨씬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1989. 12. 29. 89카46152)

· “유명모텔인 ‘진양(신청인)’이 룬살롱과 호텔에 출입했다는 내용의 원문보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그에 대한 속보 형식으로 문제의 모델 ‘진양’의 실명은 ‘이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원문보도에서 지칭된 ‘진양’이 연예인 접대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명이 ‘이양’으로 드러났다는 것 뿐이므로 여전히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서울민사지법 1994. 10. 27. 94카기3509)

2) 명백히 사실에 반한 경우

① 일반적 기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은 반론보도문의 주장 내용이 일반적인 경험사실이나 기타 신문, 방송, 이미 공표된 연구결과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9. 6. 93가합792)

② 유념해 들만한 사례로서, 명백히 사실에 반한 경우 - 만민중앙교회 사건

“... 원심에서 인용한 반론보도내용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신청인을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사실과 신청인이 기도하면 소경의 눈을 뜨고 앓은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교한 사실 등 몇 가지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 (서울고법 2000. 7. 13. 99나61271.)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은  
일반적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 없이 즉각 알 수 있는 것을 의미

61288확정)

3)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언론사가 영업의 자유를 누리는 한 상업적인 목적은 당연히 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광고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법제하에서 볼 때에도 당연히 도출되는 귀결이라고 한다.

그러나 광고에 대한 반론권 인정허부에 관하여는 입법례 및 학설상 “긍정, 부정, 절충(유료부담부 인정)”설이 대립된다.

4) 기타 소극요건 - 위법한 내용이 아닐 것  
정간물법 제16조 4항 및 방송법 4항

“... 반론보도는 ...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 ① 일반적 기준

반론문은 위법한 내용을 담아서서는 아니된다. 위법한 내용이라 함은 민·형사상 허용될 수 없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을 말하며, 이는 대체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유념해 둘만한 사례 - 이른바 “세계정교총령본존 사건”

“... 제보자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반론보도 청구는 만일 반론보도가 허용된다면 제보자들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이 중대 명백하게 침해됨이 예상되는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99다 63138판결의 1심 및 원심판결, 위 대법원은

“제3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대로 방송될 경우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Ⅲ. 반론보도심판청구의 재판

### 1. 중재전치주의 요건

정간물법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1항 및 방송법 제91조 8항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동일한 사건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언론중재위원회에 적법한 중재신청을 통하여 구한 반론보도의 내용과 법원에 반론보도심판청구를 하면서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 반론보도심판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소송물은 청구인에 관련된 사실보도에 대해 자기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대응을 할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1995. 7. 5. 95카기1885)

### 2. 반론보도문 인용범위와 한계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3항

“법원이 제2항의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

에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1) 일반적 기준

우리 법에서는 독일법과 달리 반론권 행사의 상대방이 편집인이나 발행인이 아닌 언론사이고, 언론사와의 협의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취지의 변경으로서 반론보도문의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으로서도 원문보도에 신청인과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의 필요성이 긍정되는 한 신청인이 작성한 반론보도문의 대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3항에서는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원칙적 기준 ( 이른바 '세계정교 총령본존 사건' )

“...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그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24. 99다 63138)

### 3.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범위

#### 정간물법 제16조 제5항

“...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방송법 제91조 제5항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1) 산술적 자수제한 원칙의 의미(훈시적 규정)

“...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방송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인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형성에 미치는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가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이 규정하는 정정보도문의 자수제한은 훈시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이 방송을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문보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관한 간결한 기재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정정보도문의 자수가 원문보도문의 자수를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

대법원은 반론문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신청취지에 기재된 반론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

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3. 95다37278)

2) 법원에 의한 합리적 수정의 한계 및 기준

“...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24. 99다63138)

3) 원문보도가 뉴스중간 부분이었음에도 뉴스시작부분의 반론보도를 인정한 사례

“... 구 방송법 (1994.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6항, 구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1996. 6. 27. 대법원규칙 제1432호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제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 및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적용하여야 할 이른바 무기대응의 원칙을 고려하여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방송의 시간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송사가 공표한 내용이 '정정보도신청인 등이 북한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

되어 주사를 받았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큰 전과가능성을 가진 것인 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국가의 안보와 교육, 사회 등 여러 부문에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문보도와 같이 큰 전과가능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 비추어, 방송사가 뉴스 중간 시간에 원문보도를 한 데 대하여 뉴스 시작과 동시에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6. 12. 23. 95다37278)

4) 방송 첫머리부분 반론청구를 배척하고서 전체적 취지와 균형을 고려하여 방송말미부분의 반론보도를 인용한 사례

“... 피신청인으로서 법원이 명한 반론보도문을 그대로 방송하여야 하는 것이고, 방송보도의 실행방법은 통상 방송사의 아나운서, 진행자가 있는 방송의 경우에는 그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방송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반론보도문의 방송방법 및 방송시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세계정교 총령본존사건 대법원 및 원심판결)

5) 포괄적 요약 형식의 반론을 허용해 준 사례

“1. 2차 유발 방송에 대하여 그중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한번에 포괄하여 1회 반론보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세계정교 사건 판결)

“밤 9시 뉴스데스크에 대한 6회에 걸친 반론청구에 대하여 ...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두 번에 걸쳐 포괄적으로 행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만민교회사건 항소심)

6) 반론보도문에 관한, “사전 안내방송에 관련하여 편집상의 주석”을 허용한 사례

“(사전안내방송과 관련하여) 무릇 방송사가 반론보도문을 보도함에 있어서 반론방송의 중간 또는 그 전후에 반론보도에 관한 방송사의 비판적인 견해나 입장을 공표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므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심의하거나 수정함이 없이 그대로 보도해 주어야 하는 방송사에게도 반론보도의 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유발기사에 관한 변명이나 반론보도에 관한 설명의 기회를 주어(이를 통상 ‘편집상의 주석’이라고 한다.)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여론형성에도 기여하며 반론보도청구권을 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전 안내방송이 ‘편집상의 주석’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위 사건 사전 안내방송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반론보도문과는 다른 안내방송임을 밝히는 한편 화면처리에 있어서도 반론보도문과 구별하여 분리한 후 방송하는 등 형식면에서 차별을 둔 사실, 또한 사전 안내방송의 내용도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관한 사항 및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객관적인 설명만을 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 방송사에게 인정되는 ‘편집상의 주석’의 범위내에 해당한다.” (위 세계정교 사건의 1심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1. 21. 99가합19187, 대법원 상고심은 ‘편

집상의 주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 사건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위를 알리는 도입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심판결을 지지해 주고 있다.)

#### 4. 반론보도 실행방법 : 동일한 효과에 관한 기준

“… 반론보도 방송의 실행방법도 통상 방송사의 아나운서나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원 방송에서 피신청인의 주된 사실적 진술이 자막의 방식으로 방송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낭독과 함께 자막으로도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반론방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방송이 이루어진 같은 시각에 행하여질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원 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반드시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방송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 (위 같은 대법원 판례)

#### 5. 반론보도범위의 초과라고 판단한 사례

정간물법 제16조 제4항 및 방송법 제91조 4항  
“…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 부 정 례

“… 반론보도문은 사실적 진술 및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이는 원문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만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다.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사실

반론문을 보도함에 있어 반론보도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발기사에 대한 변명이나 반론보도에 관한 설명은 허용

적 진술로서의 반박이라기보다는 필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과 주관적인 반박비판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민사지법 1991. 10. 10. 91카 81540, 기타 해명성 문장으로 된 반론보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2. 10. 99카합 2941)

6. 간접강제 판결에 의한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불복 방법으로서 즉시 항고 불인정)

“...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 693조(간접강제)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렇다 하더라도 판결절차는 필요적으로 변론을 거치므로 민사소송법 제694조(채무자의 심문)에 의한 심문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이 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상소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로 같은 법 제693조 제2항에 의한 즉시 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7. 간접강제 배상금액의 적정성 기준

1) 일반적 기준

간접강제에서 정하는 배상금은 채무자인 언론사가 반론보도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인한 피해자의 손해와는 상관없고,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의 규모,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2) 1일 금 500만원 배상명령 사례

“...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반론보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배상금을 1일 금 500만원으로 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이유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간접강제 배상금액의 결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배상금액에 지나치게 적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는 제1심이 정한 배상금액이 부당하게 과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액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12. 93다 40614, 40621 위 만민중앙교회 사건의 경우도 1일 금 500만원 기준이었다.)

IV. 맺 음 말

필자가 관여한 주요사건으로는 ‘이달의 자상’ 사건 및 ‘세계정교 총령본존사건’이었던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패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 피신청인 언론사 입장”에서 반론보도청구를 저지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익 결여, 명백히 사실에 반한 경우, 상업적 광고

해당”이라는 3대 저지사유 및 “위법한 내용청구불허, 사실반박을 초과한 해명성 청구불허”사유 등을 그 주요항변사유 및 방어 방법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한편 언론사 및 언론인의 입장에서는 그간 우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문에 충실한 형식주의적 경직성”에 적잖이 실망하면서 반론권 행사의 남용을 크게 걱정해 오던차, 이번의 세계정교 사건 및 만민중앙교회 사건에서 새롭게 제시된 탄력적 기준에 크게 고무되는 듯하나,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이자, ‘객관적 제도 및 올바른 여론형성 장치’라는 이중적 성격을 부여해 온 대법원의 입장(1986. 12. 23. 86다카818, 1996. 12. 23. 95다 37278 위 세계정교사건 및 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 165등)에서 볼 때는 그러한 대원칙 연장선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장차에도 법문 바깥에서 보충되는 부분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합리적 균형감각을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언론중재위원회,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집 ~ 제7집  
권형준, “반론보도의 범위와 한계”,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박선영, “방송과 법”, 『방송문화』, 1999. 12호부터 2000. 11호(이 글에서 박선영은 ‘피해자’라는 법문을 ‘관련자 내지 언급된 자’로 개정할 것을 강력 강조하고 있으며, 만민중앙교회 사건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 20년 반론권 역사상 가장 대규모적이고도 획기적인 반론권 사건이라 칭하고 있다.)법원행정처, 『언론재판실무편람』, 2001. 2.  
이건용, “언론에 의한 법의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재판자료』 77집, 법원도서관, 1997.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한국언론학회 자료집, 『한국적 반론권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미나』, 2000. 3. 24.

# 특 집 II

반론보도청구사건  
판별 분석

##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성 낙 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
- 저서: 『헌법학』, 『헌법연습』, 『언론정보법』, 『선거법론』, 『프랑스제5공화국의 각료제도』(불어판)
-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I. 서 설

현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는 보다 직접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갖는 알 권리의 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정보를 접근·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보의 유통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다양한 정보의 수령원은 언론보도이다. 언론의 보도는 신속·정확을 그 생명으로 한다. 하지만 신속한 보도의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도 사람이 하는 이상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언론은 정보의 보도가치성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보도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특히 언론의 사회고발 및 비판기능이 가미된다. 언론의 속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야기한 실수는 당연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언론이 스스로 언론의 사명에 입각한 정당한 보도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론사와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야기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시키는 과정은 종래 전통적인 법원의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치부하여 왔다. 그러나 사법적 해결에 이르는 과정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는 적합하나, 언론보도가 갖는 엄청나고 급속한 사회적 파장에 비추어 본다면 사법적 해결은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보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반론보도청구권이다.<sup>1)</sup>

그간 반론권제도의 정립과정에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 이외

1) 반론권제도의 연혁적 기초에 관한 상서는,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판, 1998 참조.

에 반론권이 갖는 역기능 또한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반론권의 본질에 관한 이해가 미흡한 문제점이 적시되기도 하고, 반론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현실적 이해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된다.

## II.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본 예외 사유의 불가피성

### 1.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순응하는 자세

반론보도청구권 즉 반론권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파장에 비추어 언론보도에 따른 당사자의 피해를 보다 신속·경제·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언론보도의 당사자에게 응답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반론권의 행사는 당해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할애하여 보도되며 당해 언론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가 강제되기 때문에 당해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없는 바는 아니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인격권보호를 위하여 합헌적인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반론권제도는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을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는 제도에 불

과하다. 따라서 반론권의 행사를 마치 진실의 승리로 착각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당사자나, 반론보도는 언론사의 권위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여 이를 기피하려는 언론사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2. 법익조화의 필요성 -기본권 충돌

반론보도청구권의 존재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권보호가 언론보도의 자유보다 우월적 가치를 갖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반론보도청구로 인하여 언론보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반론보도청구권보다는 당연히 언론보도의 자유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시에 법익형량과 규범조화적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sup>2)</sup> 그렇다면 반론권제도 그 자체의 존재는 언론보도의 자유와의 기본권 충돌시 법익형량과 규범조화적 해석이라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이론에 비추어 충분히 그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지만, 반론권제도의 남용 등으로 이어질 경우에 그것은 반론권제도 그 자체의 인정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반론권보장을 통한 인격권 실현과 반론권을 부인하고 언론의 자유를 더 보장할 것이냐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어느 기본권에 더 우월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sup>3)</sup>

이와 같은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구체적인

2) 기본권의 충돌에 관해서는,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1, 67-271면 참조.

3) 헌재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등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대판 1988.10.11. 85다카29; 대판 1988.7.14. 96다17257.

인격권 실현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구체적인 개별적 사안을 통한 해결이 아닌  
일정한 규범적 틀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반론보도청구권의 예외사유

개별적 사안을 통한 해결로 맡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규범적 틀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반론보도청구권의 예외사유이다.

3. 반론보도청구권의 현실적 이해  
-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구별

반론보도청구권은 그 본질이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반론내용이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반론 내지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정정보도청구권은 실제적 진실에 반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잘못된 보도의 정정 내지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그런데 1981년 언론기본법 제정이래 1995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반론보도청구권이 '정정' 보도청구권으로 법상 명시되어 있었다. 외국어의 정확한 번역이라는 관점에서나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건대 왜 반론권·반박권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 정정권으로 표현되었는지에 관하여서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추론컨대 정정권이라는 표현이 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에 매료된 입법자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일관되게 정정보도청구권의 사전적 의미를 무시하고 그 실질에 기초하여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반박과 정정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분명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15년간 명칭상 정정보도청구권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반론보

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불투명한 구별을 결과적으로 더욱 혼미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과 같은 특유의 메커니즘에 입각한 권리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민사상의 피해구제제도이다. 반면에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법제 특유의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상이한 두 제도가 동일한 명칭으로 혼용되어 왔기 때문에 제도 운용의 혼란을 자초하여 왔다.

이에 1995년에 개정된 정간물법에서는 현실적 편의를 고려하여 비록 그 본질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용되어 오고 있는 정정보도청구도 반론보도청구와 더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에 비추어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라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정간물법 제18조).

4. 언론중재와 법원의 재판 실제에서의 반론  
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혼돈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본질에 있어서 상이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반론보도청구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주장은 물론이거니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재판에서도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명확히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반론보도청구 사건에서의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을 판단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사건에 있어서 보도내용이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이 단순히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론기회부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도된 내용의 실제적 진실 부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만 반론보도를 인정하여 줄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실제적 진실 여부를 가리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미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을 뛰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의 자제가 불가피하다. 즉 반론보도가 인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쳐야지 당해 사건에 있어서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법원의 판례는 자칫 당해 사건에서의 언론보도의 내용이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적어도 반론보도청구사건에 관한 한 법원은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로 그 판단을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그 판단의 중요한 잣대는 반론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예외사유로서의 정당화사유 즉 반론보도 게재거부사유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III. 현행법상 반론보도의 게재거부

#### 1. 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게재거부

#### 1) 의 의

법원의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에 비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그 주체나 객체(반론보도의 대상)가 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것은 반론보도청구를 통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반론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언론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일반국민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언론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용이 현실화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에 자칫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정간물법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도적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보호와 언론보도의 자유의 규범조화적인 방향으로의 반론보도청구권제도의 정립을 도모하고 있다. 법 제16조 제1항은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장하는 원칙적 규정이다. 하지만 제16조 제3항 단서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를 분설하면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추상화시킨다면 정당한 사유로 단일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론보도청구를 통해 보호하려는 개인의 인격권보다 언론보도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우월적 가치를 갖는 경우 반론보도청구는 거부되어야

결국 정간물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6조 제1항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적극적 요건이라면, 제16조 제3항 단서조항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제16조 제4항 이하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반론보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는 점에서 제16조 제3항 단서조항과는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2)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일련의 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남용에 따른 언론의 보도기능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정당한 이익”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의 적극적 요건이다.

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예컨대, ㉠원문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사항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됨에 불과하거나, ㉡언론기관 자신이 속보 등의 형식을 빌어 전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하거나, ㉢언론기관 스스로 피해자에게 별도의 반론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요구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원보도와 다른 내용이 없거나 오히려 이의대상인 보도내용을 합리화하는 내용인 경우, ㉤인터뷰 등에 의한 충실한 보도가 있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원문기사를 왜곡해석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반론보도를 함으로써 오히려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언론사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sup>4)</sup>

정당한 이익의 범주에는 언론이 공익을 위한 보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정간물법상 명문으로 공익을 위한 보도를 반론보도 게재 거부사유로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이론상을 인용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공개이익과 개인의 명예 등 법익보호 필요성 사이의 이해조절관계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사실보도에 한하여 반박 또는 해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정당한 것이고 또한 관계인의 반론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언론의 공개이익만을 내세우는 주장은 이유 없다.<sup>5)</sup>

그러므로 반론보도청구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개인의 인격권보다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우월적 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는 거부되어야 한다.

3)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도 언론사는 반론보도문의 게재

4) 서울민사지법 1992.2.20, 89카8917.

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12.20, 93카합1107.

재를 거부할 수 있다.

진실을 추구하여야 하는 언론의 직업윤리상의 의무와 언론이 갖는 사회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sup>6)</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인지의 여부에 관해서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기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에 견해가 현격히 대립될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서 비로소 밝혀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건대 가급적 피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론보도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언론사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sup>7)</sup>

반론보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반론권 보장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신청인측의 상업적 광고수단으로 오용될 소지를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이다.

프랑스 파기원(대법원)도 상업적 광고목적의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즉 특정 여론조사기관에 의하여 발표된 방송청취율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특정 방송사의 청취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과시할 목적으로 한 순수한 상업적 광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sup>8)</sup>

### 3. 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게재거부

#### 1) 부분적 게재거부사유

정간물법 제16조 제4항은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첫째, 조문의 규정체계상 체계정합적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조문 앞부분 즉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하고”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다. 즉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한 전제 위에서 반론보도

6) 서울민사지법 1993.9.6, 93카합792.

7) 서울지법 1996.7.4, 96카기2889.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하였다.

8) Cour de cassation, 1983.1.27, Ch. civile, M.B.c. c/ le Journal X.

공적 기관의 공개회의에서 거론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해  
 보도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의 반론청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뒷부분 즉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는 규정은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면 규정의 체계정합성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반론보도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게재거부의 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동일한 조항에서 단일의 문장형태로 규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입법태도가 아니다. 생각컨대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는 법조문의 표현에 비추어 본다면,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구체적인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관련된 규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규정의 의의를 굳이 찾는다면 신청인의 주장이 지나칠 경우에 대비하여 반론권의 행사도 실정법의 범주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제16조 제4항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하나의 조항에 규정함으로써 인하여 불필요한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이 두 조항을 따로 떼어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경우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론보도청구의 일반적 게재거부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

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16조 제6항).

공적 기관의 공개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언론은 그 보도기능의 당연한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회의에서 적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하여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언론보도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 인물의 이론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개회의에서 거론된 사인의 인격권은 공인과 구별되어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적 기관의 공개회의에서 거론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의 반론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것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재판절차에 있어서 양측 당사자의 주장이 침해하게 대립되고 있는 바, 이들 양측 당사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을 때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반론보도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조문상의 ‘사실기사’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즉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채취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의 또

9) 대판 1986.1.28. 85다카1973.

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제외예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다.<sup>9)</sup> 같은 맥락에서 비록 공개재판절차와 관련성이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된 진술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여 그 내용을 요약한 보도”를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로 보지 아니한다.<sup>10)</sup>

#### IV. 제도운용상 정당한 사유 확정의 현실적 어려움

##### 1. 의 의

반론보도청구권의 예외사유에 관해서 현행 법상의 제도를 일반이론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지만 그에 관한 문제점은 분명하게 부각되지 아니한다. 즉 원론적인 논의의 차원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재 거부사유는 바로 반론보도청구권의 남용에 대비한 소극적 요건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제도운용상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의문의 기저에는 반

론보도청구권이 남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운용의 실제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반론보도청구가 인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사고가 내재해 있다.

특히 이러한 불만은 반론보도청구권제도가 원래 약한 지위에 있는 개인의 인격권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대화된 사회세력에 의하여 남용됨으로써 사회공기(公器)로서의 언론의 보도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양상은 언론이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다가와 있다. 여기서 근년의 몇 가지 사건들을 반추해 봄으로써 현실적 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언론보도와 거대세력사이의 갈등<sup>11)</sup>

첫째, 사법개혁의 와중에서 사법계의 비리를 파헤쳐 보도하던 언론이 현직 검찰관들의 제소에 의하여 언론사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법원이나 법관도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sup>12)</sup>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인 현직 검찰관들이 집단적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정직역에 종사하는 일부 인사의 비리를 보도하였다고 하여 특정직역의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

10) 서울민사지법 1993.12.6. 93카기3254.

11) 최근의 논쟁적 사건에 대한 판례에 관한 논의는, 성낙인, “언론(방송)보도와 명예훼손-최근 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1999 참조.

12) 서울지법 99가합14391.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반론보도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고급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언론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은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더구나 공직자의 경우 자칫 언론에 대한 공권력의 압력으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둘째, 한국의 민주화가 이제 걸음마단계에 있고 보면, 고위공직자 내지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재직시에 그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서 4억원이라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법원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sup>13)</sup>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반론보도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고급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적 현실에서 자칫 언론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특정 종교세력과 관련된 보도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사실 윤리성을 갖춘 종교와 사교의 구별이 불명확한 실정이고 보면 사교에 가까운 종교집단이나 종교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흑세무민의 사교적 성격을 갖는 집단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교의 탈을 쓴 비리집단이 지금도 가정과 사회를 명들게 하고 있다. 이에 사회의 공기로서의 언론은 이들 종교의 탈을 쓴 비리집단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도 아닌 언론이 할 수 있는 취재역량이나 취재범위는 한계가 있다. 이 틈을 이용하여 반론보도청구권 등을 악용하여 오히려 건전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특정종교집단의 선전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언론과 거대화된 경제세력과의 갈등도 당연히 예상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벌이나 거대 노동조합 등 경제세력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언론과 경제계 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문이다. 그것이 언론보도의 자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계의 인내에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언론과 경제세력의 적당한 유착 내지 밀월관계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3. 구체적 사례 : 만민중앙교회사건이  
던져 준 문제점

MBC 피디수첩을 통하여 보도된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 사건은 반론보도청구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sup>14)</sup>

방송사상 유례가 없는 신도난입으로 인하여 방송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당해 방송사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방송의 자유를 담보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럴수록 언론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에 유념하여 보다 이성적 판단에 기초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 법원은 64건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41건에 대하여서는 만민교회측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13)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1.21. 94가합5021, 1996.2.21. 96타기537; 서울고법 1996.2.27. 96카135 참조.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1부 판결, 1999.10.14. 선고, 99가합1694(병합), 1755(병합) :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건.

이유로 기각하기는 하였지만 무려 23건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현실적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첫째, 우선 언론사로서는 만민교회신도들이 방송사에 난입하여 방송중단사태에까지 이른 데 격분하여 연속해서 뉴스 시간대를 이용하여 보도하였고, 그 보도내용은 결과적으로 동일 사건에 관해서 사상 최대의 반론권 부여를 기록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언론보도 특히 뉴스보도는 독자나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자신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지나치게 보도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사와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균형 감각을 상실한 상태에 빠져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다. 언론의 자유가 사회 제 세력으로부터 침해받을 위험에 놓일수록 언론보도는 더욱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독자나 시청자의 이성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예지가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언론사는 불필요한 보도를 거의 매 뉴스시간마다 방송함으로써 시청자의 이성적 판단보다는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뉴스보도시간이라는 매우 한정적이고 짧은 시간에 반론보도와 관련된 원보도(뉴스) 내용을 보도하고 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문을 상세히 보도하게 하는 법원의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의 판단양식이 반론보도의 특성이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뉴

스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반론보도문을 보다 짧고 명료하게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MBC측의 건전한 사회고발이 방송사난입이라는 수모를 겪고 난 후에 나타난 공영방송으로서의 MBC의 비이성적 대응으로 인하여 관련당사자의 반론권만 충족시켜 준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짧고 한정적인 뉴스시간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기능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23건의 반론보도를 인용함에 있어서 이를 반론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론권을 인정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다.

셋째, 인쇄매체와 달리 방송매체의 특수성이 이 사건에 전혀 고려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는 방송사의 자사보호를 위한 보도와, 만민교회의 반론보도의 홍수 사이에서 뉴스시간을 통한 알 권리는 박탈당하고 언론사와 개인의 선전장화의 희생을 강요당하였다. 이에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반론권제도에 도입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반론권의 남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위 사건에서 법원은 만민교회측의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바로 언론에 대한 사전통제를 사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sup>15)</sup>

위 첫째 문제점은 언론보도의 일반적 문제

15) 법원의 방영금지 및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사례에 관한 논의는, 성낙인,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반론권”, 『피디수첩과 피디저널리즘』, 나남출판, 2000 참조.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다수의 보도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도전반에 대한 반론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운용이 필요

점으로 적시할 수 있고, 넷째 문제점 또한 언론의 자유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둘째와 셋째 문제점은 반론권제도의 특수성에 기초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제도적 시각에서 일반화시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V. 반론권 남용에 대한 대응

#### 1. 동일·유사사건에서의 반론권보장 방법

만민교회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비록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보도된 시간이나 지면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일일이 개별적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론보도사건을 보도된 사안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용이다. 그러나 만민교회 사건과 같이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다수의 보도에 대하여서는 총괄적으로 보도전반에 대한 반론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운용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반론권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론권제도의 본질은 반론의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 반론의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만일 개별적·구체적 반론의 보장이

결과적으로 반론권의 남용이 될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그런 관점에서 대법원이 MBC 피디수첩의 세계정교총령 하정효 사건에서 “이 사건 방송이 2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방송내용을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 족하”라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sup>16)</sup>

프랑스 법원도 정치적 토론이나 논쟁의 대상인 보도와 관련하여 일일이 반론보도를 해 줄 경우 그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거의 매일 언론이 반론보도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론보도청구는 반론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예도 있다.<sup>17)</sup> 즉 반론권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언론을 왜곡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언론은 스스로 표명하고자 하는 이념에 반하는 견해의 게재를 강요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견해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2. 정기간행물(인쇄매체)과 방송(시청각매체)의 특수성에 따른 차별적 반론제도의 보장

특히 방송매체의 특성상 하루 이틀에 걸쳐 수십 회가 보도되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가장 중요한 프라임 뉴스 시간대에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여타의 반론보도청구를 배척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정간물법 제16조 제3항 단서 조항에 적

1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4.22. 99카합91; 서울고법 1999.10.14. 99나27325; 대판 2000.3.24. 99다63138.

17) 파리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1ère Chambre), 1997년 9월 11일 판결 : Front National c/ J. Saint-Cricq et La Nouvelle République du Centre-Ouest.

시된 명시적인 사유 이외에도, 프랑스 법원의 판례와 같이 반론권행사의 적합성(opportunit)에 대하여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sup>18)</sup> 그것은 반론권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개별적·구체적 반론권보장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반론권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제도운용의 이상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반론권제도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반론이 법률, 선량한 풍속,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언론인의 명예에 반하여서는(contre la loi, ni aux bonnes moeurs, ni à l'intérêt légitime des tiers, ni à l'honneur du journaliste) 안된다는 원칙이 정립되어 있다.<sup>19)</sup>

특히 프랑스에서는 한국법상 방송에 해당하는 시청각매체에 대한 반론권행사에 정기간행물의 경우와는 상이하게 특수한 동기를 요구하고 있다. 1982년 법률 제6조 제1항 및 이를 보완하는 1990년 법률에서 반론권은 명예나 명성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비난(imputations susceptibles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et à la réputation)을 제기할 만한 사항이 이미 방영되어야만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각매체를 상대로한 반론권은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

(특히 인종차별적인)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다.<sup>20)</sup> 즉 방송매체에 대한 반론권행사의 대상을 인쇄매체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곧 방송매체에 대한 반론권행사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 반론법제에서의 정기간행물과 시청각매체의 차이는 반론권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바, 특히 그 차이는 실제상의 이유보다는 이론적인 차원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21)</sup>

프랑스 법원은 방송이 특정인에 대한 비난성 보도를 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반론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을 경우에는, 방송에 공공의 이익(l'intérêt public)에 반하는 반론이 침투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파 정당의 대표인 르 펡(Jean-Marie Le Pen) 사건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sup>22)</sup>

1981년 2월 12일자 좌익성향의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 이 신문은 1968년 학생운동의 주축세력이 만든 신문이다)에서는 르 펡의 알제리전쟁과 관련된 에피소드에 관한 앙케이트를 보도하였고 텔레비전·라

18) T.G.I. Paris 1re Ch-1re sec, 19 janvier 1994, Société française pour la défense de la tradition familiale et propriété c. Bernard Porte; Christophe Bigot, "L'abus du droit de réponse et 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Légipresse*, 1994.6, Juillet-Août, n° 113, pp.97-101.

19) Cass. crim., 15 avril 1982. D. 1984, J. 358 : "언론인은 신문에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격을 띤 기사의 신문계재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20) J. Huet, "Le droit de l'informatique : le régime juridique de la télématique interactive," *J.C.P.* éd. G 1984, 1, n 3147, n 37; M. Vivant, op. cit., n 496, p.346.

21) Emmanuel Derieux, *Droit de la communication*, L.G.D.J., Paris, 1994, p.413.

22) T.G.I. Paris, 12 mars 1985; Bertrand Cousin et Bertrand Delcros, *Le droit de la communication, presse écrite et audiovisuel*, tome 1, Editions du Moniteur, Paris, 1990, p.232.

프랑스의 경우, 방송매체에 대한 반론권은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만 기능

디오 방송들(TF1, Antenne2, FR3, Radio France)도 일제히 그 신문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르 팡은 1982년 법률에 따라 당해 방송국에 반론보도를 요구하였으나 당해 방송국이 반론보도를 거부되자, 르 팡은 법원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파리지방법원은 "1982년 7월 29일 법률 제6조에서 정립한 반론권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방어적인 형태로서 명예훼손에 대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그것은 상호간에 전적으로 자유로운 반박을 통한 토론을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인 균형이 시청자들의 시각에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에서 르 팡은 리베라시옹(Libération)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반대토론의 기회를 가졌음이 분명하므로, 방송국의 일방적인 공격이라는 이유로 방송국에 대하여 또 다시 추가적인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다른 언론사(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방송사에서 그대로 보도한 사안인데도 원보도를 한 신문사를 통하여 충분히 반론권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매체인 방송사에 대한 반론권을 거부한 점에서 이례적인 반론보도거부사건이다.

또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뉴스방송에서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막연할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하고 있다.<sup>23)</sup>

## VI. 결 어

### 1. 제도운용의 방향

첫째, 반론보도청구는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론의 기회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다면, 그 반론기회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만민교회사건은 방송사나 법원이 다 같이 전과 낭비만을 초래한 결과이다. 앞에서 언급한 프랑스 판례의 취지나,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의 취지도 만민교회사건에서의 하급법원의 반론권보장 방법이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만민교회사건을 거울삼아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은 반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범조화적 법운용이 요망된다.

둘째, 언론사가 취재과정에서 최대한 반론기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기피로 인하여 반론보도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적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여 반론보도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법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운용상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위 둘째 논의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있어서 뉴스보도와 기획취재보도에 대하여 차

23) T.G.I. Paris, réf. 12 mars 1985; Gaz. Pal. 1985, 1, somm., p.116; D.S. 1988, somm., p.225, observ. T. Hassler.

별적인 법운용이 필요하다. 뉴스보도의 경우 그 신속보도의 특성상 반론의 기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획취재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사가 반론보도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 참조되어야 한다.

넷째, 언론사도 반론의 기회부여를 최대한 마련해 주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특히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그간의 판례나 중재 경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스로 반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2. 입법정책적 방향

일부에서는 공직자나 특정세력의 반론권 남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반론권의 본질에 충실한 법운용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현행 정간물법에서의 반론권규정은 최소한의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소극적 요건은 제16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으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보다 분

명히 하기 위하여서는 제16조 제3항의 체계적 개정이 필요하다. 제16조 제3항 본문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것이라면, 제16조 제3항 단서조항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이다. 따라서 제16조 제3항 단서조항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의 단서조항이 되는 것이 체계정합적이다. 그 경우 소극적 요건에는 현행법 제16조 제3항 단서조항뿐만 아니라 제16조 제4항 후문까지도 포괄하는 규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체계의 재정비 과정에서 반론은 “법률, 선량한 풍속,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언론인의 명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프랑스 판례법상의 원칙도 포섭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법상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은 방송법에도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매체의 특성을 최소한 반영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그 방향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을 보다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구별이 불명확해 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전통적인 언론법제의 기초인 정기간행물법제를 방송법제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입법적 대안의 논의과정에서는 보다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의 시청각매체에 대한 반론법제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 판결에 나타난 반론문에 관한 연구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반론권 제도는 말 그대로 반박하는 주장을 보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지 언론의 보도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잡는다는 의미의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반론권이 도입된 이래 15년 동안이나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법조문에 남아 있었다.

1995년 12월, 개정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에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로잡아졌지만 과거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 때문에 반론권에 대한 적지 않은 오해가 있었고, 일반 국민과 언론인뿐만 아니라 법원의 소송 실무에 있어서도 혼선을 가져왔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 권리의 실체이며 실현방식인 반론문의 내용과 그 보도방법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반론보도청구권의 성격에 얼마나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아닌 반론보도청구권으로의 반론권의 명칭 변화와 반론보도청구소송 실무와 관련한 법규의 변천이 실제로 반론문의 내용과 형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법원에서 인용된 반론문의 내용과 판결의 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언론관계판결집> 제1집부터 제7집까지 수록된 반론보도청구소송 판결 가운데 인용된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상급심에서 원심 인용 판결내용 그대로 수용한 판결, 즉 반론보도문의 내용이나 보도방법 등에 대해 변경하지 않은 상급심 판결을 제외한 총 83건의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정간물법 시행 전 판결이 63건, 시행 후에 내려진 판결이 20건이며, 매체별로는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한 판결 68건(인쇄매체 67건, 통신 1건),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한 판결이 15건이었다.

조 준 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사연구팀

## II. 반론보도청구권 고찰

### 1. 반론보도청구권의 성격과 관련 법규의 변천

언론기본법 및 구 정간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 대법원의 최초 견해를 밝힌 판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이래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에서도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임을 천명하였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이 반박내용 게재 청구권이라는 것을 위 1986. 1. 28자의 대법원판결이 명백히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기본법이 정간물법 등으로 재편되면서도 그 명칭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 1995년 12월에 개정된 정간물법에서야 반영되어 그 권리 성격에 맞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되었다.

반론권이 그 청구권적 성격에 걸맞게 명칭이 바로잡아진 것과 아울러 반론권의 신속한 보장과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몇가지 법규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원의 반론보도청구소송 사건의 심리와 관련한 법규의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재판의 형식

반론보도청구소송은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 가처분절차의 경우에는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재

량에 달려 있으며 개정 정간물법 시행 전에는 대체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써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였다.

그러나 개정 정간물법 제19조 제1항은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로써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어 판결로써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6월 27일 제정 공포된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에서는 “제3조(심리) ① 법원은 반론보도청구사건 또는 추후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야 한다. ② 부적법한 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반론보도청구소송의 재판 3개월 이내

1996년 6월 27일 제정 공포된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재판)에는 “반론보도청구사건 또는 추후보도청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선고는 심판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록 혼시규정이기는 하지만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을 도모하여 보다 신속한 심리를 하도록 하였다.

#### ▷ 간접강제의 병합 신청 가능

개정 정간물법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1항에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개정 정간물법 시행 이후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어 판결로 해야하나  
결정으로 한 경우도 있어

▷ 방송매체의 반론보도방법 구체적으로 명시  
2000년 1월 12일 제정·공포된 방송법 제91  
조에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  
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  
어야 한다”고 규정

2. 재판의 형식과 주문 내용

1) 재판의 형식

반론보도청구 사건은 변론을 연 때에는 판결  
로,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 및 당사자 심  
문만을 거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하게 되었으나  
개정 정간물법 및 대법원 규칙 하에서는 판결  
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사대상 판결 83건 가운데 판결건수가 55건,  
결정이 28건으로 나타났다. 개정 정간물법 시  
행전에 행해진 재판 63건 중 39건인 61.9%가  
판결로써 하였고, 결정으로 한 경우는 24건이  
었다.

개정 정간물법 시행 이후에도 결정으로 재판  
한 사건이 4건 발견되었다.<sup>1)</sup> 그러나 이는 재판  
의 방식을 그르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  
한 4건 가운데 하나인 서울지법 서부지원 96가  
합3172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반론  
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3조도 반론보도청  
구사건을 심리할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변론을 열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어 판결  
로써 하여야 함이 분명하다”며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판결로 바로잡았다.<sup>2)</sup>

한편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양 당사자 명칭은  
신청인 / 피신청인이 대부분이었으나 청구인 /  
피청구인으로 명기한 사례가 4건, 원고 / 피고  
로 명기한 사례가 2건<sup>3)</sup>으로 법원에서 혼재되  
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건의 사례가 개  
정 정간물법 이후에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당  
사자 명칭에 대해서는 신청인 / 피신청인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sup>4)</sup>

2) 주문 형식과 내용

반론보도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심판규칙은  
몇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1981년이래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법원  
이 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반론보도의 형식과 관련한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를 항목으  
로 하여 법원이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에 얼마나 충실하게 주문을 기재했는가를 살펴

1) 서울지법 1996. 7. 4. 선고 96카기2889 결정 : 서울지법 1996. 8. 1. 선고 96카기2868 결정; 서울지법 1996. 8. 9. 선고 96카기2828 결정;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11. 22. 선고 96가합3172 결정.

2) 서울고법 1997. 6. 10. 선고 96라265 판결.

3) 인용되지 않았으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8. 12. 선고 97가합29791 판결, 서울고법 1999. 4. 12. 선고98나4791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이 있다.

4)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언론중재』, 1991 겨울, p.78.

보았다.

조사결과 반론보도 시기만을 모든 주문에서 명시하고 있을 뿐, 게재부위나 보도문 크기 및 활자크기, 보도횟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쇄매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는 보도문의 크기에 대해 주문에 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체 67건 가운데 54건인 80.6%에 불과하다. 또한 게재부위는 인쇄매체의 경우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구체적인 게재부위를 밝히고 있으나 방송의 경우 전체 사례 가운데 80%만이 방송순서에 대해 정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보도횟수에 대해서는 이를 언급한 사례가 오히려 특별한 경우라 할 정도인데, 이는 원문보도가 대부분 1회에 걸쳐 보도되어 반론문 역시 1회 보도함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반론보도의 게재방법이 주문의 기재사항에 누락되는 것은 반론보도의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박용상은 제목의 내용과 활

자 크기도 명시하고 게재 부위 및 크기에 관하여는 제○면 또는 사회면 좌상단 ○단 크기 등 신문조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집행에 즈음하여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sup>5)</sup>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그 문안의 활자 크기에 대하여 신청인이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다가 법원이 판결 주문 내용에 이에 대해서 생략한 사례<sup>6)</sup>가 있다. 반면 신청인이 보도방법 등에 대해 구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문을 제1면 머릿기사로 8단 제목을 사용하여 게재하라고만 청구하고 있고 그 밖의 규격에 관한 주장은 없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그 말미의 명의인은 정정보도 신청인으로 표시하며, 위 정정보도문은 현재 가로쓰기로 조판하고 있는 주간 ○○신문의 제1면 우측상단부분에, 제목 『정정보도문』은 28급 견명체 활자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2단 기사의 형태로 인쇄하여 게재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고 명한 판결<sup>7)</sup>도

<표 1> 주문 내용 기재 현황

	계	보 도 문 크 기	활 자 크 기	보 도 횟 수	게 재 부 위 (방 송 순 서)	보 도 시 기
인쇄매체	67	54(80.6%)	66(98.5%)	13(19.4%)	66(98.5%)	67(100%)
방송매체	15	•	2(13.3%)	4(26.7%)	12(80%)	15(100%)
통 신	1	•	•	1	•	1(100%)
계	83	54(65.1%)	68(81.9%)	18(21.7%)	78(94.0%)	83

5) 박용상, 앞의 논문, 『언론중재』, 1991 겨울, p.81.

6) 수원지법 92가합9602 1993. 4. 20.자 판결

7)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3. 7. 30. 선고 93가합312 판결.

반론문의 제목 및 활자크기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문내용에서 생략하기도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반론문의 보도 방법 등을 신청취지에 담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법원은 인용 반론문의 구체적인 실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이다.

3) 재판 시기

언론보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좌우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반론보도의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보도는 원보도에 대한 수용자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는 것이다.<sup>8)</sup>

김중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1집에 수록된 정정보도청구사건 판결 28건<sup>9)</sup>을 분석하여 심판청구 후 제1심 판결까지 평균 3.8개월, 원보도가 있고 나서 제1심 판결까지는 평균 5개월이 소요되었고 심지어 원보도가 있고 나서 1년 여가 지나서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예도 있다(춘천지방법원 1989. 11. 3. 선고 88카1616 판결의 경우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 원보도는 1988. 9. 5. 자 강원일보에 게재)고 지적했다.<sup>10)</sup>

이렇듯 1심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장기간인 점은 반론보도의 효과를 상실케 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정정보도심판의 재판기간은 매우 단기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1심 재판의 경우만이라도 그 기간을 매우 단기로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는 주장<sup>11)</sup>이 제기되었고 재판 기한을 3월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개선되었다. 1996년 6월 27일에 제정된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1항에 반론보도청구사건 또는 추후보도청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선고는 심판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야말로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청구소송 심판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시기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6년 6월 27일 이후 보도를 대상으로 한 반론보도청구사례 13건의 1심 판결 기간을 조사한 결과, 원보도일을 기준으로 평균 4.4개월(133일), 중재신청일로부터 평균 3.9개월(116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신청은 채무자인 언론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sup>12)</sup> 간접강제결정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란 “법문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에 있어서는 9일, 그밖에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다음 발행호의 발행일까지가 될 것이다.”<sup>13)</sup>

상당한 기간, 즉 간접강제명령서 채무자에게

8) 졸고, “반론보도 현황과 개선방안”, 『신문과방송』, 1997년 12월호, pp.135 ~ 136.

9) 이 판결들은 1982년부터 1990년도까지 선고된 것이다.

10) 김중서,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5집, 1994, p.512.

11) 김중서, 앞의 논문, p.513.

12) 박용상, 앞의 논문, 『언론중재』, 1991 겨울, p.82.

13) 앞의 논문, p.83.

부여하는 기간의 사례는 단기간으로 함이 보통이라는 선행 조사가 있다.<sup>14)</sup> 필자가 조사한 결과도 결정 송달 후 최초로 편집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전체 29건 중 11건(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명령한 사례는 드물게 나타났다.

〈표 2〉 간접강제결정에 있어 상당한 기간

위 치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방 송	통 신	계
결정송달후 최초로 편집되는	2	4	5			11
3일 이내	2					2
5일 이내	2			3		5
1주일 이내	2			3		5
2주일 이내		2		1		3
가 타	1	1			1	3
계	9	7	5	7	1	29

한편 반론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위한 간접강제 배상금의 성격은 실손해액의 전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로 하여금 정정보도를 게재 또는 방송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sup>15)</sup> 따라서 그 금액은 당연히 본래의 채무이행의 강제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금액으로서의 합리성이 있는 금액<sup>16)</sup> 또는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sup>17)</sup>

그렇다면 법원은 실제로 채무자에 대한 심리

적 강제수단으로서의 배상금을 어느 정도 산정하고 있는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행주기를 기준으로 할 때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경우 5백만원 이하가 가장 많으며, 월간지는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간접강제 손해배상금

(발행부수 기준)							
금 액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방 송	통 신	계	비 고
-100만원				1		1	
-300만원	3	3				6	
-500만원	4	2	1	4		10	
-1,000만원	2	2	2	2		8	
-2,000만원			2			2	
-3,000만원	1					1	
기 타					1	1	매시간 50만원
계	9	7	5	7	1	29	

간접강제를 구하는 사례는 반론보도를 명하는 재판과 동시에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체 조사대상 판결 83건 가운데 29건으로 34.9%에 달한다. 이 가운데 판결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아 별도의 간접강제를 구한 경우가 16건(19.3%)이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게 된 경우, 피청구인이 그 판결의 내용대로 반론보도를 이행해 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14) 양경승,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쟁점”, 『언론중재』, 1996 겨울, p.74.

15) 조해현, “정정보도 강제이행 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 『언론중재』, 1995 겨울, p.37.

16) 앞의 논문, p.37.

17) 박용상, 앞의 논문, p.83.

간접강제의 병합신청이 가능하게 된 이후  
20건 가운데 17건이 병합신청하여  
법 개정 효과 나타나

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93조의 규정에 따라 간접강제의 신청을 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궁극적인 권리의 실현까지는 다시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 정간물법에서는 이러한 시간상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반론 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소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위 간접강제의 신청을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정간물법 제19조 제1항 후단).<sup>18)</sup>

이 개정 정간물법 시행으로 간접강제의 병합신청이 가능하게 된 이후 법원에서 인용된 반론보도청구사건 20건 가운데 17건(85%)이 간접강제를 병합신청하여, 법 개정을 통해 법문에 친절하게 규정한 효과가 나타났다.

### III. 반론문의 보도방법 분석

#### 1. 기사크기 및 방송시간

반론문의 기사크기를 정기간행물 중 통신을 제외한 67건의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사크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19.4%에 달한다. 기사크기를 명시한 경우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일간지가 88.9%, 주간지 85%, 월간지 25%순이었으며 특히 월간지의 경우 대부분 기사크기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론문의 기사 크기를 주문에 기재한 사례 54건 가운데 2단 크기가 15건(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3단 크기가 14건(25.9%)을 차지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일간신문의 경우 3단 이하의 반론문이 78.1%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주간지는 5단 이상인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았다.

기사크기의 기타항목은 가로×세로 기준 cm로 명시한 경우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6.5cm(일간신문), 18.5×15cm, 8×6cm, 7×11cm, 25×14cm(주간지), 18×5cm(월간지), 10×14cm(기타) 등이다.

한편 방송매체는 방송시간이 인쇄매체의 기

〈표 4〉 기사크기

매체유형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상	전면	기타	명시 않음	계
일간신문	3	12	10	4	1	1	•	1	4	36
주간지	•	2	3	1	1	3	3	4	3	20
월간지	•	•	•	•	•	•	1	1	6	8
기타	•	1	1	•	•	•	•	1	•	3
계	3	15	14	5	2	4	4	7	13	67

18) 양삼승, "개정된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1996년 여름, pp.23~24.

사크기와 유사한 개념일 수 있는데 반론문의 방송시간을 주문에서 밝히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15초 동안 자막으로 방송하라고 명한 사례가 2건, 60초 동안 방영하라는 사례가 1건 있을 뿐이다.

## 2. 보도횟수 및 게재부위(프로그램 순서)

보도횟수는 대부분 1회이며, 보도횟수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이는 대부분 원문보도가 1회 보도되었기 때문인 듯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용된 반론보도 청구판결의 주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1회 이상의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도록 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였다. 방송 프로그램 전후반에 걸쳐 2회 보도하라고 판결한 서울지법 남부지원 92가합16462 판결과 한 중앙일간지에 13개 반론문을 10회에 걸쳐 게재토록 명한 서울지법 서부지원 95카합1256 판결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95카합1256 판결에서 재판부는 “10일간에 걸쳐 연이어 또는 격일 간격으로 거의 유사한 내용을 발표기사나 그와 관련된 설명을 덧붙인 보도 또는 사실 등의 형식으로 한 면이나 두 면에 걸쳐 계속하여 상당한 분량으로 반복 보도하여, 반론문의 횟수도 원보도의 횟수와 동일하게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원문보도가 2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2차보도는 1차보도를 요약보도한 것에 불과하므

로 반론보도는 1, 2차 보도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에 포괄하여 보도함이 적하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sup>19)</sup>

정기간행물의 반론문 게재부위는 단 2건을 제외하고 원 보도문의 면수에 보도를 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면 기사란에 반론문의 게재를 명한 사례는 일간신문 4건(중앙일간지 2건, 지방일간지 2건), 주간신문의 경우가 6건으로 총 10건이 있었다.

예외적으로 원 보도의 면수가 아닌 다른 면에 게재를 명한 사례는 광고란에 보도하도록 한 것이다.<sup>20)</sup>

이 가운데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 보도는 제주신문의 제1면 내지 제2면의 우측 상단부에 가로 13 내지 17cm, 세로 7~8단의 크기로 게재된 『의혹, 분출되는 현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진단』제하의 기획 시리즈였다. 이 기사는 3일간에 걸쳐 기사 및 사실란 등에 보도되었는데 재판부는 제주신문 1면 하단부 광고란에 가로 37cm, 세로 5단 크기로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것이다.<sup>21)</sup>

이 판결은 “무기대등의 원칙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정정보도청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의 해석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문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광고란에 게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32면에 게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

19)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20) 제주지법 1994. 6. 16. 선고 94카합27 판결 : 인천지법 1994. 10. 31. 선고 94카합2152 판결.

21) 제주지법 1994. 6. 16. 94카합27 판결.

반론문을 보도면수가 아닌 광고란에 보도하라는  
판결은 무기대등의 원칙을 저버린것

고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sup>22)</sup>

방송매체의 반론문 게재부위 즉 프로그램 순서를 살펴본 결과, 반론문의 거의 절반은 프로그램 첫머리에 방송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 방송토록 지정하지 않은 사례가 15건 중 4건(26.7%)이나 되었다.

일회성을 지니고 있는 방송은 매체의 속성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순서는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순서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반론보도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유형별로 반론문의 프로그램 순서를 보면 시사고발프로그램에 대한 반론문은 예외 없이 프로그램 첫머리에 방송토록 하였고, 뉴스프로그램의 경우 원 보도는 중간이었으나 반론보도는 프로그램 끝으로 명한 사례와 원보도는 9시뉴스 프로그램 중간이었으나 반론보도는 9시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방송토록 명한 사례가 각각 1건이었다.

9시뉴스 첫 머리에 반론보도를 명한 판결<sup>23)</sup>은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간첩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반론보도를 구한 사건으로, 피신청인은 9시뉴스 시간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보도하는 시간대인데 뉴스 중간에 원문보도를 한 데 대하여 9시뉴스 시작과 동시에 반론보도를 방송토록 명한 것은 뉴스가치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송의 시간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신청인이 공표한 내용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반면, 반론보도문 내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문보도와 같이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은 아님에 비추어 9시뉴스 첫머리에 반론보도를 하도록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sup>24)</sup>

〈표 5〉 반론보도 프로그램 위치 현황

위 치	빈 도	비 고
프로그램 첫부분	7	지역권 뉴스 첫머리 포함
프로그램 중간	3	
프로그램 마지막	1	
프로그램 전·후반	1	
명시하지 않음	4	
계	15	

〈표 6〉 반론보도청구 대상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유형	빈 도	비 고
뉴스프로그램	9	
시사고발프로그램	5	
시사고양프로그램	1	
계	15	

### 3. 보도시기

반론보도청구소송은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22) 김종서, "정정보도청구권의 쟁점별 검토", 『언론중재』, 1995년 봄, p13.

2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2. 20. 선고 94카합3132 판결.

2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가처분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최초의 판결이나 결정과 동시에 집행문 없이도 곧 집행력이 발생한다.<sup>25)</sup>

따라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인용된 반론문의 보도는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발행물에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론보도 인용재판 주문내용을 조사한 결과 “판결(결정)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발행물에 반론문의 보도를 명한 사례가 전체 83건 중 56건으로 67.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판결(결정)을 송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정된 기일 안에 보도하도록 명한 사례도 19건(22.9%)이었다. 기타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간신문의 기타 4건은 “27면 이상의 지면으로 최초로 발행되는”, “최초로 발행되는 목요일”, “결정이 확정된 날”, “판결이 확정된 날” 등이며, 주간지의 기타 3건은 “결정을 고

지 받은 후” 1건, “판결이 확정된 날” 2건, 통신 1건은 “결정을 송달 받은 때부터 21시간 이내” 게재하라는 판결이었다.

특히 “판결 내지 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보도하라는 판결이 4건이 있었는데 이는 반론보도 인용재판은 가처분절차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전에도 집행가능하다는 법리를 그르친 것으로 보인다.

#### 4. 반론보도문의 자수

정간물법이나 구 방송법에는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원문보도보다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임의규정 내지는 훈시규정으로서 해석되고 있다.<sup>26)</sup>

〈표 7〉 반론보도 시기 현황

시 기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통신 및 기타	방 송	비 고
판결(결정)을 송달받 후 최초로 편집되는	26	18	7	1	4	기타는 격주 발행신문
3일 이내	3				1	
1주일 이내	1			1	7	기타는 주2회 발행신문
2주일 이내	1	1			3	
2주일 이상		1				
기 타	4	3		1		통신은 2시간 이내
계	35	23	7	3	15	

25) 박인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문제점”, 『형평과 정의』 제11집, 1997년, p.64.

26) 서울고등법원 1995. 7. 12. 선고 95나11261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반론문을 “판결 내지 결정이 확정된 날”에  
보도하라는 판결은 확정판결 전에도  
집행 가능하다는 법리에 어긋나

또한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의 반론보도문의 자수 제한 규정은 새 방송법에서 사라져 방송법 제91조 제5항에는 반론보도문의 자수에 대한 규정이 “방송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박선영은 이렇게 대체된 이유에 대해 원문 기사의 자수(字數) 내에서 반론문을 보장한다는 것이 방송의 특성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인쇄매체와는 달리 시청각 효과가 강조되고 그 전달방법이 인쇄매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방송의 경우에는 자수로 제한하기보다는 ‘동일한 효과, 동일한 매체’를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sup>27)</sup>

실제로 원문 보도문 보다 많은 자수의 반론문을 인용한 것이 반론보도문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법률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다.

아래의 원 보도문은 총 161자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서울 모대학 정모 교수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기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장학금으로 공부해 대학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지난 8월 서강대 박홍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그 동안 10여 명의 대학교수들을 내사해 왔다고 밝히고 유학시절 북한과의 접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교수들을 연행 조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방송을 명한 아래의 반론보도문은 원문 보도문 요약 부분 86자, 순수한 반박보도문 146자로 구성되어 총 232자로 순수한 반박보도문 부분의 자수는 원문보도문의 자수보다 적지만, 원문보도 요약 부분과 순수한 반박보도문을 합한 자수는 원문보도문의 자수보다 많다.

한국방송공사는 1994. 10. 6. 9시 뉴스에서 ‘북 장학금 교수 조사’라는 제목 하에 서울 모대학 정모 교수 등이 박홍 총장의 북 장학금 교수 발언과 관련해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나, 당사자인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정현백 교수는 1976년 독일 에큐메니칼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을 한 것일 뿐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 박홍 총장이 말한 북 장학금 교수와는 무관하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도 북한 장학금 수령 여부나 친북활동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정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정정보도문에는 정정보도를 위하여 원문요약 기사가 먼저 인용되어야 하므로 정정보도기사 자체를 아주 간략하게 하지 아니하면 원문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없어 실제로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기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동 규정의 의미를 원문의 자수와 정정보도문 중 인용된 원문 기사를 제외한 순수한 반박보도문의 자수만을 비교하여 원문기사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함이 합리적이고, 원문 보도는 대체로 함축, 요약되어 보도됨이 상례

27) 박선영, “반론문의 게재와 실행”, 『방송문화』, 2000년 11월호, p.42.

임에 반하여 반박보도는 그 속성상 함축된 원문기사에 대하여 반박을 하여야 하는 탓에 원문의 자수를 초과하여 반박함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박보도가 원문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원문보도보다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의 임의규정 내지는 훈시규정으로서는 원문보도의 내용 여하에 따라 위 규정의 준수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sup>28)</sup>

### 5. 방송의 보도방법

방송의 보도방법만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은 인쇄매체와 달리, 여러 가지 형태의 보도방법이 있을 수 있는 시청각 매체인 방송의 보도방법에 대해 법원이 그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명하고 있는 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반론문의 방송을 명한 전체 15건 가운데 음성으로만 방송하도록 한 사례가 절반이 넘는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성 없이 화면에 자막으로 방송토록 한 사례가 3건이었다. 반론문의 내용을 자막과 음성으로 즉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감안, 시청각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방영토록 명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였으며, 반론문의 보도방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전혀 없는 판결도 1건이 있었다.<sup>29)</sup>

〈표 8〉 반론보도 방송 방법

보 도 방 법	빈 도	비 고
자막과 음성	3	화면 아래에 두줄로 반론요지 표시 사례포함
음 성	8	제목표시 & 낭독
자 막	3	
명시하지 않음	1	
계	15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원 보도가 자료화면과 자막 그리고 음성 등 보도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사용된 방송방법과 비교되는 것이며,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항하여 개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반론권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의 보도방법을 반론보도문에 첨부하여 보다 자세히 보도방법에 대해 명기한 사례가 199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11. 19. 선고 98카합5492 판결에서 별지 반론보도문 끝에 “본 방송의 배경화면은 없어도 되지만 주문에 표시된 제목과 부제목은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위 뉴스에서 방송된 화면 중에서 보도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정지화면이나 동작화면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단

28) 서울고등법원 1995. 7. 12. 선고 95나11261 판결.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10. 8. 선고 92가합16462 판결에서는 보도방법에 대해서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첫주에 방영되는 MBC-TV PD수첩 방영시간 전후반 2회에 걸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방영하되...”라고만 주문에 기재.

1998년부터 방송의 반론문 보도방법을  
반론문에 첨부하여 자세히 명기한 사례 나타나

화면 없이 자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론내용의 요지를 나타낼 것이고, 원방송 내용의 요지와 대비하는 경우에는 반론 내용이 더 큰 활자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7. 16. 선고 98카합3568 판결에 처음 등장한 이래,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4. 22. 선고 99카합600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4. 22. 선고 99카합91 판결 등에서도 나타났다.

이후 2000년 1월 12일 제정·공포된 방송법 제91조에 방송매체의 반론보도 방법을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음성이나 자막만으로 방송토록 명한 과거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 IV. 반론문 내용분석

### 1. 반론문의 내용

반론권의 본질에 비추어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반론문’ 또는 ‘반론보도문’, 그 내용은 원보도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이어야 하고 그 반박 진술의 주체는 신청인이어야 올바른 것이다.<sup>30)</sup>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보도를 바라는 반론, 즉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반론보도청구 권리의 실체가 되는 것이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반론보도청구권의 명칭이 정정보도청구권으로서 15년 동안 지속되면서 반론보도의 내용 또한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었다.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해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필요한 경우 단순한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sup>31)</sup>

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구 정기간행물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이하 원문보도라 한다)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바로잡아졌다.<sup>32)</sup>

법원에서 인용된 반론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개정 정간물법 시행이후 법원 인용 반론보도문은 청구권적 성격에 부합하여 모두 반론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정간물법 시행전의 인용판결 건수 63건 가운데 13건(20.6%)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달리 정정보도문으로 나타났으며, 7건은 정정과 반론의 성격이 혼재된 애매모한 내용이었다.

30) 양경승,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 쟁점”, 『언론중재』, 1996년 겨울호, p.66.

31)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38815 판결.

3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표 9〉 반론보도 내용

내 용	개정 정간물법	개정 정간물법	계
	시행 전	시행 후	
반론보도	43	20	63
정정보도	13	•	13
기 타	7	•	7
계	63	20	83

신청인이 작성한 반론보도문안의 변경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독일에서의 다수설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론보도문이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독일법이 반론권의 행사 상대방을 편집인 또는 발행인으로 하고 있는 관계상 반론보도문은 편집인이나 발행인에게 제시됨을 요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론보도문안을 법원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언론사와의 협의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라거나 신청취지의 변경으로서 정정보도문안의 변경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으로서도 원보도에 신청인과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 대응의 필요성이 긍정되는 한, 신청인이 작성한 정정보도문의 대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함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제의 요구에도 부합한다는 견해가 있다.<sup>33)</sup>

한편 반론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보도되는

것인지를 밝히는 문구를 반론문에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한 경우는 인쇄매체에 반론보도를 명한 반론문에 “신청인은 인천지방법원에 정정보도심판청구를 한 결과 94카합2152호 판결에 의하여 반론의 제기를 허용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힙니다”<sup>34)</sup>, “정정보도심판청구에 따른 제주지방법원 95카기351호 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는 바이다”<sup>35)</sup>라고 명시한 2건이 있었다. 또한 방송의 경우 “법원의 반론보도판결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sup>36)</sup>,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sup>37)</sup>라는 형식으로 판결에 의해 반론보도를 방송함을 알리는 4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 개정 정간물법 시행 이후 판결에서 발견되었다. 반론보도가 언론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판결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반론을 접하는 수용자에게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2. 반론문의 진술주체와 신청인 명의

반론문은 원 보도문에 대한 신청인의 반박이

33)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언론중재』, 1991 겨울, p.81.

34) 인천지법 1994. 10. 31. 선고 94카합2152 판결.

35) 제주지방법원 1996. 1. 25. 선고 95카기351 결정.

3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7. 16. 선고 98카합3568 판결.

3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11. 19. 선고 98카합5492 판결.

개정 정간물법 시행 전에는  
반론보도청구 인용판결 중 반론문의 내용이  
정정보도인 경우가 20%나 되어

므로 당연히 진술주체는 신청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신청인이 아닌 언론사가 진술주체가 된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반론주장을 직접화법으로 신청인이 한 경우도 있고 간접화법으로 언론사가 한 경우도 있다.<sup>38)</sup>

방송매체의 경우 피신청인인 방송사가 신청인의 반박내용을 진술하고 알리는 형태로 보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지라도 언론사의 진술이 분명한 반론문은 일반독자나 시청자로 하여금 또다른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반론권이 정정보도청구권으로 규정된 구 정간물법이 적용된 시기에 무려 28.6%가 반론문의 진술주체가 언론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정 정간물법 시행 후에도 20건의 인용판결 가운데 2건이 언론사가 반론문의 진술주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10>에 나타난 진술주체의 분류항목 중 기타 6건은 그 진술주체가 불명확한 것이다.

<표 10> 반론보도 진술 주체

진술주체	개정 정간물법	개정 정간물법	계
	시행 전	시행 후	
신청인	41	16	57
언론사	18	2	20
기타	4	2	6
계	63	20	83

반론문의 경우 보도문 말미에 신청인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반론문이 누구의 반박인지를 분명하게 함은 물론 정정보도문인지 반론보도문인지를 가늠케 하는 것일 수 있다. 정정보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주체가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 말미에 신청인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sup>39)</sup>

이렇듯 반론보도문이나 개정 정간물법 시행 전의 정정보도문의 말미에 기재되는 신청인(청구인)의 이름은 반론문의 성격과 관련된다. 양경승은 “보도문 말미의 ‘정정보도 신청인 아무개’의 표시를 신청인으로부터의 정정보도 내지는 반론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sup>40)</sup>

또한 헌법재판소는 “실무상으로도 반박문은 언론기관의 이름이 아닌 정정보도청구인의 이름으로 게재되고 있으므로 권리의 성질이 오해될 위험성은 없다”고 밝혔다.<sup>41)</sup>

물론 원문보도가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어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피해자의 서명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판결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반론을 명한 사례 1건 외에 없었다.<sup>42)</sup>

한편 방송매체의 반론문 진술형식은 “...추

38) 양경승,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 쟁점”, 『언론중재』, 1996년 겨울호, p.78.

39)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38815 판결.

40) 양경승,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 쟁점”, 『언론중재』, 1996년 겨울호, p.78.

41) 양경승,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 쟁점”, 『언론중재』, 1996년 겨울호, p.78.

4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11. 29. 선고 94카합1797 판결.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 주장이 있어 이를 보도합니다”<sup>43)</sup>, “...씨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sup>44)</sup>, “...반박해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sup>45)</sup>와 같이 방송사가 반론의 내용을 알리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형식을 띠고 있어 반론 보도신청인의 이름을 명시한 경우가 없었으며 이러한 보도형식이 일반화되었다고 판단되어 반론보도신청인 표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83건 중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한 청구사례 15건을 제외한 68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64건(94.1%)이 반론보도문의 말미에 반론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정 정간물법 시행 이후 정기간행물에 반론을 명한 경우 모두 반론을 구하는 자를 표시했다. 또한 반론을 구한 사람을 나타내는 명칭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 정정보도청구권으로 반론권이 운용된 시기에는 정정보도신청인 아무개로 쓰인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나 개정 정간물법 시행 이후에는 반론보도신청인과 반론보도청구인으로 표시한 경우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론인 등의 다양한 명칭이 등장하였다.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그 용어가 바로잡아진 이후에도 정정보도신청인으로 표시한 사례가 2건<sup>46)</sup>이 있어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사용되어진 시기의 그 뿌리깊은 관행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표 11〉 반론보도 신청 명의

신청인 명의	개정 정간물법	개정 정간물법	계
	시행 전	시행 후	
정정보도신청인	47	2	49
정정보도청구인	2	•	2
반론보도신청인	1	5	6
반론보도청구인	•	5	5
반론인	•	1	1
신청인	1	•	1
명기안함	12(방송8)	7(방송)	19
계	63	20	83

### 3. 기사제목

반론권의 본질에 비추어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반론문’ 또는 ‘반론보도문’이어야 올바른 것이다. 이러한 통설적 견해에 덧붙여 ‘어떠어떠한 보도에 대한 반론(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도 허용될 수 있다. 원문보도의 제목에 이의 대상인 사실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내용의 제목을 반론(정정)보도문에 첨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반론(정정)보도문의 제목은 정상적인 편집부문의 기사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하여서는 아니된다.<sup>47)</sup>

반론보도청구권의 명칭이 그 성격에 걸맞지 않은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사용되어지면서 반

4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카합792 판결.

4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5. 9. 선고 95카합4287 판결.

4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6. 27. 선고 96카합999 결정.

46) 서울지방법원 96카기2868 1996. 8. 1.자 결정 : 춘천지방법원 95카기299 1996. 10. 10.자 판결.

47)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1991 가을, p.18.

반론문의 제목을 '정정보도문'으로 명기하는 관행은 개정 정간물법 시행 이후 사라져

론문의 제목에 있어서도 혼선을 빚었다.

중앙일보가 구 정기간행물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의 본질 및 내용은 이른바 피해자의 '반론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정정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법원의 실무관행도 '정정보도문'이라는 표제아래 반박문의 게재를 명하여 마치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비례성 및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과잉제한에 해당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실무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언론기관이 자신의 보도에 대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내용의 정정문을 실는 양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문이 비록 '정정보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박문의 표제를 꼭 그와 같이 내세워야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상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안에 관하여 제목과 내용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칭이 바로 위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sup>48)</sup>고 밝힘으로써 실무상으로 반론문의 제목이 '정정보도문'이 아닌 반론문의 성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1996년 개정 정간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반론문의 제목은 '정정보도문' 내지 '...에 대한 정정보도문'으로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표 12>를 보면 개정 정간물법 시행전에 인용판결된 63건 중 40건(63.5%)이 '정정보도문' 내지 '...에 대한 정정보도문'으로 반론

문 보도를 명했고, '반론보도문' 내지 '...에 대한 반론보도문'으로 명한 사례는 17건(27.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개정 정간물법의 시행으로 사라져 개정 정간물법이 시행된 1996년 7월 1일 이후 인용판결된 사건에서는 '정정보도문'으로 명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고 모두 '반론보도문' 내지 '...에 대한 반론보도문'으로 주문에 기재되었다.

특이한 것은 '...에 대한 반론보도문'으로 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많아져 어떤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문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표 12> 반론보도문 제목

제 목	개정 정간물법 시행 전	개정 정간물법 시행 후	계
반론보도문	13	11	24
정정보도문	40	•	40
...에 대한 반론보도문	4	9	13
...에 대한 정정보도문	1	•	1
기 타	1	•	1
명시하지 않음	4	•	4
계	63	20	83

4. 보도문장 길이

매스컴 문장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문장으로 그 표현은 평이, 정확, 간결을 목표로

48)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결정

한다. 그리고 뉴스문장은 정확(correct), 명료(clair), 간결(concise)의 3C를 원칙으로 한다.<sup>49)</sup>

재판에서 인용된 반론문 역시 당연히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매체 보도의 일 부분으로서 반론문 역시 3C의 원칙을 통해 수용자에게 쉽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문의 문장길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보도문장의 하나인 반론문의 보도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 수용자에게 쉽게 읽히거나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읽히지 않는 문장은 죽은 문장이나 다름없으며 반론보도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이다.

한 국어학자가 1990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6개 중앙일간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면의 290개 기사 2,156문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 신문문장의 길이를 조사한 결과 신문의 한 문장 평균 길이는 70.49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내용별로 살펴보면 사회면의 기사가 가장 길어 81.67자이며, 정치면 80.58자, 경제면 72.04자, 문화면, 63.54자, 스포츠면 55.92자 순이었다.<sup>50)</sup>

이 학자는 일반 신문기사의 이러한 문장 길이 조차 '꽤 어려운 것'으로 대학생 정도의 학력에 부응하는 문장으로 지적하였지만 반론문의 한 문장 평균 길이는 일반 기사 문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긴 것으로 조사됐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론문의 평균 문장 길이는 100~150자 이내인 경우가 34.7%로 가장 많았고, 201자 이상인 경우가 25.5%나

되었으며 일반 신문의 사회면 기사 문장 길이인 80자 이내인 사례는 7.2%에 불과하였다.

다음의 한 사례는 원 보도문을 요약한 반론 보도문의 한 문장으로 무려 547자에 이르는데, 반론보도문의 문장이 어느 정도나 길게 서술될 수 있는 지를 가늠케 해준다.<sup>51)</sup>

『정정보도문 황연대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의혹은 사실과 달라』

주간 한국장애인복지신문은 1993. 4. 16.자 제1면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황연대 관장 윤상장학금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82년 유괴살해 당한 이윤상 군을 추모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정립회관에 기탁한 윤상장학금이 정립회관 운영자에 의하여 전액 사라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일자 제3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 부분에 『정립회관사건, 총체적 부정양상』이라는 제목 아래 황연대 씨의 장남이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광운공대 제어계측학과에 입학했던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정립회관 일부 직원들의 주장을 인용한 기사와, 황연대 씨가 경기 안성과 하남시 감북동 등지에 자신과 그 남편 명의로 땅을 소유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황연대 씨와 그 남편 명의의 재산은 시가로 40여 억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황연대 씨와 그 남편이 개인적으로 굴비나 간장을 산 것도 정립회관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어서 비난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식대와 직원들의 출장비 심지어 가불도 하지 않은 직원들의 가불전표까지 만들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와, 황연대 씨가 윤상장학금 취재과정에서 기사가 제기하는 의문점

49) 박갑수, "신문기사의 문체와 표현", 『신문기사의 문체』, 1990, 한국언론연구원, p.90

50) 박갑수, 앞의 논문, p.91.

51) 서울민사지법 1993. 12. 11. 선고 93카기3786 결정.

반론문의 한 문장 평균 길이는  
일반 신문 문장보다 훨씬 길며,  
한 문장이 500자 넘는 경우도 있어

에 대한 답변을 약속하다가 기자에게 수사관이냐고 따지면서 해명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윤상장학금 내역에 대한 자료준비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표 13〉 정기간행물과 방송의 반론보도문  
평균 문장길이 현황

분 량	정기 간행물	방 송	계
80자 이내	6(7.2%)	•	6(7.2%)
80~100자	7(8.4%)	3(20.0%)	10(10.2%)
101~150자 이내	28(33.7%)	6(40.0%)	34(34.7%)
151~200자 이내	20(24.1%)	3(20.0%)	23(23.5%)
201자 이상	22(26.5%)	3(20.0%)	25(25.5%)
계	83	15	98

한 언론인은 신문문장에는 정해진 길이가 없으나, 100자 이상은 어떤 경우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2)</sup>

반론문의 평균 문장길이가 150자 이상인 경우가 조사대상 반론문 98건 가운데 무려 48건(49.0%)이나 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반론보도문을 읽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반론보도문에 대한 수용자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방송기사가 짧아야 함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일본의 경우 신문기사의 문장길이가 86.1자인데 반해 TV뉴스는 74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뉴스문장은 대체로 45-50자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문문장이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데 대해 방송문장은 일과성을 지니는 것이고 보면 방송문장이 신문문장에 비해 짧아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sup>53)</sup>

그러나 반론문을 살펴보면 매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방송매체의 반론보도문 역시 정기간행물과 같이 100~150자 이내가 가장 많으며, 오히려 80자 이내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반론문의 문장길이는 기사문에 가깝다기 보다는 만연체로 특징지워지는 판결문과 유사한 것으로 신청인 대리인이나 재판부가 보도를 전제로 한 반론문의 작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론문의 문장 길이가 개정 정간물법 시행 이후 다소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여전히 100~150자 이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표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0자 이내인 문장이 급증하고 151자 이상인 문장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방송의 반론문 보도방법을 반론문에 첨부한 사례에서 반론문의 문장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문의 문장을 방송에 적합하게 변경시킬 수는 있으나, 그 취지를 곡해하거나 내용이나 길이를 줄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sup>54)</sup>

이는 보도문의 문장을 방송매체에 특성에 맞게 그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문장길이의 수정

52) 박진용, 『기자학 입문』, 나남출판, 1998, p.133.

53) 박갑수, “기사문장의 문체와 표현”, 『신문과방송』, 1990년 10월호, p.77.

5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11. 19. 선고 98카합5492 판결.

을 용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개정 정간물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용어를 변경. 명실상부한 반박권임을 명확히 한 것은 반론보도문의 기사 길이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개정 정간물법 시행 전·후 반론문  
평균 문장 길이 비교

문장길이	개정 정간물법 시행 전	개정 정간물법 시행 후	계
80자 이내	3(4.0%)	3(13.6%)	6
80~100자	1(5.3%)	6(27.3%)	10
101~150자 이내	27(35.5%)	7(31.8%)	34
151~200자 이내	21(27.6%)	2(9.1%)	23
201자 이상	21(27.6%)	4(18.2%)	25
계	76	22	98

## V. 결 론

반론문의 올바른 내용과 형식은 그 제목에 있어서는 반론보도문, 내용은 신청인이 진술하는 반박의 내용이어야 하며, 반론을 구하는 신청인의 표시를 반론보도신청인 혹은 반론보도청구인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개정 정간물법 시행전의 법원 소송실무에서는 반론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반론보도의 제목을 언론기본법이나 구 정간물법의 법조문에 충실하게 정정보도문으로 하고 그 진술의 주체는 신청인으로, 반론을 구하는 자의 표시는 정정

보도신청인으로 한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조사되었다.

반론문의 제목과 내용이 정정과 반론으로 혼재되어 나타난 혼란은 오히려 당시 법조문에 충실하여 생긴 한 양태로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반론문의 제목과 내용, 진술주체와 반론을 구하는 자의 표시가 모두 엇갈리는 심각한 사례도 있었다. 제목은 정정보도문이면서 반론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진술주체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표시를 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반론보도청구권이 법적 명칭을 획득하면서 상당부분 해소된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반론문의 기사제목과 반론문의 내용에 있어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반론문의 진술 주체를 피신청인인 언론사로 하거나 정정보도신청인 아무개로 반론을 구하는 자를 표시하는 오류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1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간접강제의 병합신청을 가능하게 한 법규를 개정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가치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간접강제의 병합신청과 달리 반론보도청구의 1심 재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은 아직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법규의 신설 이전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너무나도 긴 만연체가 특징이 되다시피 한 반론문의 문장 길이는 개선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음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반론권이 도입된 이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반론문의 문장길이는 평균 신문문

방송매체에 보도되는 반론문은 매체 특성을 감안,  
신문 보다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장 길이와 근접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방송매체에 보도되는 반론문은 그 매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짧은 문장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반론권은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권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형식적인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무기대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법원 실무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강경근, "반론권 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1994년 겨울.

강현중, "반론보도청구권 및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언론중재』, 1996년 가을.

김종서,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5집, 1994.

김종서, "정정보도청구권의 쟁점별 검토", 『언론중재』, 1995년 봄.

박갑수, "신문기사의 문체와 표현", 『신문과방송』, 1990년 10월호.

박선영, "반론권의 대상과 그 밖의 보도형태", 『방송문화』, 한국방송협회, 2000. 6.

박선영, "반론보도문의 내용과 청구방법", 『방송문화』, 한국방송협회, 2000. 10.

박선영, "반론문의 게재와 실행", 『방송문화』, 2000년 11월호.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일반적 고찰", 『언론중재』, 1989년 가을.

박용상,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언론중재』, 1991년 봄.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1991년 가을.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언론중재』, 1991년 겨울.

박인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문제점", 『형평과 정의』 제11집, 1997. 1.

박진용, 『기자학 입문』, 나남출판, 1998.

안상운,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언론중재』, 1998년 가을.

양경승,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 쟁점", 『언론중재』, 1996년 겨울호.

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 『민사판례연구』 제14권, 1992.

양삼승, "개정된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1996년 여름.

오영권·김명선, "반론권의 예외사유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언론중재』, 1998년 가을.

이석주, "기사문장의 변천", 『신문과방송』, 1990년 10월호.

이주행, "기사문장의 유형별 구조", 『신문과방송』, 1990년 10월호.

임병국, "신문오보의 실태와 정정", 『오보와 정정』, 한국언론연구원, 1990.

조준원, "반론보도 현황과 개선방안", 『신문과방송』, 1997년 12월호.

조해현, "정정보도 강제 이행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 『언론중재』, 1995년 겨울.

한국언론연구원, 『신문기사의 문체』, 한국언론연구원, 1990.

한기택, "정정(반론)보도청구권 : 권리자 및 정정보도의 한계", 『대법원판례해설』 27, 법원행정처, 1997.

## 중재신청으로 작은 위안을 얻었지만 아무 것도 달라진 것 없어

박 광 선

회 사 원

미리 상상해 보았던 법정과 같은 엄정한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상당히 차분하게 나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다. 앞에 자리하였던 다섯 명의 중재위원들은 상대방 나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공정한 중재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는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지만 그 이후 더 이상 나에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상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닦쳤을 때, 그 일에 대하여 차분히 모든 것을 짚어보고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아는 것이 없고, 또한 내가 충분히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주지도 않는다. 어차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찾게 마련이고, 이번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만 포기해야만 했을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중재위는 어마어마한 언론의 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소시민의 구원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의 결과는 단지 나 자신에게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조그만 안위를 주었을 뿐 주위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대한 중상모략과 같은 기사가 중앙 일간

지에 실리고 황망한 가운데 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하고, 그 일간지의 대리인으로부터 좋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들어가면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끝까지 정정보도를 요청하였고, 일간지 대리인으로부터 결국 후회할 길을 선택을 했다는 말을 들어가면서 중재위의 문턱을 넘어 나왔을 때, 너무나도 큰 허탈함이 엄습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정정보도가 나왔지만, 그 내용은 너무도 빈약하고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었을 뿐이다.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문안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에 대한 정정인지, 무엇을 보상받으려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정정보도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도 나를 모략한 기사만을 기억할 뿐 정정보도 그 자체의 존재는 전혀 알지를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만 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제일 먼저 마주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논조에 머리를 끄덕여 왔던 날들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결코 정의의 용사가 아니며, 단순한 거대 집단 속의 톱니바퀴일 뿐이다.

그들이 조금만 불리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들에 의하여 어떠한 피해를 받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어만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기를 쓰고 보호하려고 하는 우매한 용기를 보여줄 뿐이다.

어찌하였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에 대해 이렇게나마 위안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는 중재위에 대단히 고맙게 느끼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 정도의 결과 밖에 나올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하여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지금도 거래선에 나가면 그 기사부터 꺼내

놓는 곳이 종종 있다. 다시 한 번 정정보도를 머리 속에 되새기며 쓸쓸한 미소를 짓는다.

참으로 언론의 힘은 대단하면서도 끈질기며, 결코 소시민의 친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저 한 세상을 같이 살아 갈 수밖에 없는 동시대의 이방인일 뿐이다.

좀 큰 바람일지 모르겠으나, 중재위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중재와 이에 따른 정정보도는 표면상으로 언론에 잘못을 시인토록 한 것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면죄부를 주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

## 피신청인

### 중재 당사자의 한 축인 언론사의 신뢰 구축에도 힘써야

육 정 수

동아일보 사회부장

신군부의 '개혁입법'(언론기본법, 현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해 80년대 초 처음 도입된 언론중재제도가 벌써 20주년을 맞았다니 그 출발을 지켜본 기자로서 느낌이 없을 수 없다.

당초 이 제도는 군부세력에 의한 '언론의 목취기용'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다. 그렇게 탄생한 언론중재제도가 오늘날의 민주화 시대에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이 제도가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론사나 기자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첫째, 언론중재위가 너무 법적 논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장과 각 중재부장은 반드시 법조인이 맞고, 그에 따라 법적 논리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공익적 역할 등 언론의 기본적 사명과 기능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다시 말해 현행 언론중재제도는 사법적 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프라이버시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 개인의 법익침해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언론인들 사이에선

‘결면 걸린다’는 자조적인 얘기마저 성행하는 실정이다.

피해자 보호쪽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법원의 판결추세와 더불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언론중재위의 역할은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재판’이 아닌 ‘중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양쪽 당사자가 내놓는 증거자료와 주장을 엄격한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재판은 본질적으로 중재와는 다르다고 본다. 재판과 중재의 접근방법이 같다면 언론중재제도를 별도로 둘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중재는 중재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옹고 그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양쪽을 설득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임무라고 본다. 그런데 현실은 웬일인지 재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양쪽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

는 자세로 보이지만 중재제도의 원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중재를 신청하려는 측의 상담을 받을 때 중재위 직원들이 선(線)을 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는 친절한(?) 전망까지 곁들인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재위의 범위를 넘는다고 본다.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의 형식적 적격 여부, 신청절차 등 측면에 국한해 안내를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다.

언론사도 엄연히 한쪽 당사자다. 그렇다면 이 한쪽의 신뢰도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언론사의 신뢰를 잃게될 경우 중재위의 존재가치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중재제도 존립의 위기에 봉착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 신청은

# 국민의 편에 서는 중재위원회가 되기를

김 동 민

한일장신대 교수·언론학

언론중재위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는다니 좌우지간 축하드린다. 그러나 중재위원회가 제대로의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자 그대로 ‘중재’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의의는 높지 않게 평가할 수 없다. 오늘날 언론의 오만방자함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편에 서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언론의 편파보도, 왜곡

보도, 허위보도,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보다 능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와 같은 잘못된 보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언론이 알아서, 또는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해 시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바로잡는 일이 없다.

오히려 상업적 목적을 위해 소설 같은 얘기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을 다반사로 저지르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 떼고 지나가 버린다. O양과 B양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주범이 바로 언론이다. 물지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항의를 해도 묵살하고 법으로 하라고 도도하게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법은 얼마나 멀리 있는가. 어렵사리 접근했다 해도 그 법이 약자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가?

속내는 어떻든지간에 중재위원회를 두게 된 명분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고, 또 느낌으로도 멀리만 여겨지는 법에 대한 불편함과는 관계없이 언론사를 상대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데 그 설립 취지가 있지 않겠는가. 법률상으로는 그 설립취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말이다.

그러면 중재위원회는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하는 '해결'이란 단순한

조정이나 중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대리인이 되어서 언론사를 상대하고, 나아가서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적 상식을 주지시키는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오히려 본래 문제가 된 기사보다 영향력이 훨씬 떨어지는 정정기사나 반론문으로 무마시키거나 주저앉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정도로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정신적 피해가 보상되는 것이 아닐 테니 말이다.

중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법률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욕상옥일 따름이다. 제도적 개선이 수반된다면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기왕에 제대로 기능을 하고 존재의의를 찾으려면, 법과 언론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나아가서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면서 정정이나 반론에 머물지 않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보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20년 세월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신을 기대해본다. □

## 피신칭인

# 언론이 자유언론에서 책임언론으로 거듭나는 데 언론중재는 일익을 담당

권 순 범

KBS 경제부 차장

언론과 관련된 연구 중에 '미디어 사회학'이란 것이 있다. 종전의 연구가 주로 메시지의 흐름과 효과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디어 사회학'은 메시지가 어떤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규명하는 연구이다.

최근 들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언론중재'가 등장했다. 언론중재는 기사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 요인이다.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게을리 한 기사라든지, 선정적인 기사 등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보도행태에 언론중재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언론이 자유언론에서 책임언론으로 거듭나는데 언론중재는 분명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언론중재는 또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다. 언론중재를 당한 기자는 문제 있는 기자이고 그런 상황에 한 번도 개입되지 않은 기자는 유능한 기자라는 잘못된 등식이 일부나마 적용되고 있다. 언론사 경영진 입장에서 언론중재는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 불러 가야하고 또 논쟁을 벌여야 하는 귀찮은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자. 언론의 어떤 기능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감시기능이다. 정치권력, 재벌집단 등 기득권 집단의 비리를 캐고 고발하는 역할을 하다보면 명예훼손여부와 상관없이 중재신청에 연루될 개연성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고 탈권위주의로 가면서 언론의 횡포(?)는 더 이상 용납받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언론중재 등의 이유로 다시 떠오른 명예훼손, 개개인의 명예는 침해해서는 안되는 지고의 가치로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한다. 진실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취재과정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세밀하고 완벽한 취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는 언론중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언론중재 신청 대상이 되면 책임을 기자에게 돌려서도 안되고 회사차원에서 법리다툼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알 권리와 명예훼손과의 충돌에 대한 사례를 하나 둘 쌓아나갈 때 그것이 규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혹 뒷거래를 통해 이른바 '합의'라는 이름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작업을 미룬다면 길게 볼 때 언론자유차원에서는 물론 언론책임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 첨언하자면 '알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부탁한다. 보도내용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면제하는 형법상의 정당화사유를 강조하고 싶다. □

## 언론단체

### 신청인의 만족스런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방안 마련해야

김 주 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년 3월 설립된 지 어언 20년이 흘렀다. 이제 언론중재위는 한국 언론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식될 만큼

성장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사통폐합' 이후 설립된 언론중재위는 당시 '언론통제를 위한

기구' 쪽으로 인식됐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은 언론중재위를 설립함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갑주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게다가 언론중재위는 세계에서 우리 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법정 기구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학자는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언론중재위는 언론피해구제에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1981년 언론중재위가 발족하기 전까지 언론침해에 의한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이나 판례가 드물었고, 언론사들의 자율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에 의한 피해자 구제도 거의 없었다. 그러던 것이 현재 1년에 600건이 넘는 중재 신청인들의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의 오보나 왜곡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언론중재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고도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었고 구제수단 역시 민·형사상의 구제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원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 국민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았다. 언론중재제도는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활용하여 비용 없이 이른 시간 내에 국민의 권익회복에 기여할 수 있었다.

언론중재위는 95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중재를 통한 합의를 이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

간물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념을 정리하면서 중재에 의한 합의율이 30%대에서 40% 가까이 뛰어올랐다. 언론사들이 중재신청인의 요구를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느꼈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정보도는 언론사가 오보를 하여 100%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만 반론보도는 언론사의 잘못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후속기사 형식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고하게 자리잡은 언론중재위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의 침해에 의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분쟁을 중재함에 있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게 하면서 중재신청인의 만족스러운 피해회복을 위해 현안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 보완하여 중재기능을 보다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정간물법에는 언론중재위에서 직권 중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직권 중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은 실효되어 다시 법원에 제소해야 하기 때문에 제소절차만 늦춰진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중재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제소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의 언론피해구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로운 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에 의한 피해구제도 언론중재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매체는 쌍방향 매체라는 특성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욕설에 가까운 비방이 난무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매체의 공공성 및 대중매체적 성격을 고려하여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

## 언론학자가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김 학 수

서강대 교수, 한국언론학회 차기회장

본인이 직접 언론중재위원을 경험해본 (1997~2000) 바에 따르면, 언론의 피해당사자와 언론인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재제도라고 여겨진다. 특히 높아지고 있는 일반국민의 법의식을 생각해볼 때 중재제도는 현직 언론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지루하고 피곤한 법정공방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좋고, 언론중재위원들이 가급적 원만한 중재를 통하여 언론피해당사자와 간소한 합의를 유도해서 좋고, 그 결과 금전적, 육체적 및 정신적 이익을 언론인에게 크게 가져다주고 있다. 만약 이런 중재제도마저 언론이 기피한다면 법정에서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맞볼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중재가 항상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하나는 언론중재위원들의 자질에 관계되고, 다른 하나는 중재제도의 법적 요건의 미비에 관계된다. 물론 언론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인 언론인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절 능력밖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론중재위원 문제와 중재제도의 법적 요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언론중재위원의 자질요건은 무엇보다 '언론의 사회적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갖추었느냐의 여부에 대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직업인을 거론할 것도 없이 언론학자들이 가장 적합한 언론중재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언론학자들은 언론의 구체적 사안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중재사안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동시에 설득시킬 수 있는 이해의 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심지어 전직 언론인이 그런 이해의 폭을 갖지 못할 때 중재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쉽게 불신을 당한다. 그런 관점에서 중재부 한 팀에 최소한 언론학자 한 두 명이 참여한다면 매우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중재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중재가 법적 효력면에서 단순히 반론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 및 소액의 손해배상에 대한 직권 중재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야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중

재결과에 대한 불만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는 가운데 신속하게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이상, 언론중재위원회가 국민에게 보다 큰 공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두 가지

점들을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 언론학자의 참여 폭을 넓히는 것은 언제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문이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것을 실현해주기 바라고, 가급적 법개정도 서둘러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 언론단체

# 또 하나의 권력인 언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파제로 성장

김 영 모

한국기자협회장

언론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를 매개하는 민주사회의 기간 네트워크로서 국민생활과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다. 그렇게 언론이 민주사회 구성의 필수요소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비한 언론피해 대비 및 구제 장치도 현대사회 구성의 필수요건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언론의 책무만큼이나, 국민을 '또 하나의 권력'인 언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파제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가치도 막중하다는 것이다.

1981년 3월에 출범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스무돌을 맞았다. 날로 확산·분화돼 나가는 언론피해의 새로운 양상에 대비해 언론중재위가 지난 20년간의 언론을 바탕으로 더욱 질 높고 실질적인 대국민 봉사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방침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기실, 언론중재위 발족 초기만 해도 중재신

청건수가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의 중재위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들면서 급속도로 늘어나 1994년 이후 5백건이 넘는 중재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언론활동의 영역도 넓어졌기 때문일 것이며, 이로 인해 언론피해 사례도 늘어났을 뿐더러 국민들의 언론중재위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도 커진 것도 이에 한 몫을 했으리라 본다.

이처럼 1980년대에 모두 550건에 불과했던 중재신청건수가 1990년대에는 그 8배 이상(4,477건)일 정도로 증가한 것도 언론중재위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지만 합의율 등 피해구제율이 이와 더불어 높아져온 것도 주목해야만 할 대목일 것이다. 1980년대의 평균합의율이 26%에 못미친 데 비해 1997년 이후 합의율이 33~37.5%대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나 그 결과로 지난 20년간의 피해구제율이 55%대를 넘어선 것은, '언론으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권리 회복'이라는 언론중재위

## 언론중재위원회가 바뀐다

활동의 의미와 실체가 국민들 사이에 그만큼 숙지되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다행 아니다.

물론 '법률에 의한 자율적 규제'라는 측면에서 언론중재활동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언론사들의 자율 규제 의지나 능력을 확신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언론중재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언론 피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중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나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더불

어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 신장을 위한 지원과 관심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분산된 관련법들의 체계적 정리, 이의신청 제도의 악용을 막는 방안 등 많은 실무적 과제들이 남아 있다.

언론피해를 막기 위해 애쓰는 언론중재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피해구제의 장을 열어주실 것도 기대해 본다. 다시 한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한다. □

## 법 조 제

### 중재위원들이 좀 더 중재사건과 신청 당사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신 영 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먼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선진국에도 그 예가 드물다는 준사법적 언론중재기관을, 지난 20년 간 자리잡고 발전시키며 지금과 같이 제 역할을 다하는 기관으로 우뚝 서도록 한 때에는 그 탄생과정과 운영과정에 관여하였던 많은 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 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아울러 전하고자 한다. 대단히 실례되는 표현이나, 그 출생의 정당성 때문에 일부 언론인들 사이에 '악법'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던 언론기본법을 그 모태로 하고 있으면서도 근거 법률을 바꿔가면서 면면히 존

속하여 그 언론이 민법상 성년에 달하는 20세에 이르렀다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는 씩씩한 모습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것으로 단정할 수 있겠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더 내실을 다져 피해구제를 더 확실하게,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마침 두 번에 걸쳐 전후 2년 7개월 간 중재부장을 역임한 바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내는 관심과 축하의 염이 남다르다고 자부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그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으나 이는 그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하겠고, 현행법 하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비교적 사소한 사항 몇 가지만 건의 드리고자 한다.

우선, 그 표현에 어폐가 있으나, 중재부장을 제외한 중재위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사건의 내용을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오시라고 하기도 어려운 처지인 줄은 익히 알고 있으나, 그 바쁜 정도가 현직 부장판사인 중재부장을 월등히 능가하는 분은 비교적 소수가 아닌가한다. 수십년간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신 그 경험과 경륜을 적절히 활용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예컨대, 재판에 있어서의 주심판사제도와 유사하게 주심 언론중재위원을 정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주심사건만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쟁점을 파악하며 예비적인 중재안까지 만들어 오시는 정도의 성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적절한 수준의 증거조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대로 된 중재안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쟁점 및 사실의 파악이 필수적인데, 쌍방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부족하여 현장방문, 목적물을 보면서 설명 듣기, 참고인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경우가 적잖이 있다고 본다. 대개 사건처리 기한에 쫓기고 중재위원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처리가 문제되어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것으로 조사를 마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건처리 기한에 관한 법규정은 혼시규정일 것이고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는 1~2주일 가량 더 심리하면서 초기의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전문분야와 관련된 분쟁 등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여 증거조사 기일을 시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증거조사 등을 전담할 상임 중재위원을 두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케를 같이하는 것이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처리기한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한다. 또 쟁점정리나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의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안은 분쟁을 전체로써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일부를 장래 법원의 판단에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지한 사실확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그러한 사건의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중재위원들의 사건과 당사자(특히 신청인)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다. 중재사건의 신청인들은 상대가 될 막강한 언론권력(?)에 비하여 그 지위가 초라한 경우가 많고, 사실 언론 피해 사례 중 그 일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오고있다고 추측되는 이유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턱이 높아서라기 보다 상대방의 위세에 대한 두려운 감정으로 인한 망설임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에 임함에 있어서는 중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처지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언론계 출신 중재위원들 중에는 언론의 자유(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에 너무 비중을 둔 나머지 신청인을 공박하려는 분도 간혹 계신 듯 한데 이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중재사건을 쫓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무쪼록 언론중재위원회가 20주년을 계기로 현재의 상태에 약간의 개선노력을 더하여 길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

#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 I. 서 론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분쟁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주요한 분쟁 유형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재판례도 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법원<sup>1)</sup>은 “구 헌법(1980. 12. 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 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범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범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구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sup>2)</sup>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많은 재판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재판례를 엄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리

김 재 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 저술 : 『근저당권연구』, 『민법주해』(16) (공저),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등 논문 다수
-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판결(공 1988. 1392).

2)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헌법재판소판례집』 제23집, p.518 :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2집, p.324)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것인데,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 재판례를 그 침해방식과 양상, 인격권의 내용, 매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0년에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다양한 재판례들이 나왔다.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이 상당수 있었고,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결도 나왔다.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판단에 관한 판결들이나 프라이버시침해에 관한 판결들도 다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결들 중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실무와 이론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만한 판결들을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러한 판결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종래의 판례이론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II.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공중의 관심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공정한 논평에 해당하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판결<sup>3)</sup>은 사실보도의 경우와 의견표명의 경우를 구분하고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sup>4)</sup>

2000년에도 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계속 나왔다.<sup>5)</sup> 특히 서울지방법원 2000. 3. 29. 선고 99가합34685 판결<sup>6)</sup>은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으로 이루어진, 즉 평가를 포함한 보도인 평론이나 해설은 공공의 사항에 관한 공정한 평론인 한, 그 평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의견인지, 사회의 다수가 지지하는 견해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또한 이로써 피평론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3) 공 1999. 458.

4) 그리하여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목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될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에 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은 한기백, “광의의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판례해설』, 1999년 상반기, p.274 이하 참조.

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공 2000, 885);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77460 판결(『언론중재』, 2000년 봄, p.14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3. 22. 선고 98가합14917 판결(『언론중재』, 2000년 여름, p.123).

6) 『언론중재』, 2000년 여름, p.131.

없으며, 평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법원 2000. 9. 20. 선고 99가합102724 판결에서는 “사실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사가 아니라 수필 형식의 간단한 논평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었는데,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가 논평기사인 점, 그 전제되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점, 피고 A가 판단근거로 삼은 자료들에 상당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와 표현의 자유는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Ⅲ. 풍자만평과 명예훼손

소설, 영화, 연극이나 만화에 의해서도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보도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sup>7)</sup>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판결<sup>8)</sup>에서는 신문의 풍자만평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었다. 피고 A신문사는 1997. 12. 20.과 1998. 1. 21. 원고 등 3인 또는 5인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 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 풍자만화를 일간지에 게재하였다. 당시 원고 등이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검찰수사 등이 거론되고 새로 출범할 정부가 경제위기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만평들을 통하여 원고 등이 외환위기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

여 해외로 도피하려 하고 있거나 도피를 모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 등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궁 등을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일 뿐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갖고 있다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7) 소설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하여는 김재형, “모델소설과 인격권,” 『인권과 정의』, 1997년 11월호, p.44 이하 참조.

8) 공 2400, 1925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의견이나 논평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위 II에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된다.<sup>9)</sup> 그러나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 판결은 이를 부정한 것이다. 형법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형법 제307조),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민법상의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sup>10)</sup>

그렇다면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된다. 우리 나라에서 인격권에 관한 논의는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관한 판결도 많이 나왔다.<sup>11)</sup>

그러나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

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재판례도 상당수 있다. 형법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표명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1조)이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순수한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지만, 사실의 적시가 있는 의견표명인지, 아니면 순수한 의견표명인지 여부가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판결이 위 풍자만평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였으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인 원고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그러한 주장에 엄격하게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모욕 등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 등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도 심리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형법상으로는 엄밀하게 구분되지만, 민사상으로는 모두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풍자만화나 시사만평의 경우에는 직설적인 언행과는 달리 풍자나 은유를 동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과장된 표현은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풍자만화나 시사만평을 보는 독자들도 그러한 과장이나 풍

9) 서울지방법원 2000. 1. 19. 선고 99가합42730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p.267)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존재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10) 다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3. 22. 선고 98가합14917 판결(『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p.123)은 “의견 또는 논평일지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의견 또는 논평임을 빙자하여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 또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이탈하여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1) 김재형, “인격권 일반-언론 기타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XXI), 박영사, 1999, p.644 이하.

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이다.<sup>12)</sup>

#### Ⅳ. PC통신에 의한 명예훼손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직장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적이 있는데,<sup>13)</sup> 대법원은 위 게시내용이 공익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긍정한 바 있다.<sup>14)</sup>

그 후에 나온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5. 25. 선고 99가단42644 판결<sup>15)</sup>은 하급심판결이기는 하지만 네티즌 사이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자. 피고가 PC통신의 공개게시판에 가수 박지윤에 대하여 비방,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

해 그 가수의 팬클럽 동호회 회원인 원고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는 가수 박지윤은 물론 원고에 대해서도 더욱 심한 비방과 모욕을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금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심<sup>16)</sup>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PC통신의 게시판에 피고가 대중가수의 모습이나 행동,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과 피고의 맞대응의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의 일환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의 글이 다소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조를 띠 수 밖에 없다는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표

12) 이 사건의 원심판결 중 다음과 같은 판단부분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회화적(戲畫的)으로 묘사하거나 풍자(諷刺)하는 만평(漫評)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隱喻的)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때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3)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 1995, 396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 1996, 319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공 1997, 1516);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 1543 판결(공 1999, 143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공 2000, 7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 2000, 885) 등 다수.

14) 대법원 2000. 5. 12. 99도5734 판결(공 2000, 1458)은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가 게시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등 표현의 방법과 위 전자게시판은 위 공간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15) 『언론중재』, 2000년 겨울, p.132.

16) 서울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2000나40161 판결

현의 정도가 PC통신을 이용하는 통상의 이용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날 정도로 모욕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 하이텔과 같은 PC통신 및 인터넷 웹 페이지, 뉴스그룹 등 소위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의 폭넓은 보장이라는 순기능뿐 아니라 특히 최근 들어 허위사실의 유포에 따른 명예감의 훼손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익명성을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질 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그 역기능이 날로 더해가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고가 피고의 게시물에 대하여 과도하게 대응한 점도 고려하여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한편 위 사건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기각되었다.<sup>17)</sup> 위 사건의 피고의 잘못이 더욱 크고 위 사건의 원고의 잘못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이미 고려되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네티즌 사이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매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서로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해졌다. 이것은 종래의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과는 다른 측면이다. 그리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판결에서는 그 표현의 정도가 “PC통신을 이용하는 통상의 이용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날 정도로 모욕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수인한도를 채택한 것은 PC통신을 서로 이용하는자들 사

이에 공방을 벌인 사건이기 때문이고,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인한도를 채택할 수 없을 것이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의 종류나 침해방식과 양상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배우나 가수의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 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하게 유포되는 등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은 그 전파속도가 빠르고 그 전파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를 유포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112 판결<sup>18)</sup>에서는 신문기자가 PC통신과 인터넷에서 비롯된 원고의 이혼사유와 그 배경 등에 관한 ‘소문’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사실을 전국에 판매되는 일간지에 그대로 보도한 것이 문제되었다. 이 판결에서 전국에 판매되는 일간지를 통하여 확산되는 정보는 아직까지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에 비하여 그 속도와 범위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여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개인이 홈페이지나 PC통신을 통하여 퍼뜨린 정보는 다른 설득력 있는 정보의 뒷받침이 없으면 공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하지만, 그 소문이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특히 전국 일간지에 게재되면 그 소문의 피해가 PC통신의 게시판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하여 더욱 확산된다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1. 1. 19. 선고 2000가소32813 판결(『법률신문』 2956호 12면)

18) 『언론중재』, 2000년 봄, p.136.

는 것이다.

## V.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판단

### 1. 의 의

판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sup>19)</sup> 이것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 2. 피의사실의 보도

범죄사건이나 피의사실을 보도하였으나, 나중에 그것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도 피의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피의자의 성명, 직업 등을 밝히게 되면 피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언론매체의 범죄보도가 공익성을 띠고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피의자의 인격권도 그에 못지 않게 보호받아야 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sup>20)</sup>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익명보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sup>21)</sup>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sup>22)</sup>은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2000. 8. 23. 선고 99가합30768 판결에서도 피의사실에 관한 언론보도가 피의

19)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 1988, 139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공 1996, 197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공 1997, 3279) 등 다수

20) 공 1998, 2108

21) 이 판결에 관한 평석으로는 한기택,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 익명보도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31호(98년 하반기), 1999, p.110 이하; 장진원, “언론의 범죄사건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법조』 47권 12호(1998. 12), p.157 이하.

22) 공 1999, 330

자의 명예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다. 즉, 1998. 2. 24. 12:20경 유엔군 관할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 이하 공동경비구역이라 한다) 내 241 GP 지하 3번 병커에서 김훈 중위가 권총으로 머리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원고 A와 그 친척인 나머지 원고들은 당시 김훈 중위가 소대장인 소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피고 방송사나 신문사가 원고 A를 김훈 중위의 살인범 또는 간첩인 것으로 잘못 보도하여 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는데,<sup>23)</sup> 범죄사건보도에 관한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 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표한 자료와 이를 근거로 그 범죄 혐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 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 사건 보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범죄 보도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그 보도가 어디까지나 범죄 행위에 대한 비판에 중점이 놓여 있어야 할 것이고, 공인에 대한 평가 자료

로 제공된다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등의 사회에 대한 지대한 정보의 이익이 없는 이상은 실명이나 신상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에 중점이 놓여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이른바 익명 보도의 원칙). 이것을 인정할 필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인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범죄 혐의의 부담이 없는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구가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범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장래에 그 범죄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만큼 범죄 보도에는 그 자체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식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단순히 어떠한 범죄와의 연관성만이 추상적으로 논란이 되어 있는 단계에서 그 범죄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하거나 더 나아가 실명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위 피의 사실과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사회에 대한 정보의 이익, 그리고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자초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무고하게 범죄인으로 지목되어 그 이름이 사회에 알려져 버린다면 그 정신적 손상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실명과 사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들이 이를 공개하면서까지 그의 범죄 사실 및 범죄 가능성에 관하여 보도할 공적인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었는지 문제되었다. 원고 A는 대북 접촉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 군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피

23) 이 판결은 “피고들의 위 각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들은 충분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이나 추가 취재도 없이 원고 A를 살인범이나 간첩으로 몰아 세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위 각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의사의 지위에, 김훈 중위 사망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 단순한 연관 가능성만이 제기되던 단계에 놓여 있었다. 나아가 당시 원고 A는 위 각 보도가 있기 전에 이미 구속되어 도주 등의 우려가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공공성과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원고 A의 피의 사실에 관한 보도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의 사실 또는 범죄 의혹 사실의 당사자의 실명 및 사진을 공개하여 알릴 필요성까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들이 군 기강의 해이와 부대원들의 대북 접촉을 문제삼으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원고 A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부대 차원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과 조직적인 문제를 그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하였다.

### 3. 공익성 또는 공인에 대한 판단

언론보도가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문제에 관한 보도라도 개인의 내밀영역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보도에 해당하면 공익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은, 유명 여배우와 패션모델의 비디오테이프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이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 공익목적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 기사들은 주로 비디오테이프의 남녀주인공의 연애활동경력, 그들의 근황 및 생각, 위 비디오테이프에는 톱탤런트인 A의 적나라한 성행위가 나온다는 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위 기사들을 읽는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대리만족시키고, 위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2000. 8. 23. 선고 99가합30768 판결에서 공무원인 원고 A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는데, 이 판결은 공인의 개념을 좁게 보았다. 원고 A가 전방 최전선의 중요소대 부소대장직을 맡고 있던 공무원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공무원이라 하여 모두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공무원으로서 그가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선거직에 종사하여 그 활동이 일정 지역 사회나 국가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그 활동 상황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공인'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 사건이 있었고 그 범죄에 대하여 사회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범죄 행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지 그 범죄인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구속되어 수감 중이어서 자기의 혐의에 대하여 별다른 반론조차 제기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를 두고 그가 범한 범죄 사실 때문에 '공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4. 상당성에 대한 판단

최근 들어 군판사,<sup>24)</sup> 검사,<sup>25)</sup> 법의학전문가 등 전문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가 많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2000. 3. 29. 선고 99가합34685 판결<sup>26)</sup>은, 위 김훈 중위 사건과 관련하여 부검을 한 군의관인

24) 서울지방법원 2000. 7. 12. 선고 99가합90005(『언론중재』, 2000년 가을, p.111.)

25) 서울지방법원 1999. 6. 23. 99가합14391(『언론중재』, 1999년 가을, p.166);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77460 판결(『언론중재』, 2000년 봄, p.144.)

26) 『언론중재』, 2000년 여름, p.131.

원고가 허위로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 신문사의 보도에 대한 것이다. 이 판결은 “법의학전문가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음”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각 기사가 다루는 내용이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임을 인식하였을 피고 신문사와 기자는 보도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법의학자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군수사기관으로부터 보도 직전까지 이루어진 수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면, 위 기사가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이것은 보도내용이 전문적인 분야인 경우에는 일상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와는 달리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VI. 프라이버시 침해

### 1. 사생활 침해

언론의 사실보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sup>27)</sup>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인데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

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112 판결<sup>28)</sup>은 유명 방송인인 원고가 PC통신에 게재된 자신에 관한 소문을 기사화한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개인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 즉 공인이라도 개인으로서 가지는 사생활(프라이버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언론 기관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한 다음, “다만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것이 사회 일반의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확인 절차는 모두 거쳐야 한다.”고 하여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 66474 판결에서는 교수가 불법레슨을 한 연습실을 촬영하여 보도한 것이 사생활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 방송사는 1999년 1월 4일, 5일, 7일 세 차례에 걸쳐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서울 유명 대학의 현직 바이올린 교수가 버젓이 교습실까지 차려놓고 자기 학과에 지원할 수험생들에게 불법레슨을 하다가 현장에서 들켰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sup>29)</sup>

27) 공 1998. 2377, 서울고법 1996. 2. 2. 선고 95나25819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p.243)에 대한 상고사건인데,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관하여는 김제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서울대법학』 39권 1호, 1998. 5. p.189 이하. 필자는 위 사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8) 『언론중재』, 2000년 봄, p.136.

당시 취재기자가 연습실 앞 복도에서 이동식 6mm 소형카메라를 사용하여 교습을 마치고 위 연습실에서 나오는 학생과 학부모 및 원고를 원고의 동의없이 촬영하여 위 화면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였다. 그는 위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하기 위하여 위 연습실에 들어갈 당시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카메라 기자 등과 함께 위 연습실에 들어갔다. 또한 그는 원고에게 자신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취재를 하였으며, 위 연습실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원고가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위 연습실에 남아 연습실의 출입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면서 방송에 나갈 보도내용(멘트)을 반복 촬영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 방송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였으나,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위 취재기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연습실에서의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의 보장 속에는 취재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에 제한이 있듯이 취재의 자유 역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했다.<sup>30)</sup>

## 2. 위법성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sup>31)</sup>

서울지방법원 2000. 7. 4. 선고 99나83698 판결<sup>32)</sup>은 사안이 좀 특이하다. 피고인 KBS 영상사업단이 KBS에 방송된 내용을 비디오로 제작·판매하였는데, 교통회관이 모범택시 운전자인 원고의 얼굴과 음성이 담긴 비디오를 구입하여 공공장소에서 반복하여 방영하였다. 법원은 “방송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량 복제, 판매하거나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는 데에 제공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여 위 영상사업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의 사생활 등 사적인 사항에 관한 보도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위 보도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사생활의 권리 또는 인격권은 위 보도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 있다.<sup>33)</sup>

29) 원고는 학생들에게 과외를 한 혐의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어 1999. 2. 19. 서울지방법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위 처분은 2000. 6. 29.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30)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들의 행위가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거나 취재 기자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공 1998, 2377): 김제형, 위 논문, p.204 이하.

32) 『언론중재』, 2000년 가을, p.128.

33) 서울고등법원 2000. 3. 9. 선고 99나43440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p.328)

### 3. 초상권

얼굴 이외의 신체의 일부에 관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축구선수의 뒷모습을 게재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은 피고 신문사의 기사에서 원고와 A 사이의 내밀한 성행위가 담긴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이 사건 등쪽 사진들과 함께 섬세한 묘사로 그리고 있었는데, 법원은 원고와 A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원고의 신체 중 얼굴 이외의 부분만이 나오는 사진이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기사를 통해 원고와 A의 성행위장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면서 그 비디오테이프 중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게재한 것이어서 그 사진에 나오는 신체부분이 원고의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의 초상권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000. 3. 9. 선고 99나 43440 판결<sup>34)</sup>은, 원고의 전화통화내용이 무단으로 녹음된 테이프를 음성변조처리를 하지 않고 재생하여 방송한 것이 원고의 인격권인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4. 의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2000가합 4673 판결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환자의 질병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피고 A는 서울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인 ‘추

적, 사건과 사람들’의 제작을 맡고 있던 중인 1997. 1.경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범죄와 소매치기 범죄를 특집으로 기획하고, 지하철 수사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원고가 경찰관에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다음날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신분이 법원사무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1997. 1. 11.자 국민일보 및 다음날자 한국일보 등에는 원고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원고의 실명과 직업 그대로 보도되었다. 원고와 인터뷰하였던 피고 A는 원고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고, 위 권유에 따라 원고는 1997. 1. 13. 피고 B와 성상담을 한 후, 다면적 인성검사를 받았다. 위 과정도 취재진의 카메라에 녹화되었다.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취재내용 등을 편집하여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위 프로그램은 1997. 1. 25. 서울방송의 ‘추적,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방송되었다.

법원은 피고 A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먼저 이 사건 방송 중 원고의 얼굴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긴 하였으나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여 간간이 원고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고, 원고의 음성은 변조됨이 없이 방송되었으며, 확대 촬영된 신문기사와 구속영장 모니터 화면을 통해 원고의 이름 및 직업과 같은 신원이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원고의 지하철 성추행 범죄 사실 및 그에 대한 성상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 A는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34)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p.328.

다.<sup>35)</sup>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A의 인터뷰와 취재진의 촬영에 응하였으나, 이 사건 취재 내용의 성격상 원고의 초상을 방송을 통해 그대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까지 허락 내지 승인하였다 볼 수 없고, 원고의 초상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식별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피고 A는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원고의 초상권도 침해하였다고 했다.

한편 피고 B가 원고와 상담한 후 그의 지하철 성추행 행위를 성도착증이라고 진단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라는 전문가 입장에서 행한 의견 혹은 견해 표명이라 할 것이지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정신과 전문의인 위 피고와 상담할 때에는 그 전제로서 상담과정 중 원고가 피고에게 알린 사적 영역이 누설되지 않으라는 신뢰관계가 바탕이 된다 할 것인데,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음경노출증이 있다고 말한 것은 위 피고가 원고와의 상담과정 중 알게된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불법행위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의사가 환자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병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의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질병을 공개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 Ⅶ. 오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거의 대부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으로 위자료의 지급이 문제되었다. 특히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 40077 판결<sup>36)</sup>은 언론의 오보로 인하여 제조업자와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관해서는 오보와 매출액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2001. 1. 10. 선고 2000가합9265 판결<sup>37)</sup>은 오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인정하였다. 피고는 “대신그룹 A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송천건설이 부도 직전에 화의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수 800선 붕괴 등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최근 송천건설이 부도 직전에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면서 ‘대신계열 사들이 회사채 등 지급보증한 금액이 약 1,6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대신증권 주식 중 보통주의 주가는 이 사건 보도 직후 급락하였고, 원고들은 보유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다.

법원은 “피고는 위와 같은 오보로 말미암아 보유하고 있던 대신증권의 주식을 급락된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

35) 이 사건 범죄보도가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였는데 “범죄보도를 통해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명예를 비교 교량하여 볼 때,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그 보도 내용이 어디까지나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경우에만 공익성이 있다 할 것이지, 피의자의 실명이나 신상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이를 밝히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있어 지대한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익성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6) 공 1999. 2292. 이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은영,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재산적 손해 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 『언론중재』, 2000년 여름, p.10 이하.

37) 『법률신문』 제2948호(2001년 1월 18일), 10면.

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화의신청, 거액의 지급보증 등 기업의 자금사정에 관한 부정적 보도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하기에 앞서 A 증권회사, B 건설회사의 관계자 및 주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작업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단순히 증권가의 소문과 대신증권의 성명불상 간부로부터 들은 말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사실확인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보도를 하여, 대신증권의 주가가 급락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도가 있던 시점의 주가와 원고들이 매도한 시점의 주가(즉, 원고들이 매도한 가격)의 차액이라고 하였다. 이 판결은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어떤 기업의 주식이 하락한 경우에 그 주식투자자의 손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 Ⅷ.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 1. 정정보도청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과 함께 이를 인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법원실무는 대체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청구도 받아들이고 있다.<sup>38)</sup> 피고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46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중 하나만을 인정한 재판례도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0. 6. 7. 선고 99가합88873 판결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및 경위, 이 사건 보도의 일회성, 이 사건 보도 직후 원고 A의 이외에 따라 곧 수정보도가 나간 점, 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손해배상과 별도의 정정보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sup>39)</sup>

이에 반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 12. 27. 선고 2000가합16898 판결은 “피고 소속 기자들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던 이른바 ‘웃 로버 의혹 사건’에 관하여 지속적인 취재를 거듭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사건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여지고, 위 보도 내용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상당 부분 진실에 부합하며, 한편 원고는 이른바 공인으로서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적인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38) 서울고등법원 2000. 2. 10. 선고 98나56579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p.314); 서울지방법원 2000. 1. 19. 선고 99가합42730(『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p.267);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77460 판결(『언론중재』 2000년 봄, p.144); 서울지방법원 2000. 7. 12. 선고 99가합90005 판결(『언론중재』, 2000년 가을, p.111).

39) 서울지방법원 2000. 6. 21. 선고 2000가합1377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가지 사정을 참작하건대, 피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으로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하기보다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만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2. 반론보도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와 방송법 제91조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40)</sup>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면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sup>41)</sup>은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송시열의 후손으로 구성된 원고 중증이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sup>42)</sup>은 문화방송의 ‘PD 수첩’ 프로그램의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반론보도등청구 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3항).”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실무를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해졌으나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 2차 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고 하였다.<sup>43)</sup> □

40) 종전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6년 법개정 이래 명칭을 변경하였다.

41)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p.54.

42) 공 2000. 1045 = 『언론중재』 2000년 여름, p.118. 이 판결에 관한 평석으로는 권형준, “반론보도의 범위와 한계,”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p.83 이하.

43)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0. 7. 13. 선고 99나61271, 61288, 61295 판결(『언론중재』, 2000년 가을, p. 134)은 MBC 뉴스데스크에 6회의 반론보도를 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방송이 첫 번째 방송의 요약이거나 신청인 교회신도들의 MBC 사옥 난입과 관련한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후속 보도 정도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는 두 번에 걸쳐 포괄적으로 행함이 합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2000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00년 한해 동안 총 607건의 중재신청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641건보다는 34건(5.3%) 감소한 것이긴 하지만 최근 3년동안 줄곧 6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다.

2000년도 중재신청사건의 특징으로는 첫째, 1997년 이후 30%대 이상의 합의율 지속, 둘째, 설립이래 가장 낮은 중재불성립결정률 기록, 셋째, 설립이래 가장 높은 실질적 피해구제율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20%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합의율은 개정정간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997년 32.8%, 1998년 37.5%, 1999년 38.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0년의 경우 32.6%로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0%대 이상의 합의율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중재불성립결정률은 1997년 16.1%, 1998년 16.1%, 1999년 15.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0년에는 10.9%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실질적 피해구제율 또한 1997년 61.3%, 1998년 59.6%, 1999년 59.6%에서 2000년 63.6%로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합의율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피해구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중재신청 접수 후 언론사가 정정 또는 반론 등을 게재해 줌으로써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하율은 1997년 45.5%, 1998년 41.5%, 1999년 36.6%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0년에

는 49.8%로 증가했지만 취하사건 중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은 1997년 48.4%, 1998년 42.4%, 1999년 38.8%에서 2000년 51.7%로 나타나 2000년에는 취하사건의 절반이 넘는 경우가 피해구제보도가 이뤄짐으로써 실질적 피해구제율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불성립결정률의 지속적 감소, 30%대의 합의율 유지, 취하사건의 절반이 넘는 피해구제보도 게재 등에 따른 실질적 피해구제율의 증가 현상은 결국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년 설립된 이후 20년간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많은 제도개선 노력과 합리적 운용을 통해 이제는 국민들 사이에 명실상부한 피해구제기관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996년 도입된 중재결정제도는 중재불성립결정사건에 대해 중재결정권을 행사하는 비율로 볼 때 1996년 시행초기에 5.3%에서 1997년 19.0%, 1998년 24.7%, 1999년 28.4%, 2000년 37.9%인 증가추세로 나타나 중재부가 점차 적극적으로 중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이의신청률이 1997년 33.3%, 1998년 41.7%, 1999년 62.1%로 증가하다 2000년 59.5%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시행초기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로서 중재결정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2000년 한해동안 93개 매체의 보도내용을 심의한 결과 234건의 심의기준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권고하였다.

시정권고건수는 1997년 92개 매체를 상대로 469건, 1998년 92개 매체를 상대로 348건, 1999년 88개 매체를 상대로 240건, 2000년 93개 매체를 상대로 234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권고 때문으로 보인다.

## ◇ 중재신청처리현황 ◇

### I. 중재처리결과현황

중재신청처리결과는 합의 198건(32.6%), 중재결정 25건(4.1%), 중재불성립결정 66건(10.9%), 기각 14건(2.3%), 각하 2건(0.3%), 취하 302건(49.8%)으로 나타났다.

합의율은 전년대비 5.5% 감소한 반면 취하율은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다.

한편 중재불성립결정률은 전년대비 5.0% 감소한 10.9%로 나타나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청사건의 피해구제보도율은 합의 98.5%, 중재결정 32.0%, 중재불성립결정 15.2%, 기각 14.3%, 취하 51.7%로 전체 피해구제보도율은 61.1%였다.

이는 전년도 전체 피해구제보도율 54.3%에 비해 6.8% 증가한 수치로서 전년도 취하사건의 피해구제보도율이 38.8%에서 51.7%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재신청사건 청구별 처리결과로는 신청사건 총 607건 중 반론보도청구 211건(34.8%), 정정보도청구 368건(60.6%), 추후보도청구 28건(4.6%)으로 나타나 1996년 정간법 개정으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가 구별된 이래 신청인들은 여전히 정정보도청구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처리결과를 보면 반론보도청구의 합의율이 39.3%로 정정보도청구의 합의율

27.4%보다 11.9% 앞선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피신청인으로서 정정보도청구보다 반론보도청구 수용에 훨씬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별 피해구제보도율을 보더라도 반론보도청구 66.4%, 정정보도청구 55.7%의 피해구제보도가 게재됨으로써 피해구제측면에서도 반론보도청구가 앞섰다. 더욱이 정정보도청구의 피해구제보도내용 중 25.4%는 반론형태의 보도내용으로서, 실제로 순수한 정정보도청구의 피해구제보도율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신청인에게는 반론보도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훨씬 용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정보도를 원하는 신청인의 완벽한 피해구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도개선과 언론사의 적극적 수용의지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재부가 중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는 총 25건으로 청구별로는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10건,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13건, 추후보도청구에 대해 2건이었고 중재부별로는 서울이 22건, 지방이 3건으로 서울중재부가 중재결정권 행사에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결정된 25건 중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은 10건에 불과해 중재결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적으로 결정문이 보도된 것도 이 중 6건에 불과했다. 다만 이의신청된 15건 중 법원판결 후 보도를 포함하여 2건이 피해구제보도가 이뤄졌다.

### II. 중재신청인 유형별 현황

중재신청인 유형으로는 개인신청사건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유형 중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체가 신청한 사건이 68건(11.2%)을 차지하였다.

새로운 변화로는 국가기관이 17건(2.8%),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가 25건(4.1%), 공공단

체가 19건(3.1%)을 신청하여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종교단체가 신청한 사건은 13건(2.2%)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개인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가가 87건(25.6%)으로 제일 많은 중재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국회의원 36건(10.6%), 공무원 28건(8.2%), 지방자치단체장·의원 23건(6.8%), 교육자 22건(6.5%)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의 경우 사업가 다음으로 공무원 64건(18.3%), 교육자 26건(7.4%), 회사원 22건(6.3%) 등의 순이었음을 비교해 볼 때 국회의원의 신청사건과 지방자치단체장·의원신청사건은 증가했고 공무원 신청사건은 감소했다.

이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년 4월 13일)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보도와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에 뉴스가치를 높게 두는 지역언론에 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재신청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이 신청한 사건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 신청사건이 전년도 41건(11.7%)에서 15건(4.4%)으로 감소하여 공무원 신청사건의 감소를 가져왔다.

피해구제보도율은 개인이 68.2%, 기관·단체가 52.1%로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피해구제보도율이 전년대비 14.8%나 증가했다. 이는 개인신청사건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가의 피해구제보도율 75.9%, 국회의원 80.6%, 지방자치단체장·의원 69.6% 등으로 높게 나타나 개인신청사건 전체의 피해구제보도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 Ⅲ. 중재대상 매체별 현황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사건이 176건(29.0%)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지방일간지 148건(24.4%), 방송매체 125건(20.6%), 주간신문 113건(18.6%)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경우 방송매체상대 신청건수가 171건(26.7%)으로 중앙일간지 다음으로 많았던 점과 비교해 볼 때 올해에는 방송매체상대 신청이 크게 감소했다.

방송매체상대 신청비율은 1997년 17.9%, 1998년 24.2%, 1999년 26.7%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0년에는 20.6%로 감소하였다. 방송매체 중에서는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체유형별 피해구제보도율을 보면 가장 많은 중재신청사건을 차지하는 중앙일간지의 경우 64.8%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고, 지방일간지의 경우도 59.5%로 6.7% 증가하였다. 주간신문 역시 72.6%로 10.5%나 크게 증가하여 신문매체의 경우에는 신청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피해구제보도율 또한 증가하였다.

방송매체의 경우 신청건수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피해구제보도율은 43.2%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다만, 신문매체의 경우 60%대 이상의 피해구제보도율을 기록한 반면 방송매체의 경우 아직 40%대에 머무르고 있어 신청인의 피해구제에는 방송매체가 여전히 인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Ⅳ. 중재대상 기사 현황

중재대상 기사를 내용별로 보면 사건·사고 등 사회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309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관련 기사 93건(15.3%), 경제관련 기사 61건(10.0%), 교육관련 기사 35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사회문제관련 기사와 종교관련 기사는 감소한 반면 정치관련 기사와 교육관련 기사는 증가하였다.

정치관련 기사의 증가는 국회의원과 지방자

치단제장·의원이 신청한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재대상 기사의 종류로는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305건(8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논단 및 칼럼 13건(3.8%), 가십기사 9건(2.6%), 사설 8건(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는 뉴스·해설이 94건(75.2%), 시사고발프로그램이 19건(15.2%)으로 중재대상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사의 취재원으로는 민원 및 제보를 통해 기사화한 경우가 228건(37.6%), 직접 인지하여 취재한 경우가 164건(27.0%), 민·형사 사건기록을 인용 보도한 경우가 116건(19.1%), 보도자료에 따른 보도가 57건(9.4%)으로 나타났다.

## V. 중재부별 처리 현황

중재부별 처리결과는 서울의 5개 중재부가 378건(62.3%), 지방 10개 중재부가 229건(37.7%)을 처리하여 서울에서 처리한 사건이 지방보다 149건(24.6%) 더 많아 서울 대 지방의 신청비율은 예년에 비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방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 52건(8.6%), 대구중재부 29건(4.8%), 광주중재부 28건(4.6%), 대전중재부 27건(4.4%), 충북중재부 21건(3.5%), 강원중재부 14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구, 대전, 강원, 충북중재부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중재부별 피해구제보도율은 전년도에는 서울중재부가 6.1% 앞섰으나 올해에는 서울중재

부와 지방중재부 모두 61.1%로 차이가 없었다.

지방중재부 중에서는 특히 경남중재부(86.7%), 강원중재부(85.7%), 경기중재부(73.1%), 전북중재부(72.2%) 등의 피해구제보도율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경기중재부의 경우 신청건수가 지방중재부 중에서 가장 많았고 피해구제율 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VI. 법원제소 현황

법원제소건수는 총 7건으로 중재처리결과 중 중재불성립결정된 66건 중 3건과 중재결정된 25건 중 이의신청된 4건이 법원에 제소되었다.

이 중 법조비리보도와 관련해 이종기 씨가 대전MBC-TV를 상대로 제소한 2건과 최재승 국회의원이 새익산신문을 상대로 제소한 1건, 경주시가 경주신문을 상대로 제소한 1건 등 4건이 인용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3건 중 2건은 취하되었으며 1건은 현재 계속 중이다.

## ◇ 시정권고현황 ◇

2000년에는 일간신문 74종, 주간지 9종, 주간신문 2종, 월간지 7종, 통신 1종 등 총 93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전년대비 2.5% 감소한 234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는 항정신성의약품 용량, 용법 공개기사가 97건(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의 신원공개기사 67건(28.6%), 성폭행 피해자 신원공개기사 54건(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중재신청처리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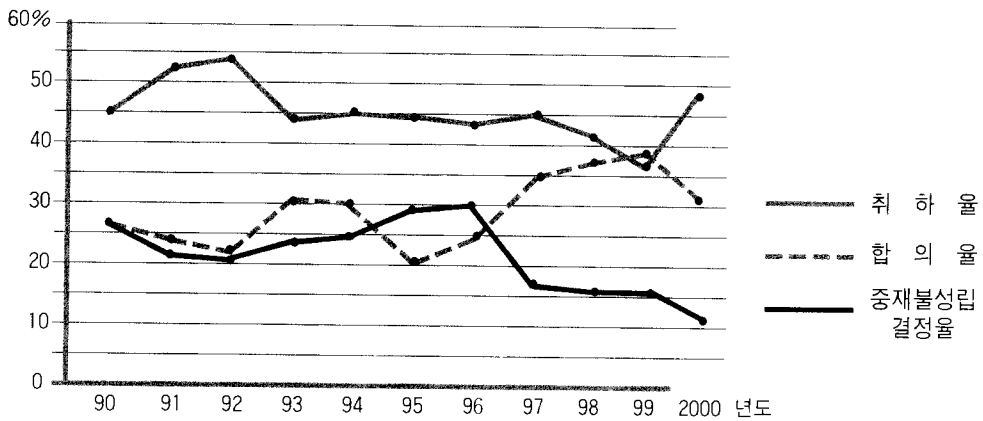
### 1. 중재신청처리현황

중재신청사건 처리결과

( )안은 %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607 (100)	198 (32.6)	25 (4.1)	66 (10.9)	14 (2.3)	2 (0.3)	302 (49.8)

1990년 이후 합의율 · 취하율 · 중재불성립결정률 추이비교



중재처리결과별 피해구제보도 현황

처리결과	총 건수	피해 구제 보도 건수	피 해 구 제 보 도 내 용										피해 구제 보도율 (%)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정정, 반론, 사과보도	
합의	198	195	102	4		54	7	1	14	13			98.5
중재결정	25	8	4			2				2			32.0
중재불성립 결정	66	10	6			1			2	1			15.2
기각	14	2				2							14.3
각하	2												0
취하	302	156	46	2	7	60	8	6	11	14	1	1	51.7
계	607	371	158	6	7	119	15	7	27	30	1	1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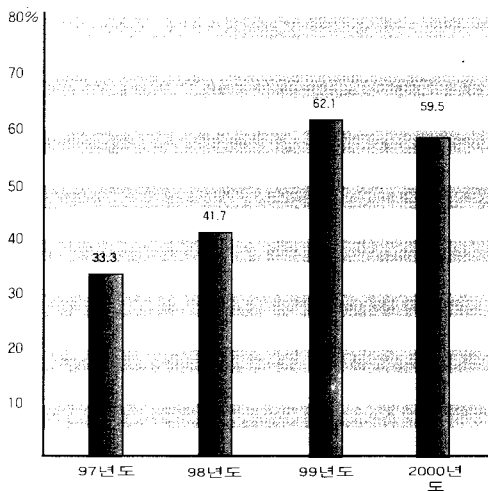
### 중재신청사건청구별 처리결과

처리 결과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반론보도청구	83	39.3	10	4.7	21	10.0	2	1.0			95	45.0	211	100
정정보도청구	101	27.4	13	3.5	44	12.0	12	3.3	2	0.5	196	53.3	368	100
추후보도청구	14	50.0	2	7.1	1	3.6					11	39.3	28	100
계	198	32.6	25	4.1	66	10.9	14	2.3	2	0.3	302	49.8	6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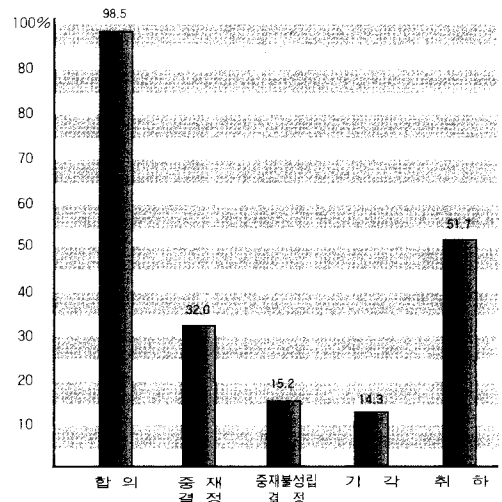
### 중재신청사건청구별 피해구제보도 현황

청 구 명	총 건수	피해 구제 보도 건수	피 해 구 제 보 도 내 용										피해 구제 보도율 (%)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정정· 반론 사과보도	
반론보도청구	211	140	113	5	1	15		2	4				66.4
정정보도청구	368	205	45	1	6	103	15	5	23	5	1	1	55.7
추후보도청구	28	26				1				25			92.9
계	607	371	158	6	7	119	15	7	27	30	1	1	61.1

### 중재결정 이의신청률 추이



### 중재결과별 피해구제보도율



II. 중재신청인 유형별 현황

신청인별 침해유형 및 중재처리결과

( )안은 %

신청인 유형 \ 침해유형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
개 인	328	5	7	120	14	23	5		178	340 (56.0)
국가기관	17			7	1	5			4	17 (2.8)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24	1		10	1	3			11	25 (4.1)
정 당	2				1	1				2 (0.3)
조합 및 협회	51			10	1	6	4		30	51 (8.4)
공공단체	18		1	3	1	2			13	19 (3.1)
일반단체	40	2	1	10		1	5	2	25	43 (7.1)
종교단체	13			5	1	5			2	13 (2.2)
기업체	60	4	4	21	4	14			29	68 (11.2)
언론사	14		1	7		4			3	14 (2.3)
교육기관	10			3	1	1			6	11 (1.8)
의료기관	4			2		1			1	4 (0.7)
계	581 (95.7)	12 (2.0)	14 (2.3)	198 (32.6)	25 (4.1)	66 (10.9)	14 (2.3)	2 (0.3)	302 (49.8)	607 (100)

신청인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신청인 유형	신청 건수	보도 건수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정정, 반론, 사과보도	보도율 (%)
개 인	340	232	86	5		78	10	4	19	29		1	68.2
국가기관	17	8	7			1							47.1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25	19	5			10	1		3				76.0
정 당	2	1	1										50.0
조합 및 협회	51	29	11	1	3	9	1	1	2		1		56.9
공공단체	19	10	6			3		1					52.6
일반단체	43	18	11		2	2	1	1		1			41.9
종교단체	13	6	6										46.2
기업체	68	34	18		2	12			2				50.0
언론사	14	9	6			1	2						64.3
교육기관	11	2				1			1				18.2
의료기관	4	3	1			2							75.0
계	607	371	158	6	7	119	15	7	27	30	1	1	61.1

신청인(개인의 경우) 직업별 침해유형 및 중재처리결과

( )안은 %

침해유형 개인의 직업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
회사원	14		1	6			1		8	15 (4.4)
공무원	28			8	3				17	28 (8.2)
국회의원	35		1	5	3	2			26	36 (10.6)
기초·광역 단체장/의원	22	1		12		3	2		6	23 (6.8)
정당/정치인	4								4	4 (1.2)
공공기관장	10			3		1			6	10 (2.9)
교육자	22			9		2	1		10	22 (6.5)
종교인	17			8	1	5			3	17 (5.0)
언론인	8			4	1				3	8 (2.3)
문화예술인	6			4					2	6 (1.8)
사업가	81	4	2	26	2	7			52	87 (25.6)
제1차산업 종사자	17		3	10	2	1			7	20 (5.9)
연예인	20								20	20 (5.9)
법조인	8			4	2	1			1	8 (2.3)
군인	1			1						1 (0.3)
의료인	4			3					1	4 (1.2)
학생	3			3						3 (0.9)
사회운동가	4			2					2	4 (1.2)
주부	1			1						1 (0.3)
무직	16			9		1	1		5	16 (4.7)
기타	7			2					5	7 (2.0)
계	328 (96.5)	5 (1.5)	7 (2.0)	120 (35.3)	14 (4.1)	23 (6.8)	5 (1.5)	0 (0.0)	178 (52.3)	3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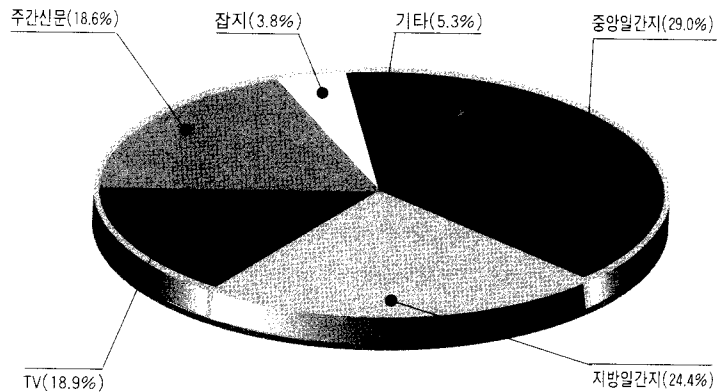
Ⅲ. 중재대상 매체별 현황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 )안은 %

처리결과		합 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신문	중앙일간지	27 (15.3)	12 (6.8)	16 (9.1)	7 (4.0)		114 (64.8)	176 (100)
	지방일간지	63 (42.6)	1 (0.7)	12 (8.1)			72 (48.6)	148 (100)
	주간신문	57 (50.4)	3 (2.7)	16 (14.2)		1 (0.9)	36 (31.8)	113 (100)
	기타신문	1 (20.0)	1 (20.0)				3 (60.0)	5 (100)
방송	TV	28 (24.3)	6 (5.2)	18 (15.7)	7 (6.1)	1 (0.9)	55 (47.8)	115 (100)
	라디오	5 (55.6)					4 (44.4)	9 (100)
	CATV	1 (100)						1 (100)
잡지		12 (52.2)	2 (8.7)	2 (8.7)			7 (30.4)	23 (100)
통신		4 (23.5)		2 (11.8)			11 (64.7)	17 (100)
계		198 (32.6)	25 (4.1)	66 (10.9)	14 (2.3)	2 (0.3)	302 (49.8)	607 (100)

매체별 중재신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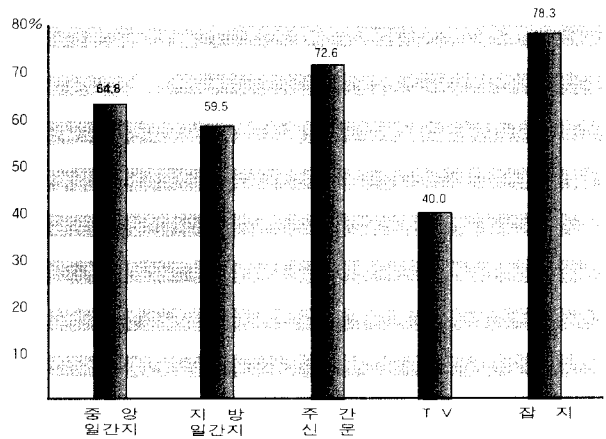


매체유형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 )안은 %

매체유형	신청건수	보도건수	반론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PR보도	정정, 반론, 사과보도	보도율 (%)
신문	중앙일간지	176	114	35	2	5	53	2	4	9	4		64.8
	지방일간지	148	88	39			30	1		7	11		59.5
	주간신문	113	82	48	1	1	16	6	2	5	2	1	72.6
	기타신문	5	4	2			1	1					80.0
방송	TV	115	46	21			9	2		2	12		40.0
	라디오	9	7	4	1					2			77.8
	CATV	1	1				1						100
잡지	23	18	6	2	1	6	1	1			1	78.3	
통신	17	11	3			3	2			2	1		64.7
계	607	371	158	6	7	119	15	7	27	30	1	1	61.1

매체별 피해구제보도율 비교



언론사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10	10			1					9
	국민일보	7	7			3					4
	내일신문	3	2		1	1		1			1
	노동일보	1			1	1					
	대한매일	9	9					3			6
	동아일보	16	16			2	2	2	1		9
	문화일보	10	10			2	1	2			5
	세계일보	6	6			1					5
	조선일보	13	12		1	1	2		1		9
	중앙일보	22	21		1	2		2	2		16
	한겨레	28	28			5	4	5			14
	한국일보	11	11			4		1			6
	소계	136	132	0	4	23	12	13	4	0	84
지방일간지	부산	국제신문	1	1			1				
	부산일보	11	11			3		1		7	
	대구·경북	경북도민일보	1	1							1
		경북일보	3	3							3
		광역일보	1	1			1				
		대구일보	2	2					1		1
		매일신문	5	4		1			2		3
		영남일보	8	7		1	2				6
	광주·전남	광주매일	1	1					1		
		광주일보	3	3			2				1
		광주타임스	5	5			1	1			3
		무등일보	4	4			1				3
		전광일보	3	3			2				1
		전남매일	2	2							2
		전남일보	4	4							4
	대전·충남	호남신문	2	2							2
		국도일보	2	2					2		
대전매일		4	4			2				2	
대전일보		5	5			3				2	
충도일보		5	5			3				2	
경기일보		6	6			3		1		2	
경도일보		1	1			1					
인천·경기	경인매일	4	4			3				1	
	경인일보	3	3			2				1	
	기호일보	3	3			3					
	수도권일보	3	3			1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의	증재결정	증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방일간지	인천·경기	전국매일	3			2					1
		중부일보	9	9		1					8
	강원	현대일보	2	2		1					1
		강원도민일보	4	4		2					2
	충북	강원일보	3	3		3					
		동양일보	7	7		5		1			1
		충청일보	6	6		4		1			1
	전북	한빛일보	2	1	1	1		1			
		전북도민일보	1	1							1
		전북일보	2	2		1					1
울산·경남	전북제일신문	1	1		1						
	가야일보	3	2	1	2		1				
	경남도민일보	3	3		2					1	
	경남신문	1	1		1						
	경남일보	3	3		3						
	경상일보	2	2							2	
	영남투데이	1	1							1	
제주	울산매일	1	1							1	
	한라일보	2	2							2	
소 계		148	144	2	2	63	1	12	0	0	72
경제지	내외경제	1		1							1
	매일경제	8	7		1			1	1		6
	서울경제	8	7	1				1	1		6
	파이낸셜뉴스	1	1			1					
	한국경제	6	6			1		1	1		3
소 계		24	21	2	1	2	0	3	3	0	16
스포츠지	스포츠서울	3	3			1					2
	스포츠조선	5	5			1					4
	스포츠투데이	3	3								3
	일간스포츠	5	4		1						5
소 계		16	15	0	1	2	0	0	0	0	14
특수일간지	국방일보	1	1								1
	법률일보	1	1								1
	전자신문	2	2			1					1
	환경일보	1	1				1				
소 계		5	5	0	0	1	1	0	0	0	3
통신	연합뉴스	17	16	1		4		2			11
	소 계	17	16	1	0	4	0	2	0	0	11
중앙방송	KBS-1TV	25	24		1	2		2	4	1	16
	KBS-2TV	3	3			2		1			
	MBC-TV	35	34		1	12	3	6			14
	SBS-TV	20	20			6	1	5			8

2000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매체 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방송	KBS-R	1	1			1					
	MBC-R	3	3			1					2
	CBS-R	2	2			1					1
	소 계	89	87	0	2	25	4	14	4	1	41
지역방송	강릉KBS-1TV	2	2			1					1
	광주KBS-1TV	1	1								1
	대구KBS-1TV	1	1								1
	대전KBS-1TV	5	5			1					4
	청주KBS-1TV	1	1					1			
	강릉MBC-TV	2	2					1			1
	대전MBC-TV	2	2				2				
	마산MBC-TV	1	1								1
	목포MBC-TV	1	1								1
	부산MBC-TV	1	1								1
	울산MBC-TV	3	3								3
	전주MBC-TV	2	2								2
	광주BBS-R	1	1								1
소 계	23	23	0	0	2	2	2	0	0	17	
지역민방	PSB-TV	2	2			1					1
	TJB-TV	1	1			1					
	CJB-TV	2	2			1		1			
	i-TV	1	1						1		
	J-TV	3	3					1	2		
	UBC	1	1			1					
	경기방송(R)	2	2			2					
소 계	12	12	0	0	6	0	2	3	0	1	
CATV	YBS	1	1			1					
	소 계	1	1	0	0	1	0	0	0	0	0
주간지	시사뉴스	1	1			1					
	시사저널	1	1								1
	주간조선	1	1				1				
	주간한국	1		1							1
	한겨레21	3	3			1	1	1			
소 계	7	6	1	0	2	2	1	0	0	2	
시사주간신문	대한선보	2	2								2
	민주신문	1	1			1					
	일요서울	1			1						1
	일요시사	1	1			1					
	일요신문	2	2								2
	주간내일신문	5	5			2					3
소 계	12	11	0	1	4	0	0	0	0	8	

매체 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증재 결정	증재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 역 주 간 신 문	강원리뷰	1	1			1						
	거창신문	1	1							1		
	경북중부신문	1	1									1
	경주신문	1	1					1				
	고령성주신문	1			1							1
	고양연합신문	2	2			1						1
	고창코리아신문	1		1		1						
	군산내일신문	1	1									1
	군포시민신문	1	1					1				
	김포미래신문	1		1								1
	김포신문	1		1		1						
	동두천신문	1	1			1						
	동두천양주시민신문	1	1					1				
	동작신문	1	1			1						
	리빙타임즈	1	1			1						
	보령신문	1	1			1						
	부천시민내일신문	1	1			1						
	새익산신문	1			1			1				
	서대문사람들	1	1			1						
	서울송파신문	2	2			2						
	서천신문	1	1			1						
	서해교차로	1	1			1						
	양주신문	1	1			1						
	연수신문	4	4			2						2
	영남신문	1	1			1						
	영서신문	1	1									1
	의정부신문	1	1			1						
	익산내일신문	1	1									1
	전주전북내일신문	2	2			2						
	주간홍성신문	1	1			1						
	진남신문	1	1									1
	진주신문	1	1			1						
	진천신문	1	1			1						
충주신문	1	1									1	
충청리뷰	1		1				1					
팔공신문	1	1									1	
한산신문	1	1			1							
함안신문	1	1			1							
소 계	44	38	4	2	26	0	5	0	1	12		
특 수 주간신문	경장복지장애인신문	1	1			1						
	교통관광신문	1	1			1						
	교통신문	1	1			1						

2000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배제 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 수 주 간 신 문	금융정보통신	1	1			1					
	기독교지도자교육신문	1	1			1					
	기독신문	4	4			1					3
	기독신보	1	1			1					
	까지라인부동산경제	1	1			1					
	농민신문	2	2					1			1
	농수산축산신문	1	1			1					
	목회자신문	4	4			1	1	2			
	미디어오늘	6	6			4		2			
	버섯정보신문	1	1								1
	법률신문	2	2				1				1
	불교신문	2	2				1	1			
	산림업신문	1	1					1			
	서울전자신문	2	2								2
	세계여행	1	1			1					
	순복음신문	2	2					2			
	스포츠연예신문	1	1			1					
	씨네21	2	2			1					1
	약사공론	1		1							1
	의협신보	2	2			1					1
	주얼리신문	1	1			1					
	청년의사	1	1								1
	치의신보	2	2			2					
	침례신문	1	1					1			
	한국교통신문	1	1			1					
	한국기독교신문	1	1			1					
	한국기술경제	1		1							1
	한국농어민신문	1	1			1					
	한국대학신문	2	2			1					1
	한국섬유신문	2	2					1			1
	한국영농신문	1	1			1					
	환경뉴스	2	2			1					1
	소계	37	55	2	0	27	3	11	0	0	16
	월 간 지	교회와이단	2	2			1				1
		뉴스광장	1	1					1		
		뉴스라인	1	1			1				
		레이디경향	1	1			1				
병리협보		1	1			1					
복지21		1		1						1	
소백춘추		2	2			2					
신동아		1	1							1	
에그리비즈니스	1	1			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일간지	월간버섯		1	1									1
	월간음악저널		1	1		1							
	월간자동판매기		1	1									1
	월간중앙		1	1		1							
	전국부동산뉴스		1	1		1							
	소계		16	15	0	1	10	0	1	0	0	0	5
총계			607	581	12	14	198	25	66	14	2		302

#### Ⅳ. 중재대상 기사 현황

##### 매체유형별 중재대상기사 내용 분류

매체유형	구분	기사내용	정치	경제	사회	과학환경	문화	생활정보	종교	의료건강	스포츠연예	부고 및 인물동정	교육	기타	계
	지방지	29	6	96	5	1				2		8	1		148
	경제지	3	15	2		1			3						24
	스포츠지		1	8						7					16
	특수일간지		1	3	1										5
	통신	2	5	7					1				2		17
	소계	72	38	174	10	3	3	5	8	10	1	21	1		346
방송	전국방송	7	6	48	8			1	13	2		4			89
	지역방송	2	2	20	6				1			4			35
	CATV			1											1
	소계	9	8	69	14	0	0	1	14	2	0	8	0		125
주간신문	시사종합지	3	1	7				1							12
	지역생활정보지	7	2	26	2	3			1		1	2			44
	종교지			1				15							16
	문화/교육관련지					2		1				2			5
	경제/산업관련지		8	5				1							14
	언론관련지			6											6
	의약/환경관련지		1	2					5						8
	기타			8											8
	소계	10	12	55	2	5	0	18	6	0	1	4	0		113
잡지	시사종합지	2	1	3				2	1			2			11
	지역생활정보지			2											2
	여성지			1											1
	종교지							2							2
	문화/의약관련지					1			1						2
	경제/산업관련지		2	1											3
	기타			2											2
	소계	2	3	9	0	1	0	4	2	0	0	2	0		23
총계			93	61	307	26	9	3	28	30	12	2	35	1	607

매체유형별 중재대상 기사의 종류

매체	기사 종류	빈도	백분율
일간신문·통신	스트레이트기사	305	88.1
	해설기사	1	0.3
	사설	8	2.3
	논단 및 칼럼	13	3.8
	가십기사	9	2.6
	인물·동경	1	0.3
	인터뷰	1	0.3
	심층조사기사	6	1.7
	기타	2	0.6
	계	346	100
방 송	뉴스·해설	94	75.2
	시사고발	19	15.2
	교양·정보	6	4.8
	연애·오락	5	4.0
송	다큐멘터리	1	0.8
	계	125	100

매체유형별 취재원 분류

( )안은 %

매체유형	취재원							계
	직접 인지 취재	민원 및 재보	민·형사 사건 기록	보도 자료 발표	통신· 타언론 매체	기 타		
일간신문·통신	91	116	78	45	8	8	346	
방 송	30	49	30	7	4	5	125	
주간신문	35	54	7	5	3	9	113	
잡 지	8	9	1		3	2	23	
계	164 (27.0)	228 (37.6)	116 (19.1)	57 (9.4)	18 (3.0)	24 (3.9)	607 (100)	

V.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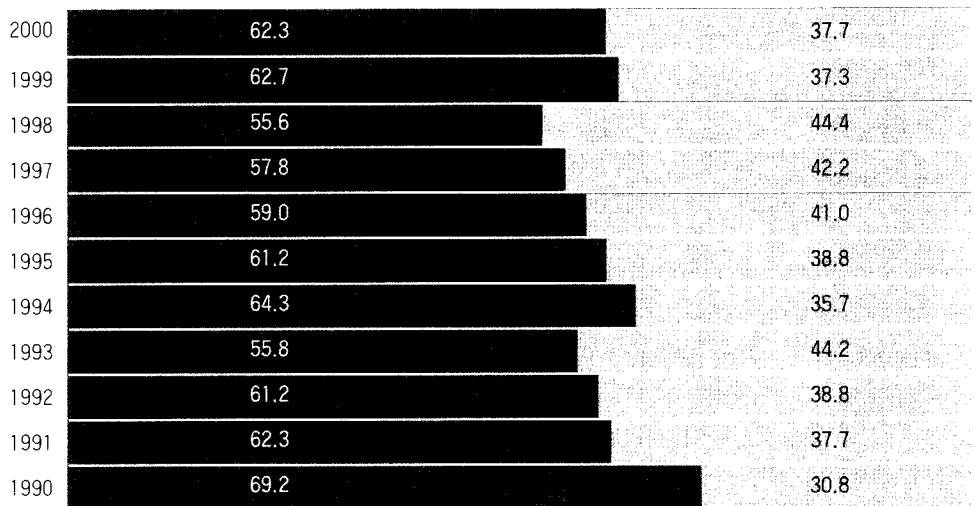
( )안은 %

중재부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비고
		합 의	중재결정		중재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의	이의					
서울중재부	378 (100)	99 (26.2)	10 (2.6)	12 (3.2)	45 (11.9)	11 (2.9)	1 (0.3)	200 (52.9)	
부산중재부	23 (100)	7 (30.4)			1 (4.3)			15 (65.2)	
대구중재부	29 (100)	6 (20.7)			4 (13.8)			19 (65.5)	
광주중재부	28 (100)	6 (21.4)		1 (3.6)	1 (3.6)			20 (71.4)	
대전중재부	27 (100)	13 (48.2)		2 (7.4)	2 (7.4)			10 (37.0)	
경기중재부	52 (100)	28 (53.8)			3 (5.8)	1 (1.9)		20 (38.5)	
강원중재부	14 (100)	8 (57.1)			1 (7.2)			5 (35.7)	
충북중재부	21 (100)	12 (57.1)			6 (28.6)			3 (14.3)	
전북중재부	18 (100)	8 (44.5)			2 (11.1)	2 (11.1)		6 (33.3)	
경남중재부	15 (100)	11 (73.3)			1 (6.7)		1 (6.7)	2 (13.3)	
제주중재부	2 (100)							2 (100)	
계	607 (100)	198 (32.6)	10 (1.6)	15 (2.5)	66 (10.9)	14 (2.3)	2 (0.3)	302 (49.8)	

중재부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중재부	신청건수	보도건수	반론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PR보도	정정, 반론, 사과보도	보도율 (%)
서울중재부	378	231	88	4	6	84	9	7	16	15	1	1	61.1
부산중재부	23	10	3			6				1			43.5
대구중재부	29	13	7			3	1			2			44.8
광주중재부	28	9	2			7							32.1
대전중재부	27	16	14							2			59.3
경기중재부	52	38	15		1	13	1		5	3			73.1
강원중재부	14	12	6			1	1			4			85.7
충북중재부	21	14	10						2	2			66.7
전북중재부	18	13	5	2		2	3		1				72.2
경남중재부	15	13	6			3			3	1			86.7
제주중재부	2	2	2										100
계	607	371	158	6	7	119	15	7	27	30	1	1	61.1

서울·지방간 중재신청 구성비율추이



서울

지방

Ⅶ.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현황

( )안은 법원제소 후 보도

매 체 명	제소건수	1 심 결 과					
		인 용	기 각	각 하	화 해	취 하	계 속
대한매일	1					1	
문화일보	1					1	
경주신문	1(1)	1					
새익산신문	1(1)	1					
대전MBC-TV	2(1)	2					
J-TV	1						1
계	7(3)	4				2	1

◇ 2000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

(대상기간 : 2000. 1. 1.~2000. 12. 31.)

매 체	시정권고 건수	침해유형	침 해 유 형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향정신성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중 앙	경향신문	3	2						1	
	국민일보	7	2			1			4	
	내일신문	0								
	대한매일	4	2						2	
	동아일보	3	1						2	
지	문화일보	4	1	1		1			1	
	세계일보	2	1						1	
	조선일보	3	1						2	
	중앙일보	6							6	
	한겨레	1	1							
	한국일보	1							1	

침해유형 시정권고 건수 매 체		침 해 유 형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중 앙 지	스포츠서울	3	1					2	
	스포츠조선	0							
	일간스포츠	2						2	
	스포츠투데이	1	1						
	내 외 경 제	0							
	매 일 경 제	2						2	
	서 울 경 제	0							
	한 국 경 제	1	1						
	코리아타임즈	0							
	코리아헤럴드	0							
소 계	43	14	1	0	2	0	0	26	0
부 지 대 구 · 경 북 방 강 주 · 전 지 남	국 제 신 문	4	2			2			
	부 산 일 보	3	1			1		1	
	경북도민일보	1						1	
	경 북 매 일	7	2			2		3	
	경 북 일 보	3				1		2	
	광 역 일 보	6	1		1	3		1	
	대 구 일 보	4	1		1	2			
	영 남 일 보	0							
	매 일 신 문	4	1			2		1	
	광 주 매 일	2	1					1	
광 주 일 보	3	1			1		1		
광주타임즈	2		1		1				
복 포 일 보	0								
부 등 일 보	2				1			1	
전 광 일 보	3				2			1	
전 남 매 일	3	1						2	
전 남 일 보	4				2			2	
호 남 매 일	0								
호 남 신 문	5				2			3	

매체		시정권고 건수	침해유형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회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 공개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용량, 용법 공개	기타
대전·충남	국도일보	1							1	
	대전매일	2	1						1	
	대전일보	10	2		1	3			4	
	중도일보	7	1	1		3			2	
인천·경기	경기일보	5	2			1			2	
	경도일보	1							1	
	경인매일	9	4			1			4	
	경인일보	4	1			2			1	
	기호일보	1	1							
	수도권일보	1			1					
	인천일보	6				4			2	
	중부일보	4	1						3	
	전국매일	3	1			1			1	
	경기도민일보	5	3			1			1	
강원	현대일보	3	1			1			1	
	강원도민일보	2				1			1	
	강원일보	5	1		1	2			1	
	동양일보	5		1		2			2	
충북	중부매일	3	1	1		1				
	충청일보	6	2			4				
	한빛일보	1			1					
	대전북신문	0								
전북	전북도민일보	1							1	
	전북매일	1							1	
	전북일보	1							1	
	전북제일신문	1							1	
	전주일보	2				1			1	
	가야일보	6				3			3	
울산·경남	경남신문	0								
	경남일보	5	1			3			1	

침해유형		침 해 유 형							공중도덕침해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기 타	사 회 실 서 침 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매 체	시정권고 건수										
지 방 지	울산·경남	경 상 일 보	2					1		1	
		영남투데이	6	1		1	1			3	
		울 산 매 일	5			1	2	1		1	
	채	제 민 일 보	0								
	주	제 주 일 보	0								
		한 라 일 보	0								
	소 계	170	35	4	8	59	2	0	62	0	
통신		연 합 뉴 스	17	5	1		5			6	
		소 계	17	5	1	0	5	0	0	6	0
주 간 지· 주 간 신 문		뉴스메이커	0								
		뉴스위크	0								
		뉴스피플	0								
		시사저널	0								
		일요시사	3				1			2	
		일요신문	0								
		주간동아	0								
		주간조선	0								
		주간한국	1							1	
		한겨레21	0								
		환경비즈니스	0								
		소 계	4	0	0	0	1	0	0	3	0
	월 간 지		레이디경향	0							
		말	0								
		신동아	0								
		우먼센스	0								
		월간조선	0								
		월간중앙	0								
		한국논단	0								
	소 계	0	0	0	0	0	0	0	0	0	
총 계		234	54	6	8	67	2	0	97	0	

\* 심의대상매체 : 일간지 74종, 주간신문 2종, 주간지 9종, 월간지 7종, 통신 1종

◇ 연도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

1. 언론중재신청 처리현황

처리결과

( )안은 %

구 분 연 도	신 청 건 수	처 리 결 과							비 고
		합 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	1	2	20	
1982	50	19			19		2	10	
1983	71	21			22	1	1	26	
1984	54	12			29	3		10	
1985	59	12			28	4		15	
1986	49	14			10	1		24	
1987	47	10			9	1		27	
1988	55	16			12		1	26	
1989	121	29			35		6	51	
1990	159	42			43	1	2	71	
1991	220	52			48	3	1	116	
1992	381	81			79	19		202	
1993	423	132			96	8	2	185	
1994	541	162			127	7		245	
1995	528	111			150	26	3	238	
1996	556	129	2	7	169	9	1	239	
1997	490	161	10	5	79	8	4	223	
1998	602	226	14	10	97	5		250	
1999	641	244	11	18	102	24	5	237	
2000	607	198	10	15	66	14	2	302	
계	5,698 (100)	1,680 (29.5)	47 (0.8)	55 (1.0)	1,232 (21.6)	135 (2.4)	32 (0.6)	2,517 (44.2)	

\* 중재결정권은 개정법률에 의해 1996년 7월 1일부터 행사되었다.

연도별 실질적 피해구제율

구 분 연 도	신 청 건 수	중재 건 수	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취 하	소 계	
				동 의	이 의				
1981	44	41	9			5	2	16	39.0
1982	50	48	19			5	4	28	58.3
1983	71	69	21			7	8	36	52.2
1984	54	51	12			8	5	25	49.0
1985	59	55	12			5	7	24	43.6
1986	49	48	14			2	11	27	56.3
1987	47	46	10			4	2	16	34.8
1988	55	54	16			5	13	34	63.0
1989	121	115	29			10	21	60	52.2
1990	159	156	42			10	40	92	59.0
1991	220	216	52			9	43	104	48.1
1992	381	362	81			12	107	200	55.2
1993	423	413	132			16	84	232	56.2
1994	541	534	162			10	128	300	56.2
1995	528	499	111			25	124	260	52.1
1996	556	546	129	2	1	21	137	290	53.1
1997	490	478	161	10	1	13	108	293	61.3
1998	602	597	226	14	2	8	106	356	59.6
1999	641	612	244	11	2	16	92	365	59.6
2000	607	591	198	10	2	10	156	376	63.6
계	5,698	5,531	1,680	47	8	201	1,198	3,134	56.7

중재부별 중재신청건수

( )안은 %

연도 \ 중재부	신청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981	44	37	5	1					1			
1982	50	44	3		1		1	1				
1983	71	61	8		1		1					
1984	54	46	3		1	2	1	1				
1985	59	48	3	2		1	1	1	1		2	
1986	49	38	3				1	3	2		2	
1987	47	42	1	1	1		1		1			
1988	55	41	2	1	3	1		2	3	1	1	
1989	121	78	14	2	8	1	6		3	2	4	3
1990	159	110	12	3	7	3	10	1	5	2	4	2
1991	220	137	20	7	9	5	10	3	3	10	12	4
1992	381	233	21	7	15	11	41	6	12	14	19	2
1993	423	236	32	25	23	15	37	9	9	16	19	2
1994	541	348	21	19	23	21	46	5	16	17	19	6
1995	528	323	27	9	15	23	55	14	16	25	13	8
1996	556	328	27	13	35	23	66	8	17	18	18	3
1997	490	283	29	24	23	15	46	14	22	11	20	3
1998	602	335	24	22	61	18	62	14	23	19	18	6
1999	641	402	27	18	43	13	62	10	16	28	16	6
2000	607	378	23	29	28	27	52	14	21	18	15	2
계	5,698 (100)	3,548 (62.3)	305 (5.4)	183 (3.2)	297 (5.2)	179 (3.1)	499 (8.8)	106 (1.9)	171 (3.0)	181 (3.2)	182 (3.2)	47 (0.8)

## II.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 현황 (1심)

( )안은 %

연 도	제소건수	인 용	기 각	각 하	화 해	취 하	계 속
1981	4		2		2		
1982	3	2	1				
1983	7	4	2			1	
1984	8		4			4	
1985	12		2		1	9	
1986	2	1				1	
1987	4	1				3	
1988	7	3	1			3	
1989	10	7	1			2	
1990	12	3	2	2	1	4	
1991	6	3	1			2	
1992	33	4	11		3	15	
1993	20	9	2	3	1	5	
1994	30	14	1		2	13	
1995	53	20	14	1	4	14	
1996	30	9	1			20	
1997	10	5	3			2	
1998	22	15	2			5	
1999	30	19		2		6	3
2000	7	4				2	1
계	310 (100)	123 (39.7)	50 (16.1)	8 (2.6)	14 (4.5)	111 (35.8)	4 (1.3)

Ⅲ. 시정권고 현황

( )안은 %

연 도	구 분  시정 권고 건수	침 해 유 형								간 별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일 간 지	주 간 지 / 주 간 신 문	월 간 지	통 신
		성폭행 당한자 신원 공표	정신 질환자 신원 공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적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	109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계	3,625 (100)	646 (17.8)	117 (3.2)	1,377 (38.0)	579 (16.0)	226 (6.2)	1 (0.1)	655 (18.1)	24 (0.7)	3,483 (96.1)	26 (0.7)	12 (0.3)	104 (2.9)

# 신문 공기와 흥기 시작

최정환  
변호사

## 집단언어와 개인언어

정보화 시대에 우리의 경험이란 대중매체의 전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틈도 없이,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정보를 통해 마치 현실과 같은 대리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유통시키는 대중매체는 필연적으로 그 보도에 기초한 집단언어를 만들어낸다. 그러한 집단언어가 사회의 변동을 촉발시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하지만, 때로는 선동적이고 충동적인 지탄과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언론에 의하여 주도되는 집단언어가 충동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개인언어를 무력하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더욱이 대중에 대한 오락적 보도를 내용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스포츠지나 텔레비전 연예 프로그램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상품화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내용을 보도하면, 그것은 곧바로 오도된 집단언어를 양산한다. 정작 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는

마구 쏟아지는 그릇된 보도와 선정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언어로 변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 스포츠지에서 연일 1면 톱기사로 다루었던 가수 B씨 비디오 사건의 기사가 그러한 예이다. 검찰의 사건 수사에 의하여 사건의 전말이 어느 정도 밝혀진 지금, 그 동안의 스포츠지들의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스포츠지들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는 보도나 사생활을 마구 들추는 보도, 선정적인 보도, 뉴스 가치가 전혀 없는 내용의 과장 보도를 남발하

였음을 알게 된다.

특히 이 가수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의 추이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대리인 자격으로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던 필자로서는 스포츠지의 기사를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스포츠지들은 사건을 특종으로 다루면서 소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모습을 보였으나, 반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사나운 폭풍 앞에서 이 가수의 인격권은 그야말로 위태로운 촛불에 불과하였다. 언론이라는 집단언어가 가수 B씨라는 개인언어를 황폐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 가수 B씨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2000년 11월 6일 B씨 비디오가 미국의 한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유포 직후에 B씨 측이 그러한 비디오의 존재를 부인하

자, 사건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1월 23일 SBS 방송의 한 연예정보 프로그램이 비디오의 남자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김모 씨의 전화 인터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하면서 사건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B씨 데뷔 앨범의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김모 씨는 그 비디오는 사실이며 "내가 비디오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였다. 파문이 더욱 확산되자 B씨는 모든 것을 밝히고,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B씨는 11월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비디오가 그녀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음을 밝히고, 촬영자인 김모 씨와 기타 비디오 유포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12월 초에는 여성단체연합이 SBS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의 보도를 문제삼아 SBS 사장 및 담당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2001년 1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B씨 비디오는 김모 씨

가 찍은 '몰래 카메라'이며, 김모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금전을 목적으로 직접 비디오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

### 가수 B씨 사건에 대한 스포츠지 보도의 문제점

우리 대법원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구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물론 마감시간에 쫓기는 일선 기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두 법익의 조정과 한

계의 문제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스포츠지의 이 사건 보도를 살펴보면 과연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량이 있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선정적 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이번 비디오 사건은 그 사건의 성격상 어느 정도 독자의 선정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선정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지들은 예외없이 비디오의 장면이나 전라의 사진을 그대로 실었으며 (스포츠투데이 11월 22일, 일간스포츠 11월 24일, 스포츠조선 11월 26일) 선정적인 기사를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비디오를 관람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문제의 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하여 순식

간에 퍼져 나가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 성적 호기심에 집착하는 우리 사회를 비판하고 타인의 사생활 훑쳐보기에 열중하는 대중을 꾸짖어야 할 언론이, 오히려 비디오의 내용을 선전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다루었던 스포츠지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칠 정도의 선정성으로 인해 그것이 사건에 대한 사실 보도인지 성애 영화의 선전문인지 구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며 대화 중인 ○○○ 씨의 모습이 나오고 또다시 배경이 바뀌면 검정색 바지에 긴팔 검정색 스웨터를 입은 ○○○ 씨가 바지를 벗고 “불꺼 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는 몇 가지 체위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데 여자의 신음 소리가 상당히 크다.

(A스포츠지 11월 27일자 기사)

섹스 장면 부분. ○○○ 씨와 닮은 여자가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움직이는 모습은 물론 남녀가 몇 가지 체위로 섹스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남자는 시중 휴지를 이마에 두르고 섹스를 하는데 이 휴지로 여자의 몸에 땀뿍을 닦아주는 모습도 담겨 있다.

(B스포츠지 11월 25일자 기사)

특정 부위를 강조, 남녀의 치마가 현히 드러나는 장면을 클로즈업시키는가 하면 후반부에는 하이라이트식으로 놓

도 짙은 장면들을 재편집하고 있다. 특히 남자는 섹스신이 카메라 앵글에 잘 잡히도록 이불을 차내고 여자는 이불로 가리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C스포츠지 11월 26일자 기사)

.....

이러한 선정적인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 특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에 틀림없다. 남녀간의 성적 교섭에 관한 사항은 인간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으로서 절대적 보호를 받는 내밀 영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언론이 이러한 사적인 사항을 대중 앞에 공개하는 것은 언론이 누려야 할 자유의 영역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대법원도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 개인의 입장에 선 경우 공개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언론 보도라고 하더라도, 그

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legitimate public concern) 가 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란 “건전한 기준을 가진 공중의 합리적인 구성원이 통상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이라고 할 것인데, 건전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부 계층의 저급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사는 결코 면책받을 수 없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비디오에 나타난 성행위 장면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는 건전한 감수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당사자가 되면 공개를 바라지 않을 내용이므로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 사실확인이 없는 목적성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SBS 방송이 비디오의 주인공이라는 김모 씨의 인터뷰 육성내용을 그대로 방영한 이후, 두 스포츠 신문은 김모

씨와의 전화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그 기사에서 김모 씨는 비디오가 몰래 카메라라는 B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비디오를 합의하에 찍었으며, 찍은 후에 같이 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 씨 비디오의 남성 상대인 김○○ 씨가 30일 오전 8시 30분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김○○ 씨는 29일 ○○○ 씨가 기자회견에서 “섹스 비디오 촬영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데 대해 “비디오는 둘이 합의하에 찍은 사랑의 징표”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B스포츠지 11월 30일자 기사)

○○○ 씨가 기자회견에서 몰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에 너무 놀랐다. 심장이 떨린다... 섹스를 끝내고 나서 둘이 옷을 입고 잠만치며 샵카메라를 찍었는데, 몰카라니 말도 안된다. 그런데도 딱 잡아매며 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다니 그냥 있을 수 없다.

(D스포츠지 11월 30일자 기사)

\*\*\*\*\*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문제의 비디오는 김모 씨가 B씨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하였으며, 그러한 비디오를 인터넷상에서 유포시키려고 했던 범인이 바로 김씨 본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김씨는 애당초 인터넷상의 비디오의 판매

가 부진하자, 자신이 직접 비디오가 사실임을 폭로하고 비디오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어서 판매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했던 것이 드러났다. 결국 SBS방송이나 스포츠지들은 김씨의 파렴치한 의도에 장단을 맞추는 꼴이 되었고, 의도적인 성행위 비디오임을 부인하였던 가수 B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결과가 되었다.

언론보도가 이와 같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기자가 그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특히 사건 관련자가 사건의 내용을 스스로 폭로하는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그러한 폭로가 실제로 있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폭로 내용이 진실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취재원이나 인터뷰의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검증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 그 진실성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성의있는 취재 과정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언론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결국 비디오속의 상대 남자의 폭로성 인터뷰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스포츠 신문들이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려는 성의있는 취재과정도 전혀 없이 그대로 여과없이 보도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 추측성 기사의 남발

이번 사건 보도에서 각 스포츠지들은 경쟁적으로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날마다 B씨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혀 진실이 담보되지 않는 그릇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B씨는 비디오가 유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광에서 체류하다가 기자회견이 열리던 날 아침에 귀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지들은 사건 보도 내내 마치 B씨가 외국에 나간 것처럼 대중들을 속이고 사실은 국내에서 잠적하고 있는 것인 양 추측 보도를 내보냈다. 또한 사이트의 운영자나 유포자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추측성 보도를 남발하였다. 특히 비디오를 유포한 사이트가 40억 원을 벌었다는 데에서 추측성의 허위 보도는 동종의 범죄를 모방하려는 불순한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의 헛된 욕망을 심어주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

○○○ 씨는 소문과 달리 외국에 출국하지 않고 서울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씨는 올 초 미국과 광을 다녀온 기록 외에는 현재까지 출국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비디오 파문이 워낙 급속도로 퍼져 외국으로 출국할 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스포츠지 11월 26일자 기사)

이 유료 사이트에서 비디오에 걸어 놓은 복제방지장치가 풀린 24일까지의 6일 동안 비디오를 다운받은 사람의 수는 2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40억 원. 소문대로 3억~4억 원에 비디오를 사들였다고 해도 5~6배 장사를 한 셈. 또 ○○○ 씨가 1.2집을 합해 벌어들인 음반판매 총 수익의 두 배 가까운 돈이다.

(C스포츠지 11월 27일자 기사)

\*\*\*\*\*

이러한 추측에 의한 허위 사실의 보도는 법적인 처벌의 대상은 아닐 것이나, 독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판단을 유도한다는 면에서 결국 언론윤리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 유해정보의 제공

이 사건을 보도했던 스포츠지에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의 저속한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면서 불건전한 비디오의 유통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

○○○ 씨 비디오는 1시간 30분짜리 풀버전인 CD와 비디오 테이프 등 두 종류. 화질개선 작업의 정도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청계천에서 단순 복사본은 1만~2만 원선, 화질이 좋은 비디오는 4만~8만 원에 팔고 있었다.

(B스포츠지 11월 25일자 기사)

최근 복제방지장치가 풀려 사이버 공간 여기저기에 마구 나돌고 있는 ○양 동영상은 압축이 많이 돼 화질과 음질이 좋지 않은 ASF파일로 제작돼 있다. 이 파일은 40분 정도의 양이다.

(D스포츠지 11월 29일자 기사)

네티즌들이 가장 목마르게 찾고 있는 파일은 25일 오후부터 등장한 풀버전이다. 40분짜리 정사 장면 천량이 들어가고, 돈을 낼 필요없이 암호를 풀어놓은 파일이다. 암호가 걸린 파일이 본격적으로 인터넷에 오른 게 25일 새벽. 반나절만에 컴퓨터 고수들이 이를 상용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C스포츠투지 11월 26일자 기사)

\*\*\*\*\*

이러한 기사들은 유통되어서는 안 될 비디오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와 가격에 대한 정보와 인터넷상에서 암호가 풀린 비디오의 동영상 파일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정보까지 독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비디오의 불법적 유통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바람직한 보도 방향

이번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스포츠지가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한 반면, 일간 신문들은 짙막한 가십성 보도를 통해 사건을 하나의 해프닝로 무시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다루었던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사는 우리 언론과는 사뭇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하여 시사하는 바가 컸다.

워싱턴포스트지는 12월 25일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사회적 현상, 이에 대한 다양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반응 및 이를 통하여 바라본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분석과 진단을 담았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소비자뉴스 컬럼니스트, 부동산 중개인, 야채장수, 변호사, 가수, 지망생, 예로배우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한국 사회 각 계층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집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인의 문화적 의식 및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사건은 단지 일개 연예인의 성추문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성문화 및 구성원의 의식구조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리트머스지였다. 단순한 사실보도뿐만 아니라 사회를 진단하고 이를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을 단순히 전통적인 도덕, 윤리관의 붕괴와 갈등이라는 수준에서 논의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시각, 사회 각 계층별, 세대별 대응방법, 성에 대한 의식 등을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삼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이 사건이 어떤 문화적, 사회적 파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채, 대중들의 관음증적인 호기심만 부추겼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보도에서 스포츠 신문들이 보여주었던 황색 저널리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장한 언론 기업의 극단적인 이윤 추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언론이 사실의 보도와 전달을 가장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릇되고 불건전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공기(公器)를 가장한 폭력적인 흥기가 되고 말 것이다. □

## 1년간의 즐거운 외도

이진성

전 중재위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평소에 언론으로부터 그 날 그 날의 소식을 접하긴 하여도 법원 관련 기사가 실릴 때에나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언론에는 문외한인 내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제5 중재부의 구성원이 되어 언론중재업무를 할 수 있게된 것은 재판업무 말고 다른 분야에 눈길 돌릴 여지없이 지내오던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언론계, 학계 등 다방면의 위원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경험이나 시각에 눈뜰 수 있었던 것 또한 커다란 행운이었다. 지난 2월의 인사발령으로 서울지방법원을 떠남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촉되어 1년간의 즐거운 외도는 끝났지만, 한 해 동안 언론중재업무를 맡으며 만났던 분들로부터 받았던 즐거움과 아쉬움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언론중재부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자신의 출신 분야를 대변하면서도 신청인이나 언론기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또 위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다채로운 경력을 바탕으로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는 과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법관인 중재부장이 중재 성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방법은 중재가 불성립되어 소송이 제기되면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경우 보도가 사실에 어긋남이 밝혀지지 않으면 성질상 정정보도가 불가능함을 설득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양보를 이끌어 내 반론보도로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중재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은 합의에 이르더라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언론계나 학계 출신 위원들은 단순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범위를 벗어나 기획기사나 속보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신청인은 중재를 신청한 목적을 사실상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언론사로서는 문제되었던 기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같은 방법은 양 당사자들이 손해를 보았다는 느낌 없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윈윈게임이 될 것이고 법원의 조정절차에서는 쉽사리 보기 어려운 신선한 분쟁해결방법이었다.

중재신청인들을 보면, 재판의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중재신청할 일이 일생에 단 한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중재절차에 익숙하거나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요령 있게 진술한 경우는 드물었지만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 점

**법원의 조정절차에서는  
쉽사리 보기 어려운 신선한  
분쟁해결 방법을 중재과정에서 경험**

은 미리 꾸며진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의 내용을 표현한 결과라고 본다. 이제까지 법원의 재판이 많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 때문에 법정에서는 미리 제출된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한다는 말만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서면에 의하여 진행하고 말로써 진행되는 경우는 법원이 불명확한 사건의 내용을 물어보거나 증인이 증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도 미리 준비된 증인신문사항에 의하기 때문에 기억에 의한 증언이라기보다는 준비된 증언일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한다면 언론중재절차를 이용하는 신청인들은 칭찬 받을 만하다. 앞서 '이제까지' 라고 표현한 것은 법원이 올 3월부터는 서면을 미리 제출하고 재판기일에는 글보다는 말로써 자신의 주장요지를 충분히 진술하게 하면서, 증인에게도 예, 아니오 식의 답변을 유도하기보다는 단문장답형의 신문을 하게 하는 등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신청인측에 아쉬운 것은 신청인의 대리인이 오히려 사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중재에 관하여 완전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 심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끝으로 피신청인인 언론기관에 대하여 말하자면 언론기관의 대리인들이 보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중재절차에서 이를 솔직히 시인하고 신청을 일정 부분 수용할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측과 대비해볼 때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의 전반적인 세태가 공정성,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강조하며, 더욱이 신속을 요체로 하는 언론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취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취하여야 할 자세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는 측면에서 역시 즐거운 일이다. 한 가지 아쉽다면 기획기사나 고발프로그램, 기고문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므로 관계자들의 단편적인 몇 마디 말 또는 불확실한 제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사주제와 관련해 움직일 수 없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보도한다면 분쟁을 예방하고, 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문외한이 짧은 글 속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그 동안 서울제5중재부가 분쟁의 해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부장을 맡았던 내 탓이며, 언젠가될지 몰라도 언론과 관련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질 때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겠다. □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에는  
미성년 피의자라도  
실명보도 용인될 수 있어**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는 “본인으로 추지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한 소년법 61조는 죄를 범한 청소년의 실명보도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중대한 사건 등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에는 실명보도도 용인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1998년 1월 오사카에서 발생한 노상강도 사건의 살인죄로 입건된 원고(사건 당시 19세, 1심에서 징역 18년의 판결을 받고 항소)는 월간지 ‘新潮45’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사진이 게재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발행사인 新潮社 등을 상대로 2,20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는 2000년 12월 6일 실명보도를 용인한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 최고재판소가 7일 이를 수리함으로써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新潮社는 1998년 2월에 발매한 ‘新潮45’ 3월호에 피의자 소년의 출신, 가정환경, 실명, 얼굴사진 등을 게재했다. 1심인 오사카지방법판소는 “소년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실명으로 보도할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新潮社측에 25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일본의 소년법 61조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공소된 자의 이름, 연령, 직업, 주거, 용모 등으로 당해 사건의 본인이라고 추지될 수 있는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新聞協會報』, 2000. 12. 12.) □

**영국, 언론인의 주식거래 공개를  
둘러싸고 논쟁**

영국 PCC는 모든 언론인의 주식 거래 현황을 공개토록 하려는 재무부의 움직임에 앞서 경제지 기자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전망이다.

재무부의 제안서에 따르면 장관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자율적인 공개의 수준을 넘어 신문, 방송 및 뉴미디어에 종사하는 모든 기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유가증권 현황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자와 편집인은 예외 없이 주식 보유 현황을 독자들에게 밝혀야 할 처지인 것이다. 또한 “언론인의 주식공개가 이뤄진 후에야 독자들은 기사의 독립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PCC의 가이드라인은 경제 저널리즘에 관한 현 보도실천강령과 그 맥을 같이 할 것이 예상된다. 재무부 장관은 독자들에게 기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기자나 편집간부 등 많은 언론인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장관은 독자들에게 가치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한편 불법 주식거래로 The Mirror지의 두 기자가 해고당하고 편집자가 PCC로부터 징계를 당한 사건을 통해 주식 비밀정보와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의 강도가 높아졌다. 이에 대한 우려는 PCC로 하여금 경제지

기자들의 주식소유와 관련한 보도실천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계 전반적인 의견을 수용하도록 했다.

현 보도실천강령은 취재과정에서 획득한 경제 정보를 기자나 주변 인물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자나 가까운 친척이 상당한 이익을 얻고자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기사작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작성할 기사 내용과 관련한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어떤 기자나 편집인도 기사 내용의 순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나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을 퇴색시키는 기사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PCC의 새로운 보도실천강령은 기자가 거래한 지 얼마 안되는 주식에 관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나 조항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방지하고자 “중요한 경제적 이익” 그리고 “최근” 그리고 “가까운 장래”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령을 차치하고서라도 기자들의 주식거래가 보도실천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면 발행인이나 편집인은 소속 기자들의 주식거래를 금하도록 충고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기자들에게 특정 주식에 대한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Press Gazette, 2000. 12. 8. p.2) □

## 범죄 용의자 실명보도에 대한 미국 언론의 고민

성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지역 사회의 유명

인사가 자살한 사건은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 실명기재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발행되는 The Plain Dealer지가 성범죄 용의자로 실명보도한 사람이 비극적인 자살에 이른 사건은 불분명하고 결함 있는 보도기준이 어떠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이다. 혐의도 없고 체포도 되지 않은 한 남자가 자살했고 신문사는 독자들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 신문사는 실명을 보도하지 않았어야 했다.

신문사의 그 누구도 고의로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지닌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사 기자가 미 헌법이나 다른 법체계 또는 언론의 정당한 관행에도 근거가 없는 잘못된 신념을 견지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첫째 이유는 신문사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에 앞선다고 판단한 데 있다. 집단주의를 향한 사회 내 다수의 경향을 제쳐두고서라도, 헌법은 다수의 횡포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언론인들은 사건 용의자를 실명보도하여 성적인 문제에 대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언론보도는 기소도 되지 않은 한 용의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신문사는 용의자로 지목된 이 사람이 유명한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로 지역사회의 저명인사였기 때문에 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문사가 명예훼손 판결에 복종하든 안하든 그러한 결정이 이뤄진 데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릇된 신념의 두 번째는 기자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직업이라는 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자라는 직업은

경찰, 검찰 그리고 사회기구들을 단속하는 것이다. 언론은 잘못된 일을 지적하는 사실을 알려야지 언론이 기소하거나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평결하거나 벌할 수는 없다. 범죄 용의자를 무분별하게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사적 제재의 하나이다.

용의자의 이름이 밝혀졌을 때 대중이 잠재적 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 또한 잘못된 것이다. 위험한 용의자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과 실명을 거론하여 이를 표현하는 내용상 차이점은 없다. 취재기자나 편집자는 적어도 신문에 이름이 거명되기 전에 용의자의 이름이 수색영장과 같은 공식 문서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뉴스 기사가 경찰의 수사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경찰을 도우려는 것이 언론의 기능은 아니기 때문이다.

용의자가 잘 알려진 인물일 경우 그 판단은 더욱 힘들다. 유명인사는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인의 실명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이를 공표하는 유일한 근거는 용의자의 이름이 이미 세상에 밝혀졌을 때이다. 물론 신문지상에 용의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생명을 구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한 것으로 판명났던 사례는 있다. 그러나 용의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이 결백한 사람의 이름을 공표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충분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용의자의 이름을 거론하기 위한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Editor & Publisher, 2000. 12. 18, p.29.) □

## 전문(傳聞)이나 소문에 의거하여 객관적 입증 없이 보도한 것은 잘못

-일본 도쿄지방법재판소 판결-

'리쿠르트' 사건과 관련 수뢰죄 등의 혐의로 공판 중인 江副浩正 전 리쿠르트 회장이, 불법주식매매를 했다고 보도한 '夕刊후지'의 발행사인 産經新聞社와 기사를 작성한 기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재판소는 2000년 12월 8일 "전해들은 이야기나 루머에 의거하여 객관적 입증 없이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피고들은 각각 50만엔씩 지불하고 '夕刊후지' 1면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 피고는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취재를 끝내지 않았으며 보도사실의 확인을 태만히 했다"고 지적. 원고가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업가인 형사피고인 E'라는 표현이 "일반독자를 기준으로 하여도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제하면서 "구체적 취재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취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기명원고를 게재한 産經新聞社의 책임에 대해서는 "신문사는 기고된 기사내용의 게재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며 정보의 내용, 성질, 보도가치에 따라 진실성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新聞協會報』, 2000. 12. 19.) □

## 일본 언론의 범죄 피해자 보도에 대해 다수 시민이 문제의 심각성 지적

-일본 총리실 여론조사결과 -

일본 총리실이 2000년 12월 16일 발표한 '범죄피해자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의 실명이나 사진을 보도하는 데 있어 약 70%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는 전국의 15세 이상의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효회수율은 70.9%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실명이나 사진을 보도하는데 있어 68.8%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문제가 없다'고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또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50.9%)에 이어 '언론의 취재나 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16.7%)가 많았다. 정부에 요망하는 범죄피해자 대책에서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58.1%), '언론으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56.7%), '경제적 지원의 충실'(49.8%) 순으로 나타났다.

(『新聞協會報』, 2000. 1. 1.) □

## 재판의 TV중계를 금지한 규칙은 위헌이 아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의 TV중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독일의 뉴스 방송국 N-TV가 중계허가를 청구한 소송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1년 1월 24일이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 내에 TV·라디오 중계기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1964년 규칙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벨트지에 의하면 미국의 CNN이 출차하고 있는 N-TV는 냉전시대에 베를린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민간인에 대해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구 동독의 공산당 지도자 에곤·크렌츠 씨에 대한 공판의 중계허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 공개의 원칙은 언론매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다음 공판의 중계는 선정적인 보도가 될 우려가 있으며, 공판의 중계금지는 진실의 발견과 피고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8명의 재판관 중 3인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중계금지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폈다.

N-TV의 회장은 이 소수의견을 근거로 "판결은 정치가에 대해 기존의 규칙을 재검토하도록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법무성이나 연합녹색당, 자유민주당은 행정재판의 일부의 중계허가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정당이나 주 재판관의 다수는 이번 판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공영방송 ZDF의 회장도 "언론의 취재보도활동은 소송관계자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견지해야만 한다"고 재판의 TV 중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新聞協會報』, 2001. 2. 6.) □

### 일본 신문협회, 인격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일본신문협회는 2001년 1월 11일 강제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인권구제기관의 설치를 제한한 법무성 인권옹호추진심의회의 중간보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 “보도와 관련한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견지에서 어디까지나 언론의 자주적 해결을 기본으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규제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가 작성한 의견서에서는 신문·통신 각사에 거의 공통되는 인권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보도자세〉

- 사건피의자에게 경칭 사용
- 사건피의자의 연행사진이나 사건관계자의 얼굴사진 게재 자제
- 사건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한 취재·보도의 철저
- 범죄피해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캠페인성 보도 활성화
- 사건관계자의 거주지의 특정을 피하기 위해 기사 중의 주소표기에서 ‘번지’ 삭제
- 사건관계자는 물론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의 억제
- 사건피의자의 ‘반박’ 보장
- 사건보도의 실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건의 양태나 사건관계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배려하여 사안에 따라 ‘익명보도’ 실시
- 수사단계의 기사는 수사당국의 발표부분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사당국·기자의 견해부분을

구별하고 전체적으로 단정적인 표현 억제

#### 〈지면의 검증, 기자연수〉

- ‘기사심사위원회’나 ‘기사심사부’ 등의 지면심사기구를 설치하여 매일, 기사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검증하고 취재보도의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 학자나 독자 등 제3자에 의한 지면 ‘모니터’제도의 도입
- 인권문제를 주제로 한 기자연수 강화, 기자의 취재·보도 지침을 정리한 ‘안내서’, ‘기준집’ 등의 작성

#### 〈독자에 대한 대응〉

- 독자의 지면에 관한 불만, 의견, 지적을 접수할 창구로서 독자응답센터, 홍보실 등을 상설, 오보나 인권침해의 혐의가 지적될 경우 즉각 편집부문에 연락하여 취재·기사화의 검증 후 사죄, 정정 등의 신속한 구제조치
  - 중대한 인권침해나 오보가 있었을 경우 법무부·실과 협의과정을 통해 신문사 사죄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보나 인권침해에 이르게 된 문제점을 검증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도모
  -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나 오보여부에 대해 당사자와의 인식,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사법판단에 의뢰
- (『新聞協會報』, 2001. 1. 16. ; 2001. 1. 30. ) □

### 언론사의 명예훼손소송 대응 방법

언론보도로 인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훌륭한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질이 아무리 뛰어난 어떠한 변호사도 언론소송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명예훼손 전문 보험회사의 한 전문가는 대부분의 언론매체측 변호사들은 언론의 잘못을 바로 잡기 보다 언론의 오류를 진정시키는 데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언론사들은 수용자들의 불만을 기사의 취재, 보도과정 달리 말하면 편집실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명예훼손 소송 제기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언론을 공격하는 새로운 변호인단역시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언론매체가 명예훼손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언론사측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편집간부에게 법적 경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취재기자들이 명예훼손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Libel Defense Resource Center(LDRC) 사무총장 Sandra Baron씨의 지적처럼 뉴스 취재과정에서 비롯된 소송이 전체 언론관련 소송사건 중 겨우 5%에 불과하지만 취재과정은 언론사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발단이 될 수 있다.

- 누군가를 험담하는 내용을 냉각기 옆에서 속삭이거나 냅킨 위에 휘갈겨 썼다 해도 이는 현실적 악의의 화염을 부채질 할 수 있다.

- LDRC의 발표대로 1990년대 언론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소송으로 5억 달러 이상의 배상이 이뤄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Editor & Publisher, 2000. 11. 27.)



## 일본 아사히신문사, 사외인사로 구성된 '보도와 인권위원회' 창설하여 독자불만 처리에 투명하게 대응키로

일본의 아사히신문사는 2001년 1월 1일, 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차별 등 인권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심리하기 위한 '보도와 인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제도의 도입은 독자불만의 접수나 대응 등에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사히신문뿐 아니라 자매지와 데이터베이스에도 적용된다.

위원회는 사장 직속 기구로 변호사와 전직 언론인, 대학교수 등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독자들의 불만이나 해결된 사례 등에 대해 홍보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독자들의 불만은 종래와 같이 홍보실에서 접수하되, 독자와 해결짓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개시한다. 다만 정치인등 공인, 기업이나 단체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접수를 받지 않으며 계쟁 중인 사안이나 위원회가 사법에 위임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취급하지 않는다.

심리 결과는 견해의 형식으로 당사자와 본사 쌍방에 제시되며 당사자의 양해가 있는 경우 지면에 공표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의 판단은 다수결로 하되 소수의견도 게재한다. 본사는 위원회의 견해를 가능한 한 존중한다. 반론을 포함한 본사의 견해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마이니찌신문사도 지난 해 10월 "열린신문위원회"를 창설한 바 있다.

(『新聞協會報』, 2001. 1. 16.)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공표치 마시기 바람며,  
만약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대병원 전공의들이 지난해 의료계  
파업기간 중에 야간근무수당을  
비롯 각종 수당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1대구중재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경북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박 신 구)  
피신청인 : 영남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1. 1.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영남일보 : 『파업기간 봉사진료한 전공의 경대  
병원 수당지급 계획 ‘논란’』 제하  
의 기사 (2001년 1월 5일자 25면)  
내 용 : 경북대병원이 지난해 의료계 파업  
기간 중 전공의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료  
에 참여한 데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전공의들이 파업기간 중에도

참의료진료단 활동과 야간에 부분적으로 진료  
한 데 대한 수당을 별도로 책정, 지급할 계획  
이다.

병원측은 전공의마다 근무시간을 계산해 차  
등적으로 보상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 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해 7~10월까지 파업기간 중 야간근무수당·등  
을 포함, 레지던트 2년차의 경우 월 130여 만  
원의 임금을 받는 등 각종 수당을 받았으며  
이번 병원측의 전공의 수당지급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무  
단 결근시 기본금의 30%만 지급하기로 돼있  
다. 레지던트 2년차의 경우 기본금이 68만원  
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수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파업기간에도 전공의들  
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중략)

이에 대해 인주철 병원장은 “전공의들이 파  
업은 했지만 자원봉사 자격으로 진료에 참여  
했고 교수들의 부탁으로 야간에 환자들을 돌  
본 만큼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  
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근무시간을 계산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경북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써 영남일보 1월 5일자 25면 『파업기간 봉사진료한 전공의 경대병원 수당지급계획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노조측은 이 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7~10월까지 파업기간 중 야간근무수당 등을 포함, 레지던트 2년차의 경우 월 130여 만원의 임금을 받는 등 각종 수당을 받았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사실은 레지던트 2년차의 경우 파업이 끝난 12월에 조차 감봉되어 한 번도 월 130여 만원의 임금을 받은 적이 없고, 전공의에게는 한 번도 야간근무수당이 주어진 적이 없다.

이 보도로 인해 경북대병원 전체 전공의들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으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1월 5일자 25면에 『파업기간 봉사진료한 전공의 경대병원 수당지급계획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노조측은 이 병원 전공의들이 지난해 7~10월까지 파업기간 중 야간근무수당 등을 포함, 레지던트 2년차의 경우 월 130만원의 임금을 받는 등 각종 수당을 받았다...”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레지던트 2년차의 경우 8월에 788,440원, 9월에 1,234,110원, 11월에 931,640원, 12월에 889,650원을 받아 심지어 파업이 끝난 12월에 조차 감봉되어 한 번도 월 130여 만원의 임금을 받은 적이 없고, 전공의에게는 한 번도 야간근무수당이 주어진 적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경북대전공의 파업기간 중 야간수당 받은 사실 없어.

· 본 문 : 영남일보 1월 5일자 25면 『파업기간 봉사진료한 전공의 경대병원 수당지급계획 논란』 기사에서 「이 병원 전공의들이 파업기간 중 야간 근무수당등을 포함 레지던트 2년차의 경우 월 130여 만원의 임금을 받는 등 각종 수당을 받았다」는 부분은 확인결과, 야간 근무수당은 받은 바 없으며, 지난해 8~11월 파업기간 중 월급여는 병원측의 내규에 따라 감봉돼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영남일보 2001년 1월 19일자 25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 “노조 무노동 무임금위배...” 활자와 같은 크기로 보도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영남일보 : 『경북대 전공의 파업기간 중 야간수당 받은 사실 없어』 제하의 기사 (2001년 1월 19일자 2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 소속 가수들이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1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포엠이

(대표이사 김 경 욱) 외 3인

피신청인 : 한국일보

종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1. 1. 30.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한국일보 : 『S.E.S 최루성 ‘게릴라 콘서트’ 대 성공 “대단한...그러나 위험한...”』 제하의 기사 (2001년 1월 16일자 21면)

내 용 : 14일 방송한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게릴라콘서트 S.E.S’ 편은 최근 부정입학 파문에 휘말려 컴백이 늦어진 그들에 대한 열광적인 동정과 지지를 얻어낸 자리였다. 이 프로그램은 시종일관 그들의 눈물과 마음고생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컴백을 둘러싼 ‘여론재판’을 단칼에 무마시켜버릴 만큼 대단했다. (중략)

이날 ‘일요일...’의 시청률은 23.2%, 인터넷 게시판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3,000여 건이 넘는 반응이 올라왔다. 대부분 게릴라콘서트의 성공과 S.E.S의 컴백을 축하하는 내용이었다. 일반 시청자들도 “팬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지켜보며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부정입학 어찌고 한 게 며칠이나 지났다고... 사회적인 신뢰니 도덕성이니 하는 것들이 게릴라콘서트 한 편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일방적인 동정여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중략)

게릴라콘서트는 눈물과 동정으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했다.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방송프로가 면죄부는 아니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주)포엠이(구 에스엠엔터프라이즈)는 에스이에스(S.E.S)라는 음악그룹의 음악활동에 관한 법률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연예기획사이다.

신청인 김유진, 유수영, 최성희는 위 에스이에스(S.E.S)의 구성원이다.

피신청인은 2001. 1. 16.자 “눈물, 동정의 팬모으기 부정입학 일거에 무마 방송이 면죄부가 돼서야”라는 제목과 소제목 “부정입학 일거에 무마”라며 마치 신청인들이 부정입학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건 기사 제목처럼 신청인 김유진과 유수영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신청인은 보도에 앞서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의혹 또는 루머에 불과한 막연한 사실을 보도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이 부정입학을 한 범법자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 이들이 동정이나 여론의 면죄부를 얻기 위하여 게릴라 콘서트를 이용하였다고 묘사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보에서 2001. 1. 16.자 “부정입학 일거에 무마”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S.E.S의 김유진(예명:유진)과 유수영(예명:슈)이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것으로 오인하여 S.E.S 김유진, 유수영, 최성희는 물론 이들의 소속사 (주)포엠이(구 에스엠엔터프라이즈)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S.E.S의 김유진과 유수영이 졸업한 고교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학력인정학교에 포함되지 않음이 뒤늦게 밝혀져 대학입학이 취소된 것으로 이 건 기사 제목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기사로 인하여 S.E.S와 (주)포엠이(구 에스엠엔터프라이즈)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합의사항

- 본지 1월 16일자 21면 「SES 최루성 '게릴라 콘서트' 대성공」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S.E.S는 켄트 외국인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유로 대학 입학 허가가 취소된 것이고, 달리 제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어떠한 금전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2001. 2. 22.자 가요면 S.E.S. 관련 기사 중에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마음고생 '감싸안으며' S.E.S 라이브로 승부』 제하의 기사(2001년 2월 22일자 20면)

내 용 : S.E.S(사진)가 접었던 날개를 다시 펴고 있다. 타이틀곡 '감싸안으며'는 지난주 KBS, MBC에 이어 SBS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최고의 주가를 올렸다.

또한 핑클, 엄정화 등과 함께 문화관광부로부터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홍보 사절로도 임명되고 각종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초대하고 싶

은 게스트로 꼽히는 등 만만찮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S.E.S의 인기비결은 '라이브', '바다'가 목에 무리가 갔을 정도로 성심껏 노래하는 모습으로 립싱크로 일관하는 댄스 가수들 속에서 점차 '실력파'가수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켄트 외국인학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슈'가 외대입학이 취소되고, '유진'이 고려대에서마저 입학취소 처분을 받는 등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이 고졸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켄트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데 따른 것으로, 돈을 주거나 서류를 위조해서 '부정입학'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면서 점차 동정표가 많아졌다. 이에 화답하듯 S.E.S는 그간 자제했던 TV출연과 라이브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 예상 외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결국 입학 취소 사건을 '라이브'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한 S.E.S의 전략은 가수의 가장 큰 무기이자 전략은 가창력임을 입증하고 있다.

### 김치 관련 CD-ROM을 신청인이 제작했는데도 다른사람이 한 것으로 잘못 보도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2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문 흥 규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1. 1. 30.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중앙일보 : 『“젊은 세대에 맞춘 김치 응용식품 개발 힘써야”』 제하의 기사 (2001년 1월 22일자 17면)

내용 : “김치 관광을 올 정도로 외국인들은 김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말죠. 김치 담그기를 계량화하면 직접 김치를 담글 수 있고 김치의 세계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연말 김치 담그는 법 79가지를 모은 CD롬 ‘한국 김치문화 백서’ 한글판과 일어판을 펴낸 안산공과대 호텔조리와 정재홍(鄭在洪·45)교수의 설명이다. 그동안 김치 담그기에 관한 서적은 많았지만 김치의 역사 및 종류, 담그는 방법과 저장법 등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한 CD롬은 처음이다. 이 CD롬은 외국인이나 초보 주부에게 특히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그가 CD롬 제작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두 달 동안 주말이면 학생들과 학교 실습실에서 김치와 씨름하며 지냈다. 오전 9시 시작한 일이 오후 11시에야 끝나는 건 예상였고, 버스가 끊겨 학생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 (중략)

3월에 영문판까지 나오면 외국인들에게 김치를 본격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는 전통혼례상 차림을 다루는 책의 출간도 서두르고 있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2000년 9월 25일에 등록된 ‘한국김치문화백서(Kimchi, Korea)’를 올비스와 더불어 기획, 제작, 발행한 시디마트 대표이며, 위 제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적법

절차에 따라 소유한 사람이다.

지난 2001년 1월 22일 월요일 중앙일보 17면에 보도된 “첫 김치 담그기 CD롬 낸 안산공과대 정재홍 교수”라는 제목의 인터뷰기사 가운데 개인의 신상에 심각한 문제(개인의 명예 및 재산권침해 등)를 초래할 중대한 사항이 있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을 하고자 한다.

‘한국김치문화백서CD-ROM TITLE(Kimchi, Korea)’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이자 우리의 우수한 문화인 김치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올비스와 시디마트가 기획, 제작, 발행한 교육 및 홍보용 CD-ROM이며 본 제품의 모든 권한은 적법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있으며, 아울러 안산공과대 정재홍 교수는 본 제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제작감독인 올비스가 제작기획 및 목적을 설명하고 쌍방 이면 조건합의아래 2000년 5월부터 조리, 글(한국어)을 집필하여 도움을 주었으나, 제작에 따른 그 외부분은 기획여건상 관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안산공과대 정재홍 교수는 사실적 내용을 입증할 관련 전문가로서 조리, 집필을 통하여 제작에 도와주신 분은 틀림없지만, 귀 신문에 보도된 내용처럼 CD롬을 제작한 것은 아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1월 22일자 17면 ‘사람과사람’ 제하의 기사에서 “첫 김치 담그기 CD롬 낸 안산공과대 정재홍 교수”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안산대 정재홍 교수는 김치담그기 CD롬을 낸 것이 아니라 CD롬에 수록될 조리과 글을 집필한 것이며, CD롬을 낸 것은 문홍규(기획:시디마트, 제작:올비

스)가 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지난 1월 22일자 17면 「사람 사람」란에 게재된 ‘첫 김치 담그기 CD롬 낸 안산공과대 정재홍 교수’ 기사내용에서 정교수는 직접 CD롬을 펴낸 것이 아니라 CD롬에 수록될 조리와 글을 집필한 것이며 CD롬은 시디마트에서 기획하고 올비스가 제작했음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001년 2월 14일자 2면 『바로잡습니다』란에 게재하되, 본문활자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01년 2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미디어랩 보도에 대한  
신청인 단체의 비판성명서를  
신문개혁 프로그램에 관한 것인 양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22  
 청구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성유보)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1. 2.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MBC 요즘 왜 이러나』 제하의 기사 (2001년 1월 18일자 32면)

내 용 : MBC 왜 이러나, 새해 들어 MBC TV가 모종의 작전이라도 퍼듯 잇달아 신문 비판에 나서 그 배경을 놓고 시청자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이같은 MBC의 행태는 시민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17일 방송위원회까지 ‘경고’ 조치를 내려 제동을 거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중략)

뉴스뿐 아니라 토론, 기획 다큐멘터리까지 신문업계를 연속해 비판했다. ‘100분 토론’이 지난 11일 ‘신문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룬 데 이어, 일주일도 안돼 16일 ‘PD 수첩’이 ‘다시 신문개혁을 말한다’ 편을 방송했다. (중략)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MBC뉴스를 공영방송의 위상을 저버린 자사이기주의적 보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도 17일 MBC ‘뉴스데스크’에 경고 및 책임자 경고를, ‘아침뉴스’에 경고를 내리는 등 징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유현석)은 16일 ‘미디어랩(방송광고대행사) 설립에 대해 왜곡보도 일관하는 MBC는 각성하라’는 성명서에서 MBC뉴스를 “자사이익을 위한 왜곡편파보도”라고 못박았다. (중략)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지난 3일 ‘MBC는 미디어랩을 제대로 보도하라’는 성명을 내고, “뉴스데스크가 미디어랩 문제를 자사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다”며, “심층적이고 다양한 취재를 통한 공정

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략)

MBC의 이같은 신문비판 뒤에는 정권과의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시각도 있다. 최근 여당의 ‘의원 빌려주기’ 사건 등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적 기사 논평들이 신문에 실리고 있던 시기여서 정부가 인사권을 가진 공영방송을 통한 우회적 ‘신문 때리기’ 아닌가 하는 것이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2001년 1월 18일자 조선일보 32면 『MBC 요즘 왜 이러나』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하고자 한다. 피신청인은 이 보도에서 『‘100분 토론’ 등 잇단 신문비판… 시청자 당혹』이라는 제하로 MBC 미디어랩 보도만을 비판한 시민단체 성명서를 인용, 전체 기사지면의 약 25%를 채웠다. 피신청인은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MBC뉴스를 공영방송의 위상을 저버린 자사이기주의적 보도라고 규탄하고 나섰고…”라며 신청인이 1월 3일 발표한 성명서 <MBC는 미디어랩을 제대로 보도하라>와 경실련이 1월 16일 발표한 <미디어랩 설립에 대해 왜곡보도 일관하는 MBC는 각성하라>를 인용하여 MBC 비판에 활용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 “MBC의 이같은 신문비판 뒤에는 정권과의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며 신문개혁과 관련한 100분 토론과 PD수첩의 방영시기와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의 시점을 관련지어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논평은 물론 경실련의 논평과 방송위원회의 징계내용은 모두 MBC의 미디어랩 보도에 대한 것일 뿐이며 100분 토론과 PD수첩 등 신문개혁 프로그램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두 사안은 엄연히 다른 사

안이다. 신청인은 MBC의 『100분 토론 - 신문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과 『PD수첩 - 다시 신문개혁을 말한다』모두 신문개혁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권과의 교감’ 운운하는 것은 결국 MBC는 물론 시민단체도 정권과 교감을 갖고 신문개혁운동을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 신문개혁에 관한 MBC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인 적이 전혀 없는데도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해 마치 신청인이 MBC 신문개혁 프로그램 전체를 비판한 것처럼 신청인의 진의가 왜곡전달 전달되었다. 오히려 신청인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환영하는 바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조선일보가 지난 1월 18일자 32면 “MBC 요즘 왜 이러나” 제하의 기사에서 MBC의 미디어랩 보도와 신문개혁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기초 하에 민언련의 성명서를 인용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00분 토론’ 등 잇단 신문비판… 시청자 당혹>이라는 타이틀 아래 ‘시민단체 비판성명 줄이어’라는 소제목으로 민언련 성명서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언련은 MBC 미디어랩 보도에 대한 비판성명서를 낸 적은 있으나 신문개혁과 관련한 100분 토론과 PD수첩 등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명서를 통해 언급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민언련은 오히려 이들 프로그램이 신문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합의사항

- 제 목 : MBC 신문개혁 프로그램 지지
- 소제목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본 문 : 본지가 지난 1월 18일자 32면 'MBC 요즘 왜 이러나' 기사에서 MBC의 최근 보도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성명이 줄을 잇는다'고 보도하면서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의 성명서를 인용한 것에 대해 민언련은 자신들의 성명서는 MBC에 '민영 미디어랩'에 대한 공정보도를 촉구한 것일 뿐 '100분토론', 'PD수첩' 등 신문개혁 관련 프로그램 전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고 반론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1년 2월 10일자 방송면에 게재하되, 제목(MBC 신문개혁 프로그램지지) 활자 크기는 4호 고딕으로 하고, 보도내용의 활자크기는 본 건 중재대상기사의 내용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MBC 신문개혁 프로그램지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제하의 기사 (2001년 2월 12일자 3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동아일보가 신문개혁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예정인 방송사측에 동아일보 회장 관련 부분을 방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1서울중재31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오 명)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1. 2. 13.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미디어오늘 : 『MBC-족벌신문 '일전불사' 포문』 제하의 기사 (2001년 1월 18일자 1면)

내 용 : 지난 16일 방영된 MBC <PD수첩 - 다시 신문개혁을 말한다·사진>(연출 정길화·김정규)편의 방영 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다시 MBC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어 MBC와 족벌신문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MBC-동아일보 사이에 불붙었던 미디어랩 보도 갈등은 <PD수첩>의 방영 전인 13일 동아일보측 사절단이 MBC 임원진을 방문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도는 듯 했다. 실제로 이 방문 이후 MBC는 연일 계속되던 미디어랩 관련 보도를 중단했다.

이날 회동에서 동아일보측은 미디어랩으로 인해 소원해진 두 언론사의 관계를 복원하자는 제의와 함께 김병관 회장의 고대 앞 사건의 <PD수첩> 방영분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동아일보 가계의 대물림과 김회장의 음주 추태 등을 그대로 방영. MBC·동아일보사이의 화해 분위기는 또 다시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갈 소지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측은 최근 <PD수첩> 촬영과정에서·동아일보 사옥 안 전경을 6mm 카메라로 촬영한 것과 인터넷 신문 <오

마이뉴스)에 “방영 전 동아일보 관계자들이 항의전화를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이를 문제삼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피신청인인 미디어오늘은 제276호(2001. 1. 18. ~ 1. 24.)의 1면 ‘MBC-죽별신문 일전불사 포문’ 제하의 기사에서 동아일보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신청인 회사를 비방, 음해하고 결과적으로 신청인 회사는 물론, 그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신청인은 이 보도에서 ‘MBC-동아일보 사이에 불붙었던 미디어랩 보도갈등은 PD수첩의 방영전인 13일 동아일보측 사절단이 MBC 임원진을 방문하면서 화해분위기가 도는 듯 했다. 실제로 이 방문이후 MBC는 연일 계속되던 미디어랩 관련 보도를 중단했다’ ‘이날 회동에서 동아일보측은 미디어랩으로 인해 소원해진 두 언론사의 관계를 복원하자는 제의와 함께 김병관 회장의 고대 앞 사건의 <PD수첩> 방영분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은 MBC에 사절단 파견은 커녕, 두 회사의 관계에 대한 그 어떤 직·간접적인 제의도 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미디어랩으로 인해 소원해진 두 언론사의 관계를 복원하고자’고 제의하거나 <PD수첩>방영분에서 김병관 회장의 고대 앞 사건을 빼달라는 등의 요청도 전혀 한 적이 없다.

피신청인의 이 보도는 언론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보면 얼핏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상 이 기사가 신청인

측에 끼친 피해는 다른 일반적인 오보와는 다르다.

즉 MBC가 지난 1월 11일 밤 뉴스데스크에서 이례적으로 ‘싼이자 제테크’ 제하의 비방 기사를 비롯한 세 건의 특집 리포트를 통해 동아일보를 비방한 이후 여기에 동아일보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언론계는 물론 상당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첨예한 관심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동아일보사가 자신을 그렇게 가혹히 비방한 MBC사에 사절단을 보내 앞으로 방영될 PD수첩에서 회장 관련 부분을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동아일보 임직원들을 언론인으로서 자존심도 팽개치고 회장 개인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집단인 것처럼 비쳐지게 했다.

실제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사내외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도 항의는 커녕 찾아가 무릎꿇고 빌었다는 말이냐”는 등의 비난이 있었다.

피신청인측은 이 보도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신청인 회사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동아일보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보는 지난 276호(1월18일~1월24일) 1면 ‘MBC-죽별신문 일전 불사 포문’ 제하의 기사에서 ‘MBC-동아일보 사이에 불붙었던 미디어랩 보도 갈등과중에 동아일보측의 사절단이 <PD수첩>의 방영 전인 13일 MBC 임원진을 방문해 미디어랩으로 인해 소원해진 두 회사의 관계를 복원하자고 제의했으며 <PD수첩> 방영분에서 김병관회장의 고대 앞 사건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동아일보사는 MBC에 사절단 파견은 커녕, 두 회사의 관계에 대한 그 어떤 직간접적인 제의도 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미디어랩으로 인해 소원해진 두 언론사의 관계를 복원하자'고 제의하거나 <PD수첩>방영분에서 김병관 회장의 고대 앞 사건을 빼달라는 등의 요청도 전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아일보사는 "MBC가 1월 11일 뉴스데스크에서 방영한 동아일보 관련 비방 보도는 전적으로 사실과 다른 오보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동아일보 편집국은 "미디어랩 등 언론계 현안 보도는 '독자'를 판단의 중심에 두고 '언론의 정도'를 걷는다. 이에 따라 지면을 동원해 일개 방송사를 겨냥해 집중 비판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 그러나 특정 방송사나 언론사가 자사 이기주의적인 편향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자에게 그 배경과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리며, 특히 앞으로 동아일보에 대해 도를 넘어서는 음해를 계속하는 언론사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등의 원칙을 정립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동아일보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께 누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미디어오늘>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문  
 · 본문 : 본지는 제276호(1월18일~1월24일)1면 「MBC-족벌신문 일진 불사 포문」 제하의 기사에서 'MBC-동아일보 사이에 불붙었던 미디어랩 보도 갈등와중에 동아일보측의 사절단이 <PD수첩> 방영전인 13일 MBC 임원진을 방문해 미디어랩으로 인해 소원해진 두 회사의 관계를 복원하자는 등의 제의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동아일보사는 MBC에 사절단 파견은 물론, 두 회사의 관계에 대한 그 어떤 직간접적인 제의를 한 바 없으며, '미디어랩으로 인해 소원해진 두 언론사의 관계를 복원하자'는 등의 제의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동아일보사는 "MBC가 1월 11일 뉴스데스크에서 방영한 동아일보관련 비방보도는 전적으로 사실과 다른 오보이지만 동아일보는 언론의 정도를 계속 걸겠으며 다만 특정 방송사나 언론사가 자사 이기주의적인 편향 보도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자에게 그 배경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미디어오늘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1년 3월 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판결 1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한  
기업의 자금사정에 관한 부정적 보도를  
사실확인작업을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1. 1. 10.자 판결 (2000가합9265)

사실개요

서울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2001년 1월 10일 최영이 씨 등 2명이 로이터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도가 있던 시점의 주가와 원고들이 매도한 시점의 주가 차액인 9천2백5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자금사정에 관한 부정적 보도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사실확인 작업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증권가의 소문과 대신증권의 성명불상 간부로부터 들은 말만 근거로 성급히 보도해 대신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원고들이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고 소속 기자는 1999년 10월 25일 대신증

권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송천건설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었고, 대신증권이 송천건설의 채무 중 약 2,000억원을 지급보증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자와 접촉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뒤, 대신증권의 성명불상 간부로부터 전화로 “송천건설이 부도 직전, 화의신청하였고, 대신증권이 지급보증한 액수는 1,600억원 정도이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의 사실확인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대신증권의 성명불상 간부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고 본사에 송고하였고, 피고는 11:49경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위와 같은 보도 두 시간 후 이 사건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송천건설의 자금사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의를 신청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정정보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오보로 말미암아 보도 직전 1만8천2백원에 거래되던 대신증권 주식이

11분만에 8.8~11% 나 급락하자 보유하고 있던 대신증권의 주식을 급락된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피해를 보았다며 1억6천여 만원을 청구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0가합9265 손해배상(기)  
 원 고 : 1. 최영이  
           2. 유영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권  
 피 고 : 로이터 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동자동 12-5  
           대표이사 다니엘 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주한일, 정진영, 박찬문, 홍용호

변 론 종 결 : 2000. 12. 6.  
 주 문 : 1. 피고는 원고 최영이에게 89,885,500원, 원고 유영진에게 2,660,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3.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원고 1.은 154,922,500원, 원고 2.는 5,085,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

이 유 :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이판수, 황복기, 김재승의 각 증언,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대신증권 주식회사 하계동지점장, 대우증권 주식회사 잠실지점장에 대

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가, 피고의 오보 및 정정보도

가. 피고의 오보 및 정정보도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의 일반무역업과 도매업, 정보제공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소속 취재기자 김재승은, 1999. 10. 25. 11:30경 대신그룹 양재봉 회장의 장남이 운영하고 있는 송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송천건설'이라 한다)가 부도를 내었고,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 한다)가 송천건설의 채무 중 약 2,000억원을 지급보증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확인을 위하여 대신증권의 홍보실장과 접촉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뒤, 대신증권의 성명불상 간부로부터 전화로 "송천건설이 부도 직전 화의 신청하였다. 대신증권이 지급보증한 액수는 1,600억원 정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김재승은 대신증권 또는 송천건설의 다른 임직원들, 대신증권의 주거래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 더 이상의 사실확인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대신증권의 성명불상 간부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고 본사에 송고하였고, 피고는 11:49경 "대신그룹 양재봉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송천건설이 부도 직전 화의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수 800선 붕괴 등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최근 송천건설이 부도 직전에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면서 '대신계열사들이 회사채 등 지급보증한 금액이 약 1,6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김재승은 12:30경 대신증권의 홍보실장으로부터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

향의전화를 받은 다음, 송천건설의 자금담당부장, 송천건설의 주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 본사에 송고하였고, 피고는 13:18경, 13:53경 및 다음날 11:11경, 14:08경에 '이 사건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송천건설의 자금사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의를 신청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정정보도하였다.

#### 나. 대신증권 주식의 주가 변동

대신증권 주식 중 보통주의 주가는 이 사건 보도 당일인 1999. 10. 25. 09:00경 19,350원이었고 이후 2시간 동안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1:00경 19,400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보도 시점인 11:49경에는 18,200원이었고, 이후 12:00경 하한가인 16,600원(그 전날 증가 19,500원의 85%, 백원 미만 반올림)까지 급락하였다. 다음날까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였다.

한편 대신증권 주식 중 우선주의 주가는 이 사건 보도 당일인 1999. 10. 25. 09:00경 11,850원이었고 이후 2시간 동안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1:00경 11,800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보도 시점인 11:49경에는 11,350원이었고, 이후 12:00경 하한가인 10,100원(그 전날 증가 11,850원의 85%, 백원 미만 반올림)까지 급락하였다. 다음날까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였다.

#### 다. 원고들의 주식거래

원고 최영이는 대신증권 보통주 5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보도 다음날 14,350주를 16,300원에, 15,630주를 16,350원에, 12,950주를 16,400원에, 1,500주를 16,450원에, 5,550주를 16,800원에 각 매도하였다.

또한 원고 유영진은 대신증권 우선주 4,53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보도 당일 11:43경 400주를 11,200원에, 1,000주를 11,250원에, 13:39경 3,130주를 10,500원에 각 매도하였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의신청, 거액의 지급보증 등 기업의 자금사정에 관한 부정적 보도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하기에 앞서 대신증권, 송천건설의 관계자 및 주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작업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증권가의 소문과 대신증권의 성명불상 간부로부터 들은 말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사실확인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히(김재승이 최초 위와 같은 소문을 들은 때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하기까지는 채 20분도 걸리지 아니하였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보도를 하여, 대신증권의 주가가 급락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오보로 말미암아 보유하고 있던 대신증권의 주식을 급락된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다만 원고 유영진이 대신증권 우선주 400주 및 1,000주를 매도한 것은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전인 1999. 10. 25. 11:43경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① 대신증권의 주가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하락하고 있었고, ② 정정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으며, ③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물론 대부분의 금융주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도 당일 대신증권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이 사건 보도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하락세 및 대신그룹의 재무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대신증권의 주가가 이 사건 보도 이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보도 이후 불과 11분만에 약 8.8%(보통주의 경우) 내지 11%(우선주의 경우)나 급락하였고, ② 어떠한 기업의 자금사정에 관하여 일단 부정적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정정보도가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불신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려운 것이며, ③ 증인 김재승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 당일 종합주가 지수는 물론 대부분의 금융주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증인 이관수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이전 증권주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대신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 가. 손해의 범위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도가 있던 시점의 주가와 원고들이 매도한 시점의 주가(즉, 원고들이 매도한 가격)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 직전의 개장일인 1999. 10. 22. 종가와 원고들이 매도한 시점의 주가의 차액이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 당일 대신증권의 주가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이전부터 하락세에 있었는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이전에 하락한 부분은 이 사건 보도와 무관하다 할

것이다).

#### 나. 계산

##### (1) 원고 최영이

1999. 10. 25. 11:49경

대신증권 보통주의 주가 18,200원

순번	매도한 주식의 수	매도가격(원)	계 산	손해액(원)
1	14,350	16,300	14,350 × (18,200-16,300)	27,265,000
2	15,630	16,350	15,630 × (18,200-16,350)	28,915,000
3	12,950	16,400	12,950 × (18,200-16,400)	23,310,000
4	1,500	16,450	1,500 × (18,200-16,450)	2,625,000
5	5,500	16,800	5,500 × (18,200-16,800)	7,770,000
합계	49,980			89,885,500

##### (2) 원고 유영진

1999. 10. 25. 11:49경

대신증권 우선주의 주가 11,350원

3,130주 x (11,350원 - 10,500원) = 2,660,500원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최영이에게 89,885,500원, 원고 유영진에게 2,660,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0. 3. 1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 10.

재판장 판사 김 선 중  
판사 조 건 주  
판사 양 대 권

□

판결 2

현행법 체포현장일 지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장소를 무단 침입, 취재보도하여  
원고의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2001. 1. 11.자 판결 (99나66474)

사실개요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1년 1월 11일 이화여대 음대교수였던 원고가 서울방송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원고의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바이올린 불법 과외 현행법으로 경찰이 원고를 체포하기 위해 연습실에 들어갈 당시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카메라기자 등과 함께 연습실에 들어가 원고에게 자신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취재를 하였으며, 연습실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연습실에서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밝혔다.

피고는 “이 사건 취재는 사생활의 영리적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취재장소가 현행법 체포장소였으며, 취재대상인 원고는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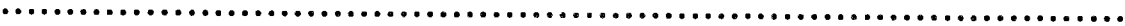
수로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신분이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의 통념상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법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보도내용의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중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진실과 합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1999년 1월, 자신의 음악 연습실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서울방송이 이 장면을 취재, 보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 건 : 99나6647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최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

소송수행자 최성철

2.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대표이사 송도균

3. 유영수

피고 2,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변론종결 : 2000. 11. 30.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11. 19. 선고 99가합4672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 유영수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 4.부터 2001. 1. 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 유영수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 유영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 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7 내지 20,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테이프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84년경부터 1999. 1. 5.경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한 사람이고, 김민욱, 김우연, 진병수, 은두표는 1999. 1. 4. 14:40경 원고를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은 방송사업자로서 에스비에스 텔레비전(SBS TV)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유영수는 피고 서울방송의 피용자로서 원고의 과외교습 사실을 취재·보도한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

(1) 피고 서울방송은 1999. 1. 4. 20:00경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고액과외 여전"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과외교습 사실에 대한 보도를 하였는 바, 뉴스 진행자가 "서울 유명 대학의 현직 바이올린 교수가 버젓이 교습실까지 차려놓고 자기 학과에 지원할 수험

.....

생들에게 불법레슨을 하다가 현장에서 들켰습니다. SBS의 단독 취재. 유영수 기자입니다”라고 말한 후, 피고 유영수가 취재한 별지 1 기재 보도(이하 이 사건 제1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 서울방송은 1999. 1. 5. 같은 프로그램에서 “불법레슨 더 있다”라는 제목 아래 피고 유영수가 취재한 별지 2 기재 보도(이하 이 사건 제2 보도라 한다)를 하고, 이어서 “과외교수 사표”라는 제목으로 동세호가 취재한 기사인 ‘원고가 사표를 냈으며 교육부는 원고에 대하여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할 것을 대학측에 요청하고 이화여자대학교측에 대하여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3) 피고 서울방송은 1999. 1. 7. 같은 프로그램에서 “음대, 청렴서약”이라는 제목아래 김정이 취재한 별지 3 기재 보도(이하 이 사건 제3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의 전후 경위

(1) 피고 유영수는 1999. 1월 초경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163 소재 독립문삼호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이화스트링앙상블 연습실(이하 ‘연습실’이라 한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실기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999. 1. 4. 서대문경찰서 소속 위 경찰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 유영수로부터 신고를 받은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14:40경 위 연습실 입구에서 원고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문을 열자 연습실 안으로 들어가 위 연습실을 압수·수색하였으며, 피고 유영수와 카메라맨 등 피고 서울방송의 기자들도 위 경찰관들을 따라 위 연습실 안으로 들어갔다.

(3) 피고 유영수는 자신이 기자회견을 밝히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과외교습 대상 인원, 회수,

교습비, 다른 교수들의 과외교습 실태, 1999학년도 대학입학시험에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응시한 교습생의 수, 원고의 과외교습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 응시할 학생을 포함하여 6 내지 7명의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과외교습이 입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4) 위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수색 도중 원고의 과외교습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1999년도 일지를 발견하였으나 1998년 이전의 일지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바, 조사를 위하여 원고를 경찰서로 연행하던 중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의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었고, 원고는 임의로 위 자동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색하게 하였다.

(5)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1997년경부터 당시까지 과외교습을 한 학생은 12명 정도이며 이들로부터 받은 교습비는 1시간당 5만원 내지 15만원으로 합계 3천여 만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고, 학생들에게 과외를 한 혐의로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어 1999. 2.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위 처분은 2000. 6. 29.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2.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 서울방송, 유영수에 대한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검증결과와 당심의 피고 유영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유영수는 1999. 1. 2. 22:00경 위 연습실 앞 복

도에서 이동식 6mm 소형카메라를 사용하여 교습을 마치고 위 연습실에서 나오는 학생과 학부모 및 원고를 원고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위 화면을 이 사건 제1 보도에 사용한 사실, 피고 유영수는 위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하기 위하여 위 연습실에 들어갈 당시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카메라기자 등과 함께 위 연습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 유영수는 원고에게 자신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재를 하였으며, 위 연습실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원고가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위 연습실에 남아 연습실의 출입문을 열었다 단았다 하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면서 방송에 나갈 보도내용(멘트)을 반복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피고 유영수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연습실에서의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위법성 조각 여부

이에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취재는 사생활의 영리적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취재장소가 현행법 체포장소였으며, 취재대상인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신분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유영수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통념상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인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의 자유의 보장 속에는 취재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에 제한이 있듯이 취재의 자유 역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

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 유영수의 위 연습실에 대한 출입이나 인터뷰,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유영수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유영수 및 피고 유영수의 사용자인 피고 서울방송은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침해행위의 태양,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피고 서울방송의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인 위 김민옥 등이 1999. 1. 4. 14:40경 위 연습실에 와서 “전보가 왔으니 문을 열라”하여 원고가 문을 열자 경찰관들과 피고 유영수 등 기자들이 연습실 안으로 들어와, 위 경찰관들은 ‘일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바이올린 케이스와 책 등을 뒤지다가 1998년도 일지를 발견할 수 없으니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뒤져보아야겠다며 자동차 열쇠를 요구하고, 원고를 앞세우고 원고의 아파트에 가서 자동차 열쇠를 받은 다음 차 내부와 트렁크를 수색하였는데 당시 위 경찰관들은 현행범이 아닌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묵비권이 있다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에 반하여 원고의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였고(이하 신체의 자유 침해 부분이라 한다), (나) 위 경찰관들이 피고 유영수 등 기자들을 대동 내지 그들의 연습실 침입을 안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피고 유영수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이하 기자 대동 부분이라 한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 (가) 신체의 자유 침해 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여야 하고 강제처분은 법률로 정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률 소정의 대학생 등과 학원이 아니면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원이나 위 법률 소정의 대학생 등이 아닌 자가 과외교습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의 2, 제216조에 의하면,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는 누구든지 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고,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체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에야 체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검증을 할 수 있고,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경찰관들이 원고가 임의로 교부하는 자동차 열쇠를 사용하여 원고의 자동차를 수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8, 9, 10, 1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경찰관들이 위 연습실에 들어 갈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인 김지영에게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는 중이었고, 경찰관인 김민호는 원고에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를 하러 왔으니 협조하여 달라”는 말을 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아울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위 연습실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원고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관하여 신문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경찰서에 인치한 이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위 법률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하는 현행범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경찰관들이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위 연습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한 행위와 원고의 동의 아래 원고의 자동차를 수색한 행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위 경찰관들이 원고로부터 진술을 들을 때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이상 체포당시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절차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기자 대동 부분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강제력 행사의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사인을 참여시키게 된 경우,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종류 및 내용, 강제처분을 하는 장소와 범죄와의 관련성, 강제처분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그의 대응방식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그 사인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경찰관들이 피고 유영수로부터 원고의 과외교습 사실을 신고받고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연습실에 간 것이며, 피고 유영수 등 기자들이 위 경찰관들과 같은 시간에 위 연습실에도착하여 원고와 인터뷰를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 유영수 등 기자들을 대동하였다거나 그들의 연습실 침입을 안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피고 유영수 등의 사생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연습실의 관리자인 원고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피고 유영수 등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경찰관들에게는 이들을 제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이 피고 유영수 등의 사생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생활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서울방송, 유영수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의 내용인 이 사건 각 보도를 하고, 피고 서울방송이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전문교습소 운영 부분

원고가 1994년경 이화스트링앙상블을 창단하여 연습실로 활용하던 위 연습실에서 2년만에 걸쳐 약 10여명의 학생에게 과외지도를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보도는, “원고가 버젓이 교습실까지 차려놓고”, “교습소 문은 이중으로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에서는 안에서 수업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고 하여, 원고가 마치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불법고액과외를 하기 위하여 위 연습실을 교습소로 사용하였으며, 불법과외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연습실에 방음장치를 한 것인 양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입시부정 부분

원고가 과외교습을 한 학생들 중에는 1999학년도 대학입시에 응시할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응시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들로부터 입학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입시부정과 전혀 무관함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도한 응시생은 모두 위 대학에 불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보도 및 제3 보도는, “교수가 ...자기 학과에 지원할 수험생들에게 불법레슨을 하다가...”, “특히 실기시험의 비중이 높은 예체능계의 경우 현직 교수의 과외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 보도), “현직 음대교수의 불법과외 파문과 관련,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음대교수들이 입시생들에게 불법레슨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불법과외로 물의를 빚은 이화여대도 음대 교수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비슷한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습시다”, “교수들의 청렴 서약서가 불법 레슨으로 잃어버린 예체능계 입시관리의 신뢰도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제3 보도)라고 하여, 위 각 보도로 인하여 대학입학시험 실기 시험을 직전에 앞둔 시점에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돈을 받거나 입학시험실기 심사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심사를 하는 등 음대입학실기 시험과 관련하여 입시부정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말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한 부분

피고 유영수가 원고와 인터뷰를 할 당시 수첩을 꺼내 보이면서 원고에게 “불법과외를 많이 하는 교수명단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다른 교수들의 근황에 대해 묻기에 원고가 3, 4년 전에 어떤 교수가 30만원을 레슨비로 받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인데도, 원고가 뻔뻔스럽게도 “다른 교수들도 과외를 많이 하는데 왜 나만 문제삼느냐”고 말하였다고 하는가 하면(제1 보도), “당사자인 최교수...는 몇몇 교수들이 시간당 최고 50만원까지 받으며 불법과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홈페이지 기사문 및 제2보도)함으로써 원고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이 사건 각 보도에서 비록 원고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얼굴도 보도된 바 없으나, “유명 사립음대 바이올린 전공 최모 교수”(제1보도), “이화여대 최모 교수”(제2, 3 보도)라고 자막 처리하거나 보도에 명시하여 원고가 이화여자대학교의 음대교수로서 바이

올린을 전공하는 여자 교수라고 특정되었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방송되어 직업, 나이, 소속 학교, 목소리 등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를 본 사람들 중 일정 범위의 사람들은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나)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여부

언론보도에 있어 그 보도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프로그램의 제목, 배경화면과 자막, 내용의 전체적 흐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 그밖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 등을 종합하여 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주는 인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전문교습소 운영 부분

이 사건 제1 보도에서,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서울 유명대학의 현직 교수가 버젓이 교습실까지 차려놓고 자기 학과에 지원할 수험생들에게 불법 레슨을 하다가 현장을 들켰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 유영수가 “서울 독립문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 악기를 든 학생과 학부모가 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 나옵니다. 한낮에 시작된 바이올린 교습은 밤늦게까지 계속 됩니다. 밤 10시가 돼서야 악기를 든 학생과 학부모, 교수 등 4명이 교습실을 나섭니다. 학생을 따라 가 봤습니다”, “특히 교습소 출입문은 이렇게 이중으로 방음장치가 돼 있어서 외부에서는 안에서 수업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보도에서 한낮에 시작된 바이올린 교습이 밤늦게 까지 계속되다가 악기를 든 학생 등 4명이 교습실을 나섭다며 낮 시간과 밤 시간의 위 연습실 복도의 모

습, 원고와 교습생 등이 위 연습실을 나오는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내고, 교습실에는 이중으로 방음장치가 되어 있다며 피고 유영수가 위 연습실의 출입문을 여닫는 동작을 영상으로 내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진행자 및 피고 유영수의 발언내용, 위 보도의 영상, 내용의 전체적 흐름, 구성과 배치, 그밖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도는 원고가 마치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과외교습을 하기 위하여 교습소를 차려놓고 과외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연습실에 방음장치를 하였다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한 것이라 볼 것이고, 위와 같은 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원고가 대학교수의 직분을 저버리고 돈벌이를 하기 위하여 교습실까지 차려놓고 자신의 불법과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음시설까지 하여 두었다는 인상을 받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입시부정 부분

이 사건 제1 보도 및 제3 보도에서, “서울 유명대학의 현직 교수가 버젓이 교습실까지 차려놓고 자기 학과에 지원할 수험생들에게 불법 레슨을 하다가 현장을 들켰습니다”, “교습 학생 가운데 고3 수험생이 6명, 특히 이번에 최교수의 학교를 지원한 학생도 3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노모 양은 2학년때부터 한번에 15만원씩을 내고 1년 반 동안 교습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실기시험의 비중이 높은 예체능계의 경우 현직 교수의 과외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직 음대 교수의 불법과외 파문과 관련,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음대교수들이 입시생들에게 불법레슨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불법과외로 물의를 빚은 이화여대도 음대 교수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비슷

한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교수들의 청렴 서약서가 불법 레슨으로 잃어버린 예체능계 입시관리의 신뢰도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의 1999학년도 대학 입학시험 정시모집 실기시험이 실시된 날인 1999. 1. 6. 및 7.보다 이틀 전인 같은 달 4.에 이 사건 제1 보도가 나가고, 같은 달 5. 이 사건 제2 보도에 이어 원고가 위 대학교 교수직을 사직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같은 달 7. 이 사건 제3 보도가 나간 점 등 전후 보도의 내용, 이 사건 각 보도내용과 그 제목, 일반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통상의 방법, 배경화면과 자막, 전체적 흐름, 그밖에 시청자의 지식 수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보도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마치 원고가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돈을 받았다거나 입학시험 실기심사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심사를 하였다는 등 입학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입시부정의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거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케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각 보도로 인하여 시청자들은 원고가 지도한 학생이 원고가 재직하는 학교에 응시할 경우 출제과정이나 채점과정에서 원고의 영향력이나 특별한 배려가 개입되어 다른 응시생에 비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소지가 있으므로 장차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정도의 인상을 받았을 수는 있으나, 이런 정도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말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한 부분

이 사건 제1 보도 및 제2 보도에서 “현행법은 허가받은 학원이나 교습소 이외에는 과외

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기시험의 비중이 높은 예체능계의 경우 현직 교수의 과외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수는 다른 교수들도 과외를 많이 하는데 왜 문제삼느냐고 항변합니다”. “불법 과외를 하다가 적발된 최 모 교수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자신만 적발돼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교수도 많은데 왜 자신만 고액 과외라며 항변했습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원고가 말한 것이라고 보도된 이상이 사건 경위와 전후 보도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원고가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울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이 사건 제2 보도를 문자로 게시하면서 “당사자인 최고수 뿐만 아니라 예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몇몇 교수들이 시간당 최고 50만원까지 받으며 불법과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검증결과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 제2 보도에서는 “학생, 학부모들은 다른 교수들도 시간당 최고 50만원까지 받으며 불법과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보도 및 홈페이지 상 게시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과외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취재를 종합한 결과 시간당 최고 50만원을 받으며 과외를 하고 있는 교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지 원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는 것을 보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보도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위법성 조각의 여부

(1) 언론기관의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공공의 이익

대학교수에 의한 과외교습은 실정법상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입시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전체의 신뢰성, 교육의 발전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예능계 입시의 경우 실기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실기평가는 그 성질상 객관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응시생이 누구로부터 지도를 받았는지에 따라 실기능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통념상 응시생을 직접 지도한 사람이 출제·채점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외교습의 실태에 관한 문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1999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실기시험을 불과 2일 앞 둔 시점에서 대학교수인 원고가 실정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여 음악실기 과외교습문제와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피고 서울방송이 한 이 사건 각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취재·보도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 (3) 진실의 증명 또는 상당한 이유

나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앞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진실의 증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전문교습소 운영 부분

원고가 전문적으로 과외교습을 하기 위하여 교습실을 마련하고 과외교습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음장치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전문적인 교습을 위하여 교습소를 별도로 마련하였다거나 과외교습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음장치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5의 기재와 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연습실은 원고가 자신이 조직하여 지도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출신들로 구성된 이화스트링앙상블의 연습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상가에 마련한 것으로 약 16평의 규모에 벽면에 방음장치를 하고 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피아노 1대와 바이올린 2대, 의자와 악보를 올릴 수 있는 보편대 20개, 악보 진열장 등의 설비를 갖춘 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보도에서 마치 원고가 과외교습 현장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음시설을 갖춘 교습소를 별도로 마련하였다는 부분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7, 9, 13, 15의 각 기재와 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집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노혜은은 원고에게 매회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내고 1997. 6월경부터 매월 4회 가량 모두 57회 정도 과외교습을 받아 왔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로부터 과외교습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김지영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1998. 12월 중순부터 1999. 1. 4.까지 10회 이상 과외교습을 받았으며 하루 2, 3명의 교습생이 위 연습실에 오는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김승미는 친척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과외교습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면담을 하러 위 연습실에 왔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 원고는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1997. 6월 경부터 당시까지의 교습비로 받은 돈의 규모가 모두 3천여 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 유영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연습실에서 원고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1998. 12월에 몇 명을 가르쳤는지를 묻자 원고가 6, 7명 정도를 가르쳤다고 말하고, 피고 유영수가 다시 원고에게 원고의 일지에 나오는 학생 이름만 하여도 20명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말하자, 원고가 대학생까지 포함하여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 유영수가 원고에게 과외교습을 하는 것이 수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원고가 학기 중에는 과외교습을 별로 하지 않는데 방학 중이어서 교습생이 많은 편이라고 대답한 사실, 위 연습실 출입구나 안에는 위 이화스트링앙상블의 연습실임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유영수 사이의 인터뷰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취재 당일에도 교습생을 모집 중이며 원고가 위 연습실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동안에는 일부 교습생에게 원고의 집에서 연습까지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습생의 수가 위 1999. 1월경에는 20여 명에 달하며 교습생 별로 교습을 받는 회수도 많고 교습비의 전체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취재기자로서는 위 연습실이 교습실 이외의 용도로 마련된 것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실정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점, 교습자의 집이나 학교에서 과외교습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원고의 교습은 상가

건물 안에 위치한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앞서 본 위 연습실의 규모와 시설, 피고 유영수의 취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습실과 원고를 직접 취재한 피고 유영수로서는 원고의 과외교습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의 교습이 아닌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으로 행하여지며, 위 연습실이 원고의 비밀과외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고 방음장치도 위 상가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대학교수인 원고가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사실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위 피고가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보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나) 말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한 부분

갑 제4호증의 15의 기재와 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유영수와 동행한 어느 기자가 원고에게 “근데 저도 선생님들 아는 분도 몇 분 있지만 입시 때는 몇 십만원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원고가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다 다르죠. 어떤 선생님은 종합예술학교 뭐 30만원 얘기해서 혼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성악가 김영미 선생님 있잖아요. 30만원. 그런 분도 계시고, 이걸 뭐 어디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언제? 얼마 하라고”라고 답변한 사실, 원고는 피고 유영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원고의 과외교습은 조기교육이고 특기교육으로서 과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에 응시한 학생에 대하여 과외교습을 하더라도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교수들도 모두 과외교습을 하지 않아야 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교수는 자신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 중 김영미 교수의 경우는 시간당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남윤 교수의 경우는 교습생이 100여명에 이

른다고 답변을 한 사실, 원고는 체포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악교육은 조기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교수업 외에 과외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과외교습을 하였다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발언내용이 위와 같은 보도내용과는 엄밀히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원고는 피고 유영수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은 물론 경찰에서도 음악실기교육에는 과외교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 유영수로 하여금 원고가 자신의 과외교습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음악실기 과외교습을 하는 많은 교수들 중에 원고에 대하여만 취재하고 수사를 하는 항변을 하는 인상을 주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유영수가 이와 같은 인상을 받은 이상 원고가 “다른 교수들도 과외를 많이 하는데 왜 나만 문제삼느냐고 항변하고”, “자신만 적발돼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중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진실과 합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이 원고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을 피고 서울방송 및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의 기자들에게 공표하였고 피고 서울방송과 주식회사 중앙일보는 이를 기초로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

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위 피고 유영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서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 서울방송 및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의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여 공판청구 이전에 원고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경찰관들이 원고를 체포하여 조사할 당시 위 법률은 유효한 법률이었던 점, 원고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대부분을 시인하였고, 이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도 모두 확보된 상태이었던 점, 위 경찰관들이 발표한 원고의 피의사실은 1999년도 대학입시 정시모

집 실기시험을 불과 1, 2일 앞 둔 시점에서 대학교수가 실정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며 공표의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서울방송, 유영수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99. 1. 4.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1.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서울방송, 유영수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서울방송, 유영수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 11.

재판장    판사    채 영 수  
           판사    박 상 훈  
           판사    한 양 석    □

### 미국판결

1심에서 명예훼손이라 판단한 기사 가운데 일부는  
원고인 놀이공원이 공적 인물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 악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책정하라

Belo Kentucky Inc. v. Kentucky Kingdom Amusement Co.  
(미국 Kentucky주 항소법원 2000년 9월 8일 선고)

#### 판시 요지

놀이공원의 롤러코우스터(roller coaster) 사고에 대한 피고 방송사의 보도로 인해 놀이공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2,975,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인용한 배심원단의 결정이 파기되었다. 특정한 몇 개의 기사들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에 관한 배심원들의 사실 인정을 뒤집으면서, Kentucky주 항소법원은 배심원들이 각 기사별로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기사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인용할 손해배상액을 적절히 다시 책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건 개요

Kentucky Kingdom Amusement Company  
(종전 Kentucky Kingdom, Inc.로 알려진 회사)

가 WHAS-TV를 운영하는 Belo Kentucky, Inc.를 상대로 하여, 'Starchaser'라는 이름의 Kentucky Kingdom 놀이공원의 롤러코우스터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한 WHAS-TV의 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Jefferson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3,975,000 달러의 배상을 명하는 평결을 내놓았고, 법원은 평결을 변경하여 그 배상금을 2,975,000 달러로 감액하였다.

WHAS-TV는 항소이유에서, 법원이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Kentucky Kingdom은 피항소인측의 항소(cross-appeal)에서, Kentucky Kingdom의 명성(reputation)에 대한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1,000,000달러를 경감시킨 1심 법원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1994년 7월 26일, Kentucky Kingdom의 실내 롤러코우스터인 Starchaser 두 대가 충돌한 사

고로 여러 명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보통 한 대가 최초의 승강용 체인에 오르게 되어 있는데, 사고 당시 두 대가 올라 갔다. 직원이 실수를 알아 차리고 긴급 정지장치를 작동하여 첫 번째 차를 정지시켰다. 그 후 두 번째 차가 첫 번째 차를 추돌하였다. 탑승자들 중 7살이던 Mary Noonan이 이 사고로 간파열상을 입었다.

WHAS-TV는 1994년도에 이 사고에 관하여 여러 차례 보도를 하였다. 그 다음 해에 Noonan Noonan의 부모들이 Kentucky Kingdo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6년에, WHAS-TV는 Noonan 소송에 초점을 맞춘 시리즈를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Kentucky Kingdom은 1994년의 보도 내용을 이유로 WHAS-TV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WHAS-TV는 그들의 보도가 정확하다고 믿었다.

Kentucky Kingdom은 1994년의 방송 내용과 1996년의 방송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방송 내용들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였고, 배심원들은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Starchaser가 오작동하였다는 내용, 주 정부 조사관들이 Starchaser가 “너무 위험하다.(too dangerous)”고 생각하였다는 내용, 그리고 Kentucky Kingdom이 핵심 부품을 제거하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였다.

## 판결 이유

### 1. 선례에 대한 검토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판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에 따르면, 우리는 공공의 논쟁거리에 대한 토론은 억제되지 않아야 하

고 견고하여야 하며,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원칙과 그 토론이 격렬하고, 때로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불쾌하고도 날카로운 공격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르자는 국가적 약속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1심의 판단이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록 전체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의 문제에 관하여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문제와 달리, 항소심의 판단은 배심원단이 무엇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무엇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을지를 심사하는데 국한되어야 한다.

Kentucky Kingdom은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기 때문에, WHAS-TV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Kentucky Kingdom에 대한 허위의 명예훼손적 보도를 제3자, 즉 시청자들에게 내보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Kentucky Kingdom은 WHAS-TV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서, 또는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고 방송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Kentucky Kingdom은 WHAS-TV의 내면의 생각을 간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할 수도 있다.

### 2. “너무 위험하다(too dangerous)”는 부분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994년 7월 27일, WHAS-TV의 기자는 충돌을 목격한 Starchaser의 탑승자를 인터뷰하였다. 그 탑승자는, “이 롤러코우스터를 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롤러코우스터는 영구히 폐쇄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기자는 이어, “주 정부 조사관들도 역

시 이 롤러코우스터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놀이공원 측에 브레이크를 개선하고, 차를 너무 일찍 출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울을 설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정황 증거를 통하여 "너무 위험하다"는 보도 부분에 관하여 현실적 악의가 분명하고도 확실히 입증되었다고 믿는다. "너무 위험하다"는 내용이 방송된 후, 주 정부의 조사 책임자는 WHAS-TV에 출연하여 그 롤러코우스터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자신은 그 안전성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농무성의 공보 담당자는 자신이 WHAS-TV의 보도 책임자에게 자신의 부서에서는 "너무 위험하다"고 언급한 일이 없음을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도, WHAS-TV는 "너무 위험하다"는 언급을 계속하였고, WHAS-TV는 "너무 위험하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방송을 계속하였다. 농무성 담당자가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WHAS-TV는 "너무 위험하다"는 언급을 계속하였고, 이러한 표현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방송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황 증거를 통하여 WHAS-TV는 "너무 위험하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도 확실히 입증되었다고 믿는다.

### 3. "롤러코우스터가 오작동하였다 (ride that malfunctioned)"는 부분

사고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994년 7월 29일, WHAS-TV의 기자는 "Kentucky Kingdom은 이번 주초에 오작동하여 여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롤러코우스터를 재가동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과연 놀이시설이 오작동하였는지의 사실 문제가 다투어

졌다. 만약 오작동하였다면, 보도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따라서 Kentucky Kingdom의 명예 훼손 소송에 치명적인 결론이 나오게 된다. 주 정부의 조사 책임자는 그 롤러코우스터가 오작동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그는 자신이 그 사고를 재현할 수 없고, 아마도 그 사고는 조작용의 실수와 스위치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리라는 것이 자신의 견해라고 증언하였다. 우리는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으며, 놀이시설이 오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사실 인정 문제에 관한 배심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비록 우리가 문제의 롤러코우스터가 오작동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Kentucky Kingdom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로써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너무 위험하다(too dangerous)"는 부분과 달리, 우리는 "롤러 코우스터가 오작동하였다(ride that malfunctioned)"는 내용이 보도될 당시 WHAS-TV가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진실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한 나머지 그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Kentucky Kingdom의 견해는 WHAS-TV의 견해와 달랐다. Kentucky Kingdom은 롤러코우스터가 오작동하지 않았고, 조작용의 실수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Kentucky Kingdom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WHAS-TV에게 알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사실의 보도자인 WHAS-TV가 그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심(serious doubts)'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 WHAS-TV에게 현실적 악의

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 4. “핵심 부품이 제거되었다 (removed a key component)”는 부분

1996년에, WHAS-TV는 Kentucky Kingdom 이 롤러코우스터의 핵심부품을 제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WHAS-TV의 기자는 이 정보를 Noonan 사건에서의 선서 진술서와 자신이 판단하기에(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롤러코우스터를 제조한 회사의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입수하였다. Kentucky Kingdom의 기술담당자는 자신의 선서 진술서에서, 롤러코우스터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브레이크는 롤러코우스터의 배차시스템의 부품이었다. 그 직원은 기자에게 브레이크 장치는 롤러코우스터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려주었고, 기술 담당자는 만약 그 브레이크가 작동되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재판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직원이 배차시스템의 브레이크와 감속 브레이크 중 어느 브레이크 장치를 언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WHAS-TV의 기자는 재판에서, ‘제거(removed)’와 ‘핵심 부품(key component)’이라는 단어들은 자기 자신이 사용한 것이고, 또한 부정확한 것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증거가 서로 어긋나기는 하지만 “핵심 부품이 제거되었다(removed a key component)”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는 WHAS-TV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 기자는 시청자들에게 “그 브레이크가 작동과정에서 제거되었고, 사고 진행에서 제거되었고,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고자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우리는, ‘제거되었다(removed)’와 ‘사용되지 않았다(did not use)’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WHAS-TV가 보도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5.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심지도 (jury instructions)

배심지도 6항에서, 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이 지시받았다.

만약 여러분이 배심지도 1항(오작동하였다는 보도에 관한 배심지도사항), 2항(너무 위험하다는 보도에 관한 배심지도사항) 또는 4항(전체적인 1994년도 보도에 관한 배심지도사항)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증거를 통하여 위 특정한 배심지도사항 또는 배심지도사항들에서 언급된 보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1994년의 수입 손실에 대한 손해액(최고 225,000달러)을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Kentucky Kingdom의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합니다.

배심지도 7항에서, 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이 지시받았다.

만약 여러분이 배심지도 3항(핵심부품이 제거되었다는 보도에 관한 배심지도사항), 또는 5항(전체적인 1996년도 보도에 관한 배심지도사항)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증거를 통하여 위 특정한 배심지도사항 또는 배심지도사항들에서 언급된 보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1996년의 수입 손실에 대한 손해액(최고 662,000달러)을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Kentucky Kingdom의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합니다.

우리는, 오작동하였다는 1994년의 보도와 핵

심부품이 제거되었다는 1996년의 보도에 관한 1심의 판단이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하였다. 이 보도 내용들도 배심원단이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데 포함시킨 부분들이었다. 게다가 오작동하였다는 보도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인 1994년도 보도에 관한 배심지도사항의 일부분이었고, 핵심부품이 제거되었다는 보도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인 1996년도 보도에 관한 배심지도사항의 일부분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배심원단에 의하여 명예훼손이라고 결론이 난 보도 내용이 나중에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항소심이 배심지도 항목별로 손해배상액을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Texas주 항소법원은 Putter v. Anderson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3가지 보도 내용 중 2가지 보도 내용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 배심원단이 단일한 하나의 손해배상액만을 결정하였을 경우, 항소심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송의 대상이 된 보도 내용이 모두 배심원들에게 제시되고, 배심원들이 그 모든 항목을 종합한 하나의 손해배상액을 담은 평결을 내놓은 경우에, 항소심 법원으로서 그 평결을 보고 배심원단이 증거상 입증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항목 또는 여러 항목에 대하여 과연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반면에, 만약 배심원들이 개개의 항목 또는 쟁점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각각의 보도 내용

에 관하여, 1994년도의 보도내용에 관하여, 또는 1996년의 보도내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판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그 평결에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개개의 항목 또는 그 항목들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인정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목별로 손해배상액을 배분하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 6. Kentucky Kingdom의 피항소인측 항소 (cross-appeal)

1심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을 일부 변경하여 Kentucky Kingdom의 명성(reputation)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000,000 달러를 삭감하였다. Kentucky Kingdom은 자신의 명성의 훼손으로 인한 특별 손해(special damages) 뿐만 아니라 일반 손해(general damages)의 배상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Columbia Sussex Corp., Inc. v. Hay 사건에서, 우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적 손해(특별 손해 및 일반 손해)와 징벌적 손해로 분류된다고 판결하였다. 특별 손해는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을 뒷받침하는 단순한 상황 이상의 것이고, 일반 손해는 모욕, 정신적 고뇌 등과 관련된 것이다. 타인의 합법적인 영업, 무역, 전문직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진술은, 그 자체로서(per se) 소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WHAS-TV의 진술은 그 자체로서(per se)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Kentucky Kingdom에게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었음에 대한 특별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Kentucky Kingdom은 입장객의 감소로 인하여 Kentucky Kingdom의 소유자가 1997년에 놀이공원의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일반 손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의 훼손에 관한 배심 지도 사항이 문제된 보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하나의 배심지도 사항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명성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수 없다.

## 7.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하고자 이 사건을 Jefferson 카운티 법원으로 환송한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28권 pp. 2345-2352

번역 : 장상균 판사 (수원지방법원)



## 독일 판결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일지라도 그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달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 그 공표를 금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BVerfG),  
2000년 2월 23일 결정 - 1BvR 1582/94

관련조문 : 기본법(GG) 제1, 2, 5조; 민법(BGB) 제823, 1004조;  
비밀경찰문서법(StUG) 제32조

1. 진실한 사실적 주장의 공표일 경우에도 그 주장이 기본법 제1조 1항과 제2조 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에 해당될 때에는, 표현의 합법성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견발표의 자유 및 일반적 인격권간의 형량을 행할 것이 요구된다.

2. 구 동독 비밀경찰의 과거를 고찰한 비공식 요원의 이름을 담은 문서의 진열행위는 기본법 제5조 1항의 보호를 향유한다. 이러

한 '표현' 및 그 표현의 대상간의 시간적 격차는 특히, 표현의 대상이 역사적 사건일 경우, 의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예컨대, 비공식 요원의 이름 및 주소가 든 비밀경찰 명부의 진열행위와 같은 표현의 형태도 의견발표의 자유의 기본권을 통하여 보호된다.

4. 의견발표의 자유 및 인격권간의 형량에

있어 비공식 전 비밀경찰요원 명부의 진열은, 한편으로는 비밀경찰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써 구 동독의 전체주의적 권력기구의 중심적 구성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공중의 중대한 관심사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명부 진열행위 결과로 인한 당사자는 “그 자신의 인격의 기초”와는 관련 있는 문제가 아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사 안

1992년 7월 독일의 한 도시, 할레시에 익명으로 된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할레 및 할레-노이시의 비밀경찰요원”에 관한 명부가 나돌고 있었다. 그 명부는 비공식 비밀경찰 요원 약 4,500명의 이름 및 인적사항, 가명, 기업 및 투입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명부의 서문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명부에는 하자가 없을 수 없으며, 비밀경찰과 이미 오래 전부터 연락이 단절된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비밀경찰과 활발한 공동 활동을 행하지 않은 사람도 명단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다.

할레시의 언론매체는 임의로 그 명부와 이에 공표된 개인의 이름을 보도하였다. 그 명부는 사회의 화제가 되어 마침내 300~500DM의 가격으로 판매되기에 이르렀다. 명부를 송부 받은 헌법소원 제기자는 이 명부를 공개적인 조사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진열하기로 결정하고, 서문이 포함된 문제의 명부를 관심 있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빌트일간지가 명부를 발간하기 시작한 이후, 헌법소원 제기자는 조사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였으나 약 700명에게 정

보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헌법소원 제기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정보가 첨부된 명단을 공표하는 것을 중지하고 원고와 관련 있는 부분은 덧칠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비공식 요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내용을 헌법소원제기자가 전파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공표행위는 원고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소는 모든 심급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지방상급법원(OLG)은 “명부의 표현내용에 따르면 명부에 기재된 인물들은 비밀경찰의 비공식요원으로서 등록되었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비공식요원으로서 실제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상당한 개연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주장이 진실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이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게 기본법이 수여하고 따라서 민법 제823조 1항의 의미에서 그 이외의 권리로서 보호되고 있는 정보자기결정권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NJW 1994, 177에 발간됨).

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중에게 어떤 범위에서 공개할 것인지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물론 이 권리는 의견발표의 자유를 통하여 제한된다. 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의견발표의 자유 중 어느 것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요구되는 형량은, 원고에 대하여 전파된 주장이 진실과 합치될 경우에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는 (물론 직접 적용될 수 없는) 비밀경찰문서법(StUG) 제32조 3항의 제2번에 대한 평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

르면 비밀경찰요원에 관하여는 개인과 관련 있는 진실한 정보의 전파라도, 이를 통하여 언급된 개인의 보호할 가치 있는 중요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원고에 대한 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중대한 공익은 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구 동독에서 상당한 지위의 공직에 임명된 적이 없으며 현재도 어떠한 공직에 있지 않다. 또한 비밀경찰의 조직에서 원고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비밀경찰의 구조 및 비밀경찰을 통하여 구 동독의 사회생활을 밝힌다는 헌법소원제기자가 요청하고 있는 이해는 공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 비밀경찰기구의 구조 및 정보제공자체계의 규모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밝혀졌고 공개되었다.

헌법소원제기자의 상고를 연방대법원(BGH)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하하였다(JZ 1995, 253에 공표됨).

지방상급법원(OLG)이 원고가 실제로 비밀경찰의 비공식 요원으로서 활동했을 경우에도 다시 말하여 헌법소원제기자가 진실인 사실을 전파했을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명부를 공표한 점에서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가 행해졌다고 보는 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동시에 헌법소원제기자는 그 명부의 진열로 인하여 원고의 정보자기결정권만 침해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인격의 기초에 있어서도 관련되고 있다.

비공식 요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언급은 원고의 명예 및 가치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가 어느 정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헌법소원제기자가 이 명부를 공개시에 활동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재된 모든 개인은 구별 없이 밀고자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그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현저한 부담을 안

게 되었고 그의 인격의 핵심영역과 관련되게 되었다. 이러한 작용은 원고의 이름이 4,500명이나 되는 광범위한 비밀경찰의 비공식 요원의 명단에 적시됨으로써 강화되었다. 이외에 적시된 모든 사람이 한정된 지역의 출신이어서, 익명성의 범주에 있었던 것이 독자에게 원고가 누구인지 개인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다.

헌법소원제기자는 공중과 관계 있는 문제에 대한 논쟁에 기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견발표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인격이 우선적이라고 본다. 지방상급법원이 타당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협박을 방지한다는 동기는 중요시되지 않는다. 구 동독의 과거에 대한 고찰에 기여한다는 헌법소원자의 활동도 명부의 진열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고찰에 있어서 명부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적합한 것이 아니다. 명부는 사실, 공적으로 제한된 영역의 얼마나 많은 상이한 계층의 출신 사람들이 비밀경찰을 위하여 활동했어야만 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소원제기자는 우선 기본법 제5조 1항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비난한다.

### 판시이유

헌법소원의 인용에 대한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헌법소원사건에는 기본적인 헌법상의 의미가 없다(헌법재판소법 제93조 a 2항 a). 헌법소원으로부터 제기된 헌법적 문제는 이제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의견발표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간의 긴장 관계에 관하여 대답하게 한다(BVerfGE 90, 22, 24와 비교하시오).

헌법소원의 인용은 침해받은 헌법상 권리

의 관철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법 제93조 a 2항 b). 문제된 판결들은 기본권을 통하여 수여된 보호에 관한 중대한 오해 또는 기본권상 보호를 향유하였던 지위와의 경솔하게 처리한 관계에 근거하지도 않고, 또한 그 판결들은 헌법소원자와 실제적으로 관련된 것으로도 귀결되지 않는다(BVerfGE 90, 22, 25와 비교하시오: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1. 문제된 판결들은 의견발표의 자유의 기본권(기본법 제5조 1항)에 있어서 평가될 것이다. 헌법소원제기자에 의한 명부진열행위는 의견의 발표 또는 사실의 주장으로서의 분류와는 관계없이 기본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헌법재판소 제1부의 1, NJW 1999, 3326, 3327).

의견발표의 자유는 기본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일반 법률규정,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및 개인의 명예권에서 제한된다. 여기에는, 법원이 부작위판결의 근거로 하였던 민법규정 및 기본법 제1조 1항과 연결된 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하여 수여된 일반적 인격권이 귀속된다.

민사법원의 임무는 일반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시에 의견발표의 자유의 기본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데에 있고, 그럼으로써 기본권의 가치설정적 의미는 법률적용의 영역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BVerfGE 7, 198, 208과 비교하시오). 이는 일반적으로 각기 해당하는 법익의 형량을 요구한다. 동시에 법원은 양 법익의 위치를 충분히 참작하여 적절히 고려된 관계로 이끌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정해야만 하는 기본권 충돌은 특히, 민사법원이 기본권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당하게 평가하여 판결이 기본

권의 영향에 대한 오해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 있다(BVerfGE 97, 391, 401과 비교하시오).

헌법재판소의 지속적인 판례에 의하면 의견발표의 자유 및 일반적 인격권이 충돌될 경우에 표현의 허용여부는, 그 표현이 가치평가인가 또는 사실의 주장인가에 달려있다(BVerfGE 94, 1, 8과 비교하시오). 사실의 주장에서는 그 진실성이 중요시된다. 허위이며,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주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경우에는 의견발표의 자유의 관점 하에서 볼 때 보호할 가치 있는 이해는 없다(동일 내용 BVerfGE 61, 1, 8 = AfP 1982, 215).

이에 반하여 진실한 표현은 그것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일반적으로 인용되어야만 한다(BVerfGE 99, 185, 196과 비교하시오: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의 견해에 의하면 예외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레바흐-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진실한 보도를 놓고 논쟁을 하였을지라도, 방송의 자유에 대하여 인격적 이해, 특히 당시 헌법소원제기자의 재사회화에 대하여 우선권을 허용하였다(BVerfGE 35, 202 = AfP 1973, 423). 새로운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진실한 보도는 무엇보다도, 그 보도의 결과가 인격발전에 있어 치명적이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표현행위에 있는 이해보다 중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BVerfGE 97, 391, 403 f.). 이는 진실한 보도가 당사자에게 오명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가 인격을 발전시키는 데에 지속적으로 침해받는 결과로 이끌 경우와 같은 사례에서 있을 수 있다. 끝으로 진실한 표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격적 이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란 표현이 사생활 또는 신뢰의 영역에 해당되고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해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못할 때이다(BVerfGE 99, 185, 196 f.).

2. 문제삼은 판결들은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1) 무엇보다도 법원에 의하여 다루어졌던 명부의 의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명부로부터 거기에서 거명되었던 사람들은 비공식요원으로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요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을 추출해 냈다. 법원은 이를 표현의 본문, 특히 서문을 언급하면서 마침내 근거를 대었고 그리하여 기본법 제5조 1항 1이 표현의 의미에 대하여 내걸고 있는(BVerfGE 93, 266, 295 f.와 비교하시오) 요구들을 고려하였다. 표현이 사실의 주장에 해당한다는 것은 헌법상 고려할 여지가 없다.

2) 법원이 규범적용의 영역에서 의견발표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간에 행한 형량은 출발시점에서도 문제될 점이 없다.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주장은 진실일지라도, 그것이 기본법 제1조 1항과 연결된 제2조 1항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인격적 이익과 충돌되기 때문에 헌법으로 인하여 형량이 요구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 사람이 비밀경찰의 비공식요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사실의 간주는, 당사자의 성실성 및 인간적 동질감에 있어서 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고, 주위 사람들이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게끔 할 위험에 처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비밀경찰들이 행한 불법과 동일한 정도로 동일시되었다(BGH, NJW 1998, S. 3047, 3048과 비교하시오).

3) 이에 반하여 원고에 관한 공표에 있어

서 명부의 진열이 진실인 사실의 주장에 관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이 명부의 진열을 위법한 것으로 분류한 것은 기본법 제5조 1항 1과 일치하지 않는다. 법원은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영향을 헌법상 비판받아 마땅할 만큼 타당치 않게 평가했다.

(1) 헌법소원제기자의 공표로 인한 이해에 대하여 법원은 헌법소원제기자의 기본권상의 위치를 오해하여 너무 적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헌법소원제기자는 -특히 서문으로부터 추출해 낸 바와 같이- 명부의 진열로써 비밀경찰의 활동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 비밀경찰의 과거에 대한 정치적 고찰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기본법 제5조 1항의 기본권의 보호하에 있는 이와 같은 관심사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수여한다. 상급지방법원이 결정적으로 고려하였던 표현과 그 표현의 대상간의 시간적 간격은 이 자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는 표현의 대상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찰'일 경우에 해당된다. 토론에 대하여 중지부를 찍거나 논쟁의 종결을 유도하도록 설명하는 것은 법원의 임무가 아니다.

특히 법원은 당해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비밀경찰-체계에 대한 개인적, 역사적 또는 출판적 고찰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고찰'의 일정한 종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기본권의 보호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형태와도 관련된다(BVerfGE 93, 266, 289 = AfP 1976, 56;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법원은 충분히 고려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법원은 헌법소원제기자가 공중

과 중대하게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 표현하였다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았다. 비밀경찰은 구 동독의 국가 시설 및 제도 중 특별한 것이다. 이는 구 동독의 전체주의적 권력기구의 중심적 구성요소였으며, 정치적 통제 및 전체 국민을 억압하는 제도로서 기능하였고 특히 정치적으로 이견을 가진 자 또는 출국을 원하는 자를 감시·위협하고 차단하는 데에 기여하였다(BVerfGE 94, 351, 368과 비교하시오). 비공식요원이 비밀경찰과 어떻게 연결되었고 동시에 국가안전부가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은 1996년에는 아직도 상당히 연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Mueller-Enbergs, Inoffizielle Mitarbeiter des Ministerium fuer Staatssicherheit, 2. Aufl. 1996, S.8).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1992년 7월에는 물론 지속적인 공익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공익은 원칙적으로 오늘날에도 존재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이미 진상규명의 이해가 발생한다.

목록은 비밀경찰의 과거에 대한 고찰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없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물론 헌법상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명부 공표로 인한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이 원고와 관련된 명부의 진열이 위법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해 근거가 되었던 명부에 거명된 자의 활동의 특별함이 빠져있다는 것은, 정보에 있어 비밀경찰의 잠재적 장악이 광범위하였고 다양하였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헌법소원제기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명부는 왜곡된 정보체계의 현실을 목전에 보여주는 적절한 수단이었다.

(2) 다른 면에서 사례의 실제적 상황은

원고의 인격권 침해 정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명부 진열 행위가 원고 “자신의 인격의 기초”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다. 보도가 진실인 경우에도 위법한 것이 되는 내밀(사생활) 또는 신뢰영역에 대한 보도(BVerfGE 99, 185, 196 f.)는 제시되지 않았다. 명부의 진열이 원고에게 현저한 인격적 손해를 가하기에 적당하다는 것도 인정될 수 없다. “레바흐-사례”의 TV보도에서와는 달리 명부의 진열은 특별히 광범위한 전파작용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헌법소원제기자는 명부를 언론매체에 송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있는 장소에 놓아두었다.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명부에 대해 알았다. 여기에서는 언론매체에 상응하는 명부의 공표가 일반적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로 이끌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은 필요치 않다.

또한 명부가 제시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은 두말할 여지없이 의미 없다. 원고는 홀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할레 지역에서 4,500명의 비공식 요원 중 한 사람으로서 등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구 동독에서는 적어도 600,000명의 사람이 비밀경찰의 비공식 요원으로서 등록된 상황이 있었다. 최종적인 인원 수는 170,000명이었다(Mueller-Enbergs, a. a. O., S.7). 비밀경찰의 비공식 요원으로서의 활동은 일종의 군중현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1992년 초 출판물을 통하여 알려졌기 때문에, 특정인이 비공식 요원이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격리로 이어진다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결국 비밀경찰조직에서 비공식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의 간주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성폭행 하였다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BVerfGE 97, 391, 404를 보시오)처럼 동일하게 사회적 인정의 박탈 또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것”으로 될 것 인지도 분명치 않다. 비밀경찰의 비공식 요원로서의 활동은 그 자체로는 형사법적으로 별로 중요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공식 요원의 역할은 그동안 철저히 차별화하여 평가되어 왔다. 1989/1990년의 연구결과, 비밀경찰의 억압 및 탄압체계에 있던 비공식 요원은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들의 지도장교에 종속되었음이 밝혀졌다 (Mueller-Enbergs, a. a. O.와 비교하시오).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상세한 확인 없이 어떤 사람이 비공식 요원으로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고립 및 낙인 찍힘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

3. 나타난 헌법상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의 인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방상

급법원 및 연방대법원은 기본권상의 긴장의 관계를 적확하게 보았고 의미 있는 기본권에 따라 형량을 행하였다. 그 법원들은 특히 중대한 형량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오해 또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의미에서의 기본권과의 경솔한 관련은 물론 확인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제기자는 판결과는 실제적인 관련이 없으며, 그가 앞으로 명부를 진열하는 것은 행할 수 없다. 이미 첫 번째의 심급에서 헌법소원제기자는 명부를 진열함에 있어 미래에 더 이상의 이해는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그는 문제삼은 판결들을 통하여 더 이상 중대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출처 : *AtP* (Zeitschrift fuer Medien- und Kommunikationsrecht, Heft 5-2000, SS.445-449)

번역 : 손원선 (법학박사 · 고려대학교 강사) □

호주사례 1

외교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관한 내용은  
충분한 보도 가치가 있으나 반론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

호주신문평의회는 스리랑카 외교관이 Canberra Times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의 일부를 수용했다. 신청인은 2000년 6월 10일자 신문의 "타밀 사람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실패한 낙찰에 엄청난 금액 지불"이라는 제하의 기사내용에 불만을 신청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타밀사람들이 정치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스리랑카로 강제 편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폭행 등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 주재 스리랑카 외교관인 Bandara씨는 문제의 기사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

번에 걸쳐 해명하려 했으나 신문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신청인은 또한 관련 사진과 "숨겨진 부분 : 스리랑카 정부는 얼마나 많은 타밀인 죄수들이 감옥에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진 설명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호주신문평의회는 신문사는 문제의 기사를 보도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호주의 수도에서 발간되고, 외교관계자들이 주요 독자인 Canberra Times지 같은 신문에 스리랑카의 인권에 관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특히 호주와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으

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에 관한 기사이기 때문에 보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사는 스리랑카 외교관이 보내온 처음 두 개의 해명서가 그 내용이 너무나 장황하고 편집자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청인측의 세 번째 해명서는 간략한 내용으로 누구나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250자 정도였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해명서는 문제 기사가 보도된 지 3주 후에 도착하여 신문사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해당 사건이 수용자의 관심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신문사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가 보도된 지 하루 후에 신청인이 접촉을 시도했으며, 지속적으로 스리랑카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관들 특히 호주연방으로 온 스리랑카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신문사의 사회적 지위

와 영향력 그리고 독자들의 자질, 그리고 기사 내용으로 볼 때 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되었다. 한편 호주신문평의회는 폭탄이

터지고 난 후에 누군가 체포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의 게재에 대한 불만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진은 기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

했다.

### 평 결

PCC는 편집자가 윌리엄 왕자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후회하며 사과한 점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PCC는 윌리엄 왕자의 사진 게재와 관련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했다.

첫번째, 보도실천강령 제3조(사생활 보호)에 관한 문제다. 윌리엄 왕자가 충분히 자신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곳으로 여행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진들은 사생활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다른 어떤 영국의 출판물도 이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잡지의 행동에 유감을 표시했다. 잡지사 측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윌리엄 왕자의 삶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해외에서의 과파라치 사진촬영을 촉발하여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둘째, PCC는 귀찮게 하거나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결과로 얻은 사진의 발행을 금지하는 보도실천강령 제4조의 위반을 지적했다. 왕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젊은이들에게 명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 강령의 중요성에 대해 PCC는 강조하고 있

## 영국사례 1

### 언론사는 보도사진을 게재할 때 사진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며 사적인 장소에서의 사진은 보도하지 말아야

#### 불만내용

Stephen Lamport씨는 영국왕실의 윌리엄 왕자를 대신해 2000년 10월 27일 'OK! Magazine'에 게재된 윌리엄 왕자의 사진이 보도실천강령 제4조(괴롭힘)와 제3조(사생활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불만을 신청했다. 신청인의 불만은 수용되었다.

사진은 윌리엄 왕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을 앞둔 시점에 칠레로 여행갔던 휴가기간동안 촬영된 것으로 윌리엄 왕자가 하이킹 하는 모습과 강에서 노는 장면 등의 사진을 담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진들이 보도실천강령 제4조를 위반하여 왕자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하여 출간물의 시장가격을 올리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편집인은 이 문제의 사진들은 결코 파파라치적인 행동을 통해 촬영한 것이 아니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진의 내용은 미래의 영국 왕실을 이끌어 갈 사람으로서 준비 중인 왕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편집인은 왕세자와 윌리엄 왕자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신청인은 보도실천강령은 편집자에게 사진의 출처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왕자가 개인적인 사생활 보장을 원하는 장소에 있었던 점 또한 명백하다고 주장

다. 덧붙여 위협이나 혹은 끈질긴 추적으로 얻게된 윌리엄 왕자의 사진을 발간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타당한지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신청인이 그 잡지사가 그들에게 접근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고, 문제의 사진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윌리엄 왕자를 쫓아다니는 사람에 의해서 찍혔을 수밖에 없다고 PCC는 확신했다. 윌리엄 왕자 또한 사진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았으므로

외국 파파라치가 사진을 촬영한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모든 출간물은 누가 촬영하였든간에 사진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강령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강령을 준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출간물은 보도실천강령 제4조를 위반했다. PCC는 이번 기회로 모든 출간물들이 사진 게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사진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편집자는 16세 미만의 어린이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보도실천강령 제6조는 본질적으로 어린이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 보도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어린이를 당혹하게 하거나, 학교 생활을 방해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아이의 안녕을 해치고자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어린이의 안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사진의 게재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실천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영국사례 2

###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어린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사진의 게재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

#### 불만내용

런던에 사는 도날드 씨 부부는 자신들의 아들 사진을 게재한 2000년 7월 8일자 Hello Magazine이 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보도실천강령 제6조(어린이)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날드씨 부인의 여동생은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이다. 그녀

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신청인의 아들이자 그녀의 어린 조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 촬영, 보도된 것이다. 사진 설명에는 아이의 신원을 알 수 있었다.

신청인은 자신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기자가 촬영, 보도하여, 아이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 자신이나 가족이 공개적으로 나서려 한 적이 없었

#### 평 결

보도실천강령의 제6조는 편집자가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촬영한 사진을 출간하기 전에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PCC는 판단했다.

만약 이 강령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어린이에 대한 사진은 아무리 악의가 없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발행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강령이 의도하는 바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 이 조항은 어린이의 안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16세 미만 아이의 인터뷰를 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

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명백하게 공공장소에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도 PCC는 사진이 다른 의미를 내포하거나 어린이의 안녕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문제의 사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사생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히 아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보

도실천강령 위반일 수는 없다. 문제의 사진은 진심으로 아이의 사생활이 우려될 만한 문제도 아이의 안녕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도 아니었다. PCC는 어린이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신청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심사숙고했지만 보도실천강령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불만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결했다. □

가 신문사 기자와 시간을 할애하는 동안 입은 손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신문사 편집장은 이것이 기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신청인은 그 여성은 직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수입에 대한 손실도 없었다며 편집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평 결

PCC는 언론사측이 기사에 대해 대가를 지불한 행위는 명백히 보도실천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도실천강령은 취재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반드시 알려져야 하는 사항이거나 지불이 취재가 행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지불도 범죄와 연관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여성은 살인자와 연관이 있었고 범죄의 가해자와 그녀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 돈을 받았다. 또한 문제의 기사내용은 공공의 이해를 고려해 불만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도 않으며, 편집자는 왜 지불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PCC는 신청인의 불만을 수용했다. □

## 영국사례 3

### 범죄 피의자의 연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공익과 무관한 내용을 인터뷰하여 보도한 것은 보도실천강령 위반에 해당

#### 불만내용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Jason Collie씨는 The Sunday Sport지 1999년 11월 7일자에 게재된 기사 중 하나는 범죄피의자와 관계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보도실천강령 제16조(기사에 대한 지불)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문제기사는 신청인의 친척을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언도받은 남자의 전 여자친구와의 인터뷰를 근간으로 두 연인의 성생활을 숨김없이 상세히 담고 있는 내용이다.

신청인은 그 여성이 그 기사와 관련 500파운드를 받았고 이는 보도실천강령에 의하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500파운드는 여성에게 취재에 대한 협조의 대가로서 지불한 것으로, 그녀

#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가수 신해철 씨, 자신의 '결혼설' 보도한 스포츠지 상대로 소송

가수 신해철 씨와 윤아무개 씨는 8일 "결혼 계획이 전혀 없는 데도 합부로 이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스포츠서울과 취재기자를 상대

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스포츠서울>은 지난 달 20일치에서 "가수 신해철과 미인대회 출신 윤씨가 이르면 3~4월께

화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2001. 2. 9.(19면)

###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지난 9일자 한겨레신문의 '심층해부 언론권력' 기사와 관련, 이 신문사 최학래 사장과 고영재 편집위원장 등 5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사장은 고소장에서 "한겨레가 마

치 고소인 등이 부자간 매매형식을 빌려 지분 40%를 편법 상속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방사장은 이번 주 중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한겨레의 왜곡된 보도를 인용·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2001. 3. 12.(29면)

### 현행법 체포 현장 방송때도 동의 없으면 초상권 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현행법 체포 장면을 피의자 동의 없이 촬영, 방송한 경우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1년 1월 11일 이화여대 음대교수였던 원고가 서울방송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이올린 불법 과외 현행법으로 경찰이 원고를 체포하기 위해 연습실에 들어갈 당시 피

고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취재를 하고,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않고 압수수색 및 체포 장면을 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법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원고는 1999년 1월, 자신의 음악 연습실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과외 교습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서울방송이 이 장면을 취재, 보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고는 학생들에게 과외를 한 혐의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 처분은 2000년 6월 29일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 KBS 프로그램에서 주민등록증을 도용 당한 자신을 범죄자로 공개수배하자 손해배상소송 제기

H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조모 씨 등 일가족 4명은 11일 "KBS의 오보로 나와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방송공사는 KBS-2TV '공개수배 25시' 프로그램에서

부산경찰청 소속 최모 형사의 제보로 조씨를 위조여권사기범으로 방송했으나 실상은 진범인 권모 씨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 이름을 도용한 것이다"며 "따라서 사실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원고의 실명과 사진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위법한 행위다"고 주장

했다. 또한 "법행에 사용된 전화가 원고의 이름만으로 가입되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고를 공범으로 단정, 원고를 공개수배키 위해 위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2001. 1. 12. (22면)

### 월간조선 조감제 씨, 수사발표문 손봐주고 돈 받았다고 보도한 '딸' 지혜 승소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구만희 부장판사)는 2001년 1월 12일 월간조선 조감제 대표이사가 "월간 '딸' 지가 98년 12월호에서 안기부의 이선실 사건 수사발표문을 손봐주고 수고비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회사와 오연호 전 취재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표현에 있어 인신공격 내

지 모욕에 이르거나 타당한 근거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논리전개의 비약을 넘는 등 말지의 보도가 정당한 논평 및 의견 표명의 범위를 이탈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 통신사 오보로 주가급락해 손해 본 투자자 손해배상소송 승소

통신사의 오보 때문에 특정 회사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본 투자자에 대해 통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2001년 1월 10일 최모 씨 등 2명이 로이터 통신의 한국지사 로이터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최씨 등에게 이 사건 보도가 있던 시점의 주가와 원고들이 매도한 시점의 주가 차액인 9천2백5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자금사정에 관한 부정적 보도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사실확인 작업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증권가의 소문과 대신증권의 성명 불상 간부로부터 들은 말만 근거로 성급히 보도해 대신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원고들이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로이터 코리아는 1999년 10월 25일 "D증권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가 화의 신청을 했으며 D증권은 1천6백억원 가량의 지급보증이 걸려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데 이어 약 두 시간 후에 '사실이 아니다'는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원고들은 보도 직전 1만8천2백원에 거래되던 D증권 주식이 11분만에 8.8~11% 나 급락해 피해를 보았으며 1억6천여 만원을 청구했다.

로이터 코리아는 증권,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과 계약을 하고 주식 관련 정보를 각 회사 컴퓨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판결은 증권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증권시장 정보 공급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급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앙일보 2001. 1. 11. (27면) 참조

## 동아일보, <한겨레21> 기사 관련 한겨레 상대 3억 손해배상소송 제기

동아일보는 2일 족벌언론의 폐해를 지적한 <한겨레21>의 기사내용이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 신문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일보는 소장에서 “동아일보사 김병관 회장이 지난해 청와대에 자사 소유 부동산의 용도변경과 부동산 매입 등을 요구했다는 <한겨레21>의 ‘족벌언론 황제, 브레이크가 없다’ (2000년 11

월 16일자)는 제목의 기사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또 “영남권 경제불황을 부각시킨 기사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비판 칼럼의 삭제, 여당 중진위원들의 동방금고사건 연루 의혹 보도도 사실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회장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일환으로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기사를 내보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

해 <한겨레21>은 “문제의 기사는 충분한 취재와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한 것”이라며 “김병관 회장(현 명예회장)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 등 보도한 내용의 진실성을 법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한겨레21>의 해당 기사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냈으나 중재가 결렬됐다. 한겨레 2001. 1. 3. (19면)

## 권노갑, 김홍일 씨 등 3명 동아일보 상대 15억 손해소

민주당의 권노갑 전 최고위원과 김옥두 전 사무총장, 김홍일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사설펀드 운용사건과 관련해 동아일보가 자신들을 문제의 사설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허위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분사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위원 등은 서울지법에 15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낸 한편 취재기자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권 전 위원 등은 소장에서 “동아일보가 본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0년 11월 1일자 A1면에 ‘정현준 사설펀드 가입자 여권 실세 등 10명 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민주당 실세인 K의원과 또 다른 K의원, 원외의 K씨 등이 정씨의 사설펀드에 가입했다’고 허위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당시 검찰수사 관계자로부터 문제의 사설펀드 가입자에

일부 정치인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취재했으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름은 익명으로 보도했다.

권 전 위원 등은 본보의 보도 직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양측 변호사들이 중재위에 참석한 가운데 중재절차가 진행돼 직권중재안이 마련되기도 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동아일보 2001. 1. 3. (31면)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만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판결

서울민사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0년 12월 27일 김정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동아일보는 신문 제1사회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웃로비 의혹사건에서 자신의 처가 위증을 주도한 것처럼 보도해 명

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의 위자료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소속 기자들이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던 ‘웃로비 의혹 사건’에 관하여 지속적인 취재를 거듭했고 그로 인하여 사건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여지고, 문제의 보도내용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상당

부분 진실에 부합하며, 원고가 공인으로서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적인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등을 고려 손해배상을 명하기 보다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 정정보도만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 신중현 씨, 공연녹화 무단방송 방송사 상대 소송

가수 신중현 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라이브공연을 녹화, 방영한 3개 방송사 등으로부터 모두 3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9일 신씨가 (주)인천방송과 아리랑 TV를 운영하는 국제방송 교류재단, 음악전문 케이블TV 방송 m-net의 (주)뮤직네트워크, 공연 기획자 황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해 3천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개 방송사가 신씨의 라이브공연을 기획, 홍보했던 황씨로부터 공연 녹화데이프를 받아 신씨의 허락 없이 1-3차례에 걸쳐 방송해 저작인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신씨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획자 황씨가 3천500만원의 공연 출연료를 신씨에게 지급했

고 방송사가 공연을 홍보해주는 대가로 공연 방영을 허락받는 게 관행"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황씨는 공연 실연자가 아니고 신씨가 황씨에게 방송을 허락할 권한을 주지도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3개 방송사가 지난 해말 서울 모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라이브 공연을 허락없이 무단 방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2000. 12. 19.

### 여성단체, SBS <한밤의 TV연예> 고발 취하

여성단체연합, 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연합 등 3개 여성단체는 14일 SBS TV '한밤의 TV 연예'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B양 비디오 사건'과 관

련해 SBS TV '한밤의 TV연예'가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7일 SBS 송도군 사장과 이충용 프로듀서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성단체들은 "SBS측이 주 2회 편성

되던 '한밤의 TV연예'를 주 1회로 축소하고 프로그램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해 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0. 12. 15.

### 기사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 묻어

서울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인영률 부장판사)는 2000년 12월 13일 지난 4·13총선에서 서울 공진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상우 전 민주당 의원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쓴 '대학 때부터 대마초 흡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독자들에게 김 전 의원이 대학 시절 이후 계속 대마초를 흡연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대학시절 세 차례 대마초 흡연 이후 단 한 번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13총선 직전 동아일보가 '대학 때부터 대마초 흡연'이라는 소제목하에 김 전 의원이 현재까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의원부신 보험특혜' 보도 한겨레 기자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민주당 김옥두 의원 부인의 '보험특혜 모집의혹' 사건을 보도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계약 명세를 기사화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겨레신문 김규원 기자(3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달 2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기자가 권력층의 로비 진상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막고 사생활 비밀을 보호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취지에 비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99년 9월 김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보험특혜모집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 명세 등 신용정보를 검색,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동아일보 2001. 3. 7.(29면)

# 위원회 소식

## 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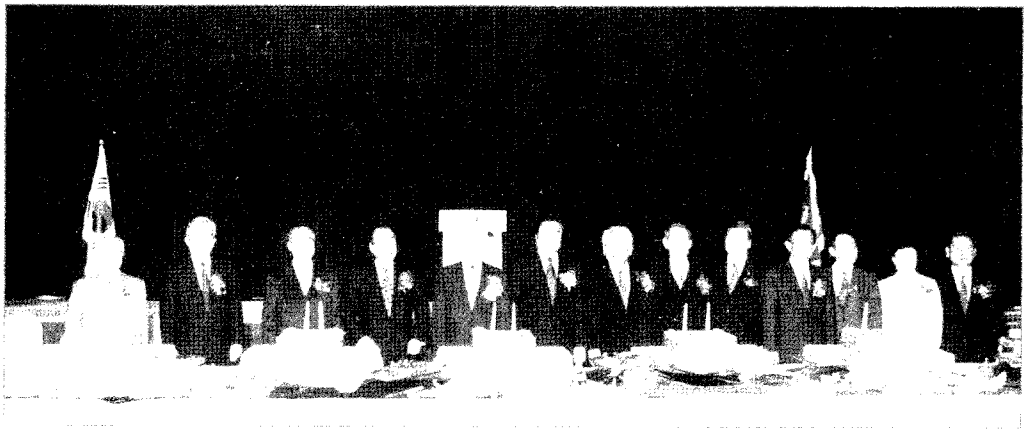
위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30일 오후 7시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회, 정부,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유관단체 인사와 전·현직 중재위원 등을 초청하여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박영식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구현하고자 하는 언론중재의 기본정신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여 “보다 폭넓고 신속한 언론피해구제기관이 되도록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한동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 20

년동안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지금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굳게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변화하는 언론환경과 국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여,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언론피해 구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 리셉션에는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한명숙 여성부 장관 등 행정부 인사와 박권상 방송협회장, 최학래 신문협회장 등 언론계 인사, 하순봉 한나라당 부총재, 정재현 대한변협회장 등 각계 인사와 안우만 초대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중재위원들이 참석하였다.



## 2000년도 연차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2000년도 언론중재신청사례 및 시정권고사례 등을 수록한 <2000년도 연차보고서>를 3월 3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00년도 한 해 동안 접수 처리한 총 607건의 언론중재신청사례와 234건의 시정권고사례, 통계분석 및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재신청사례 색인편에서는 신청인명

가나다 순으로 중재대상 매체 및 처리결과, 법원 소송 진행사항 등을 수록했다.

(4×6배판, 비매품)



## 2001년도 정기 위원총회 개최



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오후 63빌딩 컨벤션센터 엘리제홀에서 2001년도 정기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과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

원을 선출했다.

한편 위원장은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장원상 광주사무소장 외 3인에게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임병국 중재심의실장 외 16명에게 장기근속상을 수여했다.

2001년도 운영위원과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 ◇ 운영위원

위원장, 송정재 부위원장, 윤재운, 박용배, 강금실, 허광욱, 김복규, 지규현, 이기수 위원

### ◇ 시정권고위원

위원장, 서정우 부위원장, 황성재, 최광일, 양삼승, 박인순, 주동환 위원

## 신임 중재위원 위촉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법원 인사(2월 12일, 19일자)로 해당 근무지역이 변동된 중재부장 후임으로 지난 3월 7일, 7명의 중재부장을 위촉했으며, 사퇴서를 제출한 전북중재부 권혁남 위원 후임으로 신현철(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을 1. 26자로 위촉했다. 3월 7일 새로 위촉된 중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제4중재부	이 동 명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제5중재부	심 상 철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중재부	황 형 모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중재부	이 국 환	대구지법	부장판사
광주중재부	장 광 환	광주지법	부장판사
강원중재부	이 현 섭	춘천지법	부장판사
충북중재부	김 재 복	청주지법	부장판사

## 강원사무소 이전

위원회 강원사무소는 2월 16일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강원도청 인근)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 (033)255-2878

## 위원장, 대전지역 언론사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박영식 위원장은 대전중재부 중재위원과 함께 지난 2월 22일 대전지역 언론사 대표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적극적인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 법원 인사에 따른 중재부장 이동

법원의 인사이동(2월 12일, 2월 19일자) 등으로 일부 중재부장의 근무처가 변경되었다.

서울제4중재부 이상훈 중재부장과 광주중재부 장갑주 중재부장이 각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서울제5중재부 이진성 중재부장이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대구중재부 김수학 중재부장이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되었다.

한편, 부산중재부 류수열 중재부장은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강원중재부 조해섭 중재부장과 충북중재부 허근녕 중재부장은 사법연수원 교수로 각각 전보되었다. □

국내 문헌

- 강준만, 『대중매체 법과 윤리』, 인물과 사상사, 2001
- 민영목, 『방송모니터 길라잡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방송위원회, 『프랑스방송법』, 2000.
- 버지니아 나이팅게일, 박창희 외 역, 『수용자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심재철 외, 『보도비평-신문의 미디어 비평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재단, 2000.
- 아마모토 후미오, 김재홍 역, 『일본 매스커뮤니케이션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이상훈,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진흥원, 2000.
- 이충환, 『디지털 시대의 텔레비전 보도문장론』, 나눔, 2000.
- 주창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성 분석』, 한국방송진흥원, 2000.
- 최영목 외, 『디지털시대의 영상저작권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0.
- 한국언론재단, 『세계 언론법제 동향 2000(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한국언론재단, 『세계 미디어 교육 모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황영식, 『다치바나 다카시의 탐사 저널리즘』, 중앙M&B, 2000.
- 강경근,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언론중재』, 2000 겨울.
- 권혁남, “집중점검 : 미국 언론의 대선보도와 교훈-오보의 원인과 교훈”, 『신문과방송』, 2001년 1월호.
- 권형준, “반론보도의 범위와 한계”, 『언론중재』, 2000 겨울.
- 김서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의견”, 한국시청자 연대회의 주최 『민영 미디어랩, 시장논리인가 방송의 공공성인가』 세미나 발표논문, 2001. 2.
- 김양하,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방향”, 『방송21』, 2000년 12월호.
- 김우룡, “알 권리와 명예훼손의 갈등”, 『저널리즘』, 2000년 겨울호.
- 김재협, “공인과 사인의 차이”, 『신문과방송』, 2001년 1월호.
- 김재협, “재판 생중계나 녹화중계는 불가능한가”, 『신문과방송』, 2001년 2월호.
- 김형일, “방송에서 언론자유 의 실천적 의미-한국 방송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김희진, “민영 미디어랩의 제문제”, 『방송21』, 2000년 12월호.
- 문성근, “언론보도와 피의자의 사생활보호”, 『부산법조』, 18호, 2000. 12.
- 박광복,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표현의 자유와 법적 규제-한국·미국의 관련 법판례를 중심으로-”, 강원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선영,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통권 제6호, 2000년 겨울.
- 박영길,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상)”, 『저작권』, 2000 겨울호.
- 박용규, “포르말린, 피를 말린”, 『언론중재』, 2000 겨울.
- 박용상,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헌법논총』 제11집, 2000.
- 박 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위상”, 『저작권』, 2000 겨울호.
- 배영수, “인터넷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고려대 대학원

-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변해경, “한국 프레스 옴부즈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 구, “시진기자가 본 초상권”, 『신문과방송』, 2001년 3월호.
- 양삼승, “언론평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2000 겨울.
- 양용철, “판례로 보는 초상권의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유재천, “한국언론의 좌표-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 보고서 내용 요약”, 『관훈저널』, 2000 겨울.
- 이광재, “사이버 공간의 익명언론과 무질서”, 『관훈저널』, 2000 겨울.
- 이도선, “집중점경 : 미국 언론의 대선보도와 교훈 - 대선 오보의 수습과정”, 『신문과방송』, 2001년 1월호.
- 이명재, “인터넷성인방송에 대한 타율적 규제의 근거와 한계”, 한국인터넷방송협회 주최 『인터넷방송 표현의 한계, 그 자율과 타율의 경계』 세미나 발표논문, 2001. 3.
- 이재진,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2000 겨울.
- 이재진,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 2000년 겨울.
- 이준용, “집중점경 : 미국 언론의 대선보도와 교훈-출구조 시에 대한 오해와 이해”, 『신문과 방송』, 2001년 1월호.
- 이효성, “신문의 후보지지, 그 공정성과 공정성”, 『신문과 방송』, 2001년 1월호.
- 이훈규, “시진기자가 본 초상권”, 『신문과방송』, 2001년 3월호.
- 장봉진, “케이블TV 심의현황 및 주요 특징”, 『방송21』, 2000년 12월호.
- 주정민, “뉴미디어 진입규제 정책의 딜레마에 관한 연구- 위성방송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최 경,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취재대상자와의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경수, “위성방송 관련 저작권 문제”, 『방송21』, 2000년 12월호.
- 최 영, “성인방송 인터넷방송 자율규제 방안”, 한국인터넷방송협회 주최 『인터넷방송 표현의 한계, 그 자율과 타율의 경계』 세미나 발표논문, 2001. 3.
- 최현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과 공익실현 정책”, 『방송 연구』, 2000년 겨울호.
- 한광점,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 2000년 겨울.
- 황상재,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 2000년 겨울.

## 외 국 문 헌

- David Pritchard, *Holding the Media Accountable : Citizens, Ethics and the Law*, Indiana University Press, 2000.
- Helgi Walker, “Communication Media and the First Amendment : A viewpoint Neutral FCC is not too much to ask for”, *Federal Communication Law Journal*, Vol. 53, No. 1. □

## On-Line 중재상당실



###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한 지역 언론사의 2월 19일자와 20일자의 사회면과 사실란 등에 "납골당 사기"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치 사기가 기정사실화되어 구속처리로 마감이나 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사건은 조사과정이었으며, 더구나 구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이나 언론에서 만들어낸 선의의 피해자만이 발생한 것이지요. 회사로써는 크나큰 이미지 손상뿐 아니라 국가에서 장려하는 화장문화의 보급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기사의 첫머리에 경찰에 의하면 내지는 전남 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하는 식의 경찰측 일방적인 내용만을 다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면, 최소한 저희 회사에 찾아오지는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회사가 입은 직·간접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지, 접수 가능하다면 회사의 명의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직원인 1인만으로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경찰의 수사 종인 사안이라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언론사로서도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도된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이나 해명을 실어줄 것을 요구하는 반론보도청구는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나 재판상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그러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추후보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는 당사자는 기사에서 피의자로 언급된 개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단 기사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차원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역시 회사명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상 단체에 관한 명예훼손은 단체가 개인에 관한 명예훼손은 개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하셔야 합니다. 중재신청을 하실려면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062-676-0360)로 문의하시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재신청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허위기사로 입은 피해

2001년 2월 21일자 ○○신문과 이를 함께 게재한 모 인터넷 사이트에 "명예훼손 맞고소 인터넷 자키들, 더 이상 잠을 수 없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 기사 내용 중에 저의 실명으로 성인방송국 ○○○ 이사가 인터넷자키 지망생들에게 "몸선을 봐야한다, 웃을 벗어라, 카메라에는 필름이 없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제보자에게 문의한 결과 그 자리에 제가 배석했다는 얘기만 했지 제가 그런말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신문사의 모 기자는 자신은 민원인이 말하는 내용을 옮겨 적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날조된 내용이 신문뿐 아니라 1일 수백만 페이지부에 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기사로 순식간에 파렴치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를 다룬 모 기자는 저에게 사실 확인 한번 한 바 없습니다. 본인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방송 등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의 사건을 접수하여 중재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만일 그러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신문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이나 반론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의 없는 사진 게재에 대하여

언론사 사회면에 본인 동의도 없이 사진이 게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내용은 고속버스에서 임석 손님들을 태우고 과속 질주한다는 내용인데,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제 얼굴이 너무도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회사 동료 및 친구들로부터 놀림 아닌 놀림과 전화를 받아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게재된 사진이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정정보도가 게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누구나 알 수 있는 본인의 초상

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게재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해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우병의 보도에 대한 중재 요청

미디어는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디어는 확인되지도 않은 국내 광우병을 과장 보도하여, 국내 축산 농가와 육류판매를 하고 있는 음식점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었으므로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에 벌써 광우병이 확산된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는 축산 농가를 죽이는 일이며 향후 광우병의 논란이 그친 후에도 축산 농가의 위축으로 인한 축산물의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언론 보도의 자제를 요청하며 사실이 확인된 후에 축산 농가에 끼친 손해를 미디어측은 보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나 육류 판매상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명의로 중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보도의 내용이 명백하게 진실에 어긋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정정보도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나, 국내 광우병에 대한 명백한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고 판단되면 반론보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특정 농가나 음식점이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상 개인 차원의 중재신청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에서 중재신청은 어떻게

모 방송을 비롯한 거의 모든 한국의 방송과 신문이 영국BBC의 편파적이고 근거 없는 보도 내용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또는 과장 보도함으로써, 양육, 녹용업에 종사하는 북미주 교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CWD(만성 소모성질병)는 유럽의 광우병(BSE)과는 달리

사람이나 다른 동물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고, 캐나다 정부는 어떠한 녹용도 리콜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재 사슴과 녹용에 대한 완벽한 검역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BBC방송은 캐나다 전체에 사슴광우병이 만연하여 출하된 녹용이 리콜되고 마치 캐나다산 엘크 녹용을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한국언론에서 이를 인용 또는 과장 보도하여 판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외국에서 중재신청을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심리가 가능합니까?



해외에 계신 분이 국내 언론보도에 대해 중재신청을 하실 경우에도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심리실에서 진행되는 중재심리에 출석하셔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심리는 불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이 직접 중재심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예상된다면 신청단계부터 국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의하신 보도에 관해서 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 교민 녹용업자들의 대표단체가 존재하는지, 만일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도와 얼마만큼의 직접적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중재 합의 후 손해배상청구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중재합의(중재결정)를 받은 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느냐?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중재결정으로 원하시는 보도가 게재된 후라도 법원에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드립니다

저는 모 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난 200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의 삼성홈플러스 문화재 시굴조사를 책임연구원의 자격으로 우리 박물관 연구원들과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 1월 8일자로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의 ○○일보에 '시굴조사 보고서 축소 의혹' 제하에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담당기자에게 전화로 항의 후 제가 작성한 반론문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반론문을 담당기자에게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담당기자는 2001년 1월 11일자로 반론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론보도는 제가 작성한 반론문의 전부가 아닌 일부(약 40%로 추측됨)를 임의편집, 보도하였고 또한 말미에는 저와 상반되는 주장을 일부 실기도 하였습니다.

문의드리는 사항은 제가 반론문 전부를 보도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일부만 편집, 보도하여도 반론보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또 하나는 말미에 상반된 주장을 일부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입니다.



언론사가 반론보도 신청인이 청구한 반론보도 중 일부만을 편집, 보도하였고 말미에 신청인의 의지와 상반되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여 결과적으로 반론보도 신청인이 이에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이 때에도 일단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음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신청인이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를 하거나 나아가서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청인이 만족하는 수준의 반론보도를 위해 중재신청,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물론 해당 언론사에 다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재신청은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해당 언론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언론중재』 학술논문 및 자료 주제별 색인

◇ 위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언론중재』 창간호인 1981년 겨울호부터 2000년 겨울호까지 20년 동안 발간된 총 77호에 게재된 학술논문 및 자료를 주제별로 색인했다.

◇ 색인 대상은 『언론중재』에 게재된 특집 논문 및 국내논문, 기고, 외국논문 등과 외국의 언론관계법 등을 소개한 자료, 지방토론회 주제논문을 포함하였다. 한편 전문이 아닌 요약내용이 게재된 지방토론회 주제논문은 \*으로 표시하였다.

『언론중재』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위원장림>, <해외동향>, <언론중재신청사례>, <국내외 언론관계판결>, <신문평의회사례> 등은 제외했다.

◇ 주제별 색인은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 유형과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언론윤리와 자율규제, 취재보도에 대한 문제, 언론법제 연구와 교육, 수용자 연구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언론중재제도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일반을 다룬 내용은 통합하여 분류하였으며,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내용은 '반론권' 항목에 포함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외에 언론법제에 관한 논문은 '언론법제 일반 및 기타'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특별히 뉴미디어 등장 등 언론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내용은 '인터넷과 언론법제' 항목으로, 외국의 언론관계 법규를 소개한 자료는 '외국 언론관련 법 소개'로 분류하였다.

언론윤리와 자율규제에 관한 내용 가운데 외국 신문평의회 소개 자료는 별도의 항목으로, 이밖에 취재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행한 논문은 '사건보도/범죄보도'와 '취재보도 일반'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 각 주제별 색인내용은 필자이름(한글자모순)을 기준으로 배열했다.

◇ 색인 주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언론피해구제
2. 반론권
3. 명예훼손
4. 프라이버시
5. 초상권
6. 알 권리/정보공개
7. 판결평석/동향
8. 언론(표현)의 자유와 규제
9. 외국 언론관련 법 소개
10. 신문평의회
11. 언론법제 일반 및 기타
12. 인터넷과 언론법제
13. 언론윤리/자율규제
14. 선거보도
15. 사건보도/범죄보도
16. 취재보도 일반
17. 언론의 역할
18. 언론법제 연구/교육
19. 저널리즘
20. 수용자

편집자 주

## 1. 언론중재 / 언론피해구제

강경근, 개정 정간물법 해설(특집 : 정간물법 개정과 언론중재제도), 1996년 봄.

강경근, 반론권 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1994년 세미나 : 언론보도와 반론권), 1994년 겨울.

권오곤, 직권 중재결정의 법적 의의 및 효력(특집 : 개정된 언론중재제도의 법적 고찰), 1996년 가을.

권오곤, 현행 언론중재제도와 앞으로의 방향, 1994년 가을.\*

김기태, CATV 수신자 피해구제에 관한 고찰(특집 : 케이블TV와 인권), 1995년 여름.

김대휘, 언론중재제도의 개선과 전망, 1996년 가을.\*

김성남, 언론중재제도의 법적 고찰(1989년 세미나 : 언론중재제도의 위상 정립), 1989년 가을.

김성남, 언론피해와 구제, 1988년 가을.

김학수, 취재보도관행과 언론중재제도의 보완기능, 1998년 가을.\*

박영상, 언론의 자주권과 언론중재제도와와의 관계, 1995년 여름.\*

박영상, 언론자유, 책무 그리고 언론중재제도, 1997년 여름.\*

박용상, 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방송법' 중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조항, 1987년 겨울.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1991년도 세미나), 1991년 가을.

박용상,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특집 : 언론침해와 구제제도), 1981년 겨울.

서정우, 사회변화와 언론중재제도의 전망, 1996년 여름.\*

서정우, 언론자유와 중재기능의 활성화(1987년 세미나 : 언론자유화와 중재제도), 1987년 겨울.

서정우, 언론자유와 중재제도, 1999년 겨울.\*

서정우,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향(1989년 연합심포지움), 1989년 겨울.

서정우, 정간물법 개정과 중재제도의 전망(특집 : 정간물법 개정과 언론중재제도), 1996년 봄.

성낙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언론중재, 1998년 여름.\*

성낙인, 언론피해구제의 실제 언론중재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1995년 세미나 : 법과 언론피해구제), 1995년 가을.

성낙인, 정보화사회의 언론과 언론중재, 1992년 겨울.\*

심오슬, 언론중재신청 및 처리절차(특집 : 개정된 언론중재제도의 법적 고찰), 1996년 가을.

안광식, 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중재, 1985년 여름.\*

안광식, 언론의 환경변화와 언론중재, 1997년 가을.\*

안광식, 언론중재제도의 기능적 결함과 개선 방향(특집 :

한국언론의 법·윤리적 환경에 대한 회고와 과제), 1990년 봄.

안광식,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 1985년 겨울.

안광식, 오보의 문제점과 언론중재, 1986년 여름.\*

양경승,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중재제도, 2000년 여름.\*

양경승, 언론중재제도의 운용과 과제(1997년 세미나 : 언론중재제도의 운용방향), 1997년 가을.

양경승,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방향과 전망(1998년 세미나 : 취재보도의 현실과 언론피해구제), 1998년 겨울.

양삼승,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2000년 세미나 : 언론관련 법률의 장점과 개선방안), 2000년 겨울.

양삼승, 개정된 언론중재제도(1996년 세미나 주제논문), 1996년 여름.

양삼승,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1992년 세미나), 1992년 가을.

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 개선방안(언론중재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1993년 겨울.

양삼승, 중재사례로 본 언론침해 실태(1991년 제2차 세미나 : 언론보도와 수용자의 권익보호), 1991년 겨울.

양승두, 시민의 권리의식과 언론침해구제제도(1989년 연합심포지움), 1989년 겨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연구, 1989년 겨울.

오세탁, 언론의 윤리적 책임과 언론중재제도, 1993년 여름.\*

오영권, 언론피해구제제도와 관련 판례, 1999년 여름.\*

오진환, 언론중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1984년 세미나 : 보도윤리와 언론중재 제도), 1984년 겨울.

유재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중재제도, 1989년 겨울.\*

유재천,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1989년 세미나 : 언론중재제도의 위상 정립), 1989년 가을.

이상화, 보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1985년 여름.\*

이상화, 언론중재제도와 보도의 자유, 1986년 여름.\*

이상화, 언론중재제도의 운용현황(한국신문협회 회원 초청 간담회 주제논문), 1985년 가을.

이상화, 오보와 정정보도청구권, 1986년 겨울.\*

이수정, 언론기본법 : 그 입법정신면에서의 소견, 1981년 겨울.

이택미,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언론과 언론중재, 1989년 여름.\*

이해복, 보도관계분쟁과 언론중재제도, 1995년 겨울.\*

이해복, 언론자유와 중재제도, 1989년 여름.\*

- 이혜복, 언론중재제도 운용 10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특집 : 언론중재제도 운용 10년의 평가와 모색), 1991년 봄.
- 이혜복, 언론침해와 중재제도(1988년 세미나 :언론침해와 효율적 구제방안), 1988년 겨울.
- 이혜복, 중재사례에 나타난 언론침해의 제문제, 1988년 겨울\*.
- 임상원, 언론과 사회의 변화와 언론중재제도, 1995년 여름\*.
- 임희수, 중재신청인에 대한 의견조사, 1986년 봄.
- 정진석,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의 변천과 앞으로의 방향, 1991년 여름\*.
- 정진석, 언론환경의 변화와 구제제도, 1994년 여름\*.
- 정진석,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중재제도(특집 : 언론중재제도 운용 10년의 평가와 모색), 1991년 봄.
- 정진석, 중재신청사례에 나타난 권익침해(특집 :잡지보도와 권익침해), 1988년 겨울.
- 조사연구실, 개정 정간물법 시행에 부쳐, 1996년 여름.
- 조사연구실, 사례를 통해 본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1987년 가을.
- 조사연구실, 언론중재사례분석, 1986년 봄.
- 조사연구실,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1996년 겨울.
- 차배근, 언론의 역기능과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1985년 가을\*.
- 최창섭, 언론피해구제와 중재위원회의 역할(1997년 세미나 : 언론중재제도의 운용방향), 1997년 가을.
- 최창섭, 화해와 조정의 제도적 장, 언론중재제도의 현재와 미래, 1997년 여름\*.
- 한동원, 보도의 법적·윤리적 한계와 피해구제, 1996년 겨울\*.
- 한동원, 언론보도와 언론피해구제, 1993년 겨울\*.
- 한동원,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과제(특집 : <결산> 1990년대 한국언론과 언론법제), 1999년 겨울.
- 한동원, 중재제도 운영 15년, 회고와 과제(특집 : 정간물법 개정과 언론중재제도), 1996년 봄.
- 한병구, 언론중재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특집 : 언론침해와 구제제도), 1981년 겨울.
- 김중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고찰(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1998년 여름.
- 김중서, 정정보도청구권의 정점별 검토(특집 : 언론과 법적 환경-최근의 쟁점과 과제), 1995년 봄.
- 김현태,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1999년 겨울.
- 박선영, 인터넷 신문·방송과 반론보도(특집 : 전자기술의 발전과 언론법제), 2000년 봄.
-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1991년 겨울.
-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일반적 고찰, 1989년 가을.
- 박용상,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특집 : 언론중재제도 운용 10년의 평가와 모색), 1991년 봄.
- 박운희, 독일의 반론권(상), 1995년 여름.
- 박운희, 독일의 반론권(하), 1995년 가을.
- 박운희, 프랑스에 있어서의 반론권, 1995년 봄.
- 방성호, 뉴미디어시대의 반론권과 액세스권(특집 :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법제 전망), 1997년 봄.
- 성낙인, 선거보도와 반론권, 1997년 겨울.
- 양 건, 반론권 행사의 실제(특집 : 언론에 있어서의 반론권), 1982년 여름.
- 양경승,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 쟁점(특집 : <분석> 언론관계 판례의 동향), 1996년 겨울.
- 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법률적 측면에서의 고찰, 1982년 겨울.
- 양삼승, 정정보도청구제도 활성화의 당위성, 1987년 가을.
- 양삼승, 현행법과 언론수용자 권익(1995년 세미나: 법과 언론피해구제), 1995년 가을.
- 오영권·김명섭, 반론권의 예외사유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1998년 가을.
- 이석연, 판결공시제도와 추후보도청구권(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1992년 봄.
- 정진석, 언론과 반론권(1994년 세미나 : 언론보도와 반론권), 1994년 겨울.
- 조해현, 정정보도강제이행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 1995년 겨울.
- 팽원순, 반론권제도의 역사적 전개(특집 : 언론에 있어서의 반론권), 1982년 여름.
- 한병구, 세계각국의 반론권 법제현황(특집 : 언론에 있어서의 반론권), 1982년 여름.
- J.A.바론, 미국에서의 언론매체에 대한 반론권, 1994년 봄.
- K. 레복, 잡지표지에의 반론, 1993년 겨울.
- K. 키테, G. 프루만, 반론권-사실주장과와 결말, 1994년 겨울.
- N. 콜루테, 신독일연방주(구 동독지역주) 방송법에 있어서의 반론권, 1994년 여름.

## 2. 반 론 권

- 강현중, 반론보도청구권 및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특집 : 개정된 언론중재제도의 법적고찰), 1996년 가을.
- 김병국, 반론권의 이념적 배경과 사회적 책임론, 1998년 겨울.

### 3. 명예훼손

고승덕, 국제적인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 적용할 법과 소송절차에 관하여(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Ⅲ, 1993년 가을.

권오승, 명예의 의의와 명예훼손의 모습(특집 : 언론과 명예훼손), 1983년 가을.

김동철,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 귀속(특집 : 언론보도와 법적 책임), 1983년 봄.

김동환, 기업의 신용훼손과 그 구제(특집 : 경제보도와 공정성), 1985년 가을.

김만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 범리의 적용(특집 :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몇 가지 쟁점), 2000년 여름.

김오수, 언론에 의한 피해보상형태(특집 : 언론보도와 법적 책임), 1983년 봄.

김운용, 언론보도와 명예훼손(특집 : 언론과 명예훼손), 1983년 가을.

김재협, 타매체 기사 인용의 문제점과 법적 책임(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1998년 여름.

김창룡,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 1998년 여름.

박동희, 경제보도와 신용권 보호(특집 : 경제보도와 공정성), 1985년 가을.

박선영,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공익성'과 '진실성' 및 '현실적 악의', 1998년 겨울.

배금자, 보도와 명예훼손, 대안적 검토(1999년 세미나 :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 1999년 가을.

성낙인,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광고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1992년 봄.

손동권, 언론보도와 사자의 명예훼손(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1992년 봄.

안재훈, 미국신문과 명예훼손소송사례, 1984년 겨울.

양삼승,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한 연구(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Ⅲ, 1993년 가을.

염규호,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 2000년 봄.

염규호, 공직자와 명예훼손 :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1999년 겨울.

염규호, 미국의 명예훼손법 : 문제점과 개선책, 1996년 겨울.

염규호, 미국의 명예훼손법 : 손해배상의 판례분석, 1996년 가을.

염규호, 미국의 명예훼손법 : 손해배상정규의 이론적 분석, 1996년 여름.

염규호, 미국의 명예훼손법, 1994년 가을.

염규호,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의 수계(受繼), 1990년 겨울.

염규호, 신문외 독자편지와 명예훼손, 1991년 가을.

염규호, 통신사 기사제재와 명예훼손, 1993년 겨울.

오소백, 주간지(誌)·지(紙)와 인격권 침해(특집 : 주간지(誌)·지(紙)와 인격권), 1983년 봄.

오인환, 언론침해의 원인별 유형(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권익침해유형), 1982년 가을.

유일상, 의견광고와 명예훼손 및 그 대책, 1997년 여름.

이상경,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1992년 봄.

이석연,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범리와 적용(특집 : 언론과 법적 환경·최근의 쟁점과 과제), 1992년 겨울.

이은영,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재산적 손해 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특집 :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몇 가지 쟁점), 2000년 여름.

정진석, 언론침해의 시대별 유형(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권익침해유형), 1982년 가을.

조준원,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2000년 가을.

최영훈, 취재현장에서 본 명예훼손소송(1999년 세미나 :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 1999년 가을.

최우찬, 명예훼손의 정당화사유에 관한 형법적 고찰(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 가지 쟁점), 1992년 봄.

팽원순, 언론의 면책특권(특집 : 언론보도와 법적 책임), 1983년 봄.

표성수, 명예훼손 면책사유로서의 상당성 기준(특집 :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몇 가지 쟁점), 2000년 여름.

한병구, 명예훼손의 침해유형과 구제방법(특집 : 언론과 명예훼손), 1983년 가을.

한위수, 명예훼손에 관련된 민·형사상의 판례와 쟁점(특집 : 〈분석〉 언론관계 판례의 동향), 1996년 겨울.

한위수, 집단명예훼손소송에 관한 연구(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1998년 여름.

황도수,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제한의 범리와 실제(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1998년 여름.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특집 : 전자기술의 발전과 언론법제), 2000년 봄.

토마스 휴즈, 미·캐나다간 명예훼손법 비교 연구, 1998년 가을.

Matthe D. Bunker, 공적인물로서의 회사인 원고, 1996년 가을.

J.코헨, S.스피어즈, 명예훼손과 증거로서의 여론조사, 1992년 가을.

- G.E. 스티븐슨, 개리슨 사건과 형사상 명예훼손, 1992년 가을.
- D. 맥린, 표제와 명예훼손, 1991년 여름.
- D. 맥린, 명예훼손 기준으로서의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1991년 봄.
- S. 카우딜,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주의기준의 선택, 1990년 여름.
- 대플 맥리안, 현실적 악의론의 기원, 1989년 여름.
- 竹田 揆, 사법에 의한 표현행위 사전금지의 법리, 1986년 가을.
- 도나 L. 디커슨, 현실적 악의의 원칙하에서 가사의 정정 이 갖는 법적 효력, 1985년 봄.
- 더글라스, A. 앤더슨 마리아, 뮤도크, 버거 법정 판결이 언론에 미친 영향, 1982년 가을.
- APME 편,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에 관한 지침서, 1984년 가을.
- 竹田 揆, 신문의 보도와 명예·인권, 1984년 봄.
- 스티브 와인버그,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미국 언론사들의 대항전략, 1984년 봄.
- 비비안·데보라·윌슨, 명예훼손법과 픽션물, 1983년 봄.
- 도널드 M. 길모어, 윌리엄·브레네판사의 현실적 악의론과 그 한계, 1982년 겨울.

#### 4. 프라이버시

- 강경근,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면책사유(특집 :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 1999년 여름.
- 권영성, 사생활권의 의의와 역사적 변천(특집 : 언론과 사생활권), 1983년 여름.
- 김동철,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특집 :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1985년 여름.
- 김영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특집 :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 1999년 여름.
- 변재욱, 정보산업의 발달과 프라이버시(특집 :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1985년 여름.
- 서정우, 언론보도와 사생활권의 침해(특집 : 언론과 사생활권), 1983년 여름.
- 성낙인, 공적 기록의 보도와 사생활보호(특집 :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 1999년 여름.
- 염규호, 미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1994년 여름.
- 염규호,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언론의 자유, 1994년 겨울.
- 윤명선, 사생활권의 침해유형과 구제방법(특집 : 언론과 사생활권), 1983년 여름.
- 이강혁,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입법현황(특집 : 정보

- 화사회와 프라이버시), 1985년 여름.
- 전병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1994년 겨울.
- 팽원순, 후보자의 사생활 보도와 법·윤리적 문제(특집 : 선거와 언론보도 II), 1993년 봄.
-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특집 :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 1999년 여름.
- 황우여, 미국에 있어서의 정보공개법과 사생활보호법, 1989년 겨울.
- 西保總平, 의학과 프라이버시의 재문제, 1990년 봄.
- Vidmar, Flaherty, 정보화시대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만외식조사, 1985년 겨울.
- \_\_\_\_\_, 사진기자를 위한 프라이버시침해 예방가이드, 1987년 가을.
- \_\_\_\_\_, 프라이버시와 센세이셔널리즘을 보는 영국의 시각, 1986년 봄.

#### 5. 초상권

- 김동철, 보도사진저널리즘의 윤리성과 법적 문제(특집 : 보도사진저널리즘과 시민의 권익), 1987년 봄.
- 손원선, 초상권 침해에 대한 동의 한계, 1998년 겨울.
- 신우식, 한국신문의 보도사진현황과 개선방향(특집 : 보도사진저널리즘과 시민의 권익), 1987년 봄.
- 안용교, 초상권의 개념과 의의(특집 : 사진보도와 초상권), 1982년 여름.
-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1998년 여름.
- 임두표, 초상권과 법정내 촬영(특집 : 사진보도와 초상권), 1982년 여름.
- 한상범, 사진보도와 초상권(특집 : 사진보도와 초상권), 1982년 여름.
- 村上孝止, 사진의 영향·공표를 둘러싼 인권문제, 1987년 봄.

#### 6. 알 권리 / 정보공개

- 강경근, 국익관련보도의 사법적 한계(특집 : 국가이익과 언론보도), 1991년 여름.
- 권영성, 국가기밀의 보도와 그 법적 기준(특집 : 언론보도와 국가기밀), 1987년 겨울.
- 김광옥, 정보공개와 알 권리(특집 : 정보공개와 알 권리), 1989년 여름.
- 김동진, 알 권리와 타인의 권익 침해(특집 : 한국언론의 재진단), 1989년 봄.
- 김동철, 법원의 영장 열람금지와 알 권리(특집 : 언론과

법적 환경-최근의 쟁점과 과제), 1992년 겨울.  
 김동철, 약세스권과 의견광고(특집 : 언론에 대한 약세스권), 1983년 겨울.  
 김동철, 한국의 언론보도와 국가기밀(특집 : 언론보도와 국가기밀), 1987년 겨울.  
 김병국, 정보접근과 명예훼손(특집 : 정보공개와 알 권리), 1989년 여름.  
 김홍규, 국가기밀과 보도(특집 : 언론보도와 국가기밀), 1987년 겨울.  
 박기순, 약세스권과 독자투고(특집 : 언론에 대한 약세스권), 1983년 겨울.  
 서정우, 공표주의와 기밀주의(특집 : 국가이익과 언론보도), 1991년 여름.  
 성국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법제의 정립과 언론(특집 : 언론과 법적 환경-최근의 쟁점과 과제), 1995년 봄.  
 원우현, 약세스권의 현대적 의의와 그 행사(특집 : 언론에 대한 약세스권), 1983년 겨울.  
 유일상, 법정공개와 피의자 인권, 알 권리, 1996년 봄.  
 유재천,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특집 : 정보공개와 알 권리), 1989년 여름.  
 이강혁, 정보원의 리스크와 그 법적 보호(특집 : 정보공개와 알 권리), 1989년 여름.  
 이택수, 알 권리와 언론보도의 한계, 1992년 가을\*  
 한태열, 국가이익과 언론보도의 실제(특집 : 국가이익과 언론보도), 1991년 여름.  
 앨런부쉬, 주지사의 기록에 대한 접근 : 주법령과 행정 특권의 행사, 1994년 가을.  
 패트리셔 빌헬름, 각국의 정보원 보호현황(특집 : 정보공개와 알 권리), 1989년 여름.  
 畠澤 猛, 정보원 명시의 원칙을 생각한다, 1988년 겨울.  
 울프, 라로크, 토머슨, 알 권리와 사생활의 권리, 1988년 겨울.

## 7. 판결평석 / 동향

권형준, 반론보도의 범위와 한계, 2000년 겨울.  
 안상운,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1998년 가을.  
 양삼승, 언론관계판례에 비추어 본 동향 분석(특집 : 한국언론의 법·윤리적 환경에 대한 회고와 과제), 1990년 봄.  
 오경식, 언론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한계, 1999년 가을.  
 장영수, 98년도 언론관계판결 회고, 1999년 봄.  
 장영수, 최근의 언론관계 판례 개관(특집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II), 1993년 가을.

황도수, 언론관계판결 경향(특집 : <결산> 1990년대 한국 언론과 언론법제), 1999년 겨울.  
 秋吉健次, 일본 매스컴 판례 연구, 1998년 가을.  
 秋吉健次, 일본 매스컴 판례 연구, 1998년 여름.  
 秋吉健次, 일본 매스컴 판례 연구, 1998년 봄.  
 田島泰彦, 1996년 매스컴 관계 판례 회고, 1997년 여름.  
 田島泰彦, 1994년 매스컴 관계 판례 회고·명예, 프라이버시, 정보공개 등의 동향을 중심으로(하), 1995년 가을.  
 田島泰彦, 1994년 매스컴 관계 판례 회고·명예, 프라이버시, 정보공개 등의 동향을 중심으로(상), 1995년 여름.  
 併田純一, 일본에서의 1991년 매스컴관련 명예훼손사건 판례동향개관, 1992년 봄.

## 8. 언론(표현)의 자유와 규제

김동철,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특집 :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1985년 겨울.  
 박정규, 언론사(言論史)에 비친 규제와 자유(특집 : 자유 경쟁시대의 언론의 책임), 1988년 여름.  
 손 용, 드라마와 등장인물의 인격권(특집 : 방송의 법적 규제), 1984년 여름.  
 유강환, 대중문화와 외설(특집 :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1985년 겨울.  
 이상철, 방송규제의 이론적 근거(특집 : 방송의 법적 규제), 1984년 여름.  
 팽원순, 한국 대중매체의 음란실태와 그 규제현황(특집 :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1985년 겨울.  
 허경, 언론자유와 본질에 관한 비판적 분석, 1982년 가을.  
 드레젤, 매스미디어의 법적 책임, 1989년 봄.  
 Willard D. Rowland, Jr, 미국 커뮤니케이션 정책에서의 공익의 의미 : 연방 및 주정부의 규제정책에서 살펴 본 공익의 기원, 1998년 봄.  
 Clay Caivert, 언론의 의무에 대한 논란, 1998년 여름.  
 Emmanuel Derieux, 프랑스법상 언론의 자유와 경제적인 중속성, 1997년 가을.  
 그레이 케벨, 의사표현의 기능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견해, 1985년 가을.

## 9. 외국 언론관련 법 소개

덴마크 언론법, 1989년 여름.  
 영국의회에 상정된 반론권에 관한 법률, 1989년 봄.  
 엄규호, 미국의 언론법과 사법제도, 1994년 봄.

오스트리아 언론법, 1988년 가을.  
 포르투갈 언론관계법① (언론위원회법), 1989년 겨울.  
 포르투갈 언론관계법② (출판법, 상), 1990년 여름.  
 포르투갈 언론관계법③ (출판법, 하), 1990년 가을.  
 프랑스의 정정보도청구권, 1985년 봄.  
 프랑스 반론권 해설(1), 1989년 겨울.  
 프랑스 반론권 해설(2), 1990년 봄.  
 프랑스 반론권 해설(3), 1990년 여름.

## 10. 신문평의회

외국신문평의회 소개 스웨덴신문평의회편, 1986년 여름.  
 외국신문평의회 소개 영국신문평의회편, 1986년 가을.  
 외국신문평의회 소개 노르웨이편, 1986년 겨울.  
 외국신문평의회 소개 인도편, 1987년 봄.  
 외국신문평의회 소개 호주편, 1987년 여름.  
 외국신문평의회 소개 미국 미네소타편, 1987년 가을.  
 외국신문평의회 소개 뉴질랜드편, 1987년 겨울.  
 외국신문평의회 소개(8) 오스트리아편, 1988년 가을.  
 외국신문평의회 소개(9) 덴마크편, 1988년 여름.  
 외국신문평의회 소개(10) 오스트리아편, 1988년 가을.  
 외국신문평의회 소개(11) 핀란드편, 1988년 겨울.  
 외국신문평의회 소개(12) 네덜란드편, 1989년 봄.  
 외국신문평의회 소개(13) 스위스편, 1989년 여름.  
 외국신문평의회 소개(14) 인도네시아편, 1989년 가을.  
 외국신문평의회 소개(15) 터키편, 1989년 겨울.  
 외국신문평의회 소개(16) 포르투갈편, 1990년 봄.  
 Louise Williams Hermanson, 미국 신문평의회 불만신청인  
 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1996년 여름.  
 리처드 커밍엄, 미국의 전국뉴스평의회, 1984년 가을.  
 素藤 仁,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 활동, 1992년 겨울.

## 11. 언론법제 일반 및 기타

강경근,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2000년 세미나 :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  
 안), 2000년 겨울.  
 권영설, 잡자연론의 법리와 헌법판례(특집 : 잡지보도와  
 권익침해), 1988년 겨울.  
 김철수, 인권의 개념과 언론의 의의(특집 : 언론과 인권),  
 1982년 봄.  
 성낙인, 한국 언론법제의 특징과 문제점(특집 : 진단, 언  
 론법제와 그 연구), 1994년 봄.  
 신봉기, 언론·출판 자유의 이론과 판례(특집 : 언론과  
 법적 환경·최근의 쟁점과 과제), 1992년 겨울.

신우식, 연예기사의 실태와 문제(특집 : 언론보도의 점  
 검), 1994년 여름.  
 안광식, 오보의 문제점과 외국의 심의제도(1988년 세미나  
 : 언론침해와 효율적 구제방안), 1988년 겨울.  
 양승두, 한국인의 인권의식(특집 : 언론과 인권), 1982년  
 봄.  
 오소백, 인권보호와 언론의 책임(특집 : 언론과 인권),  
 1982년 봄.  
 유일상, 사이버언론과 사이버 가짜 파문(특집 : 한국언론  
 의 재진단), 1989년 봄.  
 유재천, 한국언론의 보도성향과 인권침해(특집 : 언론과  
 인권), 1982년 봄.  
 이상식, 쌍방향 케이블 TV와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특집  
 : 케이블TV와 인권), 1995년 여름.  
 이우세, 달라진 위상, 높아진 책임, 1990년 여름.\*  
 장영수, 언론자유의 실현구조에 관한 서설, 1994년 여름.  
 전석호, CATV 시행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특집 : 케이블  
 TV와 인권), 1995년 여름.  
 정진석, 한국언론의 법·윤리환경의 변천(특집 : 한국언론  
 의 법·윤리적 환경에 대한 회고와 과제), 1990년  
 봄.  
 최창섭, TV의 고발프로그램과 인권(특집 : 언론보도의 점  
 검), 1994년 여름.  
 팽원순, 언론의 자유와 국익(특집 : 국가이익과 언론보  
 도), 1991년 여름.  
 한균태, 경영권과 편집권의 갈등(특집 : 한국언론의 재진  
 단), 1989년 봄.  
 赤尾光史,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기사데이터 수정의 문제  
 점, 1995년 봄.  
 W. Wat Hopkins, '사상의 공개시장'에 대한 미 연방대법  
 원의 견해, 1996년 겨울.  
 R.V. 리퍼, 언론관련법과 구조기능주의 이론, 1993년 겨울.  
 J.W. Tankard, 신문지면에 게재되는 통계도표에 관한 연구,  
 1988년 봄.  
 무어, 싱글터리, 과학기사의 정확성과 오진, 1986년 겨울.  
 이자드, 미국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1986년 가을.  
 吉田 健, 민사소송법 개정과 미디어, 1992년 겨울.  
 小池正春, 미디어의 헛소문 보도에 관한 연구, 1997년 가  
 을.  
 보울즈, 브롤러, 미국 시사잡지의 연방대법원 관련 보도  
 분석, 1993년 여름.  
 오캘러건, 듀크스,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언론의 보도,  
 1992년 겨울.  
 B.L. 플로퍼, 불법행위로서의 의도적 감정침해와 침입,  
 1992년 봄.  
 시몬, 피코, 레이시, 갈등과 논쟁에 대한 보도, 1990년 가을.  
 石村善治, 보도와 인권, 1985년 가을.

## 12. 인터넷과 언론법제

- 김대호, 미디어 융합과 규제(특집 : 전자기술의 발전과 언론법제), 2000년 봄.
- 김유정, 사이버 음란물의 규제와 청소년 보호(특집 : 전자통신상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 1997년 겨울.
- 방석호,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현행 법제의 비교 분석, 1999년 봄.
- 윤영철,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특집 : 전자통신상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 1997년 겨울.
-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2000년 겨울.
- 이재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1998년 봄.
- 정윤식, 뉴미디어 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특집 :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법제 전망), 1997년 봄.
- 황상재,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개념의 재정립(특집 :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법제 전망), 1997년 봄.
- Jan H. Samoriski, John L. Huffman and Denise M. Trauth,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그리고 전자사생활보호법 1986 : 기술발달에 뒤쳐진 법체계, 1997년 봄.

## 13. 언론윤리 / 자율규제

- 김동규, 국내 신문의 기사불만처리기구 고찰(특집 : 진단, 언론자율규제), 1993년 여름.
- 김명길, 한겨레신문의 윤리강령과 심의실(특집 :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 1990년 겨울.
- 김재홍, 한국 언론의 옴부즈맨제도 운용 실태와 전망(특집 : 언론피해구제와 옴부즈맨제도), 1999년 봄.
- 박영상, 옴부즈맨제도의 실태(특집 : 진단, 언론자율규제), 1993년 여름.
- 박종수, 한국 언론의 윤리성과 자율규제(특집 : 진단, 언론자율규제), 1993년 여름.
- 서정우, 매체환경변화와 언론윤리, 1988년 가을.\*
- 서정우, 외국의 언론자율규제기구(특집 : 언론침해와 구제제도), 1981년 겨울.
- 서정우, 중재사례를 통해 본 언론윤리, (1983년 세미나 : 언론과 보도윤리), 1983년 겨울.
- 심상균, 심의장구에 비친 대중지 실태(특집 : 잡지보도와 권익침해), 1988년 겨울.
- 안광식, 언론의 자유경쟁과 윤리적 책임, 1990년 겨울.\*
- 안광식, 옴부즈맨제도의 기능과 역할(특집 : 언론피해구제와 옴부즈맨제도), 1999년 봄.
- 안광식, 전환기 언론의 윤리적 책임, 1991년 가을.\*

- 오상석, 취재현장과 언론윤리강령(특집 : 언론윤리와 저널리즘의 위기), 2000년 가을.
- 원우현,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전망(특집 : 진단, 언론자율규제), 1993년 여름.
- 유재천,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에 대한 고찰(특집 :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 1990년 겨울.
- 유재천, 언론의 직업윤리와 언론중재제도, 1991년 가을.\*
- 육장용, 방송강령제정과 MBC심의 실태(특집 :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 1990년 겨울.
- 이혜복, 공정보도와 언론윤리, 1991년 겨울.\*
- 정결진, 언론보도에 비친 언론윤리(특집 : 언론윤리와 저널리즘의 위기), 2000년 가을.
- 조사연구실, 윤리적 측면에서 본 한국언론(특집 : 한국언론의 법·윤리적 환경에 대한 회고와 과제), 1990년 봄.
- 조용중, 언론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특집 : 한국언론의 재진단), 1989년 봄.
- 중앙일보 신문심의위원실, 중앙일보 신문심의위원실의 현황(특집 :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 1990년 겨울.
- 채수영, 수용자가 바라본 언론인 직업윤리(특집 : 언론윤리와 저널리즘의 위기), 2000년 가을.
- 최선열, 언론자율규제의 변천과 성과(특집 : <결산> 1990년대 한국언론과 언론법제), 1999년 겨울.
- 한병구,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의 비교와 제언(특집 :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 1990년 겨울.
- 한병구, 언론자유와 언론윤리, 1990년 여름.\*
- 한병구, 언론자유와 한계와 윤리성 제고, 1991년 겨울.\*
- S. 브라운, 언론에 대한 공중의 기대와 언론윤리강령에 나타난 윤리기준, 1989년 겨울.
- 에터머, 글래셔, 미국의 신문옴부즈맨들의 역할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1988년 여름.
- 존 라일리, 미국언론에서의 변호사에 의한 기사심의, 1986년 여름.
- 리처드 커밍엄, 미국, 기사심의위원의 활동현황, 1984년 겨울.
- 田島泰彦, 일본 신문지면심사기구와 활동, 1997년 겨울.
- 矢澤重二,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 기구의 기능과 역할, 1997년 겨울.
- Paul S. Voakes, 대중의 눈에 비친 기자의 윤리의식과 동기, 1997년 가을.
- 일본신문협회 심의실, 일본신문의 정정기사게재상황, 1991년 겨울.
- D.프리차드, M.P.모건, 윤리강령이 기자행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991년 겨울.
- 田村 進, 일본 신문의 지면심사기구 현황, 1993년 가을.
- 後藤 登, 옴부즈만의 활동실태와 의식, 1991년 봄.

일본 朝日新聞 虛報사건에 비추어 본 보도윤리, 1989년 가을.

## 14. 선거보도

- 김기태, 선거보도의 기준과 실제(특집 : 선거와 언론보도 Ⅱ), 1993년 봄.
- 김용술, 외국언론의 선거보도-일본편(특집 : 선거와 보도), 1987년 가을.
- 김일수, 외국의 판례를 통해 본 문제점(특집 : 선거와 보도), 1987년 가을.
- 김태선, 외국언론의 선거보도-영국편(특집 : 선거와 보도), 1987년 가을.
- 박형상, 선거보도의 법적·제도적 고찰, 2000년 봄.
- 백선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분석 및 평가, 2000년 여름.
- 안영모, 외국언론의 선거보도-미국편(특집 : 선거와 보도), 1987년 가을.
- 유일상, 선거와 여론조사보도(특집 : 언론과 법적 환경-최근의 쟁점과 과제), 1992년 겨울.
- 윤영철, 선거보도와 공정성과 언론사의 후보자지지(특집 : 선거와 언론보도 Ⅱ), 1993년 봄.
- 이동신,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윤리성(특집 : 선거와 보도), 1987년 가을.
- 장익진, 선거여론조사보도와 그 보도에 대한 일고찰(특집 : 선거와 언론보도 Ⅱ), 1993년 봄.
- 정상운, 지자제 선거와 지역언론의 과제 : 저널리즘의 과제(특집 : 지역언론의 역할과 책임), 1998년 봄.

## 15. 사건보도 / 범죄보도

- 김동주, 르보기사의 발전과 기능(특집 : 르보기사와 인권), 1990년 여름.
- 김동진, 미국사례연구(특집 : 사건보도와 개인의 권리), 1987년 여름.
- 김방국, 한국에서의 르보기사의 현황과 전망(특집 : 르보기사와 인권), 1990년 여름.
- 김운용,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문제(특집 : 언론보도와 피의사실공표죄), 1982년 가을.
- 김정기, 외국판례에 나타난 르보기사의 법적 책임과 한계(특집 : 르보기사와 인권), 1990년 여름.
- 미국언론자유기위원회, 미국에서의 소년법정취재, 1993년 봄.
- 신동호, 사건보도와 자성점(특집 : 언론보도와 피의사실공표죄), 1982년 가을.

- 신 평, 사법과정보도의 문제점과 그 영향(특집 : 판결전 보도와 공정재판), 1985년 봄.
- 안상운, 형사사건 보도와 인권, 1997년 봄.
- 양상승, 사건보도와 법·윤리상의 과제(특집 : 사건보도와 권익침해), 1990년 가을.
- 오소백, 한국의 유괴보도사례와 문제점(특집 : 유괴보도와 인권), 1988년 봄.
- 오택섭, 소년범죄보도의 문제점(특집 : 소년범죄와 언론보도), 1982년 겨울.
- 원우현, 외국의 유괴보도사례와 특수성(특집 : 유괴보도와 인권), 1988년 봄.
- 유승상, 실명보도와 인권(특집 : 한국언론의 취재보도관행상의 문제), 1992년 여름.
- 유일상, 르보기사의 윤리·법제적 책임(특집 : 르보기사와 인권), 1990년 여름.
- 유재천, 잡지의 폭로기사에 대한 진단(특집 : 잡지보도와 권익침해), 1988년 겨울.
- 이광재, 피의사실공표와 사건보도(특집 : 언론보도와 피의사실공표죄), 1982년 가을.
- 이상돈, 재판전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방안(특집 : 판결전 보도와 공정재판), 1985년 봄.
- 이상현, 사법관련보도의 취재환경과 정보접근(특집 : 사법관련 보도), 1994년 가을.
- 이인호, 범죄보도와 면책사유 적용, 1999년 가을.
- 이장현, 소년비행(특집 : 소년범죄와 언론보도), 1982년 겨울.
- 이혜복, 국내사례연구(특집 : 사건보도와 개인의 권리), 1987년 여름.
- 이혜복, 사건보도와 권익침해사례분석(특집 : 사건보도와 권익침해), 1990년 가을.
- 인권과 보도·連絡會 편, 일본사례연구(특집 : 사건보도와 개인의 권리), 1987년 여름.
- 정연규, 재난보도와 인권, 1995년 겨울.
- 맹원순, 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특집 : 판결전 보도와 공정재판), 1985년 봄.
- 맹원순, 사건보도와 언론인의 법적 책임(1983년 세미나 : 언론과 보도윤리), 1983년 겨울.
- 한위수, 법관이 본 사법관련보도의 문제점과 제언(특집 : 사법관련 보도), 1994년 가을.
- 杉澤和幸, 미국과 일본의 범죄보도, 경찰취재 비교, 1989년 봄.
- 松本雅彦, 내일의 유괴보도를 생각한다-유괴보도의 편집 방침과 유괴보도해정의 해설(특집 : 유괴보도와 인권), 1988년 봄.
- 平川宗信, 범죄보도와 인권, 1987년 여름.
- 新井直之, 범죄보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1990년 가을.
- 前澤 猛, 시행착오 거듭하는 미국의 성범죄 보도, 1992년

가을.

어런트. 미국판례에 나타난 성폭행피해자의 신원공개문제. 1992년 여름.  
R. Michai Hoefges, 언론자유와 신원보호, 1997년 겨울.

## 16. 취재보도 일반

권혁남, 기사작성의 제문제(특집 : 한국언론의 취재보도 관행상의 문제), 1992년 여름.  
김병국, 취재원 접촉현실과 인권(특집 : 한국언론의 취재 보도관행상의 문제), 1992년 여름.  
김일수, 외국의 판례를 통해 본 취재상의 인권침해(특집 : 기사취재와 그 법적 윤리적 한계), 1986년 가을.  
김재협, 위법적 취재관행과 법적 환경, 1999년 여름.  
김지운, 사실보도와 진실보도, 1983년 봄.  
김창룡, 취재관행과 법윤리상의 알고찰(특집 : 언론과 법적 환경-최근의 쟁점과 과제), 1995년 봄.  
김학수, 언론환경의 변화와 취재보도의 문제점(1998년 세미나 : 취재보도의 현실과 언론피해구제), 1998년 겨울.  
김해도, 한국언론과 보도유보(엠바고), 1999년 겨울.  
박영상, 공적 보도자료와 오보 : 저널리즘의 관점에서(특집 : 공적 보도자료의 한계와 책임), 1995년 겨울.  
서정우, 오보의 발생과 대책, 2000년 가을\*  
송정민, 언론취재체계 및 기자단에 관한 연구(특집 : 한국언론의 취재보도관행상의 문제), 1992년 여름.  
안광식, 뉴스보도와 평가기준(1984년 세미나 주제 : 보도 윤리와 언론중재제도), 1984년 겨울.  
안상운, 공적 자료에 의한 보도의 법적 책임(특집 : 공적 보도자료의 한계와 책임), 1995년 겨울.  
이강복,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 1983년 가을.  
이만용, 언론의 경쟁적 취재·보도와 권익 침해(특집 : 취재·보도관행과 인권), 1997년 여름.  
이상우, 뉴스보도와 평가기준(1984년 세미나 주제 : 보도 윤리와 언론중재제도), 1984년 겨울.  
이재경, 위장취재와 몰래카메라 취재보도의 윤리적 문제(특집 : 취재·보도관행과 인권), 1997년 여름.  
이중환, 대중지의 공인·유명인의 보도실현(특집 : 대중지와 공인·유명인에 관한 보도), 1986년 여름.  
이혜복, 중재사례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1987년 세미나 : 언론자유화와 중재제도), 1987년 겨울.  
이혜복, 한국에서의 기사취재현실과 그 문제점(특집 : 기사취재와 그 법적 윤리적 한계), 1986년 가을.  
장호순, 지역언론의 취재보도와 언론윤리(특집 : 지역언론의 역할과 책임), 1998년 봄.  
한상범, 보도와 공인·유명인(특집 : 대중지와 공인·유

명인에 관한 보도), 1986년 여름.

한위수,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1999년 세미나 :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 1999년 가을.  
로버트 L.스펠먼, 언론사의 비밀취재와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1986년 여름.  
토니·아트워드, 편집·보도국에 대한 탐색, 1983년 가을.

## 17. 언론의 역할

강명구, 언론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주체문제(특집 : 자유경쟁시대의 언론의 책임), 1988년 여름.  
권영철, 언론의 자유와 공익의 문제(특집 : 언론과 공익), 1984년 가을.  
권혁남, 사회갈등 조정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2000년 겨울\*  
김진규,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1982년 여름.  
방정배, 사상사에서 본 공익언론(특집 : 언론과 공익), 1984년 가을.  
방정배, 언론의 공익성에 대한 재고, 1983년 여름.  
서정우, 대중지의 특성과 사회적 책임(특집 : 대중자와 공인·유명인에 관한 보도), 1986년 여름.  
서정우, 자유경쟁시대에 접어든 한국언론의 책임(특집 : 자유경쟁시대의 언론의 책임), 1988년 여름.  
안광식, 자유언론의 역할과 책임, 1988년 가을\*  
오경자, 수용자가 본 언론상(특집 : 한국언론의 재진단), 1989년 봄.  
이정춘, 언론의 공익성과 기업성(특집 : 언론과 공익), 1984년 가을.  
이중환, 잡지의 변천과 사회적 역할(특집 : 잡지보도와 권익침해), 1988년 겨울.  
이혜복, 문민시대와 언론의 책임, 1993년 가을\*  
이혜복, 자유경쟁시대 언론의 책임, 1988년 가을\*  
전석호, 언론의 공익성과 상업성(특집 : 한국언론의 재진단), 1989년 봄.  
닐 D.스완, 감시자인 언론을 감시하는 자는 누구인가, 1984년 가을.

## 18. 언론법제 연구 / 교육

박기순, 기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 1986년 여름.  
염규호, 미국대학의 언론법 교육 현황(특집 : 언론법 교육의 실태), 1998년 가을.  
유일상, 언론법제연구의 성격과 방법(특집 : 진단, 언론법제와 그 연구), 1994년 봄.  
이정춘, 언론인 재교육의 당면 과제, 1982년 여름.

- 장호순, 언론법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특집 : 언론법 교육의 실태), 1998년 가을.  
 정진석, 국내 언론법과 언론법제 연구의 변천(특집 : 진단, 언론법제와 그 연구), 1994년 봄.  
 정진석, 언론법제연구 동향(특집 : <결산> 1990년대 한국 언론과 언론법제), 1999년 겨울.  
 Emmanuel Deneux, 프랑스법상 '커뮤니케이션(학)'의 의미와 범위, 1997년 여름.

## 19. 저널리즘

- 방정배, 언론의 적응저널리즘적 성향에 대하여, 1982년 봄.  
 안광식, 센세이셔널리즘의 과정과 기능 및 현대적 상황(특집 : 언론과 센세이셔널리즘), 1984년 봄.  
 원우현, 한국의 폭로저널리즘 현황과 문제점(1986년 세미나 : 폭로저널리즘과 언론윤리), 1986년 겨울.  
 유재천, 한국신문과 센세이셔널리즘(특집 : 언론과 센세이셔널리즘), 1984년 봄.  
 유창하, 사회조사보도의 허실(특집 : 언론보도의 전문화), 1983년 가을.  
 이광재, 센세이셔널리즘의 생성과 변천(특집 : 언론과 센세이셔널리즘), 1984년 봄.  
 이규임, 사진보도저널리즘의 특성과 기능(특집 : 보도사 진저널리즘과 시민의 권익), 1987년 봄.  
 이상우, 헤드라인의 기능과 실제(특집 : 보도와 헤드라인), 1982년 겨울.  
 이상희, 주간지(誌)·지(紙)의 센세이셔널리즘(특집 : 주간지(誌)·지(紙)와 인격권), 1983년 봄.  
 이종한, 주간지(誌)·지(紙)의 사회적 기능(특집 : 주간지(誌)·지(紙)와 인격권), 1983년 봄.  
 차배근, 폭로저널리즘의 정기능과 역기능(1986년 세미나 : 폭로저널리즘과 언론윤리), 1986년 겨울.  
 최낙동, 경제관계보도의 정확성(특집 : 언론보도의 전문

- 화), 1983년 가을.  
 최중수, 신문 제목, 이대로 좋은가(특집 : 보도와 헤드라인), 1982년 겨울.  
 최진우, 신문기사 표제의 문제점(특집 : 보도와 헤드라인), 1982년 겨울.  
 최창섭, 심층보도의 현황과 문제점(특집 : 방송의 법적 규제), 1984년 여름.  
 현원복, 과학기사의 정확성(특집 : 언론보도의 전문화), 1983년 가을.  
 해리. W. 스톤사이퍼, 객관적 보도특권의 문제점과 과제, 1983년 여름.  
 F·T마르타에츠, 헤드라인의 부정확성(특집 : 보도와 헤드라인), 1982년 겨울.

## 20. 수용자

- 김동철, 신문보도와 시민의 권익(특집 :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 1982년 봄.  
 김동환, 정보소비자의 권리(1988년 연합심포지움 : 언론과 정보소비자), 1988년 가을.  
 박용수, 수용자 주권의 법제론적 고찰, 1999년 여름\*  
 서정우, 언론보도와 수용자 주권, 1992년 여름\*  
 이경자, 잡지보도와 시민의 권익(특집 :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 1982년 봄.  
 이상희, 텔레비전 보도와 시민의 권익(특집 :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 1982년 봄.  
 이해복, 언론자유와 시민의 권리, 1989년 겨울\*  
 이해복, 정보소비자의 피해구제(1988년 연합심포지움 : 언론과 정보소비자), 1988년 가을.  
 정진석, 언론침해구제 실현과 수용자 운동, (1991년도 제2차 세미나 : 언론보도와 수용자의 권익보호), 1991년 겨울.  
 최선열,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 2000년 여름\* □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http://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

거소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관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

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거나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

**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방 송 법

**제9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 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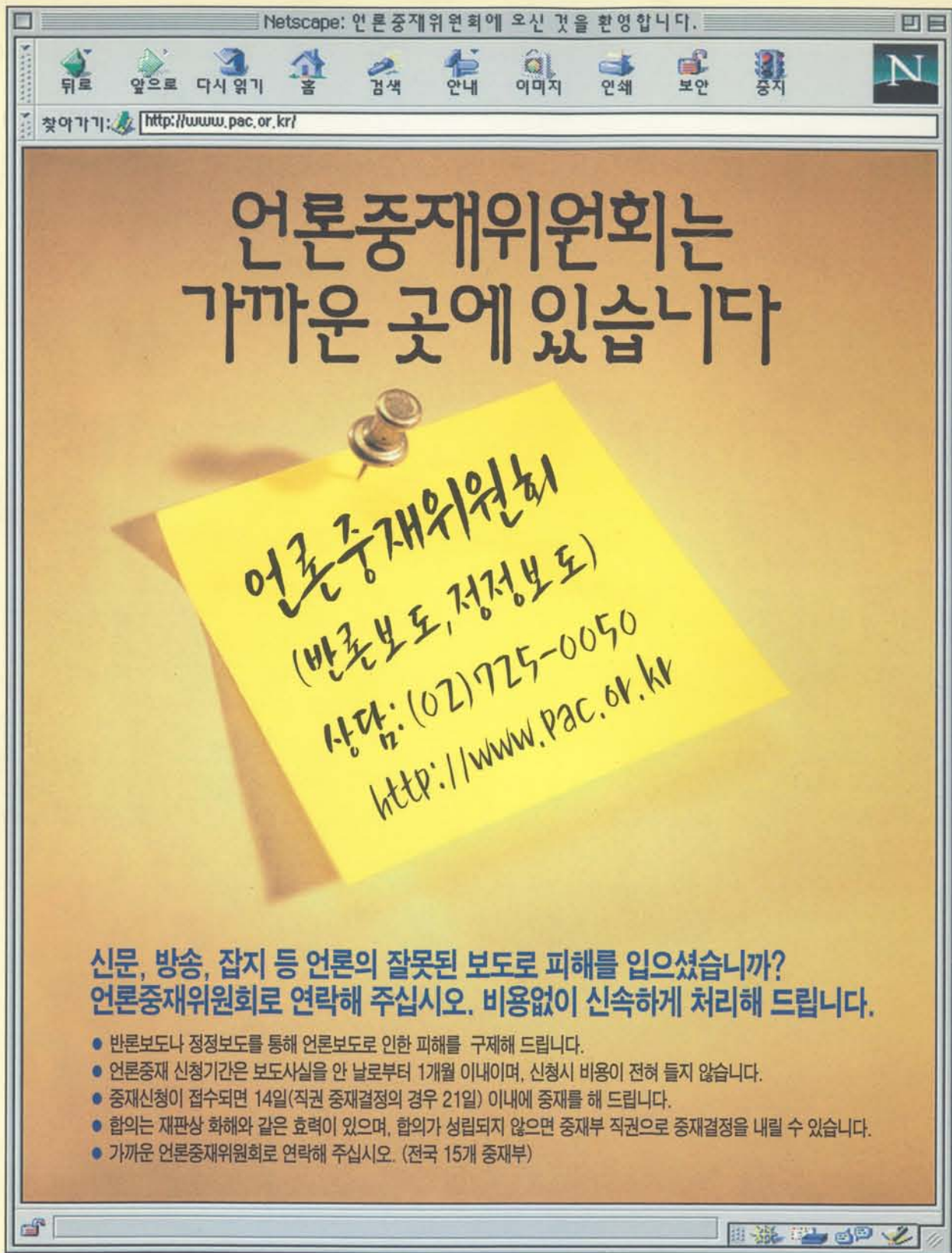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



# 언론중재위원회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정정보도)  
 상담: (02)725-0050  
<http://www.pac.or.kr>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드립니다.
- 언론중재 신청기간은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청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14일(직권 중재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중재를 해 드립니다.
-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국 15개 중재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02)725-0050, (02)732-6031

<http://www.pac.or.kr>